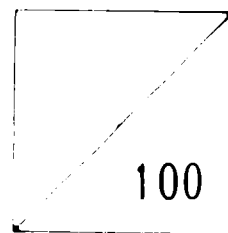


北韓
情勢分析
資料集

1991

統一院

統分 91 - 12 - 77



北韓 情勢分析 資料集

1991

統一院

책 머 리 에

當室에서는 1991年度에 작성한 主要 北韓情勢分析 資料와 北韓의 關聯 報道資料 原文을 時系列別로 整理하여 향후 北韓情勢分析 및 研究에 參考資料로 活用키 위해 이 冊子를 發行하였습니다.

이 冊子の 活用時 아래와 같은 點을 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分析內容은 최근 國際情勢 및 南北關係의 變化로 인해 現狀況과는 다소 다른 視角에서 作成된 面이 있음.
- 收錄된 北韓資料 原文의 無斷複製·複寫 및 目的外 使用을 禁함.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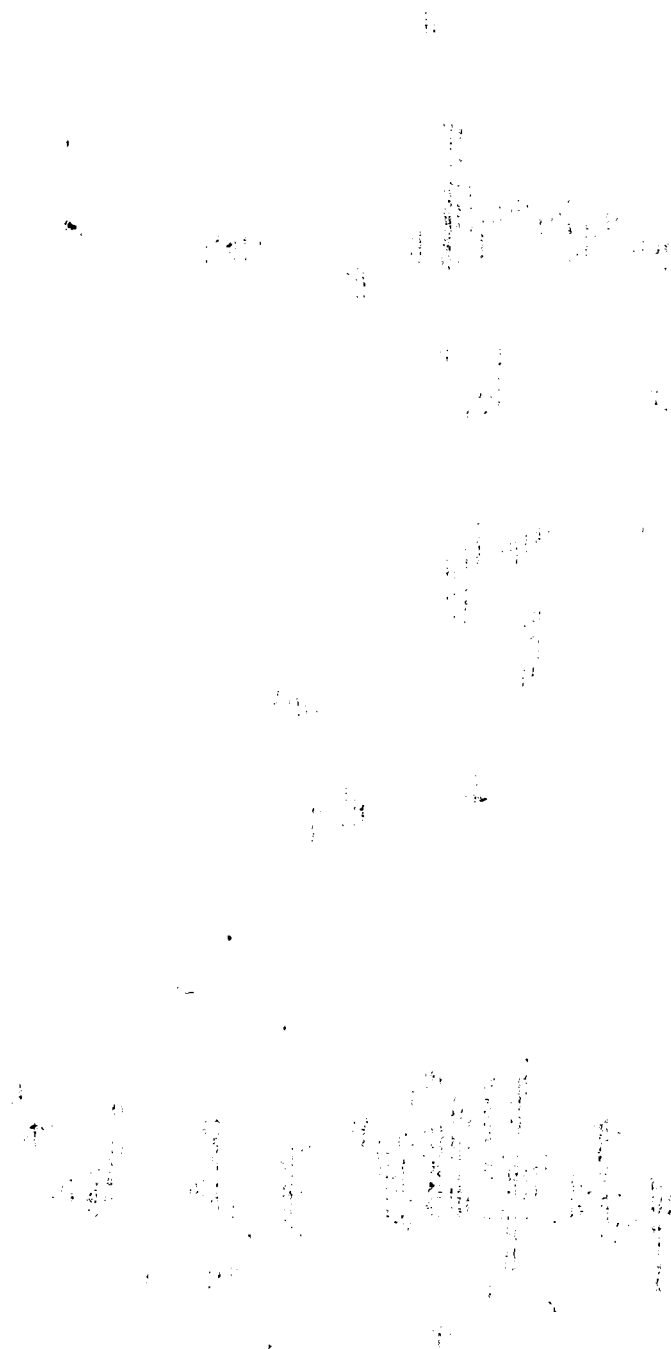
I. '91年度 北韓情勢 分析	1
1. 金日成·金正日 演說 및 談話	3
◇ '91年度 金日成 新年辭	5
◇ 金正日,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 談話	11
◇ 金日成, <祖平統>·<汎民聯 北側本部> 幹部들과 談話	13
◇ 金正日, 全國 青年 및 社勞青 일꾼들에게 書翰	18
2. 主要 情勢	31
◇ 北韓의 政治犯 實態	33
◇ 最近 北韓의 에너지 및 食糧 事情	40
◇ <아시아 安保協力機構> 創設案에 대한 北韓反應	46
◇ 北韓, '64년 以後 人口統計 처음 公開	49
◇ <主體의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아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2. 7 中放 論說)>	55
◇ 農業科學院 傘下 科學·技術 情報센터 設立 推進	60
◇ 金正日 49回 生日行事	65
◇ 祖平統, <南北對話에 關한 立場> 發表	74
◇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것은 黨과 革命的 運命과 關聯되는 根本問題 (3. 20 中放 論說)>	79

◇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2次 會議	83
◇ 平壤市 大衆交通 體系	93
◇ 金日成 79回 生日行事	100
◇ '91年度 上半期 北韓經濟 綜合	111
◇ 北韓의 豆滿江 流域 開發構想 關聯, 經濟特區 建設 推進	123
◇ 最近 北韓 社會變化 動向	130
◇ 〈蘇聯事態〉 관련 北韓 言論의 報道	154
◇ 北韓과 〈汎民族大會〉	159
◇ UNDP, 中央品質 및 計量科學研究所 支援事業 推進	177
◇ 〈平和的 移行 戰略〉 概念	182
◇ 金日成, 咸鏡北道 現地指導	187
◇ 北韓 - 蘇聯 經濟協力 現況	198
◇ 〈第2次 汎民族大會〉	202
◇ 〈全國 作業班長大會〉 開催	209
◇ 金日成, 咸鏡南道 現地指導	214
◇ 〈蘇聯事態〉 關聯 北韓 - 中國 經濟關係 展望	221
◇ 先鋒 經濟·貿易地區 開發 計劃 推進	225
◇ 〈蘇聯事態〉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229
◇ 金日成, 中國 訪問	237
◇ 第5次 日·北韓 修交會談	245
◇ 第5次 南北高位級 會談	249

3. 主要 法制定	255
◇ 北韓의 〈民法〉	257
◇ 北韓의 〈家族法〉	266
II. 北韓情勢 關聯 主要 資料	289
1. 金日成·金正日 演說 및 談話	291
◇ 金日成, 1991年度 新年辭(1.1)	293
◇ 金日成, 日本 〈마이니찌 新聞〉과 書面 對談(4.19)	311
◇ 金日成, 第85次 IPU總會 開幕 演說(4.29)	318
◇ 金正日,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 談話(5.5)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 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이다〉	323
◇ 金日成, 日本 〈교도통신〉과 書面 對談(6.1)	364
◇ 金日成, 祖平統·汎民聯 北側幹部들과 談話(8.1)	
-〈우리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하자〉	374
◇ 金正日, 全國 青年 및 社勞靑 일꾼들에게 書翰 (8.26) 〈青年들은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充實한 靑年前衛가 되자〉	392
◇ 金日成, 이와나미 書店 社長과 書面 對談(11.11 中放)	416

2. 其他 主要 資料	429
◇ 主體의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2.7 中放)	431
◇ 人民軍 司令官, 戰鬥動員態勢 下達(2. 27)	437
◇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것은 黨과 革命的 運命과 關聯되는 根本問題(3. 20 中放)	441
◇ 北韓 外交部, 〈UN加入〉 意思 表明 (5. 27)	445
◇ 로동당中央委, 〈全國作業班長大會〉 參加者들에게 祝賀文 (9. 16)	449
◇ 勞動黨中央委, 金日成 中國 訪問 關聯 政治局會議에 關한 報道(10. 16)	457
◇ 〈核安全 協定〉 署名 관련, 北韓 外交部 聲明(11.25) ...	463
◇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12.13)	467
3. 法制定 關聯 資料	479
◇ 北韓 〈民法〉 全文	481
◇ 北韓 〈民法〉 解說 全文	525
◇ 北韓 〈家族法〉 全文	542
◇ 北韓 〈家族法〉 解說 全文	550

I. '91年度 北韓情勢 分析



1. 金日成·金正日 演說 및 談話

'91年度 金日成 新年辭

1. 對內 要旨

가. 對內分野

政治 >

主體의 革命路線 堅持

黨의 主體的 革命路線 繼續 堅持

社會主義의 不敗性과 勝利의 祕訣은 主體의 社會主義 建設
黨과 人民大衆의 統一 團結

黨과 人民大衆의 統一團結은 社會主義建設의 위대한 推動力

< 經濟 >

'90年度 經濟建設 實績

發電所, 工場·企業所 改建·擴張, 主要對象 建設 推進

農村 水利化, 灌溉網 800km 建設

(대동강→예성강, 압록강→재령강)

'91年度 經濟政策 方向

第 3次 7個年計劃 主要 大衆建設 優先的 推進

石炭·電力·輸送·金屬工業을 先行部門으로 設定

알곡·천·人民消費品 增産으로 人民 物質生活 向上, 大安의

事業體系의 貫徹을 위한 集體的 指導 強化

나. 對南 및 統一分野

< 軍 事 問 題 >

- 軍事問題의 先次的 解決
 - 往來나 交流의 必要性을 認定하나 軍事問題 解決을 뒤로 미루는대는 妥協할 수 없음.
- 不可侵宣言에 대한 我側立場 非難
 - 信賴造成 優先은 不可侵宣言 回避의 口實
 - 不可侵宣言이 휴지장이란 말은 南北이 合意할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으로 會談 自體가 無意味

< 統 一 問 題 >

- 對美 平和協定 促求(3者會談 論理)
 - 美國과 平和協定을 締結하고 駐韓美軍·核武器를 撤收
- 祖國統一 方途 確定 必要
 - 祖國統一은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 制度, 두개 政府에 基礎한 聯邦制(1民族, 1國家, 2制度, 2政府)
- 制度의 單一化 統一(制度的 統一) 反對
 - 制度的 統一은 먹고 먹히는 것을 前提로 한 것으로 接受될 수 없으며, 強要시는 衝突과 民族 災難 惹起
- 民族統一 協商會議 召集 提議
 - 地域的 自治政府에 더많은 權限 暫定 賦與後→中央政府機能을 더욱 높여가는 方向으로 聯邦制의 完成問題 協議 用意
 - 統一方途에 대한 全民族的 合意를 위한 當局·政黨·團體代表 參加 民族統一 協商會議 召集 提議

다. 對外分野

反帝·自主的 對外政策의 堅持

우리黨이 一貫하게 堅持하고 있는 反帝·自主的 對外政策의 正當性 뚜렷이 實證

國際情勢는 社會主義와 帝國主義, 進歩와 反動 사이의 첨예한 對立과 鬭爭이 繼續

自主·平和·親善의 對外政策 基調 維持

社會主義 블럭不加攪 나라들을 비롯한 世界 여러나라 人民들과 親善·協調關係 發展

— 集團的 自力更生の 原則에서 政治·經濟·文化에 걸친 南南協調 發展

○ 아시아 人民의 團結·協調

아시안들이 自主성과 團結·協調로 亞細亞의 安定과 共同繁榮 이룩, 世界平和 偉業에 이바지

2. 綜合評價

가. 內容面

對內分野에 있어서는

政治·社會的으로 3大 革命의 堅持와 衣食住問題 解決 強調를 통해 體制 安定을 위한 自己防禦의 守勢的 立場 表出 經濟的으로는 지난해 提示한 「增産과 節約 鬭爭」 成果 斐

對外經濟 協力問題 言及을 回避, 實績 不振 反映

○ 對外分野에 있어서는

- 外交的 對南劣勢를 認識, 既存의 對社會主義·非同盟 中心의 外交 堅持, 아시아 域内外交 強調, 對日接近의 강한 意志 表明

○ 對南面에서는

- 對南 非難攻勢 強度の 低下를 보이면서 『祖國統一 5個 方針』의 政策基調를 堅持하는 가운데 南北韓 不可侵宣言의 對話 必要條件化 및 獨逸式 吸水統合에 대한 강한 危懼心 表出

나. 構成面

○ 時間面에서는 89年 30分, 90年 40分에 비해 今年은 50分으로 늘어난 趨勢

○ 構成面에서 특히 經濟部門 言及 縮小, 對南 및 統一部門 대폭 增加

年度別('88~'90年) 金日成 新年辭 主要內容

區分	'88年	'89年	'90年
對 內 問 題	3대 革命路線 堅持 3대 혁명은 사회 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 社會主義 制度의 優先性 發揚 - 당의 집체적 지 도 강화와 군중 로선 관철을 통 해 사회주의제도 우월성 발양 重要對象 建設 積 極 推進 - 발전소, 탄광, 광 산·제철·재강 생 산기지 등 건설 에 힘을 집중	3대 革命路線 強化 혁명적 기세 전진 와 힘있게 3대 혁명을 추진 社會主義制度의 優 越性 發揚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발양을 위한 사회주의 대진군 운동을 전개 ○ 輕工業 및 工作機 械·電子自動化工業 發展追求 중공업 제품의 질 제고와 공작기계 공업과 전자사농 화학공업발전 추구	3대 革命路線 強化 및 黨의 領導 強化 3대 혁명은 사회 주의·공산주의 건설의 정당한 노선, 당의 영도 역할 강화 필요 政治·文化·物質生 活 同時 發展 정치·문화·물질 생활을 다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당의 방침 輕工業과 農業同時 發展 및 衣·食·住 問題 解決 중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과 대대 적인 도시·농촌 주택건설

區分	'88年	'89年	'90年
對 外 問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非核·平和地帶化 關 爭 展開 - 비핵·평화지대 창 설과 핵무기 철폐 ○ 社會主義·非同盟 國 家와의 協調 및 南 南協調 強化 - 사회주의·블럭 불 가담 나라 인민들 과의 친선 협조관 계 발전과 남남협 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主義 固守鬭爭 展開 사회주의 동방 초 소를 지키며 사회 주의 옹호·고수를 위해 투쟁 ○ 블럭 不加擔運動 및 南南協調擴大發展 - 블럭 불가담 운동 과 정치·경제 등 제분야에서 남남 협조 확대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主義制度도 改 善 必要 사회주의 건설 방 법도 현실에 맞게 개선필요 ○ 非核·平和地帶化 關 爭 展開 - 핵전쟁 위험 제거 와 비핵·평화지대 창설 ○ 社會主義·非同盟 國 家와의 協調 및 南 南協調 強化
對 南 問 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北韓 不可侵宣言 採擇 -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불가 침선언 ○ 南北連席會談 召集 提議 - 팀스피리트훈련, 올림픽 공동주최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자를 포함 남 북연석회의 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朝鮮內 統一鬭爭 擴大 - 남조선의 통일투 쟁은 집체적·대중 적으로 확대되고, 연방제 통일 투쟁 으로 발전 ○ 南北政治協商會議 提議 - 연방제 협의를 위 한 남북정치협상 회의 소집 및 민 정당·평민당·민주 당·공화당 총재, 김수환, 문익환, 백 기완 초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單獨加入 및 對 話窓口 一元化 反對 - 유엔가입과 대화 창구 일원화 주장 은 민족의 통일의 사 외면 ○ 南北 自由往來 및 全面開放 - 자유왕래 실현에 머물지 말고 전면 개방

金正日,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 談話

北韓은 지난 5. 5 金正日이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 한 談話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이다”의 內容을 5. 27 中央放送을 통해 發表하였음.

<談話 內容 要旨>

- 우리는 革命과 建設에서 主體的 立場을 堅持하는 것이 나라와 民族의 運命과 관련되는 死活的인 問題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黨의 自主的인 路線과 政策을 변함없이 貫徹해야 함.
- 우리 人民 自身이 選擇한 길을 따라 우리의 實情에 맞게 自體의 힘으로 일떠 세운 人民大衆 中心의 독특한 우리式 社會主義는 커다란 優越性과 生活力을 發揮하고 있음.
- 우리나라 社會主義는 首領·黨·大衆이 一心團結된 不敗의 社會主義임.
- 黨 建設에서 繼承性을 保障하는 問題는 실차 黨의 領導의 繼承性을 保障하는 問題임. 革命을 개척한 首領의 偉業을 代를 이어나가는 黨의 領導의 繼承問題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解決되었음.

- 金正日是 86. 5. 19의 體育部門 일꾼들과의 談話 ‘體育을 大衆化하며 體育技術을 빨리 發展시킬데 대하여’를 시작으로 分野別 일꾼들과의 談話形式을 통해 核當分野에 대한 指針性 見解를 밝혀오고 있으며, 이번 談話는 黨事業 全般에 걸친 總體的 指導라는 점이 特徵的임.
- 政治分野에서는 西歐의 自由民主主義를 부르짖아 民主主義로 罵倒하면서 北韓式 社會主義의 爲民性을 浮刻시키는 가운데, 勞動黨을 ‘唯一한 嚮導力量’으로 規定하고 東歐國家들의 西歐式 多黨制 採擇을 社會主義의 拋棄라고 批判하고 있음.
- 經濟分野에서는 社會的 所有強化와 함께 大安의 事業體系 貫徹을 強調하면서,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經濟體制 改革에 대해 拒否反應을 表出하고, 資本主義 國家들과의 經濟交流·協力 擴大에 따른 經濟的 侵略에 강한 警覺心을 가질 것을 促求하고 있음.
- 社會·文化分野에서는 現時期 帝國主義者들에 의한 思想·文化的 浸透가 어느때보다도 強化되고 있다고 主張, 思想 教養事業 強化의 必要性을 力說하고 있음.
- 北韓은 이번 金正日의 談話를 통해서
 - 黨·首領·人民大衆의 一心團結과 既存의 北韓式 社會主義 路線의 固守를 強調하는 등 改革보다는 體制安定을 위한 防禦的인 守勢立場을 表出, 政策基調의 硬直性을 다시 確認시켜 주고 있음.

金日成, <祖平統>·<汎民聯 北側本部> 幹部들과 談話

金日成은 8. 1 朝平統 및 汎民聯 北側本部 幹部들과 가진 우리 民族의 大團結을 이룩하자라는 題下의 談話를 통해 “民族의 大團結”, “聯邦制統一”을 力說함으로써 內部 結束 및 既存 對南路線 견지를 強調하였음.(8. 5 中放)

<談話要旨>

- 우리는 반드시 우리 世代에 祖國을 統一하여야 함. 祖國 統一 偉業을 實現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民族의 大團結임.
- 우리 아버지께서는 일찌기 志遠의 思想을 내놓고 우리들을 愛國主義 思想, 民族主義 思想으로 敎養하였음. 그리하여 나는 처음으로 나라와 民族의 運命을 救援하기 위하여 인생을 바칠 각오로 鬪爭의 길에 나섰음.
- 나는 共產主義者인 동시에 民族主義者이고 國際主義者라고 할 수 있음.
- 1948年 南北連席會談에 參加한 金九는 解放前 上海臨時政府에 있으면서 共產主義者들을 원수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결국 聯共聯合의 길에 나섰음.

※ 志遠：後尾 參照

- 北과 南에 서로 다른 思想과 制度가 存在하고 있는 條件에서 民族의 和合과 統一을 이룩하는 길은 聯邦制方式밖에 없음. 어느 일방이 타방에 思想과 制度를 強要하는 方法으로는 民族內部的 對立을 激化시키고 民族的 災難을 빚어내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음.
- 오늘 南朝鮮 인테리들도 祖國統一을 위하여 잘 鬪爭하고 있음. 南朝鮮의 青年學生들은 열렬한 愛國精神과 견결한 反美 自主精神을 가지고 南朝鮮 社會의 自主化와 民主化, 祖國統一을 위한 鬪爭에서 核心的이며 先導的인 役割을 遂行하고 있음.
- 民族叛逆者를 내놓고는 南朝鮮의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包攝하는 原則에서 民族的 大團結을 이룩해 나가야 함.
- 宗教에 대한 올바른 理解를 가지고 宗教를 믿는 사람들과의 事業을 잘 하는 것이 매우 重要함. 南朝鮮 宗教인들이 祖國統一을 위하여 獻身的으로 鬪爭하고 있는 것을 높이 評價하여야 하며 그들과 團結하여야 함.
- 오늘 北과 南 사이의 自由來往과 接觸을 實現하고 對話를 發展시키는데서 南朝鮮의 國家保安法이 큰 障礙로 되고 있음.
- 北과 南, 海外의 모든 同胞들은 南朝鮮에서 美國 軍隊와 核武器를 撤去시키고 朝鮮半島를 非核地帶, 平和地帶로 만들기 위한 舉族的인 鬪爭을 벌여야 함.
- 온 民族의 組織的인 團合을 實現하려면 北과 南, 海外의 各界各層 同胞들이 다같이 自願的으로 망라될수 있는 組織이 있어야 함. 祖國統一 汎民族聯合이 그러한 組織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함.

- 이번 金日成 「談話」의 主要 特徵은
 - 즉 時期的으로 “第2次 汎民族大會” 및 南北韓 UN 同時加入을 앞두고 南北宣傳機構인 “祖平統”과 “汎民聯” 幹部들을 상대로 행하여지고 있으며,
 - 또한 聯邦制統一, 國家保安法 撤廢, 駐韓美軍 撤收 등 既存의 統一路線을 再確認 強調하면서 “吸水統一”에 대한 위구심을 表出하고 있음.
- 이어 金日成은
 - 南·北·海外의 全民族의 團結·包容 등 “民族大團結”을 내세우면서도 南韓內 反政府集團에 대한 包攝 및 鬭爭支援을 力說하고 있으며,
 - 宗教에 대한 최초의 肯定的 評價를 통해 남쪽의 宗教人 鬭爭을 煽動하고 있고 金日成 자신의 統一觀, 宗教觀, 政治思想 形成背景 등에 대해 異例的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등의 表現方式을 使用, 東洋的 情緒에 의한 宣傳效果의 提高 및 家系 偶像化를 노리고 있음.
- 특히 金九, 崔德新, 文益煥 등의 “聯共”을 例示로 民族大團結을 強調함으로써
 - 金日成을 求心点으로 한 北韓體制의 正統性을 浮刻시키고 있으며 民族叛逆者를 내놓고 南韓의 모든 사람을 대담하게 包攝해야 한다고 言及함으로써 南側 當局者들에 대한 敵對感을 表出하고 있음.
- 또한 「汎民聯」과 「汎民族大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으로써

- “第2次 汎民族大會” 開催 놀음을 밧고 나갈 意思를 분명히 하고 있어 주목됨.

○ 金日成이 직접 “南朝鮮인테리와 靑年學生들의 統一鬪爭”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同 『談話』의 意圖는 表面的으로 南·

北·海外 7千萬 同胞의 大團結을 통한 統一實現을 내세우고 있으나,

- 其實은 急變하고 있는 內外狀況에 對備,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2千萬 北韓住民들이 動搖하지 말고 團合을 維持하도록 呼訴하는 한편,

- 聯邦制統一, 吸收統一 反對, 國家保安法 廢止, 駐韓美軍 徵收 等 종전의 統一 및 對南路線을 再整理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음.

※ 8. 6字 로동신문 社說(『民族의 大團結로 祖國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綱領的 指針』)은 “北과 南側의 온 民族은 위대한 金日成 首領이 闡명한 民族大團結 路線을 높이 받들고…”

라고 南側의 聯北을 煽動

이외 金亨稷의 愛國思想, 民族思想 教養으로 오늘의 金日成이 있듯이 金正日의 權力承繼도 歷史的 當爲性을 지녔다는 것을 金日成 自身の 입을 통해 暗示하고 있는 點 등도 특징적임.

※ 志 遠: 金亨稷의 愛國心과 革命思想을 담고 있다는 述語, 즉 “나라의 독립과 번영, 人민의 자유와 解放을 위하여서는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가로막아

나서도 조금도 굴함없이 끝까지 싸워야 하며 조국광복을 위한 혁명위업은 당대에 다하지 못하면 대를 이어서라도 기어코 완수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

(出處：北韓의 『현대조선말사전』)

金正日, 全國 青年 및 社勞靑 일꾼들에게 書翰

1. 金正日 書翰의 性格 및 特徵

<談話 日誌>

○ 91. 5. 5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의 談話)

☆ 91. 8. 26 “靑年들은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實한 靑年
前衛가 되자”(靑年節 紀念書翰)

○ 金正日是 80年代 들어와서 부터 談話形式을 통해 該當分野에
대한 指針性 見解를 밝히 왔는 바

이번 談話形式의 書翰은 今年들어 두번째로서 靑年節에 즈
음한 紀念書翰 形式이기는하나 北韓이 현재 當面하고 있는
問題를 打開하기 위한 政策的 內容(48분간)으로 構成되어
있음.

○ 同 書翰의 骨格은 靑年節 制定意義와 靑年들의 業績을 致賀
하는 가운데 靑年들의 思想解弛 및 外來思潮 침습경계 등
體制維持를 鞏固히 하기 위한 方針을 提示하고, 이러한 體制
維持를 바탕으로 經濟建設 등 懸案問題를 解決하겠다는 意志
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또한 統一熱氣 擴散으로 對內不滿 要因을 稀釋시키고 南韓

및 海外의 모든 統一勢力을 糾合, 對南革命戰略을 貫徹하기 위해 推進하겠다는 意圖가 담겨져 있음.

2. 內容 要旨

가. 革命正統성과 主體思想을 바탕으로 社會主義體制 固守

<革命事業의 繼承·發展 促求>

- 革命은 人民大衆의 主體性을 實現하기 위한 성스러운 鬪爭이며 그것은 한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世代에 世代를 이어 完成되어 나감.
 -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直한 새세대 靑年들이 있는 限 우리革命은 어떤 風波와 試鍊도 이겨내고 반드시 勝利한 것임.
 - 社會主義·共產主義는 人民大衆이 온갖 搾取와 壓迫에서 벗어나 自主的이며 創造的인 生活을 누리는 人類의 理想社會이며 참다운 革命家 共產主義者들의 最高鬪爭目標임.
 - 革命의 1세대, 2세대 靑年들의 헌신적인 鬪爭에 의하여 줄기차게 發展하여온 社會主義 偉業은 오늘 革命의 3세대, 4세대 靑年들에 의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음.
- “靑年들은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充實한 靑年前衛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靑年들이 들고 나가야 할 革命的 口號임.

우리 靑年들이 靑年前衛가 된다는 것은 어떤 逆境속에서도

黨과 首領을 政治 思想的으로 목숨으로 옹호·保衛하고
黨과 首領의 領導를 忠誠으로 받들어 나가며 主體思想을
確固한 信念으로 만들고 黨의 路線과 政策을 끝까지 貫
徹해 나가는 先鋒隊, 突擊隊가 된다는 것을 말함.

- 청년들은 主體思想으로 튼튼히 武裝하여야 참다운 青年前衛
로 될 수 있으며 우리 革命의 믿음직한 繼承者로서의 使
命과 任務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음. 青年들은 主體思想
學習을 強化하여 그것을 더욱 깊이 있게 體得하고 事業과
生活에 철저히 具現해 나가야 함.

<부르조아思想 척결·社會主義體制 固守 促求>

- 오늘 우리의 新世代 青年들에게 있어서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
의 策動으로부터 우리나라 社會主義를 튼튼히 옹호·固守하
고 더욱 빛내어 나가는 것보다 더 중대한 課業은 없음.
- 青年들은 主體思想의 要求대로 모든 問題를 우리式대로 풀
어나가며 그 어떤 異色的인 思想要素와 生活風土에도 물젓
지 말아야 함.
- 青年들은 모든 社會現象을 勞動階級的 觀點과 社會主義的
原則에서 보고 判斷하여야 하며 帝國主義 侵略的 本性和
榨取制度的 反動的 本質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反對하여
非妥協的으로 鬭爭하여야 함.
- 青年들은… 黨과 首領의 領導를 忠誠으로 받들고 主體思想
을 견결히 옹호·固守하며 우리나라 社會主義 制度的 優越

性を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積極 鬭爭하여야 함.

靑年들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 首領, 우리黨, 우리나라 社會主義에 대한 노래, 民族的 情緒가 넘치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生活도 우리 人民의 民族的 感情과 嗜好에 맞게 하여야 함.

靑年들은 安逸과 解弛를 反對하고 언제나 革命的으로 일하고 生活하며 나라의 法規範과 秩序를 自覺적으로 지키야 함.

靑年들은 個人主義, 부르조아 自由主義의 자그마한 現象과도 제때에 鬭爭을 벌여 克服하여야 함.

오늘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은 우리 内部로부터 分裂 瓦解시키기 위하여 反動的인 思想文化와 誘發的인 生活樣式을 流布시키려고 악랄하게 策動하고 있음.

靑年들은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의 策動에 警覺性を 높이고 썩어빠진 부르조아의 思想文化와 生活樣式을 반대하는 鬭爭을 강하게 벌여 그 자그마한 要素도 우리 内部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함.

靑年들은 社會主義 祖國의 貴重함을 깊이 體得하고 祖國을 열렬히 사랑하며 祖國의 隆盛 繁榮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싸워야 함.

나.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있어 先鋒隊·突擊隊 役割 強調

<어렵고 힘든 部門에서 勞力的 偉勳 促求>

- 青年들은 思想·技術·文化의 3大革命의 旗幟를 높이 들고 社會主義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創造와 建設의 實踐鬪爭에 青春을 다 바쳐야 함.
- 青年들은 黨의 要求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솔선 맡아 나서야 하며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들어야 함.
- 青年들은 青年突擊隊運動에 널리 參加하여 社會主義 經濟建設에 적극 이바지하며 自身을 革命的으로 단련하여야 함.
- 速度戰青年突擊隊는 우리黨의 社會主義 經濟建設 構想을 맨앞장에 서서 實現해 나가는 正規화된 戰鬪的인 勞力部隊이며 보람찬 實踐鬪爭 속에서 青年들을 우리黨의 믿음직한 青年前衛로 키우는 훌륭한 革命學校임.
- 社勞靑 組織들은 새로운 青年突擊隊를 많이 무어(※조직하다) 重要對象 建設場을 비롯한 生産과 建設의 어렵고 중요한 戰鬪場에 派遣하여 青年들이 社會主義 經濟建設에서 勞力的 偉勳을 펼쳐 나가도록 하여야 함.
- 青年들은 炭鑛과 鑛山, 建設場과 伐木場, 農村과 漁村을 비롯한 人民經濟의 어렵고 힘든 部門에 적극 進出하여 生産과 建設을 위한 鬪爭에서 偉勳을 세워야 함.

<生活環境 改善 및 治山治水 事業의 大大的인 展開 促求>

- 青年들은 都市와 마을 거리와 일터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鬭爭을 힘있게 벌여 共產主義的인 勞動條件과 生活環境을 더욱 훌륭하게 마련하여야 함.

- 靑年들은 綠化美化 事業과 植樹造林 事業을 大膽으로 벌여 祖國의 모든 都市와 마을, 산과 들이 百花 滿發하고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함.

<科學技術 發展위해 先進技術 導入 促求>

- 나라의 科學技術을 하루빨리 世界的 水準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나라의 先進技術을 널리 받아들여야 함.
- 다른나라의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主體를 세우는 것과 矛盾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제를 더 잘 세워나가게 함.
- 靑年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發展하고 있는 世界 科學技術發展 趨勢를 잘 알아야 하며 世界 科學技術 發展의 최신 成果를 우리人民의 要求와 우리나라 實情에 적극 받아들여 社會主義 建設에서 온(※값진 보람을 나타내다)을 내게 하여야 함.
- 靑年들은 保守主義, 經驗主義, 技術神祕主義를 비롯하여 나라의 科學技術 發展을 阻害하는 온갖 낡은 思想要素를 반대하고 새로운 科學技術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함.

<人民經濟計劃 執行에 있어 차질없는 推進 促求>

- 靑年들은 조건이 아무리 不利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自力更生 艱고분투의 革命靜神을 높이 發揮하여 자기앞에 만기선

人民 經濟計劃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함.

- 人民經濟計劃은 黨의 指令이며 國家의 法으로 人民經濟計劃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血氣旺盛한 靑年들에게 있어서 수치가 됨.

다. 靑年들의 國防力量 強化 促求

<誠實한 軍事服務 強調>

- 靑年들은 祖國保衛의 基本力量이며 社會主義 祖國을 튼튼히 保有하는 것은 靑年들의 진정한 義務임.
 - 人民軍隊는 靑年들을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實한 革命家로 키우고 단련시키는 共產主義 學校임.
- 靑年들은 軍事服務를 통하여 自身을 政治思想的으로 軍事技術的으로 肉體的으로 튼튼히 準備하여야 함.

<敵의 侵略에 對處할 수 있는 態勢 講究>

- 靑年들은 敵의 侵略에 對處할 수 있도록 언제나 緊張되고 動員된 態勢를 갖추어야 하며 敵들이 侵略을 敢行하면 용약 떨쳐나 社會主義 祖國을 목숨으로 지켜야 함.

라. 祖國統一偉業 達成위해 강력한 鬪爭 展開

<두個 朝鮮 策動防止 및 統一方針 實現을 위해 鬪爭>

- 갈라진 祖國을 統一하는 것은 우리 人民의 最大의 民族的 宿願이며 새世代 靑年들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課業임.

- 우리 靑年들은 分裂된 祖國을 다음 世代에 넘겨주지 말아야 하며 民族앞에 지닌 숭고한 任務를 깊이 自覺하고 祖國統一偉業을 實現하기 위하여 적극 鬭爭하여야 함.
- 靑年들은 美帝와 南朝鮮 傀儡들의 兩個 朝鮮 造作策動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黨의 祖國統一 方針을 實現하기 위한 鬭爭을 힘있게 벌이므로써 1990年代에 기어이 祖國을 統一하여야 함.

<民族大團結의 旗幟下에 靑年들의 共同鬭爭 促求>

- 祖國統一偉業은 民族大團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으며 朝鮮 靑年들은 어디에 있건 누구나 統一의 旗幟 밑에 하나로 굳게 團結하여 싸워야 함.
- 北과 南, 海外同胞 靑年들이 자주 接觸하고 往來하며 共同 祝祭와 鬭爭을 많이 벌이는 것은 靑年들의 團結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重要함.
- 北과 南, 海外同胞 靑年들은 祖國統一을 위한 하나의 共同 戰線에서 서로 鼓舞하고 支持하며 적극 도와 나서야 함.

<南北 靑年學生들과의 連帶性 強調>

- 지금 全大協의 百萬學徒를 비롯한 南朝鮮 靑年學生들은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反美 自主化·反과쇼 民主化 祖國統一을 위한 鬭爭을 과감히 벌이고 있음.
- 모든 朝鮮靑年들은 祖國統一을 위해 굴함없이 싸우고 있는 南朝鮮 靑年學生들과 人民들의 鬭爭을 적극 聲援하고 鼓舞하여야 함.

- 在日本 朝鮮青年들은 우리 革命發展의 要求에 맞게 青年 運動을 끊임없이 發展시키며 어떤 逆境속에서도 변함없이 싸워 나가는 在日朝鮮人 運動의 繼承者로 튼튼히 準備하여야 함.

마. 社勞靑의 役割 및 黨의 領導體系 強化

〈社勞靑의 役割 強化〉

- 社勞靑 組織을 튼튼히 꾸리고 그 機能과 役割을 높여야 青年들을 黨과 首領, 祖國과 人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鬪爭하는 믿음직한 青年前衛로 키울 수 있음.
- 社勞靑委員會 部署들은 革命的 職能에 따라 모든 事業을 正規化하고 擔當한 分野의 事業을 責任的으로 組織 進行하며 部署들 사이의 配合 및 協同作戰을 잘 하여야 함.
- 民主主義 中央執權制에 基礎한 革命的 規律을 세우는 것은 社勞靑 組織의 機能과 役割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要求임.
- 初級團體는 社勞靑의 末端 基層組織이며 同盟生活의 據點임.
社勞靑 初級團體의 機能과 役割을 높여야 全 同盟을 強化하고 그 戰鬥力을 높일 수 있으며 社勞靑員들을 黨의 뒤리에 굳게 묶어 세울 수 있음.
- 青年前衛 模範初級團體爭取運動은 初級團體를 黨의 偉業을

높이 받들어 나가는 青年前衛集團으로 꾸리며 青年들이 思想 技術 文化的 3大革命 遂行에서 先鋒的 役割을 하기 위한 忠誠의 大衆運動임.

<社勞靑組織 內部에 黨의 領導體系 強化>

- 社勞靑組織들은 同盟안에 黨의 領導를 忠誠으로 받들어 나가는 革命的인 事業體系를 철저히 세워야 함.
- 黨의 領導를 떠나서는 社勞靑이 자기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할 수 없으며 黨의 靑年組織으로서의 使命과 任務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음.
- 社勞靑組織들은 黨의 思想과 領導를 높이 받들어 나가는 것을 自己活動의 確固한 原則으로 삼고 同盟안에 黨의 路線과 方針을 無條件 接受하고 끝까지 貫徹하며 全同盟이 黨中央의 唯一的 領導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事業氣風을 철저히 세워야 함.

3. 分析·評價

- 이번 金正日의 書翰은 지난 5.5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이다” 題下의 談話 內容의 延長線上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 5.5 談話가 蘇聯을 비롯한 東歐社會主義 國家들의 政治·社

會的 變革에 대한 防禦的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면, 금번 書翰은 最近 激變하는 國際情勢속에서의 生存을 위한 總體的 危機狀況에서 提示된 것임.

○ 同 書翰은 革命正統性 및 主體思想의 基礎한 社會主義體制의 優越性을 全般적으로 強調하면서 현재 靑年들에게 부과된 가장 큰 課業은 『北韓式 社會主義體制』를 옹호·固守하는 것이라고 主張

— 現 體制維持가 蘇聯事態 이후 北韓에 있어 가장 時急한 懸案임을 강하게 示唆하고 있으며

— 또한 體制維持를 위해 靑年들은 帝國主義者들의 思想文化的 浸透와 부르조아의 生活樣式에 대한 警戒와 함께 反對鬭爭을 강력히 推進할 것을 促求하고 있음.

○ 黨의 要求라면 靑年들은 물과 불속이라도 뛰어들 것을 促求하면서 北韓이 當面하고 있는 經濟難 打開를 위한 方案을 披瀝하고 있는 바

— 共產主義 勞動條件과 生活環境을 마련하자면 “아직 많은 일”을 해야한다고 主張하면서

• 어렵고 힘든 人民經濟 部門에 새로운 靑年 突擊隊를 構成 投入할 것을 督勵, 北韓社會 全般에 걸쳐 勞動忌避 現象이 단연하고 있음을 暗示하고 있으며

• 農村靑年分組 靑年作業班의 경우, 該當單位의 具體的 實情에 맞게 靑年作業班을 새로이 組織할 것을 強調, 食糧增産을 위한 ‘主體農法’이 이제까지 地域實情을 도외시

한 策劃-的으로 適用되었음을 是認

- 다락밭 開墾으로 인한 森林의 荒廢化로 綠化美化事業과 植樹造林 事業을 大-的으로 展開할 것을 促求하고 있고.
- 특히, 先進科學技術 導入은 主體를 제우는 것과 矛盾되지 않는다고까지 強辯, 落後된 技術水準 向上의 必要性을 切感하고 있음.

○ 同 書翰은 青年들의 國防意識과 役割 提高를 異例的으로 促求하고 있는 데

- 이는 軍隊內에 軍紀解弛 現象과 社會底邊에 깔려 있는 軍入隊 忌避現象을 反證하고 있음.

○ 對南·統一問題에 있어서 今世紀內에 祖國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鬭爭을 강력히 展開할 것을 促求하면서 ‘兩個 朝鮮造作策動’, ‘反帝 連帶性’ 등 既存 主張을 되풀이 하고 특히 南北韓 青年들의 ‘接觸·來往·共同祝祭와 連帶鬭爭을 積極化하겠다’고 公言하고 있는 바.

- 이는 統一熱氣 擴散으로 當面한 對內 不滿要因을 다소나마 稀釋시키고 모든 統一勢力을 糾合, 對南革命戰略을 貫徹하기 위해 邁進하겠다는 意圖로 判斷됨.

○ 끝으로 同 書翰은 社勞青 組織 內部에 黨의 領導體系를 強化할 것임을 力說, 黨이 직접 社勞青 組織을 통해 青年들의 思想·行動과 生産活動을 規律해 나가겠다는 意思를 분명히 하고 있는 바

— 이는 外部思潮에 물들기 쉬운 靑年들의 思想再武裝으로 金正일의 支持基盤을 굳건히 함과 아울러 靑年層의 組織的인 勞力動員을 통해 심각한 經濟難을 克服하려는 意圖로 評價 될.

【添附】

金正일의 分野別 談話日誌

- 82. 3.31 “主體思想에 대하여” (金日成 70回 生日紀念 全國 主體思想討論會에 보낸 論文)
- 86. 5.19 “體育을 大衆化하며 體育技術을 더욱 發展시킬데 대하여” (體育部門 일꾼들과의 談話)
- 87. 4.11 “集團體操를 더욱 發展시킬데 대하여” (集團體操 創作家들과의 談話)
- 87.10.10 “主體의 革命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의 談話)
- 91. 5. 5 “人民大衆 中心의 우리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 (黨中央委 責任일꾼들과의 談話)
- ☆ 91. 8.26 “靑年들은 黨과 首領에게 끝없이 忠實한 靑年前衛가 되자” (靑年節 紀念書翰)

2. 主要情勢

北韓의 政治犯 實態

1. 北韓의 人權

- 世界人權宣言은 第1條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第6條에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법률앞에 하나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음.
- 그러나 北韓에 있어 人權이란 그 概念 自體를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集團主義 原則하에서만 尊重될 뿐 個個人의 天賦的 人權을 존중하는 의미의 「個人」이란 없고 組織의 構成要員인 「公民」의 義務만이 존재할 뿐임.
 - “공민은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해야 한다”,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조국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틀을 세워야 한다” (北韓憲法 第68條)
- 또한 國民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近代刑法의 가장 基本的인 원리이고 法治國家라면 당연히 수용되고 있는 罪刑法定主義, 遡及效禁止의 原則이 北韓에서는 부정되고 있어 人權保障裝置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음.
 - “형사법에 직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그 종류와 사회적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그 책임기초와 범위 및 형벌을 정한다” (北韓刑法 第15條)

- “일제시대에 일제와 야합하여 반역행위를 했거나 미제가 강점하고 있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주구로서 반역행위를 할 경우” (北韓刑法 第63條)는 北韓刑法 制定前의 行爲라도 소급하여 처벌
- 특히 北韓 社會에서 가장 罪惡視되는 『7號事犯』 (反金日成, 反體制事犯) 즉 政治犯에 대해서는 『公民權』은 물론 生存權마저 制限하는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2. 政治犯 範圍 및 處罰

- 金日成은 政治犯의 概念과 範圍에 대해 反革命分子, 불건전한 思想을 가진자, 敵對分子(黨과 政權反對)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한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 現行 刑法上에 規定된 主要 政治犯 該當罪(사형, 전 재산 몰수)

- 第51條 國家主權 顛覆 陰謀罪：黨·國家機關에 대하여 무장 暴動을 組織하거나 그에 가담하는 行爲 및 反革命的 示威
- 第52條 祖國 叛逆罪：外國 또는 敵의 편으로 도망치는 行爲 및 敵 또는 外國機關이나 사람을 도와 주는 行爲
- 第56條 反動宣傳煽動罪：黨과 國家의 政策을 中傷·誹謗, 反動的인 出版物과 文서를 作成·保管·流布하는 行爲
- 第59條 反革命的 暗害罪：社會主義 建設을 반대할 목적으로 國家의 產業·運輸·商業 등을 破壞·沮害하는 行爲
- 第62條 社會主義國家 反對 및 人民 敵對罪：社會主義 및 國際共產主義 運動과 勞動運動을 반대하거나 革命的 人民들을 敵對視하는 行爲

○ 따라서 北韓에서는 政治犯에 한해 무한정으로 처벌토록 하는 16個條項(刑法 第51-66條)을 明文化하고 있고 實質적으로도 適法한 裁判節次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음.

－ 7號事犯(政治犯)은 司法機關인 檢察所나 裁判所에서 취급하지 않고 國家保衛部에서 非公開, 單審制로 처리하고 있음.

－ 政治犯은 本人外에도 가족, 친척(경우에 따라) 까지 連累시키는 連坐處罰罪를 적용하고 있음.

※ 본인은 대부분의 경우 즉결 처형되고 그 가족과 친척은

收容所에 收容됨.

- 政治犯의 逮捕, 處罰, 收容管理 등 모든 업무는 國家保衛部에서 전담하고 政治犯의 護送 및 外廓警備 등은 社會安全部の 警備隊에서 실시함. (귀순자 김만철 證言)
- 政治犯의 索出은 住民 10名當 1名정도로 비밀 조직된 各급 情報查察網(國家保衛部, 社會安全部, 黨組織)을 통해 이루어 짐.
- 政治犯으로 낙인되면 야밤을 틈타 이웃 주민 몰래 全家族을 收容所로 移送함.

3. 北韓의 『特別獨裁對象區域』 實態

가. 特別獨裁對象區域의 變遷

- 北韓이 政治犯을 特別收容하게 된것은 1958년 연안파 肅清事件(8月 宗派事件) 連累者 및 그 家族을 教化所가 아닌 特定地域에 集團 收容함으로써 시작되었음.
- 歸順者들의 證言 등을 통해 特別獨裁對象區域에 대해 正體가 일부 밝혀져 오다가 1982. 4. 11 『N.Y.T』紙에서 最初로 8個地域에 105,000名이 收容되어 있다는 충격보도를 한 바 있음.
- 1973년부터 金正日의 世襲後繼體制 構築을 위한 政治鬭爭 組職인 3大革命小組 活動과 1980年 6次 黨대회 이후 金

正日이 후계자로 공식 등장함과 때를 같이하여 批判者 및 政敵으로 肅清된 者를 수용키 위해 4個地域을 추가로 설치, 현재 12個地域에 15萬 2,000名이 수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나. 收容施設

- 北韓式 收容所 群島인 政治犯 收容施設은 통상 『중과굴』 또는 『特別獨裁對象區域』으로 불리어지고 있음.

※ 일반 犯罪收容施設은 教化所 또는 勞動教化所 임.

- 北韓은 收容施設을 산간오지나 國境隣接地域, 廢鑛地域 등 인적이 드문 지역에 설치, 일반인의 접근을 原則적으로 봉쇄시키고 있음.
- 收容施設 위는 3~4m 높이의 3중철조망이 설치되어 있고 철조망 외곽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감시초소와 警備犬 까지 배치하고 있어 탈주는 전혀 불가능한 상대임.
- 收容所는 政治犯의 罪質에 따라 가족과 함께 수용되는 시설, 남자만 수용되는 시설, 여자만 수용되는 시설 등으로 區分됨.

다. 收容所 位置 및 收容人員

地 域	位 置	收容人員
咸北地域	온성군, 회령군, 경성군	62,000名
咸南地域	요덕군, 정평군, 덕성군	33,000名
平南地域	개천군, 북창군	20,000名
平北地域	용천군, 영변군	20,000名
茲江道地域	회천시, 동신군	17,000名

* 12個地域 15萬 2,000名 收容

라. 主要 收容人物

姓 名	肅清年月	當時의 職責	肅清理由
金道滿	1967. 3	黨中央委 祕書	黨政策에 不滿
朴金喆	1967. 4	副首相	"
金光浹	1967.12	黨中央委 祕書	反黨宗派分子
許鳳學	1968. 1	對南事業總局長	唯一思想體系문란
柳章植	1975.10	黨中央委 祕書	金正日後繼 反對
金炳夏	1980	國家保衛部長	"
李成實	1985	社會安全部 政治局長	反黨宗派分子

마. 收容所 生活

- 收容者 起居施設은 收容者 자신들이 손수 구축한 움막이나 토굴로 비바람을 간신히 면할 수 있는 상태임.
- 收容者들은 收容所 입소당시 취사도구, 衣服을 除外한 기타 재산은 몰수되며 公民證을 비한 一切의 證明書는 回收됨.
- 수용중 외부와는 일체 연락이 차단되고 衣食住 生活에 필요한 모든 物資는 자체에서 生産調達하여 사용토록 함.
 - * 통상 荒廢한 土地를 開墾하여 식량을 생산하며 기타 생활 必需品을 原始的 方法에 의해 自體 調達한다 함.
- 疾病 發生時에도 醫療惠澤을 거의 받을 수 없고 스스로 民間療法을 動員, 치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收容所內에서는 “宗派分子의 씨를 말려야한다”는 上部方針에 따라 妊娠·出產은 금지시키고 있음.
 - * 극히 例外的 出產을 허용하는 수용시설도 있다 함.
- 收容所內에서 집회를 주도했거나 탈출기도, 公開的 불평불만자가 색출되면 收容人을 집합시켜 公開處刑 하기도 함.
 - * 收容所內에서는 가끔 監督者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수많은 收容者가 處刑된다고 함.

最近 北韓의 에너지 및 食糧事情

1. 概況

- 北韓 중앙통신은 '90. 10 勞動黨 創建 45週年을 기해 몇가지 經濟統計를 발표하면서 '89年 電力 生産量이 555億 Kwh, 石炭 生産量은 8,500萬톤으로 主張
- 한편, 第2次 7個年計劃 實績發表에서는 '84年度 北韓 穀物 (粗穀概念) 總生産量을 1,000萬톤으로 發表
- 그러나 北韓 發表와는 달리 80年代中 北韓經濟 實情은 에너지 및 食糧不足, 輸送隘路, 外貨枯渴 및 外債問題가 慢性的이고 構造的인 問題로 대두되어 왔음.
- 특히 최근 日本 및 蘇聯의 北韓經濟 專門家들의 見解와 西方 言論報道를 綜合하면 北韓의 에너지 및 食糧事情은 매년 惡化 一路에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 蘇聯 科學아카데미 世界社會主義體制 經濟研究所의 北韓經濟 專門家들은 今年 봄부터 北韓에서는 食糧不足으로 饑餓事態가 發生할 것이라는 극히 悲觀的인 展望을 披瀝
- 今年 金日成 新年辭에서 過去와는 달리 지난해의 經濟實績을 거의 言及하지 못함으로써 '89年 『平祝』以後 北韓經濟 沈滯가 심각한 局面임을 間接的으로 示唆

2. 北韓經濟 專門家 見解 및 主要 報道要旨

〈모스크바 韓·蘇 北韓經濟 專門家 워크샵('90. 5)〉

- 北韓은 최근 에너지 事情 惡化로 '89年 以後 工場 稼動 率 40~50% 水準으로 低下
 - 石炭不足 年間 3,000~4,000萬톤
 - '89年 石油 및 石油化學製品 生産量 300萬톤에 불과
- 北韓 住民들은 現在 饑餓에 直面하고 있으며, 食糧 輸入 매년 200萬톤 必要

〈東京 韓·日 北韓問題 專門家 워크샵 ('90. 11)〉

- 지금까지 北韓의 對蘇聯 原油 輸入 依存도는 總輸入量의 50%水準으로 蘇聯의 硬化決濟 要求는 北韓經濟에 致命的
- 金日成 祕密訪中('90. 9)時 中國으로부터 對北 原油供給 增加를 要請

〈蘇聯 北韓經濟 專門家 訪韓時 懇談會 ('90. 12)〉

- 최근 發電施設 노후 및 水量不足으로 일부 水力發電所 稼動 中斷
- 炭鑛施設 投資不足으로 火力發電用 石炭의 增産도 期待할 수 없어 電力難 더욱 加重 豫想
- '90年 蘇聯의 對北 原油供給은 종전의 절반으로 減縮

- '89年 北韓 食糧導入量은 100萬톤이었으나 '90年の 生産不振으로 今後 220~250萬톤의 食糧輸入 必要
- 蘇聯은 内部 經濟事情上 北韓에 食糧援助 提供 不可能

〈主要 言論 報道〉

- 新華社 通信 ('90. 11. 27)
 - 中國은 北京을 訪問中인 北韓總理 延亨默과 對北 經濟援助 提供을 協約
- Wall Street Journal (90. 12. 11)
 - 金日成 訪中時('90. 9) 中國은 北韓에 대해 더 이상의 經濟援助 不可能 通報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91. 1. 10)
 - 北韓은 蘇聯의 對北 原油供給 減縮과 風·水害로 인한 食糧生産 不振으로 石油 및 食糧不足 極甚
 - 北韓總理 延亨默 訪中時 ('90. 11) 中國側은 北韓에 食糧 및 原油供給 增大를 約束

3. 北韓의 에너지 및 食糧 需給實態

〈石 炭〉

- '90年 北韓 石炭 生産能力은 4,330萬톤으로 評價되나, 실제 生産量은 3,300萬톤으로서 生産能力에 未達

— 投資不足으로 인한 採炭裝備 및 施設 落後, 일부 탄광의 여름폭우로 인한 침수 및 採掘條件 惡化 등이 要因

○ 또한 化學工業 原料 및 火力發電用 燃料需要 增加, 輸送 隘路 등 石炭供給 不足 深化

〈電 力〉

○ '90年 現在 總 發電施設 容量은 714萬 Kw로 評價되며, 그중 水力429萬Kw, 火力 285萬Kw

○ '90年 發電能力은 291.7億Kwh이며, 水力 對 火力 構成比는 각각 50% 水準이나 최근 일부 水力發電施設의 老朽, 石炭不足으로 인한 低熱炭의 火力發電 燃料 使用으로 發電設備 稼動率 低下

○ 重化學工業 爲主의 에너지 多消費 産業構造와 設備 老朽 및 熱管理 技術 落後로 인한 電力需要 및 電力損失 急增

※ '89年 以後 工場 稼動率 45% 水準으로 低下

〈石 油〉

○ '90年 現在 北韓 精油施設 能力은 年間 350萬톤이나, 原油 導入量은 252萬톤으로 評價

— 蘇聯 44萬톤, 中國 110萬톤, 이란 98萬톤

○ '91年 以後 原油導入 與件 더욱 惡化

※ 北韓의 石油需要는 年間 500萬톤 水準으로 精油施設 및 原油供給 不足 極甚(蘇聯 北韓經濟專門家 見解)

〈食糧〉

- '90年度 北韓의 穀物 總生産量은 41.2萬톤으로 評價
 - 쌀 193萬톤, 옥수수 238萬톤, 其他 50萬톤
- '90糧穀 會計年度中 北韓의 穀物 總消費量은 약 641萬톤, 식량배급을 기준량대로 지급하는 경우 食糧 不足量은 160萬톤 推定
- '91年度 農業生産은 冷害 및 風水害로 前年度 實績보다 減收 推定, 금년 봄부터 食糧事情 극도로 惡化 豫想

4. 綜合判斷 및 展望

〈에너지 및 食糧不足의 要因〉

- 北韓經濟 沈滯의 本質的 要因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非效率性과 閉鎖的 自力更生路線에 立脚한 經濟政策의 硬直性 및 軍事費 支出의 過重에 起因
- '89年 『平祝』開催 準備로 인한 非生産的 投資支出 增大로 炭鑛開發 및 老朽 發電設備 對替 不振, 輸送隘路 및 外貨不足에 의한 原油輸入 不圓滑이 에너지 부족 加速化
- 與件을 무시한 山地 開發(다락밭 造成)事業 推進에 따른 水害 頻發과 農耕地의 荒廢化, 灌溉水路 建設을 비롯한 各種 勞力動員으로 인한 農民 生産意慾 沈滯 등이 食糧生

産 不振을 招來

〈展 望〉

- 今年부터 北韓의 石油 및 食糧事情은 日甚으로 惡化되어 戰爭 備蓄米 및 貯藏 油類 一部 放出 不可避 展望
- 外交的으로는 中國의 支援 獲得 및 日本과의 修交를 통한 經濟協力 追求에 全力을 傾注 豫想
- 中國 및 日本으로부터의 經濟協力 獲得이 여의치 못할 경우 北韓은 보다 積極的인 對外開放 및 對南政策 轉換을 통해 危機 克服 試圖 展望

〈亞細亞安保協力機構〉創設案에 대한 北韓反應

- 北韓은 1.13 外交部代辯人 談話를 통해 最近 部分的으로 論議되었던 亞細亞 安保協力機構 創設案을 反對한다고 밝혔다.

〈談話 要旨〉

- 亞細亞인들이 團結協調하면 亞細亞에 대한 列強들의 霸權政策을 終結시키고 亞細亞의 安全과 繁榮을 이룩할 수 있음.
- 歐羅巴 安全 및 協調會議의 본을 딴 機構를 亞細亞에 그대로 適用하려는 것은 亞細亞의 實情에 맞지 않는다고 봄.
- 亞細亞의 平和와 安全을 保障하려면 이 地域에 많은 軍事力을 가지고 있는 蘇聯과 美國이 軍縮過程을 먼저 시작해야 함. 亞細亞나라들과 締結한 雙務的 軍事條約들이 廢棄되어야 하며 이 地域으로부터 모든 外國軍隊와 軍事基地들이 撤收되어야 함,
- 美國은 亞細亞의 非核國家들에 展開한 核武器들을 거두고 하루빨리 우리와 平和協定을 締結하며, 南朝鮮에서 자기의 軍隊와 核武器를 撤收하고 우리에게 대한 核威脅을 除去하여야 할 것임.

○ 그런데 亞細亞安保協力機構 問題에 대한 各국의 論議는 다음과 같음.

— 1988. 9.16 고르바초프 蘇聯 大統領의 그라스노야르스크演說

※ “亞細亞·太平洋地域協力體制” 設置 提議

— 1988.10.18 盧泰愚大統領의 UN演說

※ “東北亞平和協議會議” 構成 提議

— 1990. 9. 4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의 「亞太地域 對話·平和·協力會議」 演說(블라디보스톡)

※ 유럽安保會議體와 유사한 “地域安保會議體”構成을 위해 '93年 亞太地域 頂上會談 提議

○ 今番에 北韓이 「同機構」에 관한 關係國의 具體的 協議가 進行되지 않는 狀況에서 이같은 談話를 發表한 背景은

— 基本的으로 最近 內外情勢의 變化로 東歐 및 非同盟에서의 對北韓 支持雰圍氣가 급격히 微微해진 가운데

— “亞細亞人의 亞細亞 建設”을 내세움으로써 亞細亞 中心의 對外關係 領域을 構築하려는 意圖이며,

— 아울러 數日前의 韓·日頂上會談(1.9~10)에서 “韓·日 友好協力 3原則”에 合意, 韓·日兩國이 亞·太地域의 平和와 和解에 主導的 役割을 다짐한데 대한 牽制意思의 表現으로 分析되고

— 또한 「브레즈네프」以後 東北亞安保體制 構想을 持續적으로

表明해 온 蘇聯의 極東政策을 露骨的으로 批判한 것이며,

- 동시에 亞細亞地域에서의 美·蘇의 軍縮과 核武器 撤去를 強調함으로써 駐韓美軍撤收 論理와 連結시키는 한편,
- 駐韓美軍 및 核武器問題를 集中學論함으로써 1月末 開催 豫定인 第1次 日·北韓修交 本會談에서 日本이 北韓의 核査 察協定調印 問題를 강력히 들고 나올 것에 대한 事前 對 備策으로 評價됨.

○ 특히 亞細亞地域 安保機構 問題가 유럽安保會議體와 相異한 安保環境에 놓여 있음을 強調한 것은

- 世界的인 軍縮·平和 무드와 더불어 提起되고 있는 유럽方式의 韓半島 適用을 拒否, 그들 主張의 南北不可侵, 對美 平和協定 등 北韓 中心의 東北亞平和體制 構築 宣傳意圖를 나타낸 것으로 分析됨.

○ 결국 北韓의 今番 態度表明은

- 날로 萎縮되고 있는 그들의 國際的 位相으로부터 벗어나 東北亞秩序 再編過程에 나름대로의 立地를 構築하려는 움직임의 一還으로 보임.

1. 公開 經緯

- 北韓, 人口 등 各種 公式統計을 1964年 以後부터 지금까지 非公開
- 北韓, 1992년에 現代的 統計調查技法에 의한 人口센서스 實施 計劃
- 1989년 유엔人口基金(UNPF)으로부터의 關聯技術 및 財政資金 受援에 대해 北韓은 義務事項의 하나로 人口關聯 社會指標 提供
- 1990년 5월 北韓 國際問題研究所의 招請으로 美 調査團 平壤訪問, 9日間 北韓人口에 대한 調査·研究活動 展開
 - 『스티브 린튼』 博士(콜럼비아大) 夫婦, 『니콜라스 에버시타트』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 1991년 北韓의 承諾下에 美國 商務部 報告書를 처음으로 對外 公開

2. 美 商務部 報告書 要旨

〈總 評〉

- 北韓은 統計分野 專門人力, 技術, 設備不足 등으로 統計作成技法이 開發國 水準
- 北韓이 提供한 資料는 統計的 矛盾들이 일부 發見되나 一般的으로는 統計的 信賴性 保有
- 유엔 및 美 商務部 統計局 등 既存 西方側의 北韓人口 推定値는 過小 또는 過大 評價된 것으로 診斷
 - 60년대 人口는 최소한 50萬名 적게 推定, 70년대 以後는 100萬名 以上 過大 評價

(主要 人口·社會指標)

- 最近의 人口增加率은 60년대에 出産한 子女들의 結婚 適齡 期 到達로 1985년의 1.7%에서 1990년은 1.9%로 增加
 - 勞力不足 解消 爲해 北韓은 60년대에 『베이비 붐』 造成
 - 北韓의 兵力數를 1,249千名(1987년 現在) 推定
 - 北韓側은 1986년의 平均壽命을 74.3歲로 主張한데 비해 調査團은 69.0歲로 推定
 - 職業別 人口構成은 工場·企業所 勤務者가 57.0%를 차지하고 있으며 農場員은 25.3% 占有
- ※ 보다 具體的 內容은 (別添 1) 『北韓의 主要 人口·社會 指標』 參照

3. 分析·評價

- 北韓側이 從來와는 달리 人口 및 關聯 社會指標을 對外에 公開하는 態度 變化 注目
- 이번 報告書의 人口 推定統計는 北韓側 提供資料를 基礎로 再檢討·推定된 만큼, 既存 西方側 北韓人口 推定統計中 가장 높은 信賴度 保有
- 政府의 北韓 總人口 推定値와 이번 美 商務部 推定値와의 差異는 8萬~39萬名으로 僅少(別添 2)
 - 既存 西方側 推定値와의 差異: 50萬~130萬名 以上
- 北韓의 兵力數 125萬名은 流動人口 등 其他 要素를 考慮하지 않아 過大 評價된 것으로 判斷
 - IISS(英國 戰略問題研究所): 83.8萬名
- 北韓의 人口分布 및 職業別 人口構成은 비교적 衡平關係 維持
 - 兩江道·茲江道 地域 가장 적세 居住
 - 流通서비스分野 落後 示唆
- 이번 資料는 北韓의 政治·經濟·社會文化 構造 및 實態를 直接·間接으로 反映하고 있어 原資料 入手時 北韓實態 把握 또는 確認을 위한 各 分野別 深層 分析 必要

北韓의 人口 및 社會指標

區 分	內 容
人口增加率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發表：3.8%(1970)→2.1%(1975) →1.7%(1980)→1.8%(1986) • 推定結果：3.6%(1970)→1.9%(1975) →1.8%(1980)→1.8%(1988) →1.9%(1990)
兵力數(千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推定結果：714(1975)→909(1980) →1,040(1982)→1,130(1985) →1,202(1986)→1,249(1987) ※ IISS 推定值：784(1985)→838(1987)
人 口 分 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安南道 2,653千名으로 最多 慈江道 1,156千名으로 最小, • 人口密度는 平壤이 1,178名으로 最高, 兩江道 44名으로 最低
都市化 趨勢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은 民間人 總數의 60%가 都市地 域에 居住하고 있다고 主張 ※ 都市：5萬名 以上 居住地域
流動人口 (千名) (里間 移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0(1980)→927(1982)→882(1985) →997(1986)→1,134(1987) ※ 韓國의 流動人口 1987년 現在 9,309千名으로서 약 10倍 큼.

區 分	內 容
總家口數 및 平均 家族數 (軍人 除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54千 家口(1987) • 5.1名(1980)→4.81名(1987) • 韓國 5.1名(1975) →4.6名(1980) →4.2名(1987)
粗出生率(名)	44.7名(1970)→21.8名(1980)→22.9名(1986)
粗死亡率(名)	20.9名(1955)→4.3名(1982) →5.0名(1986) → 5.6名(1990년 推定值)
總出產率(名)	6.6名(1970)→3.6名(1975) →2.5名(1987)
結婚 및 離婚 (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結婚 : 10萬(1980) →18.8萬(1987) • 離婚 : 4,359(1980) →4,231(1987)
職業別 人口構成 (1987年)	<p>國營 工場·企業所 勤務者 57.0%</p> <p>非生產職 事務員 16.8%, 農場員 25.3%,</p> <p>協同團體 勤務者 0.1%</p>
學生 數 (1987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人民學校(6~9歲) 1,492千名 • 高等中學校(10~15歲) : 2,655千名 • 專門學校 220千名 • 大學校 301千名

* ()안은 年度表示임.

北韓 總人口 推定 比較表

(單位： 千名)

年度	北韓 發表值	商務部推定值(A)	政府 推定值(B)	(A) - (B)
1949	9,622	—	9,622	—
1953	8,491	—	8,491	—
1960	10,789	10,568	10,789	-221
1965	12,408	12,172	12,252	-80
1970	14,619	14,388	14,002	+386
1975	15,986	16,480	16,172	+308
1980	17,298	17,999	18,170	-171
1985	18,792	19,602	19,995	-393
1987	19,346	20,292	20,685	-393
1990	—	21,412	21,720	-308

註：1975年 以後의 北韓 發表値는 人民軍 및 流動人口 除外

〈主體의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 (2.7 中放論說)

1. 內容 要旨

- 黨 血統의 純潔性은 鬭爭을 통해서만 保障 可能
 - 黨의 血統은 온갖 異色的이며, 反革命的인 要素들과의 鬭爭속에서 그 純潔性이 保障됨.
- 黨의 業績은 血統의 純潔性 保存 鬭爭의 業績
 - 우리黨은 金日成의 革命的 財富와는 因緣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 血統의 純潔性을 흐리게 하려는 反黨·異色分子들과의 非妥協的인 鬭爭을 벌리는 한편
 - 그들이 뿌려 놓은 思想餘毒을 뿌리빼기 위한 鬭爭을 全黨的 事業으로 이끌어 옴.
- 反黨·反革命 宗派分子들의 策動에 대한 適期 粉碎로 純潔性 保障
 - 黨안에 숨어 있던 反黨·反革命 宗派分子들과 反黨 追從分子들의 策動을 暴露·粉碎함으로써 온갖 異色的 思想潮流들을 克服·清算했으며 主體 血統의 純潔性을 保障했음.

2. 分析 및 評價

- 2. 8日字 國內新聞들이 報道한 『北韓의 世襲反對勢力 摘發·粉碎』 記事는
 - － 日本共同通信이 ‘主體의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 題下の 91. 2. 7日字 北韓 中央放送 論說 內容을 報道(2. 7)한 것을 再引用한 것임.
- 今番 北韓 中央放送的 論說 內容을 살펴 보면,
 - － 內容構成이나 語彙의 強度面에서 黨創建 45돌(90. 10.10)에 즈음해서 發表한 金正日의 記名論文 “朝鮮勞動黨은 우리 人民의 모든 勝利의 組織者이며 嚮導者이다.” (『근로자』, 90年 10月號) 題下の 黨의 唯一思想體系 強調 部分과 同一 水準을 나타내고 있는바
 - － 今番 論說에서 특히 ‘黨의 純潔性’을 強調하고 있는 것은 同 論說이 金正日의 生日(2. 16)에 즈음한 紀念論說 性格의 것으로, 金日成·金正日 後繼體制 當爲性 強調로 分析됨.
 - － 또한 ‘主體 血統을 繼承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滅의 業績’에서의 『業績』이란 말이 意味하는 바와 같이 ‘反黨 異色分子들과의 鬭爭’이란 現時期 反黨·反革命分子들과의 鬭爭이 아닌 지난 時期의 肅清事件(58年 8月 宗派事件 등)들을 指稱한 것으로 判斷됨.
- 한편 現在 北韓이 처한 對內外 狀況 등을 감안할 때 父子

世襲體制 強化側面에서 技術官僚 中心의 改革·開放 要求 움직임에 대한 강한 警告의 意味도 없지 않음 것으로 分析 됨.

※ 프랑스 駐在 北韓 代表部 2等 書記官 이득선, 日本 共同通信 報道內容 否認(3. 7, AFP)

〈別添〉

1. 國內外 專門家들의 見解

○ 오코노기 마사오(日本 게이오大 教授)

- 北韓 中央放送에서 言及한 『反黨分子』는 ①金正日 不滿勢力 (忠誠도를 疑心받는 勢力) ②蘇聯·東歐變化에 動搖된 勢力 ③對蘇關係 強化에 反對하는 蘇聯 同調勢力 등으로 보여 짐.

○ 金南植(平和統一研究院 研究委員)

- 北韓 中央放送 報道는 主體의 血統繼承 問題를 다룬 것인 바, 이 問題를 說明하는 過程에서 50~60年代의 宗派分子, 修正主義分子 문제를 解決했음을 言及한 것임. 따라서 金正日 體制下的 團結 및 既存路線 堅持를 強調한 것으로 보임.

○ 康仁德(極東問題研究所長)

- 現在 反黨·反革命 그룹이 있어서 이들과 鬪爭을 벌였다고 는 생각하지 않으나, 世襲體制 強化側面에서 改革主義와 不平·不滿 階層에 대한 警告性的 意味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임.

2. 北韓의 關聯 報道內容 比較

<p>『主體의 血統을 繼承 發展시켜 나가는 우리 黨의 不減의 業績』 (中放 91. 2. 7)</p>	<p>『朝鮮 勞動黨은 모든 勝利의 組織者이며, 嚮導者이다.』 (근로자 90. 10)</p>	<p>『우리나라 社會主義 制度는 人民大衆에게 참된 삶을 마련해 주는 優越한 制度』 (中放 90. 10.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의 血統은 온갖 異色的이며, 反革命的 要素들과의 鬭爭속에서 純潔性이 保障됨. ○ 우리 黨은 血統의 純潔性을 흐리게 하는 反黨 革命分子들과의 견결하고 도 非妥協的인 鬭爭을 벌이는 한편, 그들이 뿌려놓은 思想餘毒을 뿌리빼기 위한 鬭爭을 全黨的 事業으로 이끌어 왔음. ○ 우리 黨은 反黨·反革命的 宗派分子들의 策動을 제때에 暴露·粉碎함으로써 온갖 異色的 思想潮流들을 克服·清算했으며, 主體血統의 純潔性을 철저히 保障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黨을 階級的으로 꾸리는 데서 중요한 것은 革命 鬭爭과 勞動過程에서 幹部隊列에 異色分子, 우연분자들이 기여하는 것을 警戒하는 것임. ○ 우리 黨은 全黨에 唯一思想體系를 세우기 위한 鬭爭으로 歷史的으로 내려오던 宗派汚物들과 새로 나타난 反黨 修正主義分子들을 清算하고 黨의 統一을 確固히 實現하였음. ○ 黨의 唯一思想 敎養을 繼續 強化하여 黨의 統一團結을 좀먹는 자그마한 現象과도 非妥協的으로 鬭爭하도록 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不純分者들과 敵對分子들을 反對하는 치열한 階級鬭爭은 온갖 階級的 怨讐들의 策動으로부터 人民들의 自主的 權利와 利益을 견결히 옹호하는 것임.

農業科學院 傘下 科學·技術 情報센터 設立 推進

1. 概要

'91. 1. 18 유네스코事務局이 駐유네스코 北韓代表部 大使에게 보낸 UNDP PFF (Project Formulation Framework: 基本事業計劃)에 따르면, 北韓은 UNDP 資金 및 技術支援을 받아 1992~1996年度間 5個年計劃으로 北韓 農業科學院 傘下에 科學·技術 情報센터 (STIC: A Scientific Technical Information Centre)를 設立하기로 하였음.

2. STIC의 設立目標

가. 基本目標

- 資料 및 文書處理 方法의 現代化
- STIC內에 電算化된 效率的 情報貯藏 및 引出體系 樹立
- 資料 傳達채널의 設置를 통하여 接近이 許容되는 外部情報 센터와의 情報 連絡網 構築

나. 巨視的 目標

- 資料供與 對象國家의 開發計劃 全般을 포괄할 수 있는 國家 情報體系의 樹立

다. 微視的 目標

- 農業分野와 같은 特定分野에 STIC를 設立함으로써 國家政 策決定者와 計劃立案者들에게 最新의 農業 및 農業關聯 情 報提供

3. STIC의 構造 및 機能

가. STIC의 構造

- 人的 構造 : 專門家 60名
總員 90名
一般支援要員 30名
- 機能的 構造 : 總 8個 分野
農業情報分析 分野
家畜情報分析 分野
基礎情報分析 分野
情報研究 分野
資料貯藏 分野
資料管理 分野
編輯 分野
印刷 分野

나. STIC의 課別 機能

- 文書分析課：農業情報, 家畜情報, 論理的·基礎的 情報의 取扱, 情報의 電算化 人力 및 國家 情報基盤 (National database)의 構築
- 質疑應答課：情報使用者와의 接觸, 使用者 프로필 및 情報 產出
- 資料處理課：STIC의 文書分析課에 의하여 創出된 資料 및 海外에서 얻어진 資料들의 STIC컴퓨터 시스템에의 貯藏 및 中央科學技術 情報機關(CSTII)을 통한 外國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의 接近
- 編輯, 印刷, 마이크로복사課：資料 및 情報의 編輯, 印刷, 複寫
- ※ 終局的으로 이번 北韓 農業科學院 內에 設立될 STIC는, 中央 科學技術 情報機關(CSTII)이 管理·調整하게 될 『國家 科學·技術 情報網』 傘下에서 農業情報分野의 한 노드 (Node:情報網에 있어서 特定連結部分)로서의 機能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4. STIC의 設立戰略

- 期 間 第5次 UNDP事業計劃年間(1992-1996)
- 執行機關 北韓 農業科學院

- 事業提案機關: UNESCO
- 資金支援機關: UNDP
- 事業戰略段階
 - STIC와 CSTII 合同으로 文書處理分野에서의 國際標準의 採擇에 대한 분석 檢討
 - 필요한 專門人力과, 整備問題를 포함한 國內 데이터베이스 處理構造의 選擇과 樹立
 - STIC에 隔地間 情報交換 能力을 確保
 - 『國家 科學技術 情報網』 建設을 위한 計劃 樹立

5. 設立資金

- STIC設立에 所要되는 資金은 北韓과 UNDP가 共同으로 負擔(아래 표 참조)

費用項目 負擔者	北 韓	UNDP
인 적 비 용	420,000 원	US \$ 148,000
훈 련 비 용		149,000
시 설 비 용	3,600,000 원	312,000
기 타	250,000 원	31,000
總 계	4,270,000 원	US \$ 640,000

6. 分析·評價

- UNDP의 PFF(基本事業計劃)에 따르면 北韓은 農業 및 여타 産業分野에 관한 어떠한 體系的인 情報도 갖고 있지 못하며, 이러한 體系的인 情報의 不在로 該간의 各種 開發 計劃 수행에 많은 阻障을 受아 有.
- 현재 北韓의 科學技術情報센터는 現代的인 情報센터가 必須的으로 갖추어야 하는 基本的인 裝備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文書情報處理에 아직까지도 手作業 方法을 使用하고 있는 事實임.
- 最近 北韓이 UNDP의 資金 支援을 受아 UNESCO와 合作으로 農業科學院 傘下에 STIC 設立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낙후된 科學技術 情報體系를 現代化하기 위한 努力의 일환으로 評價됨.
- 科學技術 情報體系의 現代化는 必然的으로 國際的인 情報網을 통한 情報交流를 수반하게 됨에 比추어, 향후 北韓情報體系의 現代化에 따라 北韓 科學·技術情報의 對外 開放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임.

金正日 49回 生日行事

1. 金正日 生日行事 動向

- 北韓은 金正日 生日(2.16)을 맞이하여 1月末부터 中央 및 地方別로 각종 紀念行事を 進행하는 한편, 모든 言論媒體를 動員, 金正日 後繼體制 強化를 위한 思想學習 및 宣傳活動을 大대적으로 벌이었음.

〈主要 動向〉

□ 對內 紀念行事 □

- 正日峰 눈길행군(1.28)
- 白頭山賞 體育競技大會(2.5-)
- 全國勤勞者 話術競演大會(2.10)
- 第1次 朝鮮映畫祝典(2.13)
- 三太子(세쌍둥이) 膳物 전달모임(2.14)
- 제1次 『2.16藝術賞』 個人競演 審査發表(2.15)
- 朝鮮少年團 全國聯合團體大會(2.16)
- 第7次 全國青少年 『忠誠의 祝典』(2.16~4.15)

□ 褒賞 實施 □

- 『國家學位學職』 授與(2.12, 教員·研究士 等 265名)
- 『2重 3大革命붉은旗』·『3大革命붉은旗』授與(2.13, 49個 團體)

- 「2重 榮譽붉은旗」·「榮譽붉은旗」授與(2.13, 6個 學校)
- 기타 「功勳體育人」·「功勳教員」·「功勳裁斷師」·「人民俳優」稱號 및 각종 「勳章」·「表彰狀」授與

盟誓文 傳達

- 朝鮮人民軍 第525部隊 「忠誠의 盟誓文」(2.15)

偶像化 宣傳

- 白頭 密營 「고향집」 稀貴鳥 到來, 「萬壽無疆樹」·「金正日花」 宣傳

紀念圖書 出版

- 朝鮮勞動黨出版社·文藝出版社, 詩集 「嚮導의 햇발을 우리」등 6種 出版

思想教養學習

- 北韓 全域에서 「金正日勞作研究學習」, 「德性實技研究 發表모임」, 「忠誠의 노래모임」등 進行(1.30—)

言論動向

- 金正日花, 白頭山密營 紹介 등 金正日 讚揚 宣傳 報道 20回(2.1~18)
- “金正日 同志는 主體革命偉業의 위대한 繼承者이다” 등 後繼世襲 正當性 강조 論說·論調 27回(2.7-17)

海外 親北團體 動向

- 祝典·祝賀文：주로 中南美·아프리카地域 등 20個國 首班 및 各계 人士(2.4~16)
- 慶祝集會·宴會：쿠바·朝總聯 등 9個 團體(2.1~15)

- 金正日文獻 研究討論會：이집트·가나 등 8個 團體(1.27~2.8)
- 圖書 및 寫眞展示會：모잠비크·프랑스 등 10個團體(2.1~13)
- 映畫鑑想會：부룬디·잠비아 등 13個 團體(2.1~13)
- 金正日文獻 掲載：이탈리아·카메룬 등 8個 言論社(1.26~2.13)
- 기타 『2月の 名節 노래競演』 (2.9, 콩고), 『2月16日賞 마라톤 競技大會』 (2.17, 콩고) 등 進行

2. 金正日 象徵造作 實態

가. 生日을 『民族的 名節』로 부각

- 金正日生日行事는 1975년, 『휴무일』指定 ⇒ 1982年, (40回生日) 『2月の 名節』 規定 ⇒ 1986年, 2日間 休務實施(92.16~17)등으로 擴大 實施되어 오면서 金日成 生日(4.15)과 함께 『民族 最大の 名節』로 부각
- ※ 6次 黨大會(80.10.10)에서 金正일이 後繼者로 公式登場한 이후 全國的 대규모 行事로 進行

나. 퍼스널리티 造作

- 出生地：抗日革命活動의 根據地 白頭山 『密營』이라고 주장하나 蘇聯의 『사마르칸트』가 有力
- ※ 金正일의 蘇聯 乳兒名은 『슈라』

○ 出生日 : 본래 1941年生이나 金日成의 出生年度(1912)와
끝자리를 맞추기 위해서 1942年生으로 任意
造作說 有力

※ 來年(1992)은 金日成 80回, 金正日50回 生日

○ 漢字이름 : 金正日의 漢字이름은 『金正一』이었으나 1980年
6次 黨大會 이후 『金正日』로 改名

※ 金日成의 『日』자와 『金正淑』의 『正』자를 結合, 後繼世襲의 正
統性 根據로 利用

다. 呼稱 量產

○ 金正日에 대한 呼稱 및 讚揚 修飾語는 현재 30餘個로서
6次 黨大會(1980.10)이전에는 『黨中央』·『유일한 指導者』로,
6次 黨大會 이후에는 『領導者』·『首領』·『人民의 어버
이』·『世界的인 指導者』로 呼稱

※ 특히 1985年 43回 生日以後 親北 外國人士들은 『祝電』
을 통해 金正日을 『閣下』로 呼稱

라. 革命史蹟地 造成

○ 『主體血統繼承論』에 입각한 金正日의 指導者 資質을 可視的
으로 보여주기 위해 1982年 『어은 革命史蹟地』를 始作으
로 金正日의 出生地·戰爭避難處·大學時節 野營地 등에 현재
까지 12個의 金正日 革命史蹟地를 造成

※ 平壤(어은·천동·이현·장산), 慈江道(덕골·장자산·성간), 咸南

(검덕·낙원), 咸北(선봉·경성), 兩江道(백두산 발영)

가. 口號文獻 宣傳

○ 口號文獻은 抗日武裝鬭爭時期 나무·바위 등에 새겨 놓었다고 하는 金父子 및 金正淑 讚揚文句로서, 1987年 5月부터 현재까지 11,000餘點이 發掘되었다고 선전

※ 金正日 關聯 口號文獻: 『抗日獨立 2世大統領』·『金日成 將軍의 繼承人』·『2千萬의 아들』·『白頭山에 솟아난 白頭太陽星, 2千萬이여 萬邦에 자랑하라』

나. 金正日花 普及

○ 『金正日花』는 1988年 2月 金正日 生日 46회를 紀念하여 日本의 園藝業者가 寄贈한 베고니아科 多年生花草로 『金日成花』와 함께 北韓 全域에 대대적으로 普及

分析·評價

○ 北韓은 例年과 마찬가지로 金正日 生日을 『民族 最大의 名節』이라고 宣傳하면서 全國的인 규모의 대대적인 慶祝行事를 進行하고 있는 바, 主要 動向은

— 『正日峰 눈길行軍』·『忠誠의 祝電』 등 紀念行事와 함께 각종 勳章·金正日『贈物』등을 통해 住民들의 金正日에 대

한 忠誠心을 鼓吹시키는 한편,

- 金正日 『生家』일대의 稀貴鳥 到來, 『萬壽無疆樹』·『金正日花』 宣傳 등 偶像化 策動을 더욱 強化하고 있는 가운데,
- 모든 言論媒體를 動員, 金正日의 領導力 讚揚과 指導者 像 부각에 注力하고 있음.
- 특히 『朝鮮映畫祝典』·『2.16藝術賞』을 새로 制定, 內部行事 規模擴大와 함께,
- 異例적으로 軍部隊의 金正日에 대한 『忠誠의 盟誓文』을 傳達, 內部體制 結束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特徵的임.

○ 한편 北韓은 지난 2.7 中央放送 論說을 통해 『反黨革命分子』의 策動을 粉碎하였다고 報道하는 등 金正日 生日을 앞두고 『反黨分子 策動』에 대해 수차례 反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金正日 後繼體制가 순탄치만은 않음을 間接적으로 示唆하고 있어 注目됨.

※ 『中央放送』論說(2.7) : “우리 黨은 反黨 革命分子들의 策動을 粉碎함으로써 異色的 思想潮流를 淸산하고 主體血統의 純潔性を 보장했음.”

※ 『勞動新聞』論說(2.8) : “오늘 帝國主義者들과 그 앞잡이들이 反社會主義 策動을 악랄하게 감행하여도 우리 人民은 社會主義 偉業을 확고히 固守해 나가고 있음.”

※ 朝鮮人民軍 第525部隊 盟誓文(2.15) : “우리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一片丹心 親愛하는 指導者 同志만을 믿

고 指導者 同志의 領導 따라 人民軍隊의 作戰준비를 우
리式대로 完成해 나가겠음.

○ 이와 같은 金正日 生日을 前後한 內外動向과 최근 北韓의
諸般 狀況을 고려해 볼 때 金正日 後繼體제의 常固性을
상당한 脆弱點을 露냄사키고 있는 바.

— 內部的으로 生日行事 상화와 함께 思想學習에 주력하고
있으나, 父子世襲의 理論的 矛盾, 극심한 食糧難, 自由思
潮 流入, 基本的人權制限 등으로 인해 住民들의 不滿
이 累積되어가고 있고,

— 外部的으로 蘇聯 및 東歐의 改革·開放으로 인한 國際共
産主義 連帶體제의 붕괴, 閉鎖體制 및 父子世襲에 대한
國際的 否定 視角 등으로 매우 난처한 立場에 처해있
는 실정임.

○ 따라서 金正日 權力移讓 時期는,

— 現在와 같은 北韓 內·外部的 難題 解決幾微가 不透明하
는 한 主席職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問題點을 內包
하고 있으나,

— 金日成 80回生日·金正日 50回生日이 되는 來年, 第7次
黨大會가 開催될 경우 公式的 權力移讓의 向背가 確實
해질 可能性도 있음.

金正日 主要 經歷

- 1941. 2.16 蘇聯 사마르칸트 出生
- 1948. 9. 平壤 南山學校 入學
- 1952. 11.22 萬景臺 革命者遺子女學園 人民班 4學年 編入
- 韓國戰爭時 삼석人民學校 在學
- 1954. 2. 1 平壤 第4人民學校 5學年 編入 (現 서문人民學校)
- 1954. 9. 平壤 第1初級中學校 入學
- 1957. 9. 南山高級中學校 入學 (現 南山高等中學校)
- 1960. 7.15 南山高級中學校 卒業
- ※ 1959 東獨 航空軍官學校 留學說
(北韓은 1959. 1.25, 金正日이 어느 社會主義나라 綜合大學을 見學, 그 學校에서 留學을 勸諭했으나 拒絕했다고 主張)
- 1960. 9. 金日成綜合大學 經濟學部 政治經濟學科 入學
- 1964. 3 金日成綜合大學 經濟學部 政治經濟學科 卒業
- ※ 卒業論文 『社會主義 建設에서 郡의 位置와 役割』
- 1964. 勞動黨 組織指導部 指導員

- 1965. 4. 金日成과 함께 인도네시아 訪問
- 1973. 9. 勞動黨 中央委 秘書 (組織·宣傳煽動), 3大革命
小組運動 總責任者 (現)
※ 後繼者 決定 (非公開會議)
- 1980. 10. 勞動黨 中央委 委員·政治局 委員·政治局 常
務委員·軍事委 委員·祕書局 祕書
※ 後繼者 公式 浮上
- 1982. 2. 『共和國 英雄』 稱號 授與
最高人民會議 第7期 代議員
- 1983. 6. 中國 訪問
- 1986. 11. 最高人民會議 第8期 代議員
- 1988. 4. 『金正日花』 溫室 開館
※ 88.2, 日本에서 改良
- 1990. 4. 最高人民會議 第9期 代議員
- 1990. 5.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
※ 최초의 政府機關 補職
- 1991. 2. 勞動黨 中央委 委員·政治局 委員·政治局 常
務委員·軍事委 委員·祕書局 祕書(黨 事業全
般), 中央人民委員會 國防委員會 第1副委員長,
最高人民會議 第9期 代議員
※ 黨序列 第2位

祖平統, <南北對話에 관한 立場> 發表

- 『祖平統』副委員長 安炳洙는 4.10 記者會見을 통하여 南北對話에 관한 北側 立場을 밝혔다.

〈會見 要旨〉

- 北側의 統一基本姿勢 強調(金日成 新年辭에서 提示된 內容)
 - 聯邦制統一方案에 대한 伸縮性 있는 案을 提示했음.
 - 北과 南의 當局을 包含, 政黨·社會團體 代表를 網羅한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을 提議했음.
 - 北과 南의 政治人들이 形式과 方法에 拘碍됨이 없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統一對話의 門을 열어 놓았음.
- 對話와 統一問題 解決에 否定的 作用을 하는 主要要因 指摘
 - 今年 2月下旬부터 시작된 T/S合同軍事演習
 - 南朝鮮 當局者들의 UN單獨加入策動
 - 南朝鮮에서 敢行되고 있는 南側의 統一愛國勢力에 대한 彈壓 等임
- 南側 當局의 對話와 統一에 대한 立場 評價
 - 對話를 통해서 實質的인 問題를 解決할 意思가 없

고, 南北對決과 分裂을 追求하는 變함없는 姿勢

- 當面한 內部體制를 強化하는데 主된 關心이 있지, 南北對話에는 關心이 없음
- 南朝鮮 當局者들이 民間對話·政治人들의 對話를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음

○ 南北對話에 대한 北側 立場 闡明

- 南北사이의 對話는 當局間의 對話와 民間級의 統一對話가 竝進되어야 함
 - 北側은 非政治的인 協力交流는 政治分野에서의 協力交流가 實現되는데 相應하여 推進시켜 나갈 것임
- 統一方案에 대한 全民族的 合意를 이룩하기 위해서 北과 南의 當局과 政黨·團體들이 參加하는 民族統一 協商會議가 召集되어야 함
- 當面한 高位級會談에서의 再開를 위해서는 南側의 反對·反統一的인 立場의 變化가 있어야 함
 - 그러한 態度變化의 表示로서 不可侵宣言 採擇, UN 加入問題, 統一活動家 釋放, 民間級對話, 國家保安法 撤廢, 汎民聯結成 許容등에 肯定的 措置가 취해져야 함
- 北側의 對話 相對方으로서의 南韓當局의 信賴性에 대해서 疑懼心을 갖지 않을 수 없음
 - 南朝鮮에서 政治에 대한 人民들의 不信, 특히 當局과 當局者에 대한 不信은 極限點에 이르고 있음

南側 當局者들은 團合과 統一에 寄與할 轉換的인 措置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함

- 全體的으로 이번 『立場』發表는
 - 우리側의 高位級會談 再開 促求(4. 8)에 대한 反應과 아울러 北韓側의 統一對話에 대한 基本立場을 整理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우리 政府當局에 대한 『對話의 相對方으로서의 信賴性』問題를 提起하는 妄言을 서슴치 않음으로써
 - 당분간 南北對話의 進展에 관심이 없음을 示唆하고 있고,
 - 當面한 南北高位級會談 再開問題도 我側이 受容키 어려운 前提條件(保安法撤廢, 汎民聯 許容, 訪北人士 釋放, UN問題 保留 등)을 提示함으로써 不可侵問題, 유엔問題, T/S問題등에 관련하여 讓步를 하지 않는 한 再開에 呼應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表示하였음.
- 그러나 會見者(安炳洙)의 格이 낮고, 對內用으로서의 意味도 크며 우리側이 다소의 態度變化를 呼訴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 『對話拒否 宣言』이라기 보다는 當分간의 暫定的인 立場 表明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金日成 新年辭에서 提示된 北側의 統一基本姿勢 세가지를 再強調하고 있는 點은

- 昨年 聯邦制統一方案에 대한 새로운 修正案의 發表說이 나도는 가운데, 修正案이 나오더라도 既存聯邦制의 骨格과 北韓의 既存統一對話戰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展望을 가능케 하고 있음.
- 또한 우리側の 對話와 統一에 대한 姿勢를 牽強附會式으로 列擧하여 罵倒하고 있는 것은
 - 北韓體制內部가 直面하고 있는 問題點들을 隱蔽시키고 對話不振의 責任을 우리側に 轉嫁하려는 術策으로 分析됨.
- 北韓은 南北對話에 대한 그들의 立場을 다섯가지로 提示하고 있는데
 - 그 表面的 意味를 풀어보면 『對話 및 接觸 窓口 多元化 推進』등으로 集約할 수 있겠음.
- 結論적으로 北韓은
 - 急變하는 對內外 政勢變化에 適應하는 政策調整을 아직 準備하지 못한 狀況에서 일단 統一 및 南北對話에 대한 暫定的인 立場을 闡明한 것으로 보이며,
 - 對內 諸般 矛盾과 UN問題등 어려운 懸案을 안고, 現時期에서 南北韓 關係를 發展시키는 것보다는 움츠린 方向으로의 一步後退를 選擇했다고 볼 수 있음.
(UN問題에 대한 反撥心도 作用)
- 즉 現時期에서의 北韓의 南北對話에 대한 立場은
 - 南北當局間 對話忌避 示唆(韓國政府의 國民支持度를 口實

삼음), 許容키 어려운 前提條件 提示 등 高位級會談 再開에도 소극적이고,

- 다만 非政治的 分野에서의 交流·協力은 推進할 수도 있다는 意向을 表示(스포츠, 經濟交流, 政治人 交流등을 意識한 듯하나, 政治的 分野의 協力·交流와 相應하게 推進시킨다고 하는 附帶條件을 붙이고 있음), 民間級 對話 및 政黨·團體들 사이의 交流 및 이들이 參加하는 民族 統一協商會議등 窓口多元化 主張으로 要約할 수 있는데
- 아직도 時代錯誤的인 對南攪亂·顛覆戰術의 次元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겠음.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것은 黨과 革命的 運命과 關聯되는 根本問題> (3.20 中放 論說)

1. 內容 要旨

- 黨의 革命的 性格 固守는 勞動階級黨의 存亡 및 革命的 運命과 關聯되는 重大한 問題
 - 黨의 革命的 性格이 固守되지 못하면 黨안에 異色的 思想이 沈澁·復活되어 黨의 思想·組織的인 瓦解와 分裂을 가져 오게 됨
 - 黨안에 異色分子·危險分子들이 끼어들게 되고 黨이 그들의 籠絡物로 될 수 있음.
 - 黨의 任務와 戰略戰術 鬭爭方法에는 變化가 있을 수 있으나 黨의 革命的 性格에는 變化가 있을 수 없음.
- 黨의 革命的 性格 固守는 오늘날 심각한 問題로 대두
 - 美帝를 비롯한 帝國主義者들은 힘의 政策을 堅持하면서 社會主義를 瓦解시키기 위한 平和移行 戰略에 매달리고 있음.
 - 帝國主義者들은 社會主義를 反對하는 데서 특히 社會主義 社會의 嚮導的 力量인 勞動階級の 黨을 變質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 있음

○ 黨의 革命的 性格 固守에서 重要的 것은 主體思想의 守護와

社會階級的 基礎 強化

- 우리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데서 重要的 것은 黨의 指導思想인 主體思想을 確固히 守護하고 純潔하게 繼承해 나가는 것임.
- 思想事業을 소홀히 하면 社會成員들 속에 부르조아 思想이 퍼져 黨의 社會階級的 基盤이 弱化되는 結果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政治思想 敎養事業과 革命化·勞動階級化 事業의 強化가 必要함.

2. 分析·評價

○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것은 黨과 革命的 運命과 關聯되는 根本問題’ 題下의 3. 20字 中放 論說은

- 지난 해 北韓 勞動黨 中央委 發刊의 黨 理論誌인 「근로자」 10月號에 掲載된 金正日 記名論文(‘朝鮮 勞動黨은 우리 人民의 모든 勝利의 組織者이며 嚮導者이다.’)의 2째 部分(‘우리 黨을 主體型的 革命的 黨으로 더욱 強化 發展시켜야 한다.’)의 內容을 中心으로 한 金正日의 黨強化·發展 理論의 紹介를 통해
- 住民들에 대한 政治思想敎育의 強化 必要성과 함께 黨員들에게 黨建設理論에 대한 研究 學習의 強化를 促求하고 있음.

- ※ 金正日的 論文은 1 黨의 領導는 社會主義 偉業의 勝利를 위한 決定的 擔保이다. 2 우리 黨은 主體型的 革命的 黨으로 더욱 強化 發展시켜야 한다. 3 사람과의 事業을 基本으로 틀어쥐고 黨的 領導를 強化하여야 한다는 3部分으로 된.
- 北韓은 東歐의 變革을 帝國主義 勢力에 의한 反社會主義 策動으로 非難하면서 그 要因을 黨의 領導力 弱화에서 찾고 있으며
 - 새로운 思想의 流入을 遮斷하기 위해 住民들에 대한 政治 思想 教育을 強化하고 있는 바
 - 今番 中放論說(3.20)도 黨內 反體制 要素들의 ‘存在認定’보다는 住民들에 대한 政治思想 教育과 黨員들의 黨建設理論에 대한 學習強化를 促求하기 위한 것으로 分析됨.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이 처한 對內外 狀況을 감안할 때 一部 改革·開放化 要求 움직임에 대한 警惕의 意味도 없지 않은 것으로 判斷됨

【別添】

金正日 論文 (『근로자』 90.10號)中 關聯 內容 要旨

- 黨을 強化·發展시키는 데서 重要的 것은 主體型的 黨으로서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는 것으로, 이는 黨의 存亡과 革命的 運命에 關聯된 중대한 問題임.
- 帝國主義者들이 社會主義 社會의 嚮導的 力量인 黨을 變質시키는데 化살을 돌리고 있는 오늘,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기 위한 鬭爭을 더욱 強化하여야 함.
- 革命的 環境과 條件이 變하여도 指導思想의 革命的 原則은 固守되어야 하며, 만일 그와 背馳되는 異色的 思想潮流를 끌어 들이던 黨은 修正主義의 길로 굴러 떨어짐.
- 黨의 革命的 性格을 固守하기 위해서는 黨의 社會階級的 基礎를 強化하여야 하며 幹部隊列에 異色分子·危險分子들이 끼어 드는 것을 철저히 警戒하여야 함.
- 우리 黨안에도 한때 反黨的 思想要素들이 統一을 妨害하였으나, 鬭爭을 통해 宗派 汚物들과 反黨 修正主義 分子들을 철저히 清算하여 黨의 統一을 確固히 實現하였음.
- 幹部들과 黨員들 속에서 唯一思想 教養을 強化하여 主體의 革命觀·首領觀을 철저히 세우며, 黨의 統一團結을 沮害하는 조그마한 現象과도 非妥協的으로 鬭爭하여야 함.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2次會議

1. 概況

가. 會議 概要

- 開催日時 및 場所 : 91. 4. 11~13. 平壤 萬壽臺議事堂
- 參席 代議員 : 682名中 金日成, 金正日 등 656名 參加
- 開會辭 : 楊亨燮(最高人民會議 議長)
- 議案
 - 1990年 國家豫算 執行의 決算과 1991年 國家豫算에 대하여 (報告 : 財政部長 尹基貞)
 - 最高人民會議 休會期間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에서 審議決定한 法들을 承認함에 대하여

나. 會議 結果

- 90年度 決算과 91年度 豫算이 中心議題로 上程되었으며, 權力構造 改編이나 특별한 政策方向 提示는 없음.
- 既存의 民事, 家族關係 法令들을 整理, 民法과 家族法을 최초로 法典化 하였음.

2. 黨序列 變動 動向

가. 動向 概要

○ 主席團 參席者 黨序列

序列	姓 名	序列	姓 名
1	金日成	11	姜成山 (咸北道黨委 責任祕書)
2	金正日	12	徐允錫 (平南道黨委 責任祕書)
3	吳振宇(人民武力部長)	13	玄武光 (黨檢閱委員長)
4	李鍾玉(副主席)	14	崔泰福 (黨祕書)
5	朴成哲(副主席)	15	崔英林 (副總理 兼 國家計劃委員長)
6	延亨默(總理)	16	洪成南 (副總理)
7	金永南(副總理 兼 外交部長)	17	金鐵萬 (人民軍 上將)
8	桂應泰(黨祕書)	18	金福信 (副總理 兼 輕工業委員長)
9	全炳浩(黨祕書)	19	康希源 (副總理)
10	崔光(人民軍 參謀總長)	20	洪時學 (副總理)

○ 黨序列 變動 內容

姓 名	變 動 內 容	備 考
桂應泰 (黨祕書)	9/23 ⇨ 8/20	
全炳浩 (黨祕書)	12/23 ⇨ 9/20	△
崔英林 (副總理 兼 國家 計劃委員長)	18/23 ⇨ 15/20	△
崔 光 (人民軍 總參謀長)	8/23 ⇨ 10/20	▽
金鐵萬 (人民軍 上將)	17/23 ⇨ 17/20	▽

- 不參者： 韓成龍(黨祕書), 許 鎰(祖國平和統一委員長 兼 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長), 趙世雄 (黨政治局 候補委員)

나. 分析·評價

- 今番 黨序列 變動에서 나타난 特徵은
- 公安(桂應泰), 軍需産業(全炳浩), 經濟關係 人物 (崔英林, 洪成南)들의 浮上과 相對的인 一部 軍部人物(崔光, 金鐵萬)들의 序列下落으로 集約됨.
- 北韓 政權 創建 45돌 紀念報告大會(90. 9. 8)와 黨創建 45돌 慶祝宴會(90. 10. 10) 不參 등으로 미루어 許鎰의 不參 (健康狀態 惡化로 判斷됨)은 豫見되었던 것이나 注目되¹는 點은 黨祕書 韓成龍과 政治局 候補委員 趙世雄의 不參임.
- 특히, 韓成龍은 88. 12 黨政治局 候補委員·祕書 로 90. 5

黨政治局委員 (黨序列 10/23)으로 昇格되는 등 最近 계속 浮上하고 있는 人物이라는 點에서 持續적인 動向 追跡이 要求됨.

3. '90年度 決算 및 '91年度 豫算

가. 90年度 決算 內譯 및 特徵

(1) 決算 內譯

區 分	金 額	構 成 比 (%)	前 年 度 增 加 率 (%)
歲 入	356억 9,041만원 (166억 7,776만불)	—	6.2
歲 出	355억 1,348만원 (165억 9,508만불)	100	6.4
支 出 內 譯	人 民 經 濟 費 * 239억 9,145만원 (112억 1,096만불)	* 67.6	6.6
	社 會 文 化 費 * 66억 8,733만원 (31억 2,492만불)	* 18.8	6.0
	軍 事 費 * 42억 6,162만원 (19억 9,141만불)	12.0	* 6.4
	管 理 費 * 5억 7,308만원 (2억 6,779만불)	* 1.6	* 1.9

註) * 表示는 分析된 數值임.

北韓 元貨의 對美換率은 1弗 : 2.14원 適用

(2) 決算內譯의 特徵

- 지난해의 財政運用은 金日成 新年辭 및 黨中央委 6期 17次 全員會議('90. 1)에서 提示된 自力更生原則과 『增産·節約 鬭爭』에 立脚한 經濟建設 推進에 力點을 두었음.
- '90年度 歲入增加率은 前年比 6.2%('89年 5.3%), 歲出 增加率은 6.4%('89年 5.4%)로 歲出·入 公히 前年度 보다 높은 增加勢를 나타내었음.
- 財政收支는 例年과 마찬가지로 黑字基調를 堅持하였으나, 黑字規模는 前年度の 2億 2,516萬원에 비해 1億 7,693萬원 으로 大幅 減少되었음.
※ 이와같은 結果는 北韓이 年度中 對内外 經濟與件의 惡化에 따라 內資動員 極大化를 통한 投資財源 調達에 腐心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 歲出 項目別 內譯을 보면, 人民經濟費 支出增加率이 他項目에 비해 가장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基本建設 投資 增加率(7.2%)은 人民經濟費 增加率(6.6%)을 上廻하고 있음.
※ 이는 住民消費生活 水準 向上보다는 推進中인 基幹產業 建設에 注力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임.
- 工業部門別 投資支出은 電力工業, 採取工業 및 金屬工業部門에 優先을 둬으로써 前年比 8.1%의 增加率을 나타내었음.
※ 이는 最近 北韓經濟의 主要 隘路要因이 되고 있는 에너지 및 原資材 增産의 投資 強化를 意味함.

○ 歲出總額中 軍事費의 構成比는 前年度와 同一한 12% 水準을 維持하였으나, 前年對比 增加率은 6.4%로서 '89年度의 3.7% 보다 높게 나타났음.

※ 北韓의 實質軍事費는 通常 人民經濟費 등 他豫算 項目에 隱匿 編成·執行되고 있어 '90年度에도 歲出總額의 30% 水準(49.8億弗)은 維持되었던 것으로 보임.

○ 社會文化施策費는 教育·保健·體育部門에 대한 支出보다는 『간백산 밀영』 등 백두산 一帶의 革命戰跡地·史蹟地 造成에 重點이 두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社會文化施策費는 增加率이 6%이나 그중 教育事業費와 保健 事業費는 각각 4.8%, 5.2%에 불과하여 보다 많은 豫算이 金父子 偶像化와 有關한 政治教養事業에 支出된 것으로 보임.

나. 91年度 豫算案 內譯 및 特徵

(1) 豫算案 內譯

區 分	金 額	構 成 比 (%)	前 年 度 增 加 率 (%)
歲 入	371억 2,060만원 (173억 4,608만불)	—	4.0
歲 出	371억 2,060만원 (173억 4,608만불)	100	4.5
支 出 內 譯	人民經濟費 (117억 2,666만불)	* 67.6	4.6
	社會文化費 (32억 4,992만불)	* 18.7	4.0
	軍 事 費 (21억 3,357만불)	12.3	* 7.1
	管 理 費 (2억 3,593만불)	* 1.4	* -11.9

註) * 表示는 分析된 數值임.

北韓 元貨의 對美換率은 1弗 : 2.14원 適用

(2) 豫算內譯의 特徵

- '91年度의 財政運用 方向은 前年度와 마찬가지로 基幹產業 部門에 重點을 두고 既存施設의 效果的 利用으로 生産을 正常化하는데 두고 있음.

- 今年度 歳出豫算 增加率は 前年度(6.8%)보다 縮小된 4.5% 3次7個年計劃 期間中 최대의 緊縮豫算으로 編成되었음.
- 歳出 項目別로 보면,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費 등 餘他 項目의 支出 增加率は 4% 水準으로 지난 해의 6% 水準 보다 全般的으로 낮게 策定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軍事費는 人民經濟費, 社會文化施策費 등 他支出項目의 增加率(4%) 水準보다 훨씬 높은 7.1%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음.
- ※ '90年度 實質軍事費에 今年度 豫算上 軍事費 增加率을 適用할 경우 '91年度 實質軍事費 規模는 114.1億원 (53.3億 佛)에 이르게 될 것으로 推定할 수 있음.
- 그밖에 管理費가 前年보다 11.9% 減少된 것이 特徵임.
- ※ 北韓이 금년들어 일부 海外公館의 閉鎖 또는 綜合運營도 國家管理費 節約의 一還으로 보임.

다. 評 價

- 北韓은 '89年 平祝 開催以後 惡化된 財政事情을 回復시키 기 위해 '90年度에는 歳入基準으로 前年比 6.2% 增加된 膨脹豫算을 編成, 內資 動員의 極大化를 試圖하였음.
- '90年度 決算內容은 歳入 356億 9,041萬원 (166.8億弗), 歳出 355億 1,348萬원(166億弗)으로 例年과 같이 黑字基調를 維持하였으나 그 幅은 大폭 減少되었음.
- 北韓은 지난 해 經濟建設 實績을 依例的인 水準에서 發表

하고 있으나 前年度와 마찬가지로 生産實績은 전혀 언급하지 못함으로써 年度中 全般的인 經濟活動이 沈滯되었음을 示唆하고 있음.

- '91年度 豫算規模는 371億 2,060萬원(173.5億弗)으로 策定, 豫算增加率이 歲入基準으로 지난해의 6.2%보다 大幅 縮小된 4%에 그쳐 緊縮豫算 基調로 轉換된 것이 特徵임.
- 한편 '91年度 軍事費 增加率이 歲出豫算 增加率(4.5%) 보다 훨씬 높은 7.1%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前年度 水準의 軍事費를 維持하려 하는데 原因이 있는 것으로 判斷됨.

4. 『民法』 및 『家族法』 制定

가. 動向 概要

- 最高人民會議 議長 楊亨燮 議案 報告(4. 12)
 - 『民法』과 『家族法』에 대한 法令 承認 提起
 - * 代議員 全員 贊成으로 採擇
- 報告 內容(要旨)
 - 民法과 家族法은 이미 制定·實施해 오던 民事法 制度和 家族法 制度를 社會主義 發展의 現實的 要求에 맞게 完成, 法典化한 것임.

나. 分析·評價

- 北韓은 그동안 民事 및 家族關係에 대한 單一法 體系를 갖추지 못한 채, 事案別로 制定된 關係法規와 黨政策·方針 등에 의해 이를 規定하여 왔음.
- 이번에 提起된 民法과 家族法은 지난 半世紀 동안의 社會發展으로 法과 實生活 사이의 乖離가 커짐에 따라 이를 修正·補完하고, 散在되어 있는 關係 規定을 綜合·整理하여 法體系를 整備할 必要性에 의해 制定된 것으로 보인다.
- 內容面에서는 蘇聯法の 踏襲으로 傳統的 家族關係의 反映이 未洽했던 過去의 家族法 關係 規定이 一部 修正·補完되었을 것으로 分析됨.

平壤市 大衆交通 體系

1. 概 況

- 平壤市 交通手段은 다른 나라의 어느 都市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택시, 地下鐵이 있고, 또 社會主義國家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트롤리버스(trolley bus)라는 無軌道電車가 運行되고 있음.
- 이들중 大衆交通의 主役割을 하고 있는 것은 無軌道電車로서 市内 主要 幹線道路를 運行하고 있으며, 시내버스가 補助手段으로 主繁華街와 外廓地域, 및 인근 市·郡과 連結運行을 하고 있음.
- 地下鐵은 1973. 9 開通되어 현재 平壤市 南北과 東西로 連結·運行되고 있으나, 路線이 단조롭고 대동강 동쪽인 東平壤 地域과는 連結이 되어있지 않아 大衆交通의 補助役割만을 遂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北韓이 1990년부터 시작한 平壤市 住宅 5萬世帶 建設 事業이 어느 정도 成果를 거둠에 따라 이들 住宅들이 密集해 있는 통일거리와 광복거리를 지나는 大衆交通手段을 마련하고 平壤, 西平壤, 東平壤을 連結하는 大衆交通網을 갖추기 위해 현재 軌道電車 工事를 進行中에 있음.
- 최근 訪北者들의 證言에 따르면 平壤은 出退勤時에 대단히

혼잡하며, 無軌道電車가 出退勤時에만 주로 運行되고 平時에는 運行回數가 상당히 制限되고 있음. 또한 버스보다는 화물차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全般的으로 住民들의 交通便利가 北韓 當局의 主要 關心對象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無軌道電車(Trolley Bus)

- 無軌道電車는 軌道없이 道路로 달리는 電車로서 使用電壓은 $600 \pm 50V$ 임.
- 無軌道電車는 1962. 4. 30 平壤驛—工業農業展覽館 區間이 최초로 開通된 이래 平壤 大衆交通의 基本手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個 路線이 運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無軌道電車의 長點은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없어 公害誘發이 적으며 軌道가 없으므로 通過能力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버스에 비해 機動性이 낮고 電力供給線이 設置된 基本 幹線만 運行 可能한 것이 短點임.

無軌道電車 路線

1. 평양역—연못동
2. 평양역—서평양역
3. 평양화력발전소—서평양역
4. 황금벌—송신역

- | | |
|-----------------|-------------------|
| 5. 평양제일백화점－문수거리 | 6. 평양제일백화점 사동구역 |
| 7. 문수거리－낙랑구역 | 8. Moranbong－광복거리 |
| 9. 연못동－평성 | 10. 팔골동－대동강역 |

3. 市内버스

- 平壤에서는 無軌道電車가 大衆交通의 基本手段이 됨에 따라 시내버스는 補助的인 手段으로 活用되고 있음.
- 往來가 많은 市内 中心部에는 無軌道電車와 시내버스가 並行 운영되고 있으며, 無軌道電車 路線이 없는 시가지 및 路線이 끝난 地域에서의 連繫輸送, 平壤과 인근 市·郡地域과의 輸送에는 시내버스가 利用되고 있음.
-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平壤에는 40個의 시내버스 路線이 있음.

시내버스 路線

- | | |
|-----------------|------------------|
| 1. 대성상－미림 | 2. 대성산－삼선동 |
| 3. 대성산－광복거리 | 4. 연못동－서포 |
| 5. 조선예술영화촬영소－서포 | 6. 팔골－칠골 |
| 7. 팔골－만경대 | 8. 팔골－대동교 |
| 9. 조중우의탑－산업동 | 10. 평양제일백화점－대동강동 |
| 11. 평양화력발전소－정백동 | 12. 평양강－만경대 |

- | | |
|-----------------|--------------------|
| 13. 평양역-해운동 | 14. 대동교-송신 |
| 15. 평양종합방직공장-사동 | 16. 평양종합방직공장-도자기공장 |
| 17. 송신-미림 | 18. 송신-장천리 |
| 19. 사동-장천리 | 20. 사동-미림 |
| 21. 상당동-형산리 | 22. 팔골-원로리 |
| 23. 팔골-대평동 | 24. 와산동-동북리 |
| 25. 와산동-순안리 | 26. 와산동-신미리 |
| 27. 와산동-간리 | 28. 대성산-삼석 |
| 29. 대성산-강동 | 30. 대성산-봉화리 |
| 31. 정백-원암동 | 32. 정백-벽지도리 |
| 33. 정백-강남 | 34. 평양종합방직공장-대현동 |
| 35. 평양종합방직공장-역포 | 36. 대동강역-중화 |
| 37. 송신-입석 | 38. 송신-상원 |
| 39. 송신-덕동 | 40. 송신-이현리 |

4. 地下鐵

- 平壤의 地下鐵은 1973. 9. 5 開通된 이래 현재 平壤의 南과 北을 連結하는 천리마線, 東과 西를 連結하는 혁신線 및 천리마線과 만경대를 連結하는 혁신線 및 천리마線과 만경대를 連結하는 만경대線(봉화-부흥간 開通) 등 총 34km, 3개 路線이 運行되고 있음.

- 平壤의 地下鐵은 地下 100~150m에 位置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軍事的 目的에 상당한 比重을 둔 것으로 보이며, 대동강 건너 東平壤地域과 連結이 되지 않음으로써 大衆交通手段으로서의 역할은 한정되어 있음.

地下鐵 路線

1. 천리마線 ('73. 9 完工, 12km)
봉화-승리-통일-개선-전우-붉은별
2. 혁신線 ('73. 9 完工, 20km)
광복-건국-황금별-건설-혁신-전승-삼홍-광명-낙원
3. 만경대線 ('87. 9 完工, 2km)
봉화-영광-부흥

5. 軌道電車 工事

- 平壤에는 日帝時代부터 電車가 運行되었으나, 休戰後 平壤 復舊時에 모두 撤去되었음.
- 그러나 1990년 平壤에 다시 軌道電車 工事が 시작되어 第1 段階 區間 工事を '91. 4. 15까지 완공을 目標로 推進中에 있음.
- 平壤 軌道電車化 工事は
 - 第1段階는 만경대 성산-사동구역中心 區間으로 '91. 4. 15

完工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 第2段階는 문수-통일거리-東平壤火力發電所, 모란봉靑年公園-만경대 성산의 2個 路線을 '92. 4. 15까지 建設하고
- 第3段階는 이 軌道電車 路線을 輪還線으로 잇는 工事を 計劃하고 있음.

○ 이 計劃을 살펴보면 既存의 無軌道電車 路線과 상당부분 일치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부분의 區間은 無軌道電車 路線에 軌道를 設置하는 工事인 것으로 推定되나, 平壤市 住宅 5萬世帶 建設地域인 통일거리와 광복거리는 無軌道電車 路線이 通過하지 않고 있어 電力供給線과 軌道設置 등 완전한 軌道電車 建設工事が 要求됨.

○ 이미 無軌道電車 路線이 設置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北韓이 軌道電車 工事を 推進하는 것은

- 既存의 無軌道電車線을 軌道電車線으로 轉換하여 工事を 할 경우, 工事經費와 工期의 短縮이 가능해짐에 따라 짧은 期間內에 可視的 成果를 內外에 誇示할 수 있는 점이 考慮되었을 것이며
- 軌道電車에 客車를 連結함으로써 無軌道電車보다 輸送能力을 增大시킬 수 있으며, 輪還線工事を 통하여 郊外鐵道와의 連繫輸送을 가능케하고
- 地下鐵로 平壤 全地域의 輪還網을 構成할 경우 所要되는 막대한 經費를 現 財政狀態로는 調達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評價됨.

○ '91. 3月末 現在 工事 進陟狀況은

－ 第1段階 工事인 만경대 성산-송신 사이의 50여리(20km) 區間이 總工事量의 74%가 進行되었고, 철길路盤工事에서 콘크리트판 침목갈기가 完工되었으며.

－ 성산에서 시작된 레일作業이 곧 完工될 豫定이고, 軌道電車 牽引變電所 建築工事が 거의 完工段階에 있다고 報道하고 있음.(中放 4. 7)

金日成 79回 生日行事

〈行事動向〉

- 北韓은 4月 15日을 “民族最大의 名節”로 指定, 매년 金日成 生日을 祝賀하는 行事를 代代적으로 벌리고 있는 바, 올해 에도 79回 生日을 맞아 多樣한 행사를 開催하였음.
- 對內行事 : 60個國 100餘個 藝術團體가 參加한 第 9次 『4 月の 봄 親善藝術祝典』을 위시해 少年團 全國聯合團體大會 등 藝術·體育·經濟分野 14個 行事進行
- 對外行事 : 駐中大使館 등 5個 在外公館에서 文化의 밤, 宴會, 映畫鑑賞會가 開催되었고 非同盟國家의 수십개 親北團體를 動員, 主體思想討論會, 卓球大會, 紀念集會 등 開催
- 또한 慶祝雰圍氣를 高潮시키기 위해 代代적인 勳·褒章 授與가 있었고 全住民들에게 白米·고기 등 『生日特食』을 供給하였음.

〈分析·評價〉

- 北韓은 金日成 生日과 關聯, 1962年 50回 生日을 기하여 最初로 臨時公休日로 定하고 小規模로 各種 祝賀行事를 進行하여 오다가 1974年 62回 生日부터 金正日 指示에 의거 그의 生日을 “民族最大의 名節”로 規定('74. 4 中央人民委 政令

469號)함과 同時에 公休日로 指定하였음.

- 금번 金日成 79回 生日行事는 例年과 같은 水事으로 進行되었으나 行事內容中 注目되는 點은
 - 金日成 生日行事 임에도 불구하고 各種 行事 및 宣傳內容 등에 있어 金日成과 同一하게 金正日的 業績을 부각시키고 있고
 - 例年과 달리 第9期 2次 最高人民會議에 參席차 訪北한 韓德銖(매년 朝總聯의 金日成 生日行事 主管)를 北韓에 差留시켜 生日行事에 參席시켰으며
 - 駐北韓 蘇聯大使館 主權 祝賀行事와 駐蘇 北韓大使館 主權 祝賀行事에는 異例적으로 兩側 黨·政人士들이 간하 參席하지 않았다는 事實임.
- 전반적으로 볼 때 금년도 金日成 79回 生日行事는 生日祝賀와 함께 “首領에 의해 이룩된 革命課業이 金正日에 의해 더욱 훌륭히 발전되고 있다”는 副主席 박성철의 金日成 生日 찬양 演說에서 나타난 것처럼 金正日을 “領導者”로서 부각시키는 契機가 되었다고 評價됨.

〈對內動向〉

○ 行事動向

行 事	日 時 場 所	內 容
萬壽臺賞 體育競技大會	4. 2 金日成 競技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體育選手, 平壤市內 勞動者, 青少年·學生, 關係部門 일꾼 • 開幕演說: 김유순(國家體育委員會委員長) * 1969. 4 金日成 生日을 紀念하여 創設된 北韓 最大規模의 綜合體育大會
第9次 『4月の 母親 善藝術祝典』	4. 7~18 平壤 및 14個 地方 市·道에서 進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쿠바 등 60個國 100餘 個 藝術團體 (北韓: 萬壽臺藝術團, 平壤藝術團, 피바다 歌劇團 등 3個) * 1982年 金日成 70回 生日 以後 매년 開催되는 國際 的 규모의 藝術行事
萬壽臺賞 國際마라톤大會	4. 7 平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 中國, 北韓, 3個國 參加 • 마라톤 코스: 개선문-비파거리-영웅거리-봉화거리-천리마거리-만경대 다리

行 事	日 時 場 所	內 容
第2次 國際 青年 發明 및 새技術 平壤 展覽會	4. 8 青年中央 會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몽골 등 6個國 參加 • 電子自動化, 熱工學, 機械 및 生物學 分野 410餘種 1,600여점의 發明 및 새技術 展覽品과 寫眞圖書 展示
中央研究 討論會	4. 9 人民大 學習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討論主題：“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당과 인민을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켜 우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마련하신 위대한 영도자이다” 등 2선
全國 유치원 어린이 藝術祝典	4.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器樂, 聲樂, 舞踊, 巧藝作品 公演
映畫上映 旬間	4. 9~18 各 市道郡 所在地 映畫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 業績讚揚 記録映畫 및 藝術映畫 • 記録映畫：“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의 영광” 등 2편 • 藝術映畫：“조선민영”, “민족의 태양” 등 6편
中央寫眞 展覽會	4. 9 人民大 學習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父子의 建設現場 現地指導 등의 寫眞 89점 展示

行 事	日 時 場 所	內 容
美術作品 展示會	4. 10 朝鮮美術 博物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日成偶像化 및 業績讚揚 作品 展示 • 張徹(政務院 副總理), 金俊煥(文化藝術部 部部長) 등 參席
청지기 가마터 唯物展示會	4. 10 朝鮮歷史 博物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盜器를 비롯한 800여점의 遺物
國際記者 講習會	4. 10 平壤國際 映畫會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開講演說: 金基龍(公報委員會 委員長)
『朝·中親善電子計 算機技術일꾼養成 센터』開幕	4. 13 金策工業 綜合大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電子計算機室, 計算機調整實驗室 등 具備 • 李자방(科學技術委員會 委員長), 정 의(駐北 中國大使) 參席
少年團 全國 綜合團體大會	4. 15 5.1 競技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朴成哲(副主席), 崔泰福(黨祕書) 등 黨·政 高位幹部, 少年團 代表, 萬景臺 革命學園 學生 등 15萬名 參席
平壤市 青年 學生들의 무도회	4. 15 金日成廣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壤市 青年學生, 海外同胞, 外國人士 參加

○ 主要 慶祝報道 內容

報道媒體	日時	題 目
中 放	4. 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상이시다.
中 放	4. 10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가겠습니다.
勞動新聞(政論)	4. 13	조선의 행복
中 放	4. 13	오직 수령관동지의 명령과 의도대로
平 放	4. 13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영도 방법의 정당성
中 放	4. 14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 일심동체
平 放	4. 14	김일성은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 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
中 放	4. 15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살기 축원합니다.
中 放	4. 15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살며 싸워 나가려는 것은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
民 民 戰	4. 15	민족경사의 날 축원의 인사드립니다.
平 放	4. 16	김일성 동지는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숭고한 높이에 올려세워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

○ 各種 建設工事 完工

대봉광산·천마광산 3수 직갱건설, 국제화학합영회사,
 함흥화학합영공장, 대성 6.4 합영공장, 동창탄광,
 청화제련직장, 신흥합영회사, 장림광산개발공사,
 평양 궤도전차화 제1단계공사,
 통천수출품 수산사업소 확장공사,
 평양양말공장 양말바지 수출직장

○ 映畫製作 및 圖書出版

製作 및 出版社	題 目
朝鮮記錄映畫攝影所	記錄映畫 “강산과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
”	記錄映畫 “북청회의가 낳은 결실”
”	記錄映畫 “위대한 역사” 제15부
朝鮮勞動黨出版社	“인민들 속에서” 47권
”	“위대한 역사” 제15부
文藝出版社	소설 “조선의 봄”
	소설 “해방” 9편

○ 勳章 및 稱號授與

區 分	授 與 者
金日成 勳章	유재명(평양 總參謀위원회 책임비서)
金日成 青年榮譽賞	김철희(김일성종합대학) 등 99명
金日成 少年榮譽賞	이승진(평양 대동문고등중학교) 등 183명
功勳稱號	박대원(서창청년탄광) 등 6명
『3대혁명붉은기』授與	평양 익포 옷공장 등 95개 단위
近衛稱號	2.8작동 창년탄광 등 16개 단위
『영예붉은기』授與	평양 송남고등중학교 등 18개 학교

○ 駐北 外國公館 行事

公館名	日 時	內 容
駐北 蘇聯大使館	4.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축아회 진행 • 주요 참석자 : 오분환(대외문화인락위원회 부위원장) 등
駐北大使館 武官團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 꽃바구니 및 편지 전달 • 백송혁명사적지에 기념식수

公館名	日 時	內 容
駐北 쿠바大使館	4.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慶祝宴會 開催 • 主要 參席者 : 김일성, 이종욱(부주석), 김영남(외교부장), 최광(인민군 총참모장), 김용순(당비서) 등
駐北外交團	4.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하 꽃바구니 및 편지 전달

○ 祝電 接受(4. 17 現在)

- 인도네시아 大統領, 파키스탄 大統領 등 31個國 國家 黨·政 人士들이 보낸 祝電 接受

國 家 首 班		政 黨 人 事
• 사하라 아랍	• 아프카니스탄	• 日本 社會黨委員長
• 수 단	• 르완다	• 美國 共產黨 全國 委員長
• 부르키나파쇼	• 부룬디	• 페루 左翼革命同盟 委員長
• 인도네시아	• 적도 기네	• 영국 新共產黨 總祕書
• 파키스탄	• 우간다	• 레바논 共產黨 總祕書
• 보츠와나	• 세이셸	• 인도 共產黨 總祕書
• 또 고	• 요르단	• 온두라스 共產黨 總祕書
• 기 네	• 레바논	• 중미주 統一黨 總祕書
• 가 나	• 리비아	• 벨지크 勞動黨 委員長
• 짐바브웨	• 나카라과	
• 꼬뜨디브와르	• 애굽아랍	

〈對外行事〉

○ 在外 公館行事

公館名	日時	內 容
駐덴마크 大使館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化의 밤 行事 開催 • 參席者：第9次 4월의 봄 전선예술축전 참가 덴마크예술단 등
駐유고 大使館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映畫鑑賞會 및 親善모임 開催 • 參席者：제9차 4월의 봄 전선예술축전 참가 유고예술단
駐蘇 大使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映畫鑑賞會 및 小宴會 開催 * 蘇聯 黨·政人士 不參
駐中 大使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映畫鑑賞會 및 小宴會 開催 • 主要 參席者：이석명(북경시당위원회 서기), 유술성(국무원외사판공실 주임), 양복창(외교부 부부장), 주창준(주중 북한대사) 등
駐쿠바 大使館	4.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慶祝宴會 開催 • 主要 參席者：카스트로(수상)를 위시해 당·정 고위간부 대기 참가

○ 朝總聯 行事

行事	日時및場所	內容
朝總聯中央委 慶祝宴會	4. 12 東京 朝鮮會館	• 主要 參席者 : 이진규, 박재로 등 부의장단 전원, 도이 다 까꼬(일본 사회당 위 원장), 오자와 기요 시(자민당 중의원) 등
朝總聯 中央大會	4. 14 朝鮮 文化會館	• 主要 參席者 : 이진규 등 부의장단 전원 • 이진규 第1副議長 慶祝演說 및 祝 賀文 朗讀

○ 親北團體 行事

- 이디오피아, 쿠바, 탄자니아 등 非同盟圈 親北團體를 動員,
映畫鑑賞會, 圖書 및 手工藝品展覽會, 卓球競技大會 등을
開催

91年度 上半期 北韓經濟 綜合

1. 概況

- 今年은 北韓이 推進中인 第3次7個年計劃('87 ~ '93)의 5次 年度로서 計劃된 建設事業을 마무리 해야 할 時期에 접어들었으나 上半期中에도 지난해의 極甚했던 經濟沈滯 狀況에서 벗어나는 기미를 보이지 못하였음.
-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금년도에는 『第3次7個年計劃事業으로 推進中인 主要 建設事業을 優先的으로 建設하면서 人民 消費品을 增産할 것』을 經濟施策 方向으로 提示한 바 있음.
- 따라서 最高人民會議 第9期 2次會議(4.11)는 總規模 173.5億 弗(前年比 4.5%增加)의 緊縮豫算을 編成하고 石炭, 電力 등 에너지 産業과 主要 外화가득원인 金屬工業部門 建設에 注力하면서 既存施設의 生産을 正常化 하기로 하였음.

※ '90年度 豫算의 前年比 增加率 6.8%

- 上半期中 對內經濟活動을 分析한 結果 建設部門은 主要 火力發電所들과 일부 化學工場 建設에서, 生産部門은 發電所 및 化學設備 生産을 擔當한 大型機械工場이 比較的 活氣를 보였으나 餘他部門은 여전히 不振한 實績을 보였음.
- 對外經濟動向은 北韓 輸出入의 70% 이상을 차지해온 中·蘇와의 經濟協力 與件이 더욱 惡化되는 가운데 새로운 活路를

摸索하기 위해 東南亞 및 一部 中東國家에 대한 外交的 努力을 強化하였음.

2. 91年度 經濟施策 背景과 目標

가. 背 景

- 最高人民會議 第8期 2次會議(87. 4)에서 確定되어 推進中인 第3次7個年計劃은 『經濟의 主體化, 現代化, 科學化』를 통해 『食·衣·住 問題의 完全解決』을 基本課業으로 하고 있음.
- 細部計劃目標는 勞動黨 第6次大會(80.10)가 提示한 『社會主義 經濟建設 10大 展望目標』를 一部 修正하는 線에서 設定하였음.
- 主要 部門別 成長目標는 期間中 國民所得 1.7倍(年平均 7.9%), 工業生產 1.9倍(年平均 9.6%), 農業生產 1.4倍(年平均 4.9%), 貿易規模 3.2倍(年平均 18.1%)등임.
- 그러나 計劃着手以後 4年間(1987~1990)의 經濟 成長率은 年平均 1.3%의 극히 低調한 實績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日氣不純으로 인한 凶作과 石炭生產 및 原油導入 不振에 따른 에너지 不足難이 深化되어 극심한 經濟沈滯에 直面했음.
 - 90年 經濟成長率 -3.7%, 產業施設 稼動率 45%
- 지난해의 對外貿易 規模는 第3次7個年計劃樹立의 基準 年度

가 되는 86년의 36억불(輸入 14.9億弗, 輸出 21.1億弗)에 비해 28% 增加된 46億弗에 不過하였으며 計劃期間中 貿易赤字가 持續되어 왔음.

나. 主要 施策 目標

- 金日成은 新年辭에서 今年도 經濟建設의 核心 課業은 「人民經濟의 先行部門을 確固히 앞세우며, 이미 마련된 經濟土臺를 效果的으로 이용하여 生産을 正常化하고 人民들의 物質文化生活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強調하였음.
- 이를 위해 「建設에 參加한 勤勞者들과 人民軍은 愛國的 獻身성과 大衆的 英雄主義를 發揮하여 黨앞에 決意한 建設目標을 어김없이 實現하라」고 指示함에 따라 今年도 豫算案에서는 比較的 具體的인 建設目標가 提示되었음.
- 鑛業部門에서는 安州탄광, 무산광산, 검덕광산 등 大規模 炭鑛과 鑛山의 擴張을 통해 石炭, 鐵鑛石, 有色金屬鑛物의 生産能力을 높이고
- 電力工業部門에서는 영원水力, 남강水力, 금야강水力, 동평양火力, 12月火力 등 推進中인 發電所 建設을 계속하는 한편, 탄천 水力發電所와 해주, 함흥, 김책지구의 火力發電所 建設에 着手한다는 目標를 設定하였음.
- 金屬工業部門에서는 92年 4月 完工을 目標로 建設中인 10月 9日 鋼鐵綜合工場(生産能力 200萬톤) 建設에 注力하며,
- 化學工業部門은 建設中인 사리원 가리비료工場과 순천비닐론

工場 2段階 建設을 계속하는 한편, 2.8비날론 工場을 改建擴張 하기로 하였음.

- 輸送部門에서는 도내-유곡, 남신의주-덕현 區間の 鐵道電氣化와 해주-웅진, 신강령-부포사이 廣軌化 工事 및 平壤市 軌道電車建設을 推進하기로 하였음.
- 住宅建設部門은 지난해부터 推進되고 있는 平壤市 5萬世帶 住宅建設(90~91年間)을 完工하기 위한 統一거리 建設을 계속하며 地方都市와 農村에 文化住宅을 大的으로 建設한다는 目標을 提示하였음.

※ 平壤市 5萬世帶 住宅建設目標중 지난해 建設實績은 3萬世帶

※ 今年中 推進할 第3次7個年計劃事業 重點 建設對象은 사리원카리비료工場, 순천비날론工場 2段階 工事, 무산광산擴張, 10月 9日 강철綜合工場, 동평양火力發電所, 남강發電所, 平壤市 住宅建設 등 7大 事業임.

3. 對內經濟動向

가. 部門別 建設動向

- 上半期中 建設動向은 資金 및 原資材 不足으로 인해 年初計劃事業中 當面 經濟問題 解決과 直結된 一部 事業들을 選別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電力工業部門에서 現在 建設되고 있는 發電所는 大型 10個所와 中小型 860個所로 發表된 바 있으나 電力難의 早期 解決을 目的으로 建設期間이 짧은 火力發電所 建設에 力量을 集中하면서 일부 水力發電所 建設을 並行하고 있음.
 - 12月火力, 해주火力, 청진火力, 남강水力 등에 注力
- 金屬工業部門에서는 10月 9日 鋼鐵綜合工場建設에 力點을 두고 있으나 實績은 不振하며, 다만 88年 8月 金日成 現地 指導에 따라 着工된 727號 製鍊所(舊 洪남製鍊所로 推定)移設 工事が 4月中에 完了되었음.
- 化學工業部門은 사리원 카리비료工場 建設이 比較的 활발히 推進되고 있으며, 순천비날론 2段階工事は 小規模 단백질 飼料工場(총 30萬톤 計劃中 1萬톤)이 完工段階에 있음.
- 輸送部門은 해주-웅진, 신강령-부포간 鐵道 광궤화 工事(總 60km)가 完工段階에 있으며, 平壤市 軌道電車 1段階 工事(16km)가 4月中 完工되고 청진市 軌道電車 1段階 工事が 着工되었음.
- 第3次7個年 計劃期間中 住宅建設 目標는 每年 15~20萬世帶로 되어있으나 上半期中 發表된 建設현황은 平壤市 2萬世帶를 비롯하여 總 6萬여 世帶가 推進中이나 平壤市 이외 地域은 實績이 不振하였음.

나. 生産動向

- 今年 上半期中 北韓의 生産活動은 對外經濟協力 與件 및

에너지 사정이 好轉되지 못함으로써 全般的인 産業施設 稼動率도 前年度 水準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 지난해 水害로 浸水된 東海岸 北部地域의 一部 炭鑛은 復舊遲延으로 인해 지금도 採炭이 不可能한 狀態
- 硬貨決濟問題로 인한 對蘇原油導入이 事實上 中斷됨에 따라 勝利化學工場이 稼動 中斷狀態
- 그러나 大安重機械聯合企業所, 용성機械總局 등 大型機械工場들은 火力發電所 및 化學工場 設備生産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生産施設의 稼動率 低下로 發生된 剩餘勞動力은 대부분 勞動集約的인 建設現場에 動員하고 있으며, 原料生産 增大를 目的으로 主要 鑛山에 대해서는 소위 『全人民的 支援事業』을 展開, 各種 工具, 保護裝具 및 勞動力을 集中 支援하고 있음.

4. 對外經濟動向

가. 對中·蘇 經濟協力

中國과의 협력

- 北韓은 蘇聯 및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變化 以後 理念的

인 면에서나 經濟協力面에서 中國과의 關係를 重視해 왔으나 中國은 蘇聯과 마찬가지로 점차 相互的인 協力關係로의 轉換을 追求하고 있음.

- 北·中間에는 지난 3月 6日 北京에서 『91年度 朝·中 貿易協定』 및 『商品借款協定』이 締結되었음.
 - 貿易協定の 內容을 보면 雙方交易은 國際市場價格을 基礎로 스위스 프랑을 計算 單位로 할 것을 規定
 - 決濟方式은 中國銀行과 北韓 貿易銀行에 각각 無利子の 스위스 프랑 口座를 開設하고 相對側의 請求書 接受 즉시 決濟하되 決濟差額이 2,700萬 스위스 프랑을 超過한 경우 年 2% 利子を 지급
 - 今年中 中國의 對北 輸出은 原油, 코크스 등 28個品目, 北韓의 對中國 輸出은 無煙炭, 磁鐵鑛, 시멘트 등 17個品目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금년도 中國의 對北 原油 輸出量은 62.5萬톤으로 되어 있음.
- 北·中 商品借款協定の 內容은 具體的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난 2月 外信報道에서 中國이 向後 5年間 1.5億弗의 援助資金을 北韓에 提供하기로 하였다고 報道(平壤 外交街 消息通 引用)된 바 있어 금번에 締結된 商品借款協定과 關係가 있는 것으로 推定됨.

蘇聯과의 協力

- 蘇聯은 對內 經濟事情의 惡化와 北韓의 開放·改革 拒否로 對北 經濟協力을 과거의 一方的인 對北支援에서 相互的인 形態로 變更할 것을 이미 '89년부터 主張해 왔음.
- 北·蘇間에는 지난 4月 28日 平壤에서 『91年度 朝·蘇貿易 및 經濟協調協定』이 調印되었음.
 - '90年 11月 北·蘇間 雙方貿易은 '91년부터 國際價格을 基準으로 한 硬貨決濟 方式으로 轉換할 것에 合意
 - 그러나 蘇聯은 決濟通貨를 달러貨로 要求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스위스 프랑을 고집하는 등 금년도 貿易協定에서도 이 問題가 完全解決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금년도 貿易協定 締結을 위한 接觸過程에서는 蘇聯이 北韓의 對蘇債務 辨濟를 要求함으로써 매우 緊張된 雰圍氣가 造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 결과 금년 5月까지의 北·蘇 貿易은 前年 同期比 10 分の 1水準으로 激減되고, 對北 原油供給도 事實上 中斷狀 態에 있으며, 平壤-모스크바 航空機 運航도 過去の 週1回 에서 6月 1일부터는 2週 1회로 變更되었음.
- ※ 金년도 蘇聯의 對北 原油供給計劃量은 50萬톤이란 說이 있음.
- 北韓은 上半期中 러시아共和國 등 蘇聯邦의 個別共和國 政

府와 貿易 및 經濟協調協定을 締結하고 있으나 實質的인 成果는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그 理由는 蘇聯邦 政府와 個別共和國 政府間的 經濟的 關係가 制度的으로 定立되지 못한데 있음.

나. 對 東南亞 및 中東과의 協力

- 北韓은 中·蘇 및 東歐와의 經濟協力 與件이 급속히 惡化 됨에 따라 年初부터 東南亞를 비롯하여 中東地域에 대한 經濟外交를 強化하기 시작하였음.
 - 延亨默 總理의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個國 巡訪 (1.29~2.7)時 泰國과는 쌀 50萬톤(2~3年間 100萬톤), 타피오카 50萬톤 등 輸入 提議
 - 인도네시아와는 『經濟 및 科學技術協調에 관한 協定』 및 『貿易協定』締結 (2.2)
- 한편 이란과는 人民武力部長 吳振宇 招請으로 이란議會代表團이 北韓을 訪問(2.27~3.3)한 바 있으며 5月末에는 北韓의 國家建設委員會 第1副委員長 배달준이 이란을 訪問하였음.
 - 이를 통해 對이란 原油導入 및 建設輸出, 援助物資 供給(軍事支援 問題로 推定)등의 論議와 『朝·이란 貿易 및 經濟協定』이 締結된 것으로 보임.

※ '89年 北韓의 對이란 原油導入量은 約 100萬톤 規模

- 北韓의 東南亞 및 中東地域에 대한 經濟外交 強化는 食糧, 原油 등 資源確保와 建設輸出의 試圖는 물론 武器를 비롯한 工產品의 販賣市場 開拓에도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分析됨.

다. 其他 國家 및 國際機構와의 協力

- 北韓은 日本·獨逸 등 西方先進國과의 經濟協力 強化를 위한 積極적인 外交努力을 傾注하고 있음.
 - 對日 修交 交渉 展開
 - 對外經濟 事業部 副部長 김정우가 獨逸을 訪問, 獨逸工業 聯盟 經濟委員會와 『朝·獨 經濟共同委員會』 設置에 合意(1.24)
- 한편 東歐國家들의 既存協力關係 維持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北韓-루마니아 科學技術協調 分科委員會 第13次 會議議定書 調印(3.6)
 - 北韓-체코 『91年度 商品流通 및 奉仕와 支拂에 관한 議定書』 調印(3.19)
 - 北韓-蒙古 『91年度 貿易 및 支拂에 관한 協定』 調印(4.1)
- UNDP와는 北韓農業科學院 傘下에 『科學·技術 情報센터』를 設立하는 5個年計劃에 合意하였음(91. 2)
 - UNDP側 支援金 64萬弗, 北韓自體資金 427萬원(197.5萬

弗) 投入 計劃

라. 合營, 合作 및 對外支援

- 上半期中 北韓은 蘇聯과 海運 및 貿易分野에서 2件的 合營事業이 이루어졌으며, 朝總聯과 合作한 會社들이 7件的 小規模 合營分工場들을 建設 操業하였음.
 - 北韓 大成貿易商社와 蘇聯 프리모텍스(蘇·핀란드 合作會社)間 프리모리 邊境에 貿易과 生必品生産 專門合作會社를 設立
 - 北韓 東海 海運會社와 蘇聯 遠東 汽船會社가 合作으로 朝·蘇 海運 有限責任會社를 設立(3.18)
 - 北韓 農產物 總會社와 朝總聯 「아사히」 産業株式會社가 合作한 만풍合營會社 分工場(5個) 操業(4月)
 - 北韓 新進合作會社와 朝總聯 「아사히」産業株式會社가 合作한 온천 벗집 加工工場 操業(4.14)
 - 北韓 인풍貿易會社와 朝總聯 삼영産業株式會社가 '88년에 合作 操業한 청천강 合營會社 第2段階 工場(絹絲工場) 操業(4.17)
- 한편 北韓은 朝總聯系 共和商社와 10億엔 規模의 至誠黑鉛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4月 15日 前後에 開業한다는 說이 있었음(未確認)

- 北韓의 東南亞 및 中東地域에 대한 經濟外交 強化는 食糧, 原油 등 資源確保와 建設輸出의 試圖는 물론 武器를 비롯한 工產品의 販賣市場 開拓에도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分析됨.

다. 其他 國家 및 國際機構와의 協力

- 北韓은 日本·獨逸 등 西方先進國과의 經濟協力 強化를 위한 積極적인 外交努力을 傾注하고 있음.

對日 修交 交渉 展開

對外經濟 事業部 副部長 김정우가 獨逸을 訪問, 獨逸工業 聯盟 經濟委員會와 「朝·獨 經濟共同委員會」 設置에 合意(1.24)

- 對東歐國家와의 既存協力關係 維持에도 積極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北韓 科學技術 科學技術 協調 委員會 第13次 會議 議定書 調印(3.6)

北韓 科學 「1958年 發展 流通 및 支援에 관한 議定書」 調印(3.19)

北韓 農業 「1958年 貿易 및 支援에 관한 協定」 調印(4.1)

- UNDP의 北韓 農業科學院 傘下의 「科學·技術 情報 센터」를 設立하는 5個年計劃에 合意하였음(91. 2)

UNDP側 支援金 64萬鎊, 北韓自體資金 40萬鎊(1973年度)

弗) 投入 計劃

라. 合營, 合作 및 對外支援

- 上半期中 北韓은 蘇聯과 海運 및 貿易分野에서 2件的 合營事業이 이루어졌으며, 朝總聯과 合作한 會社들이 7件的 小規模 合營分工場들을 建設 操業하였음.
- 北韓 大成貿易商社와 蘇聯 프리모텍스(蘇·핀란드 合作會社)間 프리모리 邊境에 貿易과 生必品生産 專門合作會社를 設立
- 北韓 東海 海運會社와 蘇聯 遠東 汽船會社가 合作으로 朝·蘇 海運 有限責任會社를 設立(3.18)
- 北韓 農產物 總會社와 朝總聯 「아사히」 産業株式會社가 合作한 만풍合營會社 分工場(5個) 操業(4月)
- 北韓 新進合作會社와 朝總聯 「아사히」産業株式會社가 合作한 온천 벗집 加工工場 操業(4.14)
- 北韓 인풍貿易會社와 朝總聯 삼영産業株式會社가 '88년에 合作 操業한 청천강 合營會社 第2段階 工場(絹絲工場) 操業(4.17)
- 한편 北韓은 朝總聯系 共和商社와 10億엔 規模의 至誠黑鉛 合作會社를 設立하여 4月 15日 前後에 開業한다는 說이 있었음(未確認)

5. 綜合評價 및 展望

- 今年 上半期中에도 北韓經濟 動向은 建設部門이 經濟成長을 主導하는 特徵을 나타내었으나 言論報道 頻度나 內容으로 볼 때 建設動向 역시 前年度 보다 크게 萎縮된 것으로 評價되고 있음.
- － 力點을 둔 建設 對象은 에너지問題의 早期解決을 위한 主要 火力發電所의 建設과 사리원 카리비료공장, 平壤市 住宅建設事業 등 이었음.
- 生産動向은 大安重機械聯合企業所, 용성機械總局 등 大規模 一般機械工場을 中心으로 火力發電所 및 사리원 카리비료工場 등 主要 對象設備 生産에서 比較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其他 部門에서는 生産이 매우 不振했던 것으로 評價되고 있음.
- 따라서 上半期 經濟動向으로 미루어 볼때 今年도의 北韓經濟 成長率은 農業部門에서의 穀物生産 實績 如何에 따라 左右될 것이나 (+)成長로 돌아서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展望됨.
- 北韓 指導層은 現在의 對內外 經濟狀況을 體制的 危機局面으로 認識, 이를 脫皮하기 위해 今年 上半期부터 對外政策變化를 試圖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92년부터는 이러한 試圖를 더욱 積極化 할 것으로 展望됨.

北韓의 豆滿江 流域 開發構想 關聯 經濟特區 建設 推進

'91. 7. 6 『東北亞地域 經濟協力에 관한 UNDP會議』(蒙古 『울란바토르』에서 北韓側은 두만강 流域 『經濟貿易地區』 開放計劃에 대한 構想을 具體的으로 發表하였음.

1. 두만강流域 開發관련 北韓側 發表 要旨

- 나진, 선봉(웅기), 새별(경원) 地域을 連結하는 140km² 地域에 『經濟貿易地區』 設置·開放하고자 함.
- 同 『經濟貿易地區』를 設置는 中國側의 두만강流域開發 事業과 連繫되며 蘇聯, 中國, 蒙古 등 東北亞地域 開發에 이바지한 것임.
- 이미 同 『經濟貿易地區』 設置·開發을 위해 必要的·制度的 裝置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同地域 開發과 관련하여 輸送網 등 Infra-Structure(支援施設) 補完에 대한 計劃 樹立을 完了하였음.
- 두만강開發 관련 妥當性 調査는 UNDP의 『東北亞協力事業』의 一環으로 推進되기를 希望함.

2. 發表 背景

- 北韓은 對外經濟開放과 관련, 合營法 發表(1984. 9)以後 지금까지 『經濟特區』의 設置보다는 『合營事業』을 통한 西方資本 및 技術 誘致에 注力하여 왔음.
- 1989年 7月以後 부터 두만강 下流에 位置한 합산도 『經濟 特區』 建設說이 연이어 나뉘므로써 北韓의 『經濟特區』 建設 與否는 國內外 주요 關心事가 되었음.
 - 日本 『아사히新聞』('89.7.7), 中國 黑龍江省放送('89.8.16), 『朝鮮日報』('89.8.29), 英國 『The Financial Times』 및 中國 『東北經濟報』, 香港 『文匯報』('90.3.30), 『世界日報』('90.5.3)
- 그러나 北韓의 對內宣傳媒體들은 『經濟特區』 建設 관련 內容 을 전혀 報道하지 않는 등 北韓은 아직까지 對內的으로 이 에 대한 言及을 忌避하고 있음.
- 특히, 1988年 김성환(당시 對外經濟事業部 副部長 兼 國際合 營 總會社 社長)은 朝總聯 機關誌 朝鮮新報('88.12.14)를 통 해 『合營事業』 推進의 妥當性과 함께 『經濟特區』建設의 不必 要性을 強調한 바 있음.
- 한편, 北韓은 1990年 現在 UNDP로부터 總 3,000萬弗 相當 의 經濟 및 技術支援을 받은 것으로 推定되고 있어 이제 UNDP의 經濟的 支援은 北韓 經濟開發에 重要한 位置를 占 하게 되었음.

- 또한 最近 國際經濟 社會에서의 實利에 立脚한 多極化 傾向과 관련하여 北韓의 對外的 經濟環境 變化는 北韓의 當面한 經濟難을 治癒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北韓의 經濟開放 壓力으로 作用하고 있음.
- 이로 볼때, 北韓은 慢性的 經濟難 打開을 위해 當初에는 貿易擴大 및 「合營事業」에 依存하여 왔으나, 그 實績이 不振한데다 對外經濟 與件 역시 惡化됨으로써 既存의 對外經濟 政策에 대한 再檢討가 불가피한 實情인 것으로 分析됨.

3. 發表上的의 主要 特徵

- 첫째, 이번 UNDP會議를 통해 北韓當局은 「經濟特區」設置에 대해 처음으로 公式 聲明함으로써 北韓 對外經濟政策의 變化를 강력히 示唆하고 있음.
- 둘째, 北韓은 開發對象地域으로 中國과 같은 特定都市 中心의 「經濟特區」가 아니라 外部情報 遮斷이 容易한 韓半島 最北端 外廓地帶를 「經濟貿易地區」로 選定하고 있음.
- 셋째, 開發形式面에서 北韓은 國際經濟協力機構인 UNDP를 앞세워 두만강流域 開發을 위한 西方資本 誘致 및 先進技術 導入을 圖謀하고 있음.
- 넷째, 開發內容面에서 특히 中·蘇 連結의 輸送網, 港灣施設

등 未備된 北韓의 Infra Structure 補完을 強調하고 있음.

- 다섯째, 北韓은 “UNDP의 性格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韓國의 參與를 許容한다는 立場을 밝히고 있음.

4. 北韓側의 意圖

- 北韓은 그동안 『經濟特區』 設置의 必要性은 認識하고 있었으나 對內政治的 危險要因의 作用을 우려, 지금까지 同制度의 導入을 忌避하여 왔음.
- 그러나 最近 北韓은 金日成以後體制 構築과 관련 現在의 심각한 經濟難이 政治問題로 擴大될 可能性을 意識, 이에 副應하는 政策的 轉換을 圖謀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北韓은 수년전부터 『經濟特區』設置問題를 中國 東北3省과의 連繫를 考慮하여 두만강地域 開放問題를 暗中 摸索하여 온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번 『經濟特區』 建設 관련 北韓側의 基本的 意圖는
 - 中·蘇가 接境하는 韓半島 北部의 外廓地域을 建設對象地域으로 選定, 同地域으로부터 流入되는 外部世界の 情報을 遮斷하는 한편,
 - 國際經濟協力機構인 UNDP와의 連繫를 強調, 한국 및 西方圈 經濟進出로 惹起될 수 있는 政治的 惡影響을 稀釋시

- 키는 등 對內 政治的 危險度를 最少化시키며
- 經濟的 效果面에서 自體的으로 開發이 不可能한 두만강流域의 經濟開發을 통해 中·蘇 邊境貿易의 活性化는 물론 西方 資本의 誘致 및 先進技術導入을 摸索해 보자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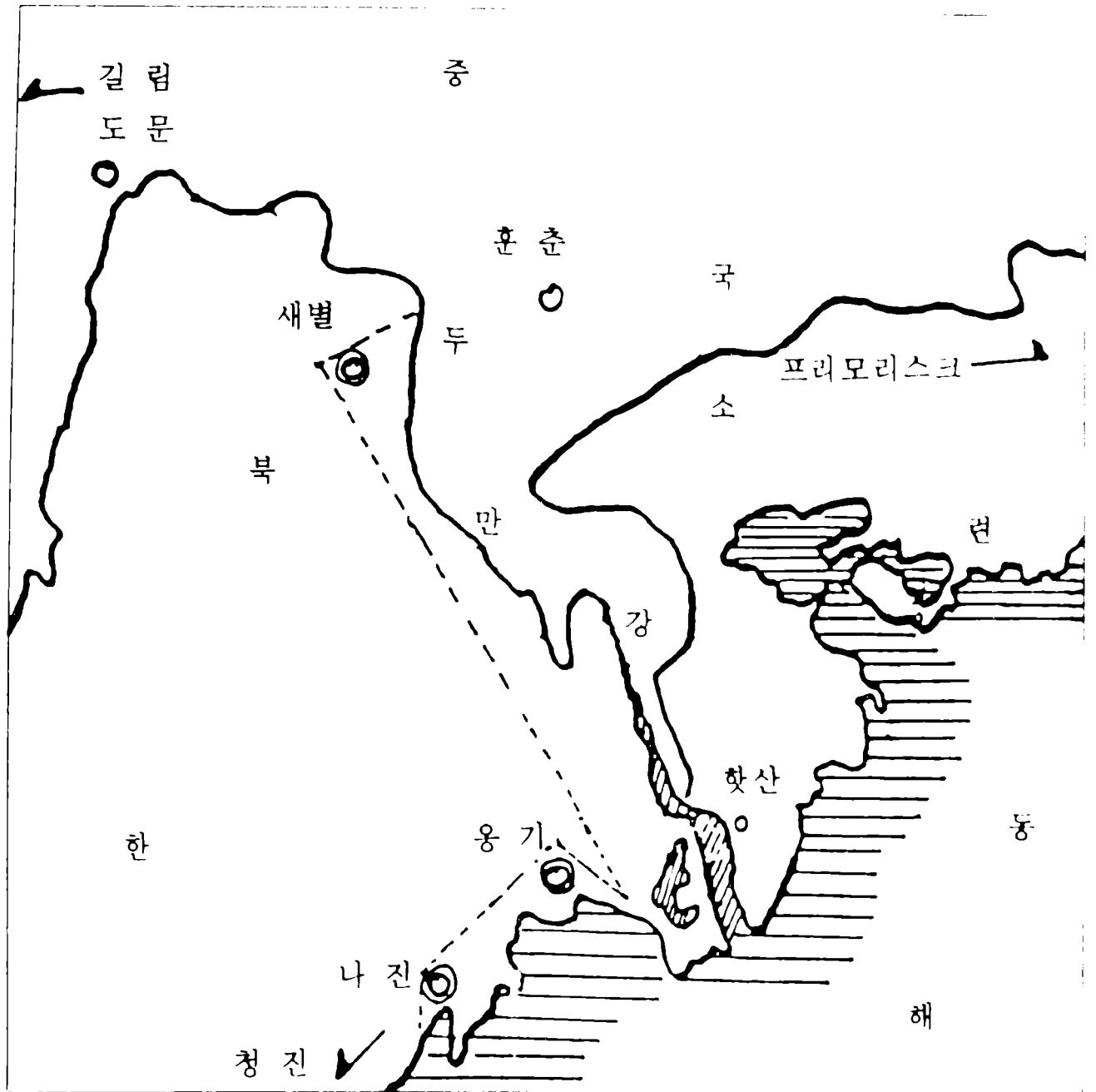
5. 綜合判斷 및 展望

- 北韓은 UNDP가 提議한 1992~96年 期間中 同地域의 「經濟特區」 設置에 대해 對內住民의 統制가 可能的 範圍內에서 積極 推進할 것임.
 - 經濟開放의 정도는 初期에는 對內 經濟改革이 隨伴되지 不爲으로써 그 水準이 制限的 範圍에 머무를 것이나 合理主義的 思考方式의 流入으로 점차 開放範圍가 擴大될 것으로 展望됨.
 - 이와같은 北韓의 對外開放 움직임은 南北韓關係 進展 및 나아가 平和的 統一與件의 造成에 매우 肯定的 要因으로 作用할 것임.
 - 따라서 우리는 北韓의 兩만강流域開發 構想에 대해 我側主導의 統一基盤造成의 次元에서 UNDP 및 관련 國家와의 緊密한 協調를 통해 同 計劃에 積極 參與하기 위한 細部對策 樹立이 必要함.
- ※ 北韓의 兩만강流域 「經濟貿易地區」 設置와 相關한 綿密한 基礎調査 着手가 要望됨.

〈參考 1 : 두만강流域開發 관련, 周邊國들의 立場〉

- 中國側은 落後된 東北3省의 經濟開發을 目的으로 蘇聯, 蒙古, 北韓 等 隣接國家들중 두만강地域의 『經濟特區』化에 가장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음.
 - 中國은 두만강의 運航權 確保를 吉林省, 黑龍江省 等 東北3省의 經濟的 活路를 여는 優先的 課題로 認識
 - 中國은 두만강地域 開發을 前提로 이미 1988年부터 吉林省의 연길, 훈춘地域 開發에 대한 集中 調查 및 研究 推進
- 蘇聯側은 太平洋 經濟進出과 관련, 이미 두만강地域 開發과 는 별도로 自體的인 方案을 摸索하고 있어 比較的 消極的인 立場임.
 - 『블라디보스톡』에 隣接한 『프리모리스크』 地域의 『經濟特區』 設置를 構想하고 이에 대한 妥當性 調查研究를 日本 ECFA(技術諮問協會)에 依賴
- 蒙古側은 經濟開發을 위해서는 內陸과 海洋이 連結되는 輸送 路 確保가 절실하므로 두만강開發 參與에 中國과 같이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음.

<參考 2> 北韓의 經濟特區 建設對象 地域圖



最近 北韓 社會變化 動向

I. 概 況

- 最近 東歐 社會主義 國家의 變革, 中·蘇의 民主化·改革 움직임, 그리고 國際 신데깡트 潮流 등은 北韓의 開放에 대한 외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外압은 北韓의 극심한 經濟沈滯·政治的 失政 등과 맞물려 결국 北韓 內部的 改革을 要求하는 要因으로 작용하고 있음.
- 즉, 北韓社會는 이러한 內·外部의 壓力要因에 따라 서서히 變化兆朕을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그간 北韓 歸順者·訪北者 등의 證言을 통해 感知되고 있고, 특히 最近에는 金正日의 勞動黨 中央委 責任일꾼들과의 談話(5.5)에서도 間接的으로 示唆되고 있어 注目됨.
- 이러한 變化는 情報의 獨占과 劃一化·統制化된 北韓社會의 特性上 黨·政 幹部들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變化』와 一般住民들의 『아래로부터의 變化』로 大別해 볼 수 있는데 이들 上·下層部의 變化가 어떻게 相互 交互作用을 하고 相乘作用을 일으킬 것인가에 따라 향후 北韓 社會變化的 向背가 결정될 것으로 豫見됨.
- 따라서 本 報告書는 이들 上·下層部 變化에 대한 二元的 接近方法을 통해 '89年 『平壤祝典』이후 歸順·訪北者들의 證言

과 金正日의 談話內容을 分析해봄으로써 最近 北韓社會의 變化 動向과 향후 變化 展望을 타진해 보고사 함.

II. 歸順者·訪北者 證言을 통해 본 北韓 社會變化 動向

1. 위로부터의 變化

가. 體制 및 政權批判

- 北韓의 指導層은 一般住民에 비해 相對的으로 外部情報에 접할 수 있는 機會가 많기 때문에 現在 北韓의 實情을 外部世界와 比較할 수 있는 感覺 및 眼目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現在 대부분의 北韓 指導層은 北韓의 經濟的 落後, 지나친 社會統制, 主體思想의 盲點 등에 대해 認知 하고 있으며, 이것은 結局 體制 및 政權에 대한 批判 으로 飛火되고 있는 바, 이러한 現象은 經濟體制改革 建議 및 記念碑的 建設事業에 대한 批判 등으로 나타나 고 있음.

〈事 例〉

- △ 駐蘇 北韓大使館 參事官 등, 體制矛盾 및 失政 非難
- △ 金策工大學長·평성科學院 設計室長 등, 市場經濟體制 導入 建議後 左遷 및 處罰
- △ 黨 幹部·金策工大 教授, 主體思想塔·남포갑문 등 記念碑的 建設事業 批判

나. 反 金父子 動向

- 大部分의 北韓 高位幹部들은 金日成의 抗日 빨치산 經歷, 政權創建 業績 그리고 個人的 親分關係 등으로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은 대단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一部 側近들을 除外하고는 政策路線과 指導者 資質, 그리고 權力다툼 등으로 인해 不滿 및 內部 알력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事 例〉

- △ 姜成山, 金正日과 政策摩擦 辭任
- △ 國家保衛部長 김병하, 金正日과 權力다툼으로 被檢
- △ 朴成哲 아들(師團長), 金正日과 政治的 軋轢
- △ 李根模, 『主席폰드制』 批判으로 解任

다. 體制 危機意識

- 北韓의 指導層은 東歐의 社會主義體制 變革과 內部的 經濟的 窮乏 등으로 몹시 當황하고 있으며, 自信心을 喪失, 北韓體制에 대해 스스로 問題點을 認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海外派遣 豫定者들에게는 「反間諜展覽館」을 見學토록 하여 思想解弛 및 南韓歸順 防止 教育을 시키고 있는 등 體制 危機意識이 露呈되고 있음.

〈事 例〉

- △ 高位人士, 東歐變革에 대한 落膽 및 自信心 喪失
- △ 北韓映畫, 革命精神 喪失·體制崩壞 危險性 警告
- △ 案內員, 經濟沈滯에 대한 危機意識 表出
- △ 國家保衛部, 「反間諜展覽館」 運營·歸順防止 等 教育

라. 反體制 組職 徵候

- 北韓體制에 대한 懷疑 및 金正日에 대한 不滿은 體制危機意識과 겹쳐 차츰 政權不滿勢力 形成으로 發展, 이들을 中心으로한 組織的인 反體制活動 움직임이 感知되고 있음.
- 특히 이들은 軍 및 黨幹部를 중심으로 인텔리·學生組織

과 連繫되어 소그룹을 形成,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築하는 段階로 까지 發展되고 있어 北韓의 潛在的인 體制威脅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事 例〉

△ '84年, 國家政治保衛部長 중심 反政府쿠데타計劃 發覺·肅清

△ '87年, 黨幹部-學生 連繫된 反政府組織 綻露·處刑

△ '88年 6月, 軍部-黨幹部-留學生 連繫된 반체제組織 摘發·處刑

마. 政策變化 徵候

- 最近 北韓當局은 個人住宅 建設을 許容, 이의 販賣는 물론 私有財産도 認定하는 한편, 部分的인 祭禮 및 省墓를 認定하는 등 政策變化 조짐을 보이고 있음.

〈事 例〉

△ 北韓當局의 資材支援下에 住宅建設, 프리미엄 붙여 轉賣 可能

△ 金日成 警護員, 金日成도 祖上에 祭祀 및 省墓

바. 西方製品 選好

- 大部分의 北韓 幹部들은 西方製品을 選好, 양담배를 身分誇示用으로 愛用하는가 하면, 資本主義 製品을 획득하여 사용하거나 南韓歌謠를 愛唱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음.
- 특히 最近에는 平壤市內의 觀光客을 상대로 賣春婦를 고용하는가 하면 煽情的인 場面의 公演을 許容하고 一部 指導層에서는 頹廢쇼를 강요하는 등 資本主義 社會의 副 産物인 頹廢文化를 흡수하는 경향도 露程되고 있음.

〈事 例〉

- △ 모든 黨 幹部, 양담배 愛用·南韓歌謠 愛唱
- △ 東南亞地域 賣春婦 雇傭, 賣春行爲 斡旋
- △ 北韓 왕재산예술단, 蘇聯 TV에서 만나체 公演
- △ 金正日, 『기쁨조』만나체 쇼 公演 指示

사. 指導層 不條理

- 北韓의 中央黨 幹部들은 賂物을 利用, 자녀들을 不止入 學시키는가 하면, 미모의 처녀를 별장에 常住토록하여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일부 特權層의 不條理가 극심, 體制逸脫現象을 보이고 있음.

〈事 例〉

- △ 平壤外國語學園長, 賂物收受·不正入學 嫌疑로 解任
- △ 20歲前後 처녀선발, 黨 政治局員·政務院 部長級이상 幹部對象 술시중

아. 對南認識

- 北韓의 高級幹部들은 外部로부터의 情報入手 채널이 다양, 南韓의 實相에 대해 比較的 소상히 알고 있으나, 下級幹部들은 制限된 情報만 入手, 部分的인 認知程度에 머무르고 있음.
- 그러나 一般的으로 大部分의 幹部들은 南韓의 經濟發展 相, 南北의 극심한 生活隔差 등을 認定하고 있는 바, 과거 一方的이고 不正一邊倒의 對南認識은 많이 퇴색되고 있음.

〈事 例〉

- △ 勞動黨 科學教育部 課長, 南韓의 經濟 發展相 是 認
- △ 北韓軍 將校 및 指導員, 南韓의 發展相 是認·憧憬
- △ 北韓 指導層, 南韓 TV프로 및 聽聞會 消息 精通

2. 아래로부터의 變化

가. 體制 및 政權批判

- 北韓의 一般住民들은 黨·政 幹部들에 비해 外部로부터의 情報가 制度的으로 遮斷되어 있기 때문에 現在 北韓이 처해있는 國際的 狀況, 經濟體制的 問題點, 南北韓間의 生活隔差 등을 크게 認識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最近 制限的이나마 訪北僑胞·招請留學生 등을 통해 外部情報가 部分的으로 流入, 學生·教授 등 인텔리階層을 중심으로 北韓體制에 대한 批判意識이 대두됨에 따라 經濟政策 失政에 대한 投書, 反體制油印物 配布 등을 통해 體制不滿 및 批判行動이 나타나고 있는 趨勢임.

〈事 例〉

- △ 金日成綜合大學生, 經濟改革 建議 投書後 處刑
- △ 金日成綜合大學生, 反體制油印物 제작살포후 被檢·自殺
- △ 김형직師範大學 教員, 所得隔差 非難 叫라 附着後 被檢

나. 反 金父子 動向

- 北韓의 高位幹部들과 마찬가지로 一般住民들 역시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은 대단하나 金正日에 대해서는 不滿 및 批判 輿論이 상당히 비등해 있는 實情임.
- 이러한 金正日에 대한 批判輿論은 經濟的 失政에서 비롯되어 점차 그의 指導者 資質, 偶像化政策 反對로 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事 例〉

- △ 金正일의 經濟政策과 政治能力에 대한 懷疑論 대두
- △ 金日成綜合大學生, 金正일의 經濟政策 失敗 批判 投書後 被檢
- △ 체코 召還留學生, 『偶像崇拜 反對』 피켓示威 被檢

다. 反體制 組織 徵候

- 一般民衆들의 反體制 움직임 역시 上層부와 마찬가지로 體制 및 金正日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自由生活를 體驗하고 召還된 蘇聯·東歐 留學生을 중심으로 全國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히 平北 新義州는 中國과 隣接한 地理的 輿件으로 改

革·開放의 바람을 쉽게 감지할 수 있고, 傳統的인 基督教勢 및 抵抗勢力의 地下組織網 構築 등으로 불만이 팽배, 契機만 주어진다면 暴動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報告되고 있음.

〈事 例〉

- △ 平北 新義州, 基督教中心 祕密地下組織網 構築·暴動可能性
- △ '90年, 蘇聯·東歐 召還留學生 중심 全國的 地下組織 摘發
- △ '85年, 金日成綜合大-東歐留學生 連繫 反政府그룹 組織

라. 意識變化 徵候

- 北韓住民들은 過去에는 勞動黨 入黨이 出世의 尺度, 身分의 象徴이었으나 4~5年前부터는 入黨自體를 중시하지 않고 海外勤務가 可能하거나 物品 및 달러 取得이 용이한 職業이 人氣職種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편 宗教 및 傳統思想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는 北韓當局의 反宗教政策으로 인해 宗教自體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없었으나, 最近에는 訪北 宗教人들을 통해 宗教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變化하고 있으며, 運命哲學 등 傳統思想에 대한 관심도 中國 및 東歐留學生들의 書籍搬入을 통해 점차 高潮되고 있음.

〈事 例〉

- △ 人氣있는 結婚相對者는 政務院 貿易部 職員·外交部 등 外國旅行이나 外製物品 取得可能職種 從事者
- △ “宗教가 迷信이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認識 擴散
- △ 中國·東歐留學生들, 運命哲學 書籍 搬入 流布

마. 自由·開放風潮 蔓延

- 最近 北韓 젊은이들 사이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영화가 流行하는가 하면 팝그룹도 登場, 活動하고 있으며 청춘남녀의 데이트 모습도 目擊되는 등 硬直된 社會 雰圍氣는 점차 緩和되고 있음.
- 그러나 西方製品 및 달러를 지나치게 選好, 처녀들의 경우 윤락행위를 하는가 하면 暗去來도 성행하는 등 自由·開放風潮의 否定的 側面도 노정되고 있음.

〈事 例〉

- △ 사랑주제 노래 『휘파람』·映畫『사랑 사랑 내사랑』 人氣, 『보천보전자악단』팝그룹 登場
- △ 모란봉·대동강 등에서 男女데이트 一般化
- △ 金正日, 一般住民들 『外貨商店』出入禁止 指示

사. 社會逸脫 兆朕

- 最近 北韓全域에서는 극심한 生活苦로 인해 窃盜가 橫行하고 있으며, 일부 特權層과의 生活隔差는 이들에 대한 憎惡心·反撥心으로 飛火되어 각종 犯罪가 頻發하고 있음.
- 또한 個人間的 「顔面」, 金品收受 등에 의한 業務處理 등 不條理 現象이 일반화되어 있고 勞働者들은 勞役忌避 風潮가 蔓延되어 있는 등 社會 全般的으로 逸脫現象이 深化된 傾向임.

〈事 例〉

- △ 北韓全域에 窃盜·소매치기 橫行, 이들을 「生活調節委員會」라고 呼稱
- △ 特權層에 대한 불만광배, 窃盜 등으로 憎惡心 表出
- △ 트럭운전사에 謝禮費 주고 長距離旅行 一般化
- △ 自發的 勤勞意慾 喪失

바. 對南認識

- 北韓住民들은 外部로부터의 情報가 철저히 遮斷, 자연히 南韓에 대한 實情도 알지 못한 편이나, 最近 韓·蘇 修交와 韓國의 對蘇借款 支援 報道, 그리고 蘇聯·東歐留學生들의 召還, 海外同胞들의 訪北에 따른 外部情報 流入

등으로 인해 南韓의 發展相에 대해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는 듯함.

- 특히 海外同胞가 訪北하면 南韓의 親·姻戚 消息 및 南韓 實情에 대해 公公연히 묻는 등 南韓에 대한 관심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高潮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事 例〉

- △ 韓·蘇 修交時 “蘇聯이 南朝鮮에 23億弗에 팔려갔다”는 報道後 오히려 韓國의 經濟發展相 認知
- △ 海外同胞 訪北時 휴대한 南韓商品, 暗市場에서 人氣
- △ 僑胞 訪北時 南韓居住 親·姻戚 消息 및 南韓實情에 대해 問議

3. 留學生들의 認識變化

가. 體制 및 政權批判

- 一般的으로 海外留學生들은 北韓의 閉鎖政策으로 인해 北韓내에서는 體制에 順應해 왔으나 留學 後 外部文物을 접하면서 北韓體制 및 經濟失政에 대해 問題點을 認識하게 됨.
- 이러한 現象은 比較的 자유로운 留學生活 및 동료들간의

對話를 통해 認識을 공유하게 되고, 점차 體制 및 政權에 대한 비판으로 심화되어, 심지어는 南韓歸順 決行으로까지 飛火되기도 함.

〈事 例〉

- △ 蘇聯 오뎃샤大學生, 北韓體制批判 便紙 國家保衛部에 摘發·召還
- △ 모스크바 動力大學生, 北韓 經濟政策 非難後 召還
- △ 蘇聯留學生들, 北韓의 6·25北侵說에 대해 懷疑的 反應

나. 反 金父子 動向

- 北韓의 黨·政 幹部 및 一般住民들이 金正日의 失政에 대해서는 비난하나 金日成에 대한 비난은 自制하는데 반해, 留學生들은 金父子를 공히 「除去되어야 할 人物」로 매도, 非難하는 것이 特徵임.

〈事 例〉

- △ 留學 1~2年生 成績 上位圈, 3~4年生 成績 中·下位圈 下落
- △ 留學生 上級班, 自由生活 만끽 風潮 蔓延

- 北韓의 留學生들은 留學生活中 현지 言論報道를 통해 南韓의 經濟的 發展·政治的 自由 등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으며, 南韓歌謠의 聽取도 즐기는 등 比較的 南韓社會에 대해 肯定的인 性向이 강함.
- 특히 北韓留學生들의 이러한 對南認識은 社會主義 國家의 管制言論의 報道性向에도 불구하고 客觀的인 立場에서 南北韓을 比較·分析, 스스로의 體驗을 통해 到達한 結論이 있는데 注目할 필요가 있음.

〈 事 例 〉

- △ 南韓經濟 發展相·政治的 自由·文藝創作 自由 認知
- △ 北韓留學生 80% 이상, 南韓가요테이프 所持·南韓歌謠 聽取 人氣
- △ 獨逸처럼 南韓主導의 協商 統一 希望

라. 對美認識

- 北韓 留學生들은 留學前에는 北韓의 宣傳에 의해 美國을 원수의 나라로 憎惡했으나, 留學生活을 통해 美國을 自由와 平等이 保障된 나라로 認識, 好感을 갖게 됨.

〈事 例〉

- △ 美國은 民主主義 나라, 自由·平等을 소중히 여기는 國民으로 認識
- △ 北京留學生, 美國·日本사람은 친절하나 오히려 蘇聯·中國사람들이 자기들을 薄待한다고 不平

Ⅲ. 金正日의 談話에서 나타난 北韓 社會變化 徵候

- 北韓은 지난 5月 27日 「中央放送」을 통해, 金正日의 勞動黨 中央委員會 責任일꾼들과의 談話(5. 5) 內容을 發表하였는데, 「人民大衆 중심의 우리 式 社會主義는 必勝不敗이다」 題下의 同 談話는 最近 北韓의 社會變化 徵候를 間接적으로 示唆하고 있어 注目됨.

1. 體制批判 및 反革命勢力 扶植 憂慮

- 北韓은 현재 위로부터는 海外勤務者 및 體制不滿 中堅幹部 등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는 召還留學生 및 인텔리層을 중심으로 體制批判 勢力이 心情的으로 廣範圍하게 擴散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번 金正日의 談話는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侵濕, 反革命分子들의 政權掌握 등을 우려함으로써 內部動搖 및 體制批判 勢力的 實在를 間接적으로 示唆하고 있음.

〈金正日 談話〉

- △ 帝國主義者들이 發展된 資本主義 나라들의 物質的 繁榮이 資本主義 經濟制度의 優越性에 의하여 이룩된 것처럼 떠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일 수 없는 詭辯임.
- △ 勞動階級の 要求를 具現한 社會主義 社會에 대한 領導權을 勞動階級の 黨이 아닌 다른 政黨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社會主義를 拋棄하는 것임.
- △ 社會主義 社會의 本性的 要求를 무시하고 勞動階級の 黨의 領導的 地位와 役割을 弱화시키거나 去勢한다면 反革命分子들이 民心을 誤導하고 政權을 掌握하게 되는 結果를 빚어낼 수 있음.

2. 부르조아 自由化바람 侵濕 警戒

- 현재 北韓에서는 幹部 및 一般住民 公히 西方風物을 選好하는 경향이 만연, 資本主義 製品 및 달러를 取得하기 위한 不正行爲가 橫行하는가 하면 南韓歌謠를 聽取하는 등 外部文物의 流入이 別다른 拒否反應없이 一般化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金正日은 同 談話를 통해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이 思想文化的 浸透를 敢行, 부르조아 自由化 바람을 불어 넣으려 시도하고 있다고 警告함으로써 현재 北韓에서 自由·開放 風潮로 인한 社會逸脫 現象이 深化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음.

〈金正日 談話〉

- △ 帝國主義者들과 反動들이 社會主義 나라들에 대한 思想文化的 浸透策動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條件에서 조금이라도 思想敎育事業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自由化 바람이 들어올 수 있음.
- △ 社會主義 나라에 부르조아 自由化 바람을 불어 넣어 내 부로부터 思想的으로 瓦解시키려는 帝國主義者들의 策動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함.

3. 幹部들의 特權的 施惠 排斥 要求

- 北韓의 主要 幹部들은 地位나 賂物을 이용, 각종 不條理를 恣行하거나 特權意識을 助長, 주민들의 不平對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共產主義가 標榜하는 『階級없는 社會』를 무색케하는 結果를 초래하고 있음.
- 金正日의 이번 談話는 幹部들의 特典·特惠를 排斥하고 清廉 潔白한 生活을 強調함으로써, 最近 北韓 高位幹部들의 特權的 施惠로 인한 住民들의 不滿이 表出되고 있음을 迂迴的으로 示唆하고 있음.

〈金正日 談話〉

- △ 일꾼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健全하고 素朴하게 행동하여야 함.
- △ 일꾼들은 私利를 追求하거나 特典·特惠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清廉潔白하게 生活해야 함.

IV. 分析·評價

1. 最近 北韓의 社會變化 動向 特徵

- 北韓體制 및 政權에 대한 批判은 經濟失政·지나친 統制政策

에 대한 不滿에 비롯하여 점차 金父子 批判으로까지 擴散되고 있으나, 階層別로 多少間의 相異點을 보이고 있는 바,

- 指導層의 경우, 比較的 多樣한 情報 채널로 인해 北韓의 諸般 問題點을 認識하고 있고, 金正日의 政策路線 및 專橫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金日成에 대한 忠誠心은 比較的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 一般住民의 경우, 外部와의 情報交流 統制로 인해 北韓이 처한 現實에 대해 無知, 體制批判 보다는 극심한 生活苦로 經濟失政에 대한 批判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이는 金正日이 政權 前面에 부상한 '70年代 初盤부터 經濟가 나빠졌다고 판단, 金正日의 指導者 資質에 대해 懷疑感을 가지고 있으나, 역시 金日成에 대한 信賴感은 대단하며,
- 留學生의 경우는 海外留學中 知得한 多樣的 情報로 北韓의 現實, 南北韓의 經濟隔差 등을 비교적 所상히 認識, 그간 北韓의 宣傳에 기만당했다는 分위기가 甞배하여, 體制批判과 함께 金父子를 公히 非難하고 있는 점이 特徵임.

北韓社會內的 反體制 組織 徵候는 統制·閉鎖體制的 特性上 여러가지 어려움에도 不拘하고, 召還된 留學生·인텔리 階層을 중심으로 일부 不만을 가진 軍 및 黨 幹部들도 連繫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最近 東歐 共產主義 諸國의 沒落 및 北韓의 악화된 經濟沈滯와 맞물려 著히 可視化되는 趨勢에 있는 것으로 判斷됨.

- 특히 이들은 勢力을 糾合,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築하는 段階로까지 發展하고 있고, 一部地域에서는 契機만 주어진다면 『民衆蜂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 이는 향후 北韓의 政局運營과 관련하여 심각한 體制威脅要因으로 작용할 것임.
- 政策 및 意識辯護 徵候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이 社會政策變化에 다소 硬直된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一般住民들은 意識變化에 있어서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全體的으로 社會雰圍氣는 점차 開放雰圍氣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最近 北韓當局은 個人住宅의 建設 및 轉賣를 허용하는가 하면, 宗教活動 및 省墓도 部分的으로 認定하는 趨勢에 있고, 一般住民들은 勞動黨 入黨을 過去에 비해 별로 重要視하지 않고 服裝도 多樣化되는 등 自由奔放한 意識變化 樣相을 表出하고 있음.
- 自由·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北韓指導層·一般住民·留學生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資本主義 文物이 流行하는 경향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資本主義의 頹廢文化조차 manifestations, 體制弛緩現象의 要因이 되고 있음.
- 그러나 全體的으로 自由·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北韓社會 開放의 가장 큰 動因으로 작용, 결국 社會變化의 起爆劑 役割을 할 것임.
- 社會不條理 및 逸脫現象은 指導層·一般住民 公히 擴散趨勢에

있는데, 指導層의 경우 金品收受 形態로, 一般住民의 경우 竊盜·勞役忌避 등의 형태로 表面化되고 있음.

— 특히 竊盜의 경우 「가진 자」들 것을 가져간다하여 「生活調節委員會」라고 通稱, 竊盜自體에 대한 道德的 不感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 社會低邊에 깔려있는 심각한 體制不信 및 構造的 矛盾을 나타내는 한 斷面이라 할 수 있음.

○ 對南認識은 北韓의 高位層·一般住民·留學生 각각의 독특한 情報入手 채널로 인해 다양한 樣相을 표출하고 있는 바, 北韓의 高位層은 南韓의 政治·經濟發展에 대해 소상히 認知, 南韓을 「警戒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下級幹部 및 一般住民들은 政治·思想教育의 영향으로 인해 南韓을 「美帝의 植民地·打倒對象」으로 認識하고 있는 반면, 留學生들은 海外에서의 體驗을 통해 自由의 소중함을 만끽, 南韓 社會를 「憧憬의 대상」으로 認識하고 있음.

— 그러나 全體적으로 南韓의 經濟發展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認知, 과거 一方的·否定的 對南認識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2. 向後 北韓의 社會變化 展望

○ 北韓은 現在 外部的으로 蘇聯 및 東歐의 民主化·改革趨勢, 國際共產主義 連帶體制的 崩壞, 그리고 內部的으로 中央集中

- 특히 이들은 勢力을 糾合, 全國的인 地下組織網을 構築하는 段階로까지 發展하고 있고, 一部地域에서는 契機만 주어진다면 『民衆蜂起』 可能性도 있는 것으로 推測되는 바, 이는 향후 北韓의 政局運營과 관련하여 심각한 體制威脅要因으로 작용할 것임.
- 政策 및 意識辯護 徵候에 있어서는 北韓指導層이 社會政策變化에 다소 硬直된 立場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一般住民들은 意識變化에 있어서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姿勢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全體적으로 社會雰圍氣는 점차 開放雰圍氣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最近 北韓當局은 個人住宅의 建設 및 轉賣를 허용하는가 하면, 宗教活動 및 省墓도 部分的으로 認定하는 趨勢에 있고, 一般住民들은 勞動黨 入黨을 過去에 비해 별로 重要視하지 않고 服裝도 多樣化되는 등 自由奔放한 意識變化 樣相을 表出하고 있음.
- 自由·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北韓指導層·一般住民·留學生 할 것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資本主義 文物이 流行하는 경향이 一般化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資本主義의 頽廢文化조차 만연, 體制弛緩現象의 要因이 되고 있음.
- 그러나 全體적으로 自由·開放風潮에 대한 選好는 北韓社會 開放의 가장 큰 動因으로 작용, 결국 社會變化의 起爆劑 役割을 할 것임.
- 社會不條理 및 逸脫現象은 指導層·一般住民 公히 擴散趨勢에

있는데, 指導層의 경우 金品收受 形態로, 一般住民의 경우 竊盜·勞役忌避 등의 형태로 表面化되고 있음.

— 특히 竊盜의 경우 「가진 자」들 것을 가져간다하여 「生活調節委員會」라고 通稱, 竊盜自體에 대한 道德的 不感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北韓 社會低邊에 깔려있는 심각한 體制不信 및 構造的 矛盾을 나타내는 한 斷面이라 할 수 있음.

○ 對南認識은 北韓의 高位層·一般住民·留學生 각각의 독특한 情報入手 채널로 인해 다양한 樣相을 表출하고 있는 바, 北韓의 高位層은 南韓의 政治·經濟發展에 대해 소상히 認知, 南韓을 「警戒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下級幹部 및 一般住民들은 政治·思想教育的 영향으로 인해 南韓을 「美帝의 植民地·打倒對象」으로 認識하고 있는 반면, 留學生들은 海外에서의 體驗을 통해 自由의 소중함을 만끽, 南韓 社會를 「憧憬의 대상」으로 認識하고 있음.

— 그러나 全體적으로 南韓의 經濟發展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認知, 과거 一方的·否定的 對南認識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2. 向後 北韓의 社會變化 展望

○ 北韓은 現在 外部的으로 蘇聯 및 東歐의 民主化·改革趨勢, 國際共產主義 連帶體制的 崩壞, 그리고 內部的으로 中央集中

的 計劃經濟의 한계로 인한 經濟沈滯, 住民들의 自由에 대한 期待 欲求 등 改革·開放에 대한 內·外壓에 直面, 어떠한 形態로든 變化를 試圖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처해 있음.

- 그러나 北韓 指導層은 東歐 社會主義 諸國의 沒洛과 같은 前轍을 밟지 않기 위해 國內外 情勢에 적절히 대처하면서도 變化에 따른 충격을 最小化하기 위해 『위로부터의 改革』, 즉 『統制된 變化』만을 시도하고 있음.
- 한편 最近 北韓住民들은 制限的이나마 訪北僑胞를 통한 西方 文物의 流入, 韓·蘇 修交와 韓國의 對蘇借款 支援報道에 따른 韓國의 政治·經濟 發展相 認知, 그리고 무엇보다도 全國 各界各層에 分散配置된 召還 留學生들을 통한 外部情報의 知得 등으로 北韓의 政治·經濟的 問題點을 비로소 自覺하기 시작, 『아래로부터의 變化』 欲求도 서서히 胎動하고 있음.
- 특히 海外勤務者 및 留學生·教授 등 知識層은 北韓의 閉鎖體制 및 統制·獨裁政治에 염증을 느낀 나머지, 反政府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이들을 중심으로 反體制 組織 徵候도 보이고 있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도 感知되고 있음.
- 어쨌든 北韓 指導層의 『意圖된 變化』이든 一般住民들의 『자연스런 變化』이든 지금 北韓社會는 變化局面에 접해 있으며, 이러한 上·下層部의 變化움직임은 서로 어떻게 적절히 調和를 이루면서 外部의 改革·開放 바람에 대처해 나가느냐가 北韓 社會變化 向背의 중요한 關鍵임.

- 즉, 一般住民들의 「밑으로부터의 改革」 欲求가 上層部の 「統制된 變化」 意圖를 상회하려 할 경우, 北韓 指導層은 體制威脅要因으로 간주, 보다 硬直된 姿勢를 堅持할 것이며,
 - 반대로 北韓指導層의 改革意志가 一般住民들의 期待欲求에 현저히 미흡할 경우, 教授·學生 등 인텔리층을 중심으로 한 體制不滿勢力은 보다 廣範圍하게 확산될 것임.
- 따라서 이상의 內容을 綜合해 볼 때, 北韓指導層은 内外의 狀況變化에 적절히 對應하면서도 주민들의 政治·思想 教育을 강화, 北韓社會를 당분간 그들의 「意圖된 改革」에 의해 主導해 나가려 할 것으로 展望됨.
- 다만 모택동의 死後 中國에서의 變化와 마찬가지로 金日成의 死後에도 指導勢力間的 알력으로 인한 權力漏水現象 過程에서 流入될 각종 情報 및 西方文物로 인해 北韓 住民들이 「世界속의 北韓」 現實을 직접 確認, 그간의 北韓 支配勢力에 대한 믿음이 不信으로 擴散될 경우, 反體制 및 不滿勢力과 連繫되어 보다 急進的인 變化, 즉 「革命」의 段階로까지 發展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음.

〈蘇聯事態〉 관련 北韓言論의 報道

〈소련 사태 관련〉

1. 問題의 提起

- 北韓은 이번 蘇聯事態와 관련하여 고르바초프 失脚事實을 異例적으로 신속히 報道하는가 하면, 『로동신문』 論說 등을 통해 對外政策의 強硬旋回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注目됨.
- 이러한 北韓言論의 報道態度는 勞動黨의 方針이나 政策을 一方的으로 支持·宣傳하여 온 北韓言論의 屬性에 비추어 볼때, 事前 北韓指導部의 세심한 政策的 配慮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分析해 보는 것은 향후 北韓의 政策方向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試金石이 될 수 있을 것임.

2. 北韓言論의 報道態度 推移

- 『3日天下』로 끝난 蘇聯事態와 관련하여 北韓言論의 報道內容은 量的·質的인 面에서 時時刻刻 報道態度를 달리하고 있는바, 그 推移는 『迅速報道』→『拔萃·詳細報道』→『縮小報道』→『報道統制』 등의 變化樣相을 보이고 있음.

첫째날 : 8. 19

迅速報道

* 고르바초프 失脚 첫 報道(中·平放, 19:00)

* 蘇聯 非常事態委 呼訴文 發表(中放, 21:15)

- 北韓은 고르바초프의 失脚消息을 타스通信의 첫 打電(8. 19, 12:18, 韓國時間) 이후 7時間만인 이날 下午 7時 中央 및 平壤放送의 非正規 뉴스報道를 통해 異例적으로 신속히 報道 (北韓의 저녁뉴스 報道는 6時, 8時, 9時, 10時, 12時에 있고, 7時, 11時は 없음)
- 1989. 6. 4 中國 天安門 統血事態의 경우, 事件發生 7日만인 6. 11 『로동신문』 첫 反應
- 1989. 12. 22. 루마니아 차우체스쿠 體制崩壞 경우, 事件發生 5日만인 12. 27 外交部 代辯人 聲明 發表(中央放送)

둘째날 : 8. 20

拔萃·詳細報道

- * 蘇聯 國家非常事態委 決定書 1號 發表(中·平放, 10:00)
- * 蘇聯 國家非常事態委 決定書 2號 發表(中·平放, 10:05)
- * 모스크바市 일원 非常事態 實施 政令 發表
(中·平放, 10:07)
- * 全聯盟 戰爭老兵·勞動功勞者 및 蘇聯軍隊 老兵理事會,
非常事態 支持 呼訴文 發表 (中·平放, 10:09)
- 北韓의 報道內容은 市場經濟의 無秩序·混亂 등을 強調한 非常事態委의 『呼訴文』·『決定書』 등만을 拔萃, 그 全文을 상세히 報道한 反面, 市民들의 反쿠데타 움직임 등에 대한 報道는 철저히 外面함으로써 蘇聯의 保守回歸 움직임에 間接적인 支持表明 印象

- * 蘇聯 內務相, 러시아 內務相의 軍官學生 派遣命令 取消
(平放, 17:08)
- * 모스크바市 衛戍司令官, 모스크바市에 通行禁止 實施通報
(平放, 17:08)
- 쿠데타 指導部에 대한 世界 各國의 非難輿論, 蘇聯 市民들의 完강한 抵抗, 쿠데타指導部 內部的 葛藤深化 등으로 쿠데타 成功 可能性이 稀薄해지자 北韓言論의 報道態度는 전날의 全文報道와는 달리 지극히 簡略한 縮小報道로 旋回

- * 고르바초프 復歸聲明 (中·平放, 12:20)
- 쿠데타가 失敗로 끝나고 고르바초프의 復歸가 確實해지자 고르바초프 復歸에 대한 簡略한 事實報道 以後 一切의 報道를 統制
 - 다만 北韓 『中央通信』은 8.22 午後 對外窗口를 통해 金永南 外交部長이 고르바초프 支持를 表明했다고 報道(國內報道는 一切 없음)

3. 論說에서 나타난 強硬旋回 움직임

- 北韓은 8. 19 蘇聯 共産黨 強硬保守勢力에 의한 軍事쿠데타가 發生하자 이를 北韓情勢의 유리한 局面으로 간주, 8. 20-21 兩日間에 걸쳐 『로동신문』 論說·論評을 통해 強硬度높은 論調

를 구사, 對外政策의 強硬旋回 조짐을 보인 바 있음.

“自主의 기치따라 社會主義 길로
나가는 것은 歷史의 흐름이다.”

8. 20 「로동신문」 論說

- 北韓은 고르바초프 失脚 하루만인 이날 「로동신문」 2면에 걸쳐 掲載한 論說에서 社會主義의 必勝을 強調하고 資本主義 社會의 多黨制를 非難하는 가운데, “北韓은 社會主義 信念에 따라 계속 鬪爭해 나갈 것”이라고 闡明
- 특히 同 論說은 “歷史發展 法則의 흐름에 逆行할 때는 그 누구든 破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強調함으로써 고르바초프 失脚에 대한 北韓 指導層의 鼓舞된 「心中」을 含蓄性 있게 示唆

8. 21 「로동신문」 論評

“危險한 共謀結託”

- 北韓의 核開發과 關聯한 韓-美-日의 共同對應方案을 非難한 同 論說을 통해 「日本反動」이라는 用語를 10차례 구사, 지난해 北韓의 對日 修交協商 이래 自製해 온 對日 報道態度와 對照를 이룸으로써 對外政策의 強硬旋回 可能性을 示唆

4. 分析·評價

- 北韓은 쿠데타 初期 蘇聯軍部 強硬派의 執權이 北韓의 改革·開放에 대한 國際的인 壓力과 經濟失政으로 인한 住民들의 不滿高潮 등 現在 北韓이 안고 있는 難題들을 解決하는데

보다 유리한 局面이 造成될 것이란 判斷下에 異例的으로 신속히 報道하는 한편, 쿠데타 指導部の 『決定書』·『呼訴文』만을 拔萃하여 그 全文을 상세히 報道함으로써 事實上 쿠데타 指導部를 間接的으로 支持하는 立場을 취하였음.

○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쿠데타 指導部の 瓦解兆朕이 보이면서 事態가 反轉되자 報道內容을 지극히 簡略한 事實報道에 局限, 고르바초프의 復歸聲明을 끝으로 國內에서의 蘇聯事態 關聯報道를 一切 統制하고 있는 바, 이는 事態反轉에 따른 北韓指導部の 심한 『낭패감』을 反證하고 있음.

○ 結局 蘇聯事態 初期 北韓이 보여주었던 對外政策 強硬旋回 可能性은 일단 『原因提供 一掃』와 함께 사라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南北高位級會談』 등 諸般 南北關係는 一定期間의 『調整期』를 거친 후에야 正常化될 것으로 보임.

* 8. 23 『南北高位級會談』 責任連絡官 接觸時 第 4次 會談을
10. 22-25 平壤에서 開催키로 合意

○ 이와함께 北韓은 向後 豫見된 蘇聯에서의 保守派 沒落과 改革派 得勢로 인해 보다 팽배해 질 體制危機意識을 解消하기 위해 各種 言論媒體를 動員, 資本主義體制的 否定的 側面을 強調하면서, 住民들의 思想教育 強化에 더욱 注力할 것으로 보임.

北韓과 <汎民族大會>

1. '90年 第1次 汎民族大會

<大會 概要>

- '90. 8. 13-16間 白頭山(開幕式, 祖國統一大行進 發隊式) 平壤(研究討論會, 連歡모임, 開幕式), 板門店北側地域(本大會 및 統一文化祭) 등에서 進行
- 北韓側 600名, 親北 海外僑胞 400餘名 등 1,000餘名 參加

<採擇 文件>

- 「大會決議文」, 「海內外 同胞에게 보내는 呼訴文」, 「北韓 當局에 보내는 편지」, 「美國 大統領에게 보내는 편지」, 「UN 事務總長에게 보내는 편지」 등

<主要 內容>

- 聯邦制 統一實現
- 北南間 不可侵宣言, 南朝鮮駐屯美軍 撤收, 3者會談 또는 朝·美 2者會談 實現, 朝·美間 平和協定 締結
- 北南 軍縮協商, 北南 連席會議 開催
- 南朝鮮의 UN 單獨加入 反對, 北南 UN 1議席 共同加入
- 콘크리트障壁 除去, 國家保安法 廢止, 拘束者 釋放, T'S 中止
- 南朝鮮의 民族大交流 提義는 詐欺劇
- 南朝鮮 파쇼軍事政權 打倒鬭爭 展開
- 北南間의 모든 問題는 美國이 根本原因 등

※ “汎民族大會 共同運營委”는 大會 終了後(8. 19) 平壤에서 黃晝暎의 提義에 따라 南北韓·海外代表로 “祖國統一汎民族聯合”을 組織할 것을 決議

※ 第1次 汎民族大會의 成立課程

○ '99. 8. 8 : 서울에서 『韓半島 平和와 統一을 위한 世界大會 및 汎民族大會 推進本部』 發足

※ 文益煥 등 在野人士 1,000餘名 參加

○ 8. 28 : 同 『推進本部』, '88. 9. 17-10. 2 汎民族大會 開催 決定

※ 祖平統, 汎民族大會開催 支持 및 參加 意思 表明

○ '89. 1. 21 : 同 『推進本部』 中心으로 全民聯(全國民族民主運動聯合) 結成

○ '90. 6-8 : 汎民族大會 北側本部, 南側本部, 海外本部 : 베를린, 서울, 平壤에서 汎民族大會 開催를 위한 豫備會談 3回 開催

2. 祖國統一汎民族聯合(汎民聯)의 結成과 性格

< 結 成 >

○ '90. 8의 第1次 平壤 汎民族大會 決定에 따라 同年 11. 9-21間 開催된 “베를린 3者會談”에서 『汎民聯』 結成 및 事業 計劃에 合意

※ 위 3者會談 參加者

- 南側：이해학(全民聯 祖國統一委員長), 조성우(同國際協力委員長), 조용술(同 共同議長)
- 北側：전금철(祖平統 副委員長)
- 海外：황석영(獨), 정규명(獨), 임민식(덴마크), 이행우(美), 김현한(美)

○ 組織 및 結成時期

— 組織

- 共同議長 3名(南·北·海外 各 1名)
- 副議長 36名(南·北·海外 各 12名)
- 中央委員會委員 120名(南·北·海外 各 40名)
- 베를린에 共同事務局 設置

※ 細部組織 別表 參照

— 結成時期

- 海外本部는 '90年末까지
- 南·北韓 本部는 '91. 1月末까지

○ 事業計劃

- '91. 8. 15 前後 1周日間 서울에서 第2次汎民族大會 開催
- 6. 25 前後 아시아·韓半島 非核地帶化를 위한 國際會議을 서울에서 開催
- 南·北·海外 文化宣傳隊를 構成(準備委員會：黃哲暎)
- 勞動者·農民·女性·作家·言論·學生의 分野別 連帶推進 等

※ 汎民聯의 組織

祖國統一汎民族聯合

<p>北側本部 (’91. 1. 25)</p>	<p>南側本部 準備委 (’91. 1. 23)</p>	<p>海外本部 (’90. 12. 16)</p>	<p>共同事務局 (’91. 1. 17)</p>
<p>議長： 尹基福 副議長： 白仁俊 등(12名) 中央委員： 康英變 등(40名)</p>	<p>準備委員會： 文益煥 實行委員長： 李昌馥 準備委員： 李海學 등(100名) 實行委員： 金希宣 등(20名)</p>	<p>議長： 尹伊桑 副議長： 정규명 등(12名) 中央委員： 이영준 등(40名)</p>	<p>實務總長： 林民植 代辯人： 黃皙暎</p>

※ 其他 地域本部：유럽地域本部(’90. 9. 15), 日本地域本部(’90. 10. 7), 北美州地域本部(’90. 12. 1)

<性 格>

○ 組織目標

- “7. 4 南北共同聲명의 3大 原則과 汎民族大會에서의 決議를 基本綱領으로 自主的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모든 사람들의 利害와 要求를 代辦하는 全民族的인 統一運動機構” 標榜
- “朝鮮(韓) 半島에서 外國軍撤收, 核武器撤去, 軍備·武力減縮, 休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代替, 國家保安法 撤廢, UN 分離加入 反對와 不可侵宣言을 강력하게 促求”

※ ’90. 11 汎民聯 結成時 發表된 『共同宣言文』 內容

○ 人的構成

- 北側本部：議長團(13名中 12名) 및 中央委員(40名中 25名)의 대부분이 黨·政 高位幹部
- 海外本部：尹伊桑 議長, 林民植 事務總長 등 構成員 全員이 北韓을 수시 出入하면서 北韓統一路線 支持 및 反韓·反美活動 展開
- 南側本部 準備委：文益煥 등 構成員 거의 全員이 反政府·反體制 人士

○ 따라서 「汎民聯」은

- 北韓 主導下에 철저한 親北·反韓人物들로 構成되어
- 北韓의 統一 및 對南路線을 支持·同調하는 北韓 統一戰線 戰術의 前衛組織體임.

III. 汎民族大會와 “北韓”, “全民聯”, “汎民聯”

<“汎民聯”에 대한 認識>

區 分	認 識
北 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民族大團結으로써 祖國統一을 達成하려는 全民族的인 統一愛國勢力的 聯合體 ○ 7. 4 南北共同聲明의 祖國統一 3大原則을 支持·贊同하는 團體와 人士들의 統一運動機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聯北側本部 聲明('91. 2. 4) ○ 汎民聯이 目標로 하는 美軍撤收, 核武器撤去, 武力減縮, 不可侵宣言採擇, UN 單獨加入反對, 平和協定 締結, 國家保安法廢止 등은 統一의 必須的 要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汎民聯 關係者 裁判관련 全今哲(祖平統副委員長)의 “證言文” ('91. 4. 18, 中放)
汎民聯 南 測 本 部 準備委 (全民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과 北·海外의 모든 統一勢力이 思想·理念·政見을 超越하여 參加하는 全民族的 統一戰線體 ○ 美帝와 現과소政權의 分斷固着化 政策을 反對하는 民衆主導의 反外勢, 反獨裁 統一運動機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汎民聯南測本部 準備委(全民聯) 發表 “汎民聯의 性格과 意義”('91. 1. 23) ○ '90. 11 베를린 3者會談의 “決定事項”이 汎民聯 南側本部 準備委의 決定事項과 一致함을 確認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를린會談 終了後 南側本部準備委 聲明('90. 11. 23)
汎 民 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2. 汎民聯의 結成과 性格> 參照

〈“汎民族大會”에 대한 認識〉

區 分	認 識
北 韓	<p>○8. 15 汎民族大會는 北과 南, 海外의 各界各層 同胞들의 意思를 代辨하는 民族民主團體들과 人士들의 歷史的인 對話의 마당이며 民族的 和合과 統一協商의 新성한 廣場임.</p> <p>○祖國統一을 위하여 鬪爭하는 海內外 모든 團體들과 組織들은 서로 聯合하여 全民族的인 統一戰線을 形成하고 聯邦國家 創立方案을 철저히 固守해야 함.</p> <p>※ '90年 汎民族大會 閉幕 관련 로동신문 論評('90. 8. 18, “은 民族이 떨어져나서 統一偉業 이룩하자”)</p>
汎民聯 南 側 本 部 準備委 (全民聯)	<p>○汎民族大會 召集運動은 海內外 統一力量이 連帶鬪爭의 소 중함과 威力을 직접 體驗하는 契機가 되었으며, 海內外 統一力量은 이 大會를 통하여 統一運動을 共同으로 展開하는 것을 摸索하기 위한 基本立場을 일치시켜 하나의 組織을 結成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게 되었음.</p> <p>※ 全民聯의 汎民聯南側本部 準備委 發表 “汎民聯의 性格과 意義” ('91. 1. 23)</p> <p>○'90. 8. 15 板門店 汎民族大會의 決議內容들을 支持함.</p> <p>※ 汎民族大會 南側本部(全民聯) 決議文('90. 8. 17)</p>
汎 民 聯	<p>○'91年代 統一의 길을 共同으로 確認하고 民族共同의 統一擔保를 確定하며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轉機를 얻어 나아가려는 統一大祝典임.</p> <p>※ 汎民聯共同議長 겸 海外本部議長 尹伊桑 談話 ('91. 7. 25 中放)</p>

IV. '91年 第2次 汎民族大會와 北韓

北韓은 금년들어 金日成 新年辭에서 거듭 提示된 “各界各層의 共同戰線 形成”,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 方針에 따라 對南攪亂戰術을 구사해 오고 있는 바

- 當局 및 非當局間 對話의 竝行推進
- 汎民族大會와 青年學生統一大祝典 開催
- 訪北 拘束者에 慰問團 派遣 등을

主要素材로 持續的·多角的인 對南攻勢를 展開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음.

<當局 및 非當局間 對話의 竝行推進>

- 北韓은 南北韓 當局間的 第4次 南北高位級會談(2.25 豫定)을 T/S '91 訓練을 구실로 一方的으로 延期시킨(2. 18) 이후 우리側의 再開提議(4. 8)도 不當한 前提條件을 내세워 拒否(4. 10)하였으나, 그들의 對美·日關係 改善, UN加入 등 國際的 輿件造成을 위해 對話再開를 要請하여 왔음(7. 11)
- 그러나 우리社會의 一部 在野 및 運動圈 등 非當局을 對象으로 한 對話攻勢는 持續的으로 展開, 社會混亂을 企圖하였음.
 - 1. 8: 民族統一協商會議 北側本部 造成(議長: 朴成哲)
및 會議召集 促求 對南便紙 採擇
 - --2. 8: 勞動·社民·青友黨→平民·民主·民衆黨代表 平壤召集

- 3. 7 : 職總·農勤盟·學生委→全勞協·全農·全大協에 對話提議
- 3. 20 : 文藝總·教職盟·女盟→民藝總·全教祖·大韓婦人會 對話提議
- 5. 29 : 南北政治人·學者·言論人 大討論會開催 提議 등

<第2次 汎民族大會와 青年學生 統一大祝典>

○ 北韓은 金년 1. 25 “汎民聯北側本部” (議長:尹基福 祖平統副委員長)를 結成한 다음

- 4. 21 尹基福 名義의 南側本部結成準備委 앞 便紙(放送公開)를 통해 南側本부의 조속한 結成을 促求하고, 海外本부와 함께 5月 한달을 “南側本部結成 支援鬭爭期間”으로 設定하였음을 通報하였음.
- 6. 29-31에는 全今哲(北側本部 副議長)을 베를린會議에 參加시켜 “第2次汎民族大會 計劃” 및 汎民聯의 “綱領”, “規約” 등을 決定케 하였음.

※ 同 會議에는 海外本部·北側만 參加, 南側은 全大協所屬 男女學生 2名이 參觀

※ 同 베를린會談 決定 第2次汎民族大會 概要

大會名	『祖國의 平和와 統一을 위한 第2次 汎民族大會』
期間·場所	1991. 8. 12-18, 서울, 本大會는 8. 15
參加	北·海外 各各 代表 300名, 參加人 700名
行 事	討論會, 文化祭 ※ 大會前 北側本部: 白頭山→板門店 統一大行進 海外本部: 7. 15-8. 15間 地域別로 “非核平和·祖國統一을 위한 共同鬭爭” 進行
其 他	○大會期間中 全大協 發起 統一方案 協議 ○大會期間中 南北·海外青年學生 統一大祝典 進行

※ 同 베를린會談 決定 汎民聯의 綱領

- ① 自主, 平和統一, 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大原則을 견지하고 聯邦制 形態의 統一國家를 創立
- ② 祖國疆土에서 美軍과 核武器를 撤收시키고 朝鮮半島를 非核 平和地帶化
- ③ 思想과 制度, 政見과 信仰의 차이에 관계없이 各界 同胞들의 民族的 團合을 圖謀하고 汎民聯 組織을 強化하며, '90 年代에 統一하기 위한 鬪爭을 舉族的 愛國運動으로 擴大 發展

※ 同 베를린會談 採擇文件 要旨

- 8月の 서울汎民族大會는 우리의 統一進軍에 있어서 중요한 里程碑가 될 것임.
- 分裂主義 勢力들이 말로는 統一을 떠들면서도 統一運動에 앞장선 수많은 愛國人士들을 철창속에 가두어 놓고 있는 狀況임.
- 南쪽 當局이 진정으로 民族和解와 祖國統一의 뜻을 갖고 있다면 우선 國家保安法을 撤廢하고 철창속에 갇혀있는 統一人士들을 지체없이 釋放하여야 함.
-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을 聲援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執權勢力의 反統一的 策動을 糾彈하는 엄한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밖에 없는 現實을 直視하며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어 統一의 그날까지 進軍할 것임.

- 北韓은 同 베를린準備會議 以後 7月 들어 이른바 “第2次 汎民族大會”를 내세운 對南宣傳攻勢를 대대적으로 展開하기 시작하였음.
- 7. 10 서울 準備會議(7. 18) 參加代表團(5名) 名單을 發表 하고, 같은날 尹基福이 崔浩中 副總理 앞 電通文과 談話를 통해 北側 代表團의 서울 派遣 許容(7. 17)과 第2次 汎民族大會에 南側 當局의 呼應을 促求하였음.
- 7. 11 우리側은 “[汎民聯 南側本部 結成準備委]가 國民的 代表性이 없을 뿐 아니라, 不法團體 嫌疑로 裁判에 繫留中 이므로 이들 團體 主管行事は 許容할 수 없고 南北間의 共同行事は 南北間의 合意를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內容의 回信電通文을 보냈음.
- 한편, 우리측은 7. 12 盧大統領이 “民族共同體 回復”을 위한 對北提義를 한데 이어 7. 15 崔副總理도 금년의 8. 15 46週年을 契機로 共同 慶祝行事 등 [8. 15 統一大行進]을 南北當局·民間團體가 共同으로 進行할 것을 提議하였음.
- ※ 大統領의 提議 : 7. 12 第5期 「民主平統」 出帆式 開會辭
- 그러나 北韓은 우리측의 위 두가지 提議를 全面的으로 拒否, 非難하고 나섰는 바
 - 盧大統領의 7. 12 提義에 대해서는 7. 14 로동신문 論評(“分裂主義者의 고루한 統一空談”)을 통하여 신랄히 非難하고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開催 提議로 맞섰음(7. 14 朴成哲 同議長 談話)

- 崔副總理의 7. 15 提義에 대해서도 7. 16 尹基福 祖平統 副委員長 名義의 談話로 일단 拒否한 다음 汎民族大會 중심의 逆提義를 내놓았음.

※ 尹基福 談話要旨

- 汎民族大會와 青年學生統一大祝典에 南韓의 人士들 參與, 南韓當局은 위 두 行事 保障
- 汎民族大會, 青年學生統一祝典에 汎民聯 以後 團體 參與
- 南北·海外側의 準備會議를 7. 25 서울에서 開催하고 同會議 開催前까지 汎民聯·全大協 關係者 釋放

- 이에 대해 우리측은 7. 19 當局과 各界各層 社會團體(88個)가 참여한 『8. 15 統一大行進 行事準備委』(委員長: 金昶植 民統議長)를 構成하고 板門店에서 8. 15 統一大行進 準備會議를 開催하자고 北側에 提議하였음(7. 20, 7. 23 對南 電 通文 2回)

- 그러나 北韓은 7. 16 尹基福의 逆提議 이후 7月末 現在까지 그들의 既存立場을 固守한 채 연일 報道媒體, 對南宣傳機構인 祖平統, 祖戰 및 汎民聯 北側本부의 聲明, 談話, 抗議文 등을 통해 集中的인 對南誹謗과 함께 對南 統一熱氣의 擴散을 企圖하고 있음.

- ※ 祖平統 聲明(7. 22), 祖戰 非常擴大會議 聲明(7. 25), 海外本部 議長 尹伊桑 談話(7. 25), 汎民聯 北側本部 抗議文(7. 26) 등

- 또한 北韓이 현재 第2次 汎民族大會와 함께 浮刻시키고 있는 “青年學生統一大祝典”은
 - 금년 4. 16 全大協이 8. 15를 契機로 南北·海外靑少年學生들이 서울에 모여 大祝祭를 갖자고 提議한 것을
 - 5. 19 北韓의 學生委員會가 支持聲明을 發表하고 7. 7 서울에서 實務會談을 開催하고자 提議(7. 3)함으로써 發端된 것임.
- 以後 南北韓·海外學生代表 6名은 7. 24 베를린에서 統一大祝典 準備會議를 開催하고 同行事에 관한 合議文, 共同聲明, 呼訴文 등을 發表하였음.

※ 行事 관련 合議事項

大會名	『統一方案 合意와 祖國의 平和·民族大團結을 위한 北南·海外靑年學生 統一大祝典』
期間·場所	'91. 8. 14-16, 서울 '91 汎民族大會場
參加	北·南·海外에서 각각 代表 150名, 參觀人 350名
討議主題	○統一方案에 대한 立場 發表 ○朝鮮半島의 政治·軍事的 緊張緩和를 위한 當面課題 등 4個項
行事	○林秀卿컵 體育大會(축구, 줄다리기) ○노래한마당, 國土縱斷大行進

※ 共同聲明

- “朝鮮半島를 平和非核地帶로 만들고 南朝鮮의 美軍과 核武器 撤收를 위해 鬭爭” 등 8個項

<訪北拘束者에 慰問團 派遣 提議>

- 北韓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들고 나온 文益煥·林秀卿 등 訪北拘束者에 대한 慰問團 派遣提議는
 - 6. 30 “林秀卿釋放鬭爭朝鮮委”, “文益煥救援對策委” 聯合會議의 決定事項으로
 - 위 두 委員會가 7. 19 우리측 統一院·法務部長官 앞으로 7. 25(林秀卿)와 8. 10(文益煥)에 각각 慰問團을 派遣하겠다는 電通文을 보내음으로써 비롯된 것임.
- ※ 林秀卿釋放鬭爭朝鮮委 : '89. 9. 30 結成(委員長: 呂燕九)
文益煥救援鬭爭委 : '89. 10. 12 結成(委員長: 鄭浚基)
- 北韓의 이같은 慰問團 派遣提議는 일종의 宣傳놀음으로 拘束者問題를 浮刻시켜 우리측을 反民族·反統一集團으로 罵倒하려는 術策에 불과한 것임.
- ※ 北韓은 林秀卿 慰問團(朝鮮學生委員長 최현덕 등 20名, 記者 10名)의 板門店 通過가 拒否되자 7. 31에 再派遣하겠다고 通報(7. 27)
- ※ 北韓은 7月 들어 林秀卿 釋放要求 學生集會 및 林秀卿 컵 蹴球大會出戰 選手團選拔 豫選戰을 北韓 全域에서 開催中
- 요컨대 최근 “汎民族大會”와 “8. 15 統一大行進” 提議에 대한 北韓의 主張 및 對南誹謗의 要旨는 다음과 같음.

- 『汎民聯』은 反統一 勢力을 排除하고 海內外 各界人士가 망라된 全民族的인 統一機構
- 『汎民族大會』는 全民族의 순수한 統一協商의 마당
- 南側 當局의 『8. 15 統一大行進』 提議는 汎民族大會와 青年學生統一大祝典을 破綻 沮止하려는 術策
- 南側 軍事과쇼集團의 『8. 15 統一大行進』 提議는 民衆의 統一熱氣와 政治的 危機를 가로막으려는 더러운 欺瞞術策
- 南側의 汎民聯, 全大協이 除外된 統一大行進 行事準備委는 傀儡御用團體
- 汎民族大會, 青年學生統一大祝典은 기필코 開催될 것이며, 南側의 其他 團體·人士는 名譽손님으로 參加
- 平壤을 다녀간 愛國統一人士를 拘束하고 그들을 慰問하싯다는 提議를 가로막는 것은 分裂主義的인 犯罪行爲
- 南側 과쇼當局은 反統一·反對話·反民族的인 分裂主義 集團으로 打倒의 對象
- 汎民族大會를 가로막는 勢力은 어느 누구든 民族反逆者, 反統一主義者이며 美帝의 앞잡이
- 南側 軍事과쇼當局은 訪北拘束者, 愛國統一人士를 釋放하고 國家保安法을 撤廢

『汎民族大會』와 北韓의 意圖

- 北韓이 汎民族大會에 執着하는 理由
 - 北韓은 汎民族大會를 “統一을 위한 全民族의 歷史的大잔치”라고 宣傳하고 있으나
 - 同大會는 基本的으로 北韓이 分斷 以後 그동안 일관되게 主張해 온 對南攪亂性 群衆集會의 일종으로
 - 우리 社會內의 一部 在野 및 運動圈을 鼓舞·煽動함으로써 社會混亂과 國論分列을 助長, 이를 反政府鬭爭으로 連繫시키려는 統一戰線戰術(對南顛覆戰術)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임.
- ※ 南北朝鮮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談('48. 4), 南北政治 協商會議('73. 4), 大民族會議('73. 6), 南北 100人 聯合會議('82. 2), 南北聯席會議('88. 1), 南北政治協商會議('89. 1), 民族統一協商會議('89. 9), 南北當局·政黨 首腦政治協商會議('91. 1) 등과 同一 脈絡
- 동시에 北韓은 同大會를 통해 北韓 住民을 對象으로 대대적인 統一熱氣를 擴散시킴으로써, 최근 內外情勢의 變化에 對處, 體制維持를 위한 對內 結束에 利用하고 있음.

4. 『統一大行進』과 『汎民族大會』

- 우리측의 『汎民族大會』 提議는 南北韓 當局의 周旋과 支援·保障下에 民間行事로 推進, 南北間의 對話와 交流 및 協力の 돌파구를 열어 나아가자는 것임.

- 그러나 北韓이 내세우는 汎民族大會는 '90年大會의 決議內容, 汎民聯의 目標, 今年大會의 推進主體, 行事的 內容 등으로 볼 때 一方的인 親北·反韓 政治宣傳行事임이 客觀적으로 立證됨.
- 특히 그 推進主體面에서 볼 때 北韓의 關聯者들이 대부분 黨·政 高位人物들이며, 海外側은 少數 反韓·親北僑胞들일뿐만 아니라 南側關係者들도 國民的 合意나 代表性이 없는 일부 反體制 人士들에 불과함.
- ※ 北韓은 '91. 7. 12 『로동신문』 論評에서 “南朝鮮 傀儡 當局이 聯北·聯共을 指向하는 全民聯, 全大協을 彈壓하고…”라고 言及
- 한편, 北韓은 『統一大行進』 提議가 “汎民族大會를 沮止 破綻시키려는 反民族的, 反統一的 犯罪行爲”라고 宣傳하고 있으나
 - 우리 政府가 『統一大行進』의 時期를 “8. 15”로 提議한 것은 결코 汎民族大會를 意識한 것이 아니라, 海內外的 7千萬 겨레가 共同의 紀念日로 慶祝하고 있는 8. 15 光復節을 契機로 分斷以後 최초로 南北韓 當局 및 民間團體가 參加하게 될 民族的인 大行事を 推進하자는 民族史的인 意志의 發現임.
 - 또한 行事內容面에서 汎民族大會에 포함되어 있는 “大行進, 討論會, 文化祭, 青年學生祝典” 등 既存의 北側 主張을 우리측이 『統一大行進』 行事에 대부분 受容하고 있어 汎民族大會를 純粹統一行事로 發展시키자는 意志가 분명히 나타나

고 있음.

- 아울러 우리측이 全民聯, 全大協 등을 行事主體에서 排除시킨 것은 이들 在野 및 運動圈 團體들이 政府打倒를 외치면서 北韓의 統一路線에 同調하고 있어 國家安保次元에서 우리의 憲政秩序를 破壞하려는 이들의 不純行爲를 묵과할 수 없을뿐 아니라, 우리 社會를 北韓과 일부 親北分子들의 政治宣傳의 마당으로 放置할 수 없기 때문임.
- 結論的으로 汎民族大會를 대대적으로 宣傳하고 있는 北韓의 意圖는
 - 第1次 大會의 각종 “採擇文件”을 통해 그들의 統一路線을 全民族的인 合意事項인 것처럼 糊塗하고
 - 금년에도 “汎民聯”과 일부 그 追從者들을 앞장세워 反韓·反美宣傳에 利用하려는 反統一·反民族的인 策動에 불과한 것임.
- 요컨대 北韓은 共產主義 宗主國인 蘇聯이 이미 黨 綱領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原則을 삭제하였고, 北韓 自身도 UN加入을 申請하고 對美·日關係 改善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이제는 對南革命路線을 버리고 쌍방 當局의 對話에 착실히 臨함으로써, 오랜 反目과 不信을 清算하고 民族和解의 길을 여는데 同參해야 할 것임.

UNDP, 『中央品質 및 計量科學研究所』 支援事業 推進

1. 概 要

北韓은 8. 14 平壤에서 UNDP(유엔開發計劃)와 「中央 品質 및 計量科學研究所」 設備 現代化에 關係 合意함으로써 「北韓經濟의 現代化와 國家計劃計測 管理體系 土臺를 構築」하는데 기여하게 되었으며, 또한 UNDP와 蓄電池 生産 現代化에 대해서도 合意하였다고 報道(中放 8. 14)하였음.

※ UNDP(유엔開發計劃) : 66.1 開途國의 經濟·社會開發을 促進하기 위한 技術援助 提供을 目的으로 發足한 UN特別機構(別添 資料 參照)

2. UNDP의 對北韓 支援 內譯

○ 北韓이 79. 6 UNDP에 參與하고 80. 12 UNDP 駐在員이 平壤에 常駐하게 된 이래 北韓은 UNDP로부터 '81 '96年間 3段階에 걸쳐 總 6,849萬弗에 달하는 經濟開發資金 및 技術援助를 받아 協力事業에 推進하고 있으며

※ 韓國은 '61. 4 UNDP前身機關인 UNSF(유엔特別基金)과 最初로 支援協定을 締結한 이래 總 7,040萬弗(62-81年 : 4,594萬弗, 82-86年 : 1,382萬弗, 87-91年 : 1,064萬弗)의 經濟·技術開發資金 受援

○ 北韓은 UNDP의 이러한 經濟·技術支援을 農產物 增產, 輕工業生産 強化 등 人民生活向上 및 科學技術 水準向上에 積極

活用하고 있음.

- 第1段階 事業期間(81-86年) : 2,050萬弗을 支援받아 農·水產物, 輸送·通信, 工業, 에너지 등 8個分野 26個 事業을 推進.
- 第2段階 事業期間('87-'91年) : 2,166萬 달러를 支援받아 農·水產物, 工業, 科學技術, 保健 등 7個分野 45個 事業을 推進中.
- 第3段階 事業期間('92-'96年) : 技術開發, 天然資源管理 및 環境保護, 國際經濟協力 등 3個分野에 2,633萬 달러의 資金을 支援받아 產業管理體系 改善, 產業廢棄物 處理,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 등을 推進하기 위한 細部事業計劃樹立.

<'81-'86年間 UNDP支援 主要事業內容>

- 평성 半導體工場 建設
- 平壤-신성천間(95 km) 鐵道自動化 施設工事
- 港灣施設 現代化
- 平壤 外國語大學 同時通譯員 養成
- 農業科學院 옥수수實驗 및 育種研究所 支援
- 氣象衛星受信所 建設
- 數值制御器機 開發
- 水產研究所 現代化
- 航空官制施設
- 과일貯藏 및 加工技術支援 등

〈'87-'91年間 UNDP支援 主要事業內容〉

- 平壤 남새科學研究所內 品種改良研究所 建設
- 電氣計器測定試驗所 設置
- 香科生產基盤 強化
- 土壤 및 植物體 分析試驗所
- 養魚科學研究所 現代化
- 農業科學院 벼研究所의 育種人工氣象室 建設
- 變壓器生產 現代化
- 家畜增殖 및 開發
- 머싯生產 技術開發
- 衣類디자인 컴퓨터化
- 通信技術 現代化
- 펄프加工(담배종이生產) 技術支援
- 貿易通報活動 컴퓨터化
- 醋酸合成技術支援
- 科學院 咸興分院 科學實驗器具研究所 現代化
- 90-91年間 平壤-咸興間 光케이블敷設 및 光纖維生產
관련 金策工大 通信研修院 裝備 現代化

3. 分析·評價

- 北韓은 計量器具 및 測定標準의 研究開發과 國家基準을 産業

- 體·研究所 등에 普及할 目的으로 50. 4 科學院 傘下에 『中央 品質 및 計量科學研究所』를 設立한 이래
- 63. 8 國際標準化機構(ISO), 74. 5 國際法定計量機構(IOLM) 등에 各各 加入함으로써 國際標準規格化를 위한 法律·規程의 整備와 技術交流를 摸索해 왔음.
 - 그러나 商品標準化 및 計量科學의 發展을 위한 實質的인 努力이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最近까지 이 分野에 대한 經濟的·技術的 體系는 충분히 構築되지 못하였음.
 - 現實的으로 北韓은 各地의 工場·企業所間의 規格差異로 인한 經濟運用·管理에 混線이 빚어지고 있으며, 輸出製品的 경우 國際規格과의 不一致로 말미암아 貿易紛糾가 발생하고 있는 實情임.
 - 北韓은 이번 『中央 品質 및 計量科學研究所』 支援에 대한 UNDP와의 合意를 契機로 工產品의 國際規格化 및 品質向上 등 輸出商品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한 努力을 加速化할 것으로 展望됨.

<添 附>

UNDPC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開發計劃 關聯資料

1. 概 要

UNDP는 66. 1 종래의 UNSF(유엔特別基金)와 UNEPTA(유엔技術援助擴大計劃)를 統合하여 設立되었으며 '91年 現在 年10億弗의

基金(韓國側分擔金：100萬弗， 北韓側分擔金：38.6萬弗)으로 開發國의 經濟·社會開發促進事業 등 約 6,000個의 프로젝트를 推進하고 있음.

事業內容	比率
各國支援事業	60%
地域事業	25%
全地球的 事業	15%

2. 組織

- 執行理事會：UNDP事業 및 政策決定機關,
經濟社會理事會가 選出하는 48個國으로 構成
(韓國은 '86 '88年間 執行理事國으로 被選)
- 機構間 諮問委員會：UNDP事業實施 機關의 長으로 構成,
UNDP事業 管理에 대한 一般的 諮問役割 遂行
- 事務局：UNDP事業管理 및 承認된 事業執行

※ UNDP 基金 配定基準

基金 受惠國의 1人當 GNP基準 \$0 \$3,000(純受惠國), \$3,000 \$6,000(純供與國), \$6,000이상(援助國) 등으로 區分하여 支援 및 基金 出捐을 하고 있으며, 韓國은 第5次 周期인 '92年부터 純供與國에 속하게 되어있음.

〈平和的 移行戰略〉 概念

1. 概念의 輪廓

- 『平和的 移行戰略』 (Peaceful Transition Strategy)은 70年代 終盤 美國에서 開發·適用한 일종의 心理戰 戰略임. 당초 蘇聯의 膨脹政策에 對抗하여 自由世界를 守護하고 共產化로 잃었던 勢力圈을 回復코자 試圖된 戰略으로서 非軍事的인 手段에 의하여 相對側의 弱화를 目標로 하는 戰略構想임.
- 北韓에서는 이 『平和的 移行戰略』을 美帝에 의한 社會主義 體制의 顛覆·瓦解工作으로 理解, 警戒하고 있으며
 - 최근에는 體制防禦 論理로 적극 援用하고 있음.
- 최근 中國에서도 “平和演變”이라 하여 間接侵略의 概念으로 把握하는 傾向이 있음.

2. 美國的 概念

- 『平和的 移行戰略』을 최초로 開發·適用한 國家는 美國임.
美國은 越南戰 失敗後, 第3世界 國家에 대한 美 地上軍의 直接 介入은 오히려 逆效果를 惹起할 수 있다고 判斷하고, 美軍의 駐屯없이 特別工作, 民間作戰, 自由鬪士에 대한 軍事 援助 등을 통해 共產革命을 沮止시키고 自由世界가 喪失한 勢力圈을 回復하고자 하는 戰略을 構想하였음.
- 그 基本 概念은

- 文化, 藝術, 宗教, 醫療 등 民間運動(Civic Action)을 통한 接近 및 援助
- 多様な 經濟메카니즘의 操作, 政治的 說得 및 宣傳 등을 통해 相對側의 抵抗을 極小化하면서 漸進적으로 弱화시켜 勝利를 이룩해 가는 非軍事的인 戰略 概念임. (出處: 『低強度紛爭에 관한 野戰教範, 1981, 美國務省 發行』)
- 美國은 同 戰略을 80年代 初盤 中南美 共產세력과 鎮壓作戰의 概念的 기초로 採擇하였고, 80年代 中盤 필리핀, 아이티 등의 新政府를 左翼勢力으로부터 保護하기 위해 應用한 바 있음.

3. 中國의 認識

- 中國에서의 『平和的 移行戰略』에 대한 認識과 立場은 人民日報 論說에 잘 나타나 있음.

— <人民日報 論說(91. 8. 17)> —

- 『平和的 移行을 막는 鋼鐵의 長城을 構築하자』
國民外的 敵對勢力은 社會主義 制度를 變節시키기 위한 活動을 하루도 멈춘적이 없으며, 갈수록 砲煙없는 戰爭에 邁어 달리어 저들의 目的을 實現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充分히 보여주고 있음.
- 平和的 移行的 現實的 威脅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면 覺醒이 무디어져 그 奸計에 넘어가게 됨.
그들은 무엇보다 우리를 思想的으로 武裝 解除시켜 政治, 經濟, 文化 各領域에서의 移行을 實現해 보려고 꾀하고 있음.
- 平和的 移行을 철저히 막는데서 關鍵的인 것은 우리 黨을 잘 建設하는 것임.

○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는 自覺을 높이자:

— 文化藝術 領域에서도 政治, 經濟領域에서와 마찬가지로 社會主義 方向을 堅持하여야 함.

社會主義 文藝일꾼들은 創作에서 社會主義 思想과 共產主義 以上으로 사람들을 感化, 教養해야 할 뿐 아니라 『頑強한 戰鬥力』으로 社會主義를 해치려는 思想, 言行들과 끊임없이 鬪爭해야 함.

— 『平和的 移行』의 現實的 威脅을 똑똑히 깨닫고 文化藝術 領域에서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여 鬪爭할데 대한 自覺을 높여야 함.

—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西方의 敵對勢力의 社會主義 나라들에 대한 『平和的 移行』 速度를 다그치도록 하는 동시에 날이 갈수록 中國을 저들의 強權 政治追求와 社會主義를 崩壞시키기 위한 策動의 重要障路로 보고 있음.

— 文化藝術 領域에서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는 鋼鐵의 長城을 쌓자면 반드시 맑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새로운 現實과 結付시켜 깊이있게 學習하며 中國의 特色을 가진 社會主義 建設에 관한 鄧小平同志의 思想과 江澤民同志의 主要 演說들을 學習하여 『平和的 移行』을 反對하는 自覺을 높여야 함.

- 國際言論人機構(IOJ) 아시아·大洋洲地域 記者團體委員長 協議會議('91. 8. 21-23, 平壤) 期間中 中國記者 團員이 「和平演變」 用語를 使用, 美帝의 間接侵略을 批判한 일이 있었는데 同一概念임.

※ '89年 9月 天安門事態를 美國과 臺灣에 의한 「平和的 移行戰略」(低強度紛爭 挑發)으로 풀이하는 視角이 대두되고 있음.

4. 北韓에서의 概念

- 北韓은 「平和的 移行戰略」의 概念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음.

<로 동 신 문 ('91. 8. 30)>

- 『변하지 않는 帝國主義의 侵略的 本性』
 - 최근년간 美帝가 특별히 힘을 넣고 있는 이른바 「平和的 移行」戰略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思想 文化的 浸透와 「援助」 등으로 人民들의 革命意識을 마비시키고 經濟적으로 買收하여 反社會主義分子들을 부추기기 위한 총포 소리없는 侵略 干涉의 戰略임.
 - 帝國主義者들이 「援助」問題를 가지고 弄奸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支配主義 野望을 實現하기 위한 空間으로 어떻게 利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 부쉬는 저들의 「對外援助는 美國의 戰略的 目的을 實現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듯이 보수가 없으면 주지 말아야 한다」고 내놓고 말하였음. 이러한 方法으로 美帝는 「援助」를 미끼로 하여 西方世界의 「自由化」, 「多黨制」, 「市場經濟」 등을 받아들일 것을 공공연히 要求하고 있음.
 - 帝國主義의 「平和的 移行」戰略은 社會主義 國家들을 資本主義에로 되돌려 세워 저들의 支配와 統制밑에 두기 위한 反社會主義 戰略으로서 帝國主義의 支配主義 野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뚜렷한 表示임.

- 北韓은 80年代 中盤부터 간간이 『低強度 紛爭』과 『平和的 移行戰略』 用語를 使用하였음(使用頻度は 많지 않았음).
- ※ 80年代 後半, 특히 天安門事態 以後 國內 運動圈 學生들도 이 用語를 자주 使用하여 왔음.
- ※ 低強度 紛爭(Low Intensity Conflict): 最小限의 犧牲으로 政治·社會·經濟 및 心理的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紛爭形態로서 相對側 政權을 弱화 顛覆시키는데 目標을 두고 있음.
- 北韓은 최근 『平和的 移行戰略』 用語를 빈번히 使用하고 있는데, 住民思想 武裝 強化策의 一環으로 社會緊張 氛圍氣를 造成하고 住民들에 警覺心을 주기 위한 意圖로 判斷됨.

<報 道 事 例>

- '91. 1. 27 T/S 訓練관련, 外交部 聲明
- '91. 3. 16 『T/S 演習은 우리 共和國을 先制打擊하기 위한 核試驗 戰爭』 題下 로동신문 論評
- '91. 8. 18 『변함없는 對決과 戰爭路線』 題下 로동신문 論說
- '91. 8. 20 『自主의 旗幟따라 社會主義 길로 나가는 것은 歷史의 흐름이다』 題下 로동신문 論說
- '91. 8. 22 『美國의 새로운 世界秩序論의 危險性』 題下 로동신문 論說
- '91. 8. 23 中國 人民日報 揭載內容 引用 報道 등
- 北韓은 東歐 및 蘇聯事態를 『平和的 移行戰略』의 視角에서 解釋하고 있으며, 南北韓間의 “交流協力”, “基本關係 合意書”, “3通 協定” 問題 등을 『平和的 移行戰略』의 適用으로 憂慮·警戒하는 側面이 있음.

보도매체에 나타난 사용사례

일 자	내 용 요 지	비 고
'91. 1. 27	<p>○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기어코 감행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우리 공화국 사회주의제도를 말살하기 위한 저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이 통하지 않으면 힘의 방법을 써서라도 『승공통일』을 이루어 보려는 시도를 공공연히 드러내 놓은 것이다.</p>	외교부 성 명
3. 16	<p>○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생존방식이다.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벌이고 있는 T/S합동군사연습은 오늘 제놈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이 통하지 않은 우리 공화국을 무력으로 압살해 보려고 미쳐 날뛰면서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p>	로동신문 논 평
8. 20	<p>○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 있는 『평화적 이행 전략』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간판을 들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p> <p>○ 제국주의자들이 벌리고 있는 『평화적 이행 전략』에서 극히 반동적이고 집요한 것은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 공세이다.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의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은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키워주고 사회에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치게 한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적인 사상문화생활은 사람과 사회를 부패변질시키는 독소로 된다.</p>	로동신문 논 평

일 자	내 용 요 지	비 고
	<p>『러제의 『새로운 세계질서론』과 『새로운 군사전략』은 그들의 호전적 본성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한다.</p> <p>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오만하게 팽창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하여 세계의 안정은 끊임없이 교란될 위험에 처하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평화적 이행 전략』과 함께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 세계 모든 자주 및 평화력량에 대한 도전이 아닐수 없다.</p>	

金日成, 咸鏡北道 現地指導

- 指導期間: '91. 8. 20 8. 30
- 指導對象: 咸鏡北道內 茂山鑛山聯合企業所를 비롯한 各地域의 工場·企業所 및 協同農場
- 指導訪問: 現地訪問 및 部門別 協議會 召集

1. 部門別 指導內容

鐵 鋼 工 業

- 咸鏡北道에는 金策製鐵聯合企業所, 成津製鋼聯合企業所 등 大規模 製鐵製鋼會社들이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鐵生産 增大에 力量을 集中할 것.
- 늘어나는 鐵鋼材 需要를 保障하기 위해 技術革新運動을 힘있게 벌리고 企業管理를 잘하여 生産能力을 最大限으로 發揮한 것.
- 茂山鑛山聯合企業所를 비롯한 관련 企業所들은 필요한 原資材를 충분히 供給해 줄 것.

石 炭 工 業

- 石炭増産을 위해 炭座事業을 強化하고 採炭作業의 機械化를 힘있게 推進하며 採掘設備 및 資材들을 제 때에 保障해 줄 것.

電 力 工 業

- 大規模의 工場·企業所들이 많이 있는 咸鏡北道는 生産을 높은 水準에서 正常化하도록 電力을 충분히 供給할 것.
- 電力生産 增大를 위해 既存 發電所들이 能力을 높이는 한편, 金策火力發電所, 漁郎川發電所와 中·小型 發電所들의 建設을 積極 다그쳐 完了시킬 것.

林 業

- 木材需要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木材生産에 必要한 設備 및 資材를 충분히 保障해 주고 桐나무 生産을 급격히 늘일 것.
- 모든 部門에서 木材를 아껴쓰는 鬭爭을 힘있게 벌일 것.

化 學 工 業

- 더 많은 肥料를 生産하여 農村에 供給할 것.
- 化學纖維 등 各種 化學製品들을 더 많이 生産하여 輕工業 工場들에 보내줌으로써 人民生活을 向上시킬 것.
- 소금需要를 원만히 充足시키기 위해 製鹽所의 生産能力을 높이는 同時에 新規 소금工場들을 建設할 것.
- 6. 16 火力發電所의 經驗을 본받아 東海岸의 工場·企業所들은 페열에 의한 소금生産을 廣範히 할 것.

輕 工 業

- 질 좋은 人民消費品과 食料品을 더 많이 供給하기 위해 黨의 輕工業革命 方針을 철저히 貫徹할 것.

水 產 業

- 바닷가 養殖을 大적으로 하여 미역, 다시마, 싹조개 등 水産物을 더 많이 生産할 것.
-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에서 여러가지 方法으로 사철 물고기를 잡으며 水産物 加工産業을 發展시켜 水産物 加工品을 人民들 에게 供給할 것.

2. 最近 金日成 現地指導 現況 및 特徵

現 況

- 最近 北韓은 '89年以後 經濟沈滯가 深化되면서 金正日의 現地指導 횟수는 현격히 減少된 반면 金日成의 經濟部門에 대한 指導活動이 相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樣相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금년 8月末 現在 金日成 現地指導 횟수는 4회에 달하고 있으나 金正日의 經濟部門에 대한 現地活動은 全無한 것으로 把握되고 있음.

— '91年度 金日成 現地指導 活動 內譯:

平壤市 삼석協同農場(3. 30), 平壤市 軌道電車 1段階 工事場

(4. 13), 咸鏡南道の 各種 工場·企業所(7. 10-8. 5), 咸鏡北道の 各 企業所 및 協同農場(8. 20-8. 30)

〈金父子 現地指導 횟수 比較〉

區 分	金 日 成	金 正 日
1989	8	1
1990	6	2
1991	4	0
(8月末 現在)		

特 徵

- 最近 金日成 現地指導의 特徵을 보면
 - 첫째, 頻度面에서 80年代中 金日成이 實施한 總 180餘回 (年平均 15回)의 現地指導 活動中 80%이상이 80年代 前半期에 이루어짐으로써 後半期の 活動이 현저히 減少하고 있다는 점.
 - 둘째, 平壤市 一圓을 中心으로 現地指導 活動이 展開되고 있으며 咸鏡北道 등 원거리 現地指導時에는 7-8月の 夏節期를 擇하여 長期間 동안 實施되고 있는 점.
 - 셋째, 특히 원거리 現地指導時 關係일꾼 擴大會議, 部門別 協議會 召集 등의 方法으로 金日成의 現地視察 負擔을 줄이고 있는 점 등임.

- 이로 볼 때 金日成의 現地指導 活動은 金日成의 老齡化(現在 78歲)에 따른 夏季休養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分析됨.

〈最近 金日成의 夏節期 現地指導 現況〉

年 度	現地指導地域	期 間
1989	咸鏡南道	8. 11 - 8. 29
1990	咸鏡北道 및 兩江道	8. 16 - 9. 3
1991	咸鏡南道	7. 10 - 8. 5
	咸鏡北道	8. 20 - 8. 30

3. 咸鏡北道 經濟의 特徵

鑛工業部門

- 咸鏡北道는 產業分布로 볼 때 淸津과 金策을 基地로 하여 金屬·機械工業, 船舶工業, 化學工業 등 重化學工場 施設이 集中 配置되어 있는 地域임.
- 金屬·機械工業의 경우, 北韓 最大의 鐵鑛石 生産基地인 茂山鑛山聯合企業所와 城津製鋼所 등과 淸津機械工場, 주을 電氣工場, 羅南炭鑛機械工場, 7. 6 鐵道工場(舊 淸津鐵道工場) 등이 있음
- 船舶工業部門에서는 2萬톤급 貨物船, 3千톤급 艦, 3,750톤급 선미트롤船 등을 生産할 수 있는 淸津造船所와 咸北

造船聯合企業所 傘下の 金策造船所 및 雄基造船所가 配置되어 있음.

- 化學工業部門에서는 1969年 蘇聯의 支援으로 建設된 北韓 最大の 精油工場인 勝利化學聯合企業所(精油能力 年產 200萬 噸)을 비롯, 淸津化學纖維聯合企業所, 아오지化學工場, 명륜化學工場 등이 있음.

農·林·水產業部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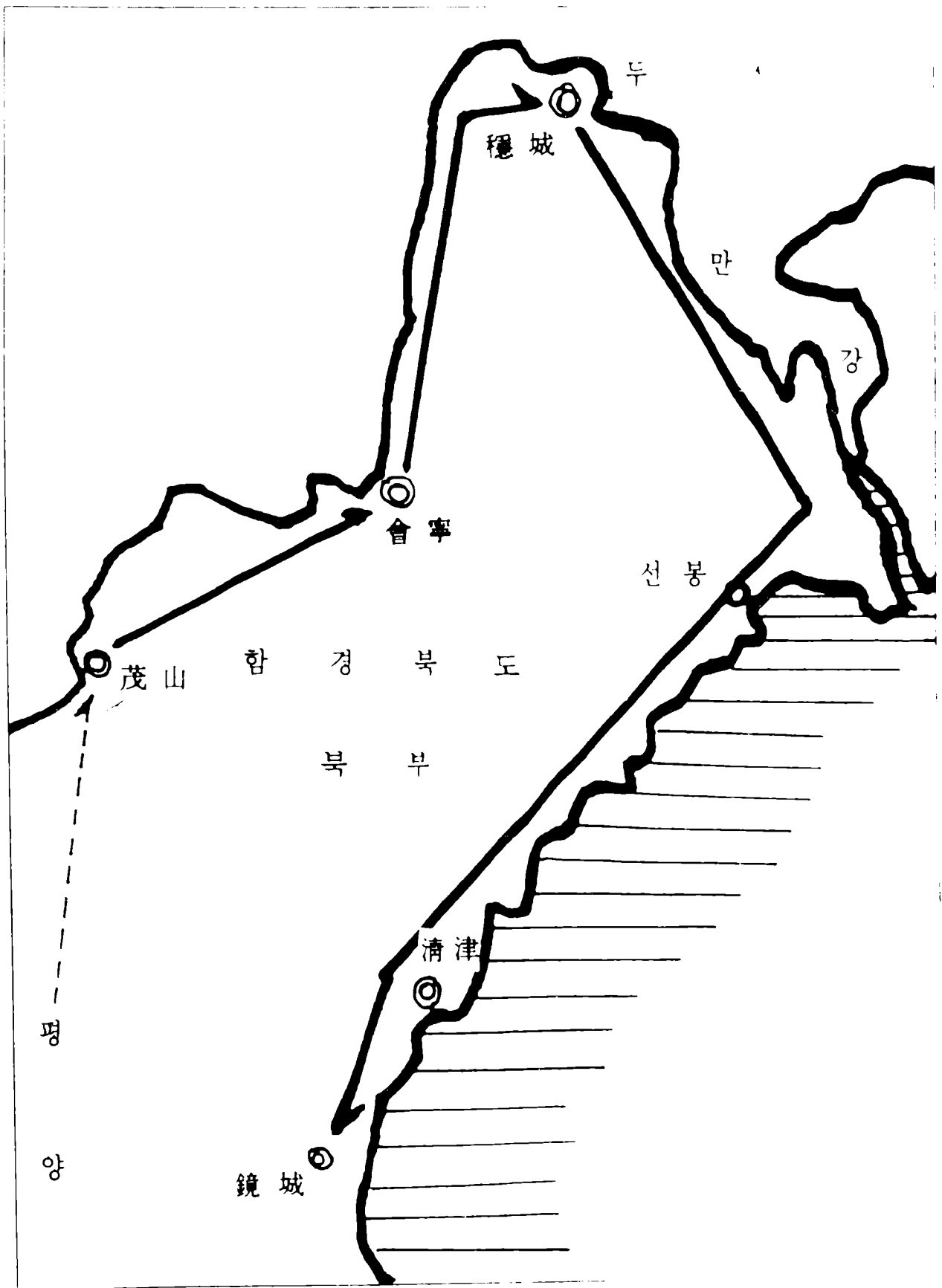
- 農業部分에 있어서는 營農에 불리한 自然條件으로 穀物生産은 주로 東南部 海岸 平野나 새별郡, 穩城郡 등 두만강 流域에 依存하고 있으나 食糧自體需給은 어려운 정도임.
 - 咸鏡北道の 耕地面積은 道全體 面積의 約 10% 水準
 - 담배, 藥草 등 工藝作物 재배 활발
- 그러나 林業 및 木材加工 工業部門에서는 咸鏡山脈의 北西部 地域에서 生産되는 木材를 이용함으로써 특히 木材加工工業이 吉州를 中心으로 發達되어 있음.
- 水產業部門에서는 遠洋漁撈船團을 保有하고 있는 北韓 屈指의 水産其他인 선봉 등 主要 水産基地가 있으며 主要 水産物은 명태, 청어, 도루묵어, 대구, 정어리, 멸치류 등임.
- 특히 '70年代 末부터는 養殖業에 착수해 羅津灣, 淸津灣에 淺海 養殖場을 建設해 다시마, 미역, 조개 등이 養殖되고 있음.

4. 現地指導 內容 評價

- 금번 金日成의 咸鏡北道 現地指導 活動은 지난해 夏節期에 實施된데 이어 今年度에 再次 이루어진 것이 特徵임.
 - － 金日成 現地指導 活動은 經濟煽動效果를 감안, 對象地域을 바꾸어온 것이 지금까지의 慣例임.
 - － 얼마전 實施된 咸鏡北道の 現地指導 活動(7. 10 ~ 8. 5)은 지난해에는 實施되지 않았음.
- 金日成의 現地 訪問 對象地域은 지난해에는 淸津, 金策 등 주로 道內 東南部地域을 對象으로 實施되었으나 이번에는 茂山→會寧→穩城→鏡城 등으로 連結되는 北部外廓地域에 集中되고 있음이 注目됨.
- 이는 특히 最近 中國 『長春』 會議를 통해 發表된 北韓側의 『선봉 經濟貿易地區』 設置計劃과 관련, 때를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示唆하는 바가 큼.
- 金日成은 금번 現地指導를 통해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라는 既存의 口號를 住民들에게 환기시키는데 그치는 등 表面上 經濟開放과 相關한 특별한 言及은 發見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食·衣·住』 問題와 相關 自體需給이 어려운 咸鏡北道 經濟를 意識, 住民生活과 밀접히 關係되어 있는 輕工業 및 化學工業部門에 대해 比較的 강도높게 言及되고 있는 것이 特徵임.
 - － 咸鏡南道 現地指導時에는 輕工業部門에 대한 言及이 전혀 없었음.

- 1) 이상을 綜合해 볼 때, 금번 金日成이 老軀에도 불구하고 咸鏡北道 外廓地域을 巡訪한 것은
- 最近 北韓側이 發表한 바 있는 『선봉 經濟貿易地區』 設置 計劃과 관련, 該當地域을 直接 點檢하고 이에대한 對備策을 摸索하며
 - 특히 事前에 該當地域 住民督勵를 통해 『經濟特區』 設置등 部分 開放에 따라 우려되는 否定的 餘波를 最小化시키는 住民 懷柔策 내지 士氣振作策의 一環으로 實施된 것으로 判斷됨.
 - 또한 現在 推進中에 있는 『第3次 7個年計劃』 및 금년도 金日成 新年辭의 延長線上에서 鐵鋼, 石炭, 木材 등 咸鏡北道內 先行部門의 增産과 節約을 促求하기 위한 것으로 評價됨.

< 参 考 > 金日成의 咸鏡北道 現地視察 經路



北韓·蘇聯 經濟協力 現況

1. 貿 易

- 80年代 後半 北韓의 對蘇貿易 規模는 매년 增加趨勢를 나타내었으며, '90年 現在 對蘇 輸出은 10. 5億弗, 輸入 13 億弗로 輸出入 總額은 北韓 貿易 總額의 51%인 23.5億弗임.
- 그러나 北韓은 對蘇貿易에서 每年 大規模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特徵인 바, 이는 對蘇 債務의 增加要因으로 되고 있으며 最近 債務 增加가 雙方 經濟協力の 障礙要因으로 提起되어 왔음.

〈北韓의 對蘇 貿易 推移〉

單位：萬弗

區 分	'86	'87	'88	'89	'90
輸 出	64,200	71,744	88,154	89,070	104,600
輸 入	107,860	132,924	173,562	149,191	130,300
計	172,060	204,668	261,716	238,261	234,900

2. 經 濟 協 力

- 北韓은 解放以後 '89년까지 蘇聯으로부터 約 30億루블의 長期借款(軍事支援 除外)을 提供받아 그중 6億루블은 償還하고 2億 2,400萬루블은 償還을 免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나머지 約 22億루블(당시 換率適用時 約 35億弗)이 年利 4% 條件의 對蘇 債務가 되고 있음.
- 이를 基準으로 推計할 경우 '90年 北韓의 對蘇債務 總額은 約 39億弗(貿易 赤字額 加算) 水準으로 評價할 수 있음.
- 蘇聯의 對北借款은 대부분 設備製作, 建設支援 등 現物借款 形態로 提供되며 北韓은 거기서 生産된 製品을 一定期間, 一定比率로 蘇聯에 償還하는 條件이 一般的임.
- '89年 現在 北韓 發電施設의 60%이상, 炭鑛 및 精油施設의 50%이상, 鋼鐵 30%이상, 鐵鑛石 40%, 化學肥料 14%, 纖維 20% 등이 蘇聯의 支援으로 建設된 것임.
- 蘇聯은 對備借款 이외에도 89년까지 總 3千件的 各種 設計圖와 技術文件을 北韓에 提供하는 한편 總 2千여명 이상의 北韓人에 대한 技術研修를 實施하였고 6千여명의 蘇聯 技術者를 北韓에 派遣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85年 12月 강성산(당시 總理)의 訪蘇時 北·蘇間에 締結된 長期 經濟協定에서 蘇聯은 '86 '90年 期間中 總 17個 對象事業의 建設을 支援하기로 했음.
- 그러나 蘇聯의 內部經濟 事情惡化로 인해 期間中 對北支援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第3次 7個年計劃 不振의 한 要因이 되고 있음.
- 雙方이 合意한 支援事業 內容은 公式發表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表의 事業들이 支援對象에 包含된 것으로 推定됨.

〈'86—'90年間 蘇聯의 對北支援事業〉

區 分	事 業 名	備 考
發電施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진 火力發電所 擴張 (80年 着工, 계속사업) ○ 동평양 火力發電所建設 ○ 남포 火力發電所建設 ○ 순천 火力發電所建設 ○ 안주 火力發電所建設 ○ 原子力發電所建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年 擴張工事 着工, 推進中 ○ '89年 2月 着工, 推進中 ○ '89年 11月 着工 ○ '88年 6月 操業 ○ 推進中 ○ 未着手
炭鑛 및 鑛 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주炭鑛擴張(계속사업) ○ 금야炭鑛擴張 ○ 무산鑛山擴張(계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推進中 ○ 推進中 ○ 推進中
金屬 및 機械工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金策製鐵 2段階擴張(계속사업) ○ 10月5일 自動車綜合工場 확장(계속사업) ○ 희천工作機械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9年 2月 完了 ○ 89年 完工 ○ 合作事業으로 推進中
建材 및 紡織工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천 耐火物工場擴張 ○ 안주紡織工場擴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未詳 ○ 未詳

北·蘇, 北·中 貿易決濟 方法

- 社會主義 諸國間の 貿易은 長期 貿易協定을 통해 매년 輸出入 品目, 規模 등을 결정하고 1年間の 貿易結果에 대해 雙方 決濟 銀行間에 清算 決濟方式으로 이루어져 왔음.
- 北·蘇間에는 '91년부터 國際價格 基準에 의한 硬貨決濟 方式이 採擇되어 현재 이 方法에 따라 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北 韓의 外貨不足으로 今年 1/4分期 貿易實績은 前年同期比 1 10 水準으로 減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90. 11 北·蘇間에는 「北·蘇 貿易決算體系 變更에 관한 協定」 이 締結되었음.(90. 11. 2)
- 北·中間에도 92년부터 國際價格基準에 의한 硬貨決濟(스위스프랑) 方式을 採擇하기로 合意하였으며 今年까지는 清算決濟方式으로 貿易이 이루어지고 있음.
 - 『91年度 北·中 貿易協定』 內容에서 規定(91. 3. 6)

〈第2次 汎民族大會〉

I. 行 事 概 要

〈開幕式 및 白頭 漢拏統一代行進 出征式〉

- 日時·場所：'91. 8. 7. 白頭山 天池
- 參 席 者：尹 基 福 (汎民聯 北側本部 議長)
 崔 賢 德 (朝鮮學生委員長)
 朴 聖 熙 (全大協), 政當·社會團體 代表 등

〈政治討論會〉

- 日時·場所：'91. 8. 12. 人民大學習堂
- 主 題：『祖國의 平和와 統一에 관한 政治大討論會』
- 參 席 者：呂燕九(汎民聯 北側本部 副議長) 등

〈本 大 會〉

- 日時·場所：'81. 8. 15. 板門店 統一閣
- 基調報告：尹 基 福
- 行 事：報告會 및 文件採擇, 統一文化祭, 南韓 犧牲
 學生追慕祭, 紀念植樹 등

※ 採擇文件：共同決議文, 海內外同胞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南北當局에 보내는 편지, 美國大統領에게 보내는
 편지, UN 事務總長에게 보내는 편지

※ 汎民聯 海外本部：8. 14 日本 東京에서 行事 開催

II. 主要決議事項

〈『汎民族大會』의 採擇文件〉

- 共同決議文
- 海內外 同胞들에게 보내는 呼訴文
- 北南當局에 보내는 편지, 美國大統領에게 보내는 편지, UN 事務總長에게 보내는 편지
- 訪北人士 釋放要求 特別決議文

〈文件要旨〉

- 1995년을 統一의 元年으로 設定
- 北南 不可侵宣言, 朝·美 平和協定, 美軍撤收 爲해 鬭爭
- 南北 軍縮實現
- 朝鮮半島의 非核化, 南朝鮮內 美國核武器 철거
- 聯邦制統一 實現, 吸水統一 反對
- 對話窓口 一元化 反對, 民間對話 擴大鬭爭
- 汎民聯은 愛國的 統一運動機構, 汎民聯 組織擴大 努力
- '91. 8. 15 12.31을 訪北人士·民主統一人士 釋放鬭爭期間으로 設定
- 南朝鮮 當局은 反民族·反對話, 反統一的 分裂主義 集團
- 南朝鮮 當局은 暴惡한 科斂集團
-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
- 美帝는 對朝鮮半島政策을 轉換

III. 北韓의 宣傳煽動

1. 宣傳煽動의 方向

- 金日成 中心의 “民族大團結” 促求
(8. 7 朴成哲 祖戰 共同議長의 『金日成 8. 1 談話』 支持談話)
- 『汎民族大會』를 “民族的 和解와 團合의 統一祝祭”로 美化(8. 15 尹基福 汎民聯北側本部 議長의 本大會 基調報告)
- 南側 當局을 “半統一·半對話的 民族의 怨讐로 罵倒
(8. 14 로동신문 論評)

2. 各種 宣傳煽動用 行事

- 金日成의 8. 1. 談話 發表(8. 5)
 - 後續 支持談話 擴散
- 祖國統一促進 白頭·漢拏統一大行進 進行(8. 7-8. 15)
 - 行進隊 歡迎 群衆大會 4回
 - 行進隊 記者會見 1回
 - 行進隊 板門店 通過試圖 3回
- 統一實踐 決議모임 開催(8. 8.-12)
 - 金正淑師大 등 4件
- 『汎民族大會』 및 『青年學生統一大祝典』 參加者 選拔大會
(7. 26-8. 10)
 - 政黨·社會·教育·文化·藝術團體, 工場, 協同農場
 - 金日成大 등

- 宗教·文化行事 開催(8. 10- 8. 15)
 - 統一祈願 祈禱會 2回(봉수教會, 장충聖堂)
 - 南北基督者 共同禮拜 1回(8. 11 서울과 平壤에서 各各 進行)
 - 朝鮮의 反核·統一을 위한 音樂의 밤 등
- 全大協 朴聖熙·成墉乘 歡迎行事(8. 5- 8. 15)
 - 記者會見, 歡迎宴會, 連環모임 各 1回
 - 各種行事에서 親北·反韓演說 誘導
- 林秀卿컵 體育大會 및 林·文 慰問團 派遣 試圖

(7. 19 8. 15)

 - 蹴球 各地域 豫選 및 決勝戰 開催
 - 慰問團 派遣 3回 試圖로 示威效果 提高 劃策
- 兩 大會의 서울 및 海外狀況 迅速報道(8. 8. 8. 18)
 - 南側本部の 서울大會 進行狀況
 - 海外本部の 東京大會 狀況
 - 海外青年學生의 東京大會 狀況

IV. 綜合分析

- 北韓이 이번 第2次大會에서 보인 全體的인 特徵은 아래와 같음.
 - “民族大團結”을 標榜한 金日成의 「8. 1 談話」를 모든 手段을 動員, 대대적으로 反復宣傳하면서 金日成 中心의 “民族的 團結”을 集中的으로 強調하였고

※ 朴成哲 副主席은 『祖戰』 共同議長 名義 支持談話(8. 7)에서 金의 談話를 『8. 1 勞作』으로 呼稱하고 南北·海外 同胞의 聯北團結을 促求

- '90年 第1次大會에 비해 各種 關聯行事を 대폭 多樣化함으로써 統一熱氣의 極大化에 注力하였으며

※ 지난해에는 宗教行事, 朴秀卿컵 體育大會, 統一實踐決議모임, 大會參加者 選拔大會 등이 없었음.

- 大會期間中 우리 當局을 “民族의 怨讐”라는 극악한 表現을 써 가면서까지 대남적개심 鼓吹에 열을 올렸음.

- 또한 가장 두드러진 現象은 同 大會의 구석구석에서 시종 일관 “吸水統一方式” 排擊을 강렬히 부르짖음으로써 對南劣勢에서 오는 危懼感을 여실히 露呈하였음.

※ 北韓의 “聯邦制方式”에 대한 宣傳의 強度는 同 危懼感의 強度와 正比例한다고 봐도 無妨할 것으로 分析됨.

○ 이번 兩大會의 決議事項은

- 지난해의 決議事項과 거의 동일한 것이나 그간의 狀況變化에 따라 “南北韓 同時核査察” 項目을 追加하였으며

- 우리側의 『汎民聯』 不認識과 관련 同 組織의 “肯定的” 性格을 강하게 辯護하면서 靑年學生그룹의 『汎靑學聯』을 새로 組織키로 하였음.

○ 특히 北韓은 全大協 所屬 두 學生의 입을 통해 反韓·反美 宣傳을 展開함으로써 對內外 效果의 提高를 劃策하였음.

※ 이들을 각각 “統一의 딸, 아들”로 呼稱

- 요컨대 北韓은 금년도 大會에서도
 - 그들의 統一路線이 7千萬 全體民族의 合議事項인 것으로 呼訴하였을 뿐 아니라
 - 일련의 行事が 北韓當局의 主導下에 치워진 “大會”였음을 여실히 立證하였으며
 - 아직도 對南戰略에 變化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음.

添 附

『青年學生統一大祝典』 관련 動向

<行事 概要>

- 白頭·漢拏統一大行進
 - 期間 및 區間: '91. 8. 7-15, 白頭山→板門店
 - 8. 13-15間 板門店 通過 南下試圖 3回
- 統一會談
 - 日時·場所: '91. 8. 15, 板門店 統一閣
 - 主 題: 『統一方案 合意와 祖國의 平和, 民族大團結을 위 한 北南·海外同胞 青年學生統一會談』
 - 共同決議文, 合議文 採擇
 - 聯邦制統一 實現, 祖國統一汎民族青年學生聯合(汎靑學聯) 結成 등
- ※ 『汎靑學聯』은 가까운 時日內에 組織하고, 베를린에 本部 設置

〈採擇文件〉

- 共同決議文 및 合議文

〈文件要旨〉

- 1995년을 統一의 元年으로 設定
- 聯邦制統一 實現, 民族統一政治協商會議 召集
- 南韓內 美軍核武器 撤去, 北南 武力減縮, 北南 同時核査察, 美軍 撤收
- 北南 不可侵宣言, 停戰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
- 民族大團結, 民間對話 實現, 南韓의 反共國是, 國家保安法 廢止, 拘束者 釋放
- 祖國統一汎民族青年學生聯合(汎青學聯) 組織

〈全國 作業班長大會〉 開催

北韓은 '91. 9. 16 18 平壤 2. 8 文化會館에서 黨·政 高位 幹部들이 大舉 參席한 가운데 「全國 作業班長大會」를 史上 처음으로 開催하였음.

1. 報道內容 要旨

가. 一般事項

○ 開催 目的：生産과 建設의 基層單位인 作業班들의 役割提高를 통한 3次 7個年計劃의 成果的 遂行

○ 參席 對象

－ 主 席 團

區 分	參 席 者	職 位
黨	韓成龍	黨 中央委 祕書
	朴南基	黨 中央委 祕書 兼 重工業部 部長
	金仲麟	黨 中央委 祕書
	崔泰福	黨 中央委 祕書
政 務 院	李鍾玉	副主席
	延亨默	總 理
	崔英林	副總理 兼 國家計劃委員會 委員長
	金福信	副總理 兼 輕工業委員會 委員長
	康希源	副總理 兼 平壤市 行政 吳 經濟指導 委員長
	洪時學	副總理
	金潤赫	副總理
	金達鉉	副總理 兼 對外經濟協力委員會 委員長

— 全國의 模範作業班長, 工場·企業所 關係者, 中央 및 地方의 行政經濟關係機關 關係者

- 黨中央委員會 名義의 祝賀文 傳達: 韓成龍(黨中央委 秘書)
- 報告文 朗讀: 延亨默(政務院 總理)

나. 延亨默 報告要旨

- 採取工業, 電力工業, 鐵道運輸, 金屬工業 등 先行部門과 機械工業 및 電子自動化 工業部門에서 革新을 일으켜야 함.
- 化學工業部門에서는 設備現代化, 大型化를 實現하고 輕工業 製品 生産을 劃期的으로 늘려야 함.
- 建材工業部門, 林·水産部門에서도 生産을 積極 늘려야 함.
- 사리원카리肥料聯合企業所 建設, 10月 9日 鋼鐵綜合工場 建設, 2. 8 비날론 聯合企業所 改建擴張工事, 發電所 建設 등 重要 對象建設과 平壤市 5萬世帶 住宅建設 目標를 반드시 實現해야 함.
- 思想, 技術, 文化의 3大革命을 힘있게 推進해야 함.
- 作業班은 生産과 管理의 基층단위인 만큼 責任性和 創造的 積極性을 가지고 生産課題를 어김없이 수행해야 함.
- 作業班 管理運營을 改善하고 그 戰鬥力을 強化하기 위해서는 作業班長의 役割을 높여야 함.

2. 開催 背景

- 最近 北韓經濟는 對内外 經濟興件의 惡化로 극심한 沈滯局面에 빠져 있으며, 住民들의 依·食·住 生活水準도 '70年代 以後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狀況임.
- 推進中인 第3次 7個年計劃의 年平均 成長目標는 7.9%로 되어 있으나 '87-'90年の 年平均 成長率은 1.2%에 不過하며, 특히 '90年度에는 負의 成長(-3.7%)을 記錄하였음.

<第3次 7個年 計劃期間 成長 推移>

區 分	'87	'88	'89	'90	年 平 均
成長率(%)	3.3	3.0	2.4	-3.7	1.21

- 이에 따라 北韓은 지난해 黨6期 17次 全員會議('90. 1. 5 1. 9)를 開催하고 自力更生에 의한 「增産과 節約鬭爭」을 決定, 이를 통한 經濟難局 打開에 부심하여 왔음.
- 그러나 北韓經濟沈滯의 本質的 要因은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一般的 現象인 物質的 誘因 缺如와 이로 인한 勤勞者의 生産意慾 低下임.
- 따라서 北韓當局의 「增産·節約」 促求는 住民들에게 큰 呼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不滿累積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 ※ 이번 延亨默 報告에서 「忠誠心」, 「創發性」, 「責任性」 등을 누누히 強調하고 있는데 窺볼 수 있음.

3. 特 徵

- 이번 『全國 作業班長大會』는 初級の 基層單位組織에 대한 經濟煽動集會로서 北韓으로서는 史上 처음으로 開催한 것임.
- 延亨默, 李鍾玉 등 北韓의 黨·政 經濟官僚들이 大舉 參席한 가운데 開催된 比重 있는 大規模集會임.
- 內容面에서는 增産과 節約鬭爭을 成果的으로 推進하기 위해 『作業班長』의 役割을 強化시키겠다는 것이 注目됨.
- 經濟部門別로는 두드러진 特徵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만 年初에 金日成 新年辭를 통해 強調한 바 있는 에너지, 輸送部門 등 先行部門과 사리원카리비료연합기업소, 10月 9日 鋼鐵綜合工場 등 第3次 7個年計劃 事業의 推進을 계속 督勵하고 있음.

4. 綜 合 評 價

- 北韓은 對內外 經濟環境의 惡化로 '90年이래 自力更生에 의한 『增産·節約鬭爭』을 基本的인 施策方向으로 推進하여 왔음.
- 그러나 이와같은 『先生産, 後分配』의 經濟施策은 北韓經濟 管理構造의 歪曲現象 深化, 生産의 非效率性 등을 改善시키지 못하고 있는 狀況임.
- 따라서 이번 『全國 作業班長大會』의 開催는 第3次7個年計劃의 不振相 打開을 위해 北韓 基層單位 組織의 初級管理者들에 대한 役割과 機能을 強化함으로써, 弛緩된 勞動氛圍氣를 最大限 刷新해 보려는 意圖에서 開催된 것으로 分析됨.

- 또한 同大會는 勤勞者들의 生産意慾 低下로 인해 黨의 經濟 施策이 一線 生産現場에까지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中央當局이 直接 最下部의 單位組織인 作業班의 生産活動을 督勵코자 召集된 것으로 풀이됨.
- 특히, 思想, 技術, 文化 등 3大革命의 推進을 계속 強調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앞으로 北韓은 各工場·企業所의 作業班長과 3大革命小組를 連繫시켜 住民들에게 『增産과 節約』을 강도높게 促求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北韓이 지금이 中央執權的 一元化體制로부터 各工場·企業所에 대한 自律性 賦與 등 經濟管理의 分權化를 과감히 斷行하지 않는한, 큰 成果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金日成, 咸鏡南道 現地指導

- 指導期間: '91. 7. 10-8. 5 (26日間)
- 指導對象: 咸鏡南道內 新興郡을 비롯한 各地域
工場·企業所

1. 部門別 指導內容

化學工業部門

- 咸鏡南道는 興南肥料聯合企業所, 2. 8 비날론 聯合企業所 등 人民經濟와 直接 관련된 化學工場들이 많기 때문에 化學工業에 力量을 集中할 것.
- 興南肥料聯合企業所의 窒素肥料 生産增大를 위해서는 現在推進中인 設備擴張工事を 早期完了하고 이를 위해 設備·資材의 生産保障 및 支援事業을 積極 推進할 것.
- 단천지구에 새로운 磷肥料 生産基地를 造成하며, 磷灰石鑛山들의 生産能力을 높여 原料를 충분히 供給할 것.
- 2. 8비날론聯合企業所의 生産增大를 위해 推進中인 技術改善·設備改造事業과 施設擴張工事を 早期에 完了할 것.

有色金屬部門

- 단천지구에 풍부히 埋藏되어 있는 各種 有色金屬 鑛物을 大

大的으로 採取 加工하는 것은 全般的인 經濟發展에 重要的 意義를 가짐.

- 검덕광업聯合企業所에 深査事業을 強化하여 鑛物生産을 높이며 鑛物增産에 맞추어 有色金屬 加工品 生産에도 注力할 것.
- 마그네사이트 鑛山들의 生産을 正常化하는 同時에 단천마그네 사工場의 生産을 높일 것.

에너지部門

- 咸鏡南道에는 石炭化學工場들이 많아 石炭需要가 增加되고 있으므로 既存 炭鑛의 增産과 함께 더 많은 炭鑛을 開發할 것.
- 水力發電所들의 技術革新運動을 통해 電力生産을 높이며 推進中인 금야강發電所, 中小型 水力發電所, 함흥火力發電所의 建設을 早期에 完工할 것.
- 電力의 增産과 함께 電力 多需要生産工程을 電氣를 적게 쓰거나 電氣를 쓰지 않는 生産工程으로 轉換하기 위한 鬭爭을 積極 展開할 것.

輸送部門

- 『生産이 곧 輸送이고 輸送이 곧 生産』이므로 增大되는 輸送 需要를 保障하기 위해 黨이 提示한 輸送革命方針을 철저히 관철할 것.

農業·畜産部分

- 금년도 강냉이 農事가 잘된 것은 흙갈이와 營農事業에 黨的 指導가 強化된 結果이며 모든 논밭에 흙갈이 工事を 계속 推進할 것.
- 닭공장, 오리공장들의 生産能力을 最大限 發揮하고 模範農村들에서 오리 기르기 운동을 大的으로 展開할 것.
- 溫室 남새 農事を 잘하며 병발 造成 및 管理事業을 改善하여 누에고치를 增産할 것.

水産業部門

- 水産業 發展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漁獲量을 늘리고 특히 바다 養殖事業을 廣範히 展開할 것.

2. 最近 金日成 現地指導 現況과 咸鏡南道 經濟의 特徵

- 金日成은 80年代中 總180여회(年平均 15回)에 걸쳐 全國의 工場·企業所, 協同農場, 主要建設現場, 軍部隊 등에 대해 現地 指導를 實施하였음.
- 그러나 金日成 現地指導의 全般的인 現況은 金正日의 活動이 활발해짐에 따라 80年代 後半期에 들어와서는 前半期보다 減少되는 趨勢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89年以後 經濟沈滯가 深化되면서 金正日의 現地指導 횟수가 현격히 減少됨으로써 金日成의 經濟部門에

대한 指導活動은 相對的으로 높아지고 있는 特徵을 보이고 있음

<80年代 後半期 金父子 現地指導 횟수 比較>

區分 年度	金 日 成	金 正 日	備 考
1986	7	14	
1987	7	7	'88年은 平祝準備
1988	10	15	關係로 現地指導
1989	8	1	빈번
1990	6	2	

- 金日成은 '89年以後 咸鏡南北道를 비롯한 兩江道 地域에 대해 7-8月の 夏節期에 번갈아 現地指導를 實施하고 있는 바 이는 金日成의 夏季 休養과 關聯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金日成의 最近 夏節期 現地指導 現況>

年 度	現 地 指 導 地 域	期 間
1989	咸鏡南道	8. 11 8. 29
1990	咸鏡北道(兩江道)	8. 16 9. 3
1991	咸鏡南道	7. 10 8. 5

- 그러나 今年의 咸鏡南道 現地指導는 例年에 비해 長期間에 걸쳐 이루어졌다는데에 特徵이 있으며, 咸鏡南道가 北韓 經濟

에서 차지하는 重要性 및 最近의 經濟沈滯 등과 관련하여 例年과 다른 意義를 부여할 수 있음.

咸鏡北道 經濟의 特徵

- 咸鏡南道는 産業分布 面에서 볼 때 重·化學工業이 集中配置되어 있으며, 특히 北韓住民의 食·衣 生活은 물론 輸出産業에 있어서도 重要的 位置를 占하고 있음.
- 化學工業의 경우 北韓 最大의 化學纖維生産 基地인 2.8 비탈론聯合企業所와 洪南 窒素肥料聯合企業所, 합흥 殺草劑工場 등이 있으며
- 採取 및 金屬工業部門에서는 北韓 最大의 有色金屬 鑛山인 검덕鑛山(鉛·亞鉛)과 용양鑛山(마그네사이트), 단천製鍊所(鉛·亞鉛), 727 製鍊所, 단천마그네샤工場 등이 配置되어 있고
- 機械工業部門에서는 大型機械 및 工場設備를 生産하는 北韓 最大의 용성機械總局(1萬톤 프레스, 發電設備 및 各種 工場設備 등 生産)과 합흥工作機械工場 등이 있음.
- 그러나 同地域에는 電力 多需要 重·化學工業이 集中 配置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發電施設은 충분하지 못한것이 特徵인 바 咸南地域에는 現在 장진강發電所(39.7萬 kw), 부전강發電所(22.6萬 kw) 등 約 65萬여 kw의 水力發電所가 基本的인 電力供給源이 되고 있음.
- 90年 現在 北韓의 總 發電設備 容量의 9% 水準이며 渴水期 電力不足 不可避

- 北韓은 이를 補完하기 위해 推進中인 第3次 7個年計劃에서는 道內에 금야강發電所(19萬 kw 推定) 및 함흥火力發電所(20萬 kw)를 各各 建設中에 있음.

〈咸鏡南道の 主要 生産施設〉

區分	施設名	位置	備 考
發電所	장진강發電所	영광郡	○ 施設容量 39.7萬 kw
	부전강發電所	신흥郡	○ " 22.6萬 kw
	함흥火力發電所	함흥市	○ 建設中 20萬 kw
	금야강發電所	금야郡	○ 建設中 19萬 kw
鑛山 및 炭鑛	검덕鑛山	단천시	○ 鉛·亞鉛鑛 年間 300萬톤 (北韓 最大 有色金屬 鑛山)
	용양鑛山	단천시	○ 마그네사이트 年間 100萬톤
	고원炭鑛	고원郡	○ 無煙炭 年間 150萬톤
	금야靑年炭鑛	금야郡	○ 褐炭
金屬工場	홍남製鍊所	함흥市	○ 電氣銅, 電氣銀, 니켈 등 生産
	단천製鍊所	단천시	○ 電氣亞鉛 生産
	727製鍊所		○ 91.4 完工
機械工場	용성機械總局	함흥市	○ 大型機械 및 工場設備 生産 (北韓 最大 機械工場)
	함흥工作機械工場	함흥市	○ 실반·프레스 등 生産
化學工場	2.8 비날론 聯合企業所	함흥市	○ 비날론生産能力 年間 5萬톤, 카마이트 32.5萬톤(北韓 最大 化學纖維工場)
	홍남肥料聯合企業所	함흥市	○ 各種肥料 年間生産能力 135萬톤 (北韓 最大 肥料工場)
	함흥살초제공장		○ 各種 農藥生産
	단천마그네샤工場	단천시	○ 마그네샤 크링가生産(北韓 最大 마그네샤 크링가生産工場)

3. 現地指導 內容 評價

- 금번 金日成의 咸鏡南道 現地指導는 '89年 以後의 극심한 經濟難을 打開하기 위한 對策의 一環으로 最近 部分的인 經濟開放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데 그 意義를 부여할 수 있음.
 - － 最近 北韓은 UNDP의 協調下에 두만강河口 일원의 『經濟 貿易 地區』 設置計劃 公式化
- 北韓 言論의 金日成 現地指導 報道에서는 經濟開放과 관련하여 특별히 注目할 만한 事項은 찾아볼 수 없으며, 지금까지 追求해왔던 增産·節約鬭爭의 테두리 內에서 言及되었음.
 - － 各分野에서 推進中인 建設事業의 早期完工, 生産增大, 主要 擴張工事의 集中支援과 設備·資材의 生産保障 등을 強調
- 다만 食糧·에너지難과 관련하여 窒素·磷肥料 生産施設의 擴大, 『電氣를 많이 쓰는 生産工程을 電氣를 적게 쓰거나 쓰지 않는 生産工程으로 轉換하기 위한 鬭爭』 등을 促求한 것이 다소 새로운 事項임.
- 그러나 綜合的으로 볼 때 이번 金日成 咸鏡南道 現地指導는 特定 地域의 經濟問題 이외에도 現在 推進中인 第3次 7個年 計劃의 實績 點檢, 今年 9月 南北韓 UN同時加入 以後의 對外 經濟政策方向 등 經濟 全般에 대한 對策을 集中 檢討 했을 것으로 判斷되어 向後의 動態를 注目할 必要가 있음.

〈蘇聯事態〉 關聯 北韓·中國 經濟關係 展望

1. 北·中 貿易 및 經濟協力 現況

- 中國은 蘇聯·日本과 함께 北韓의 3大 交易國의 位置에 있으며, 80年代 後半의 北·中 貿易規模는 매년 5·6億弗의 비교적 安定된 趨勢를 維持하고 있음.
- '89年度의 北·中 貿易額은 約 5·6億弗을 記錄하였으며, 同年 北韓의 對中國 貿易依存度는 14% 水準으로 分析되고 있음.
- 主要 輸出入 品目은 北韓이 原油, 코크스, 穀物(주로 옥수수, 콩), 原線, 소금, 베아링, 自動車部品, 타이어 등을 中國으로부터 輸入하고 대신 無煙炭, 자철광, 시멘트 및 1次金屬 製品을 輸出하고 있음.

※ 北韓은 原油 110萬톤(90年)을 中國에서 導入

〈80年代 後半 北·中 貿易推移〉

(單位：萬弗)

區 分	'86	'87	'88	'89
輸 出	28,023	23,619	23,367	18,535
輸 入	25,320	27,711	34,535	37,737
計	53,343	51,330	57,902	56,272

經濟協力

- 解放以後 '84년까지 中國의 對北經濟支援은 無償援助와 借款 등 總 8.7億弗의 實績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같은 期間 蘇聯의 對北支援 21.7億弗의 約 40%水準이었음.
- 北韓은 最近 中國이 經濟開放을 통해 西方으로부터 導入한 先進技術을 迂迴 導入하는데 關心을 보임으로써 89年 以後에 는 經濟建設과 科學技術의 實質的인 連繫 協力體系를 強化해 오고 있음.
 - 『87-89年 長期科學技術協定』 締結(87. 12), 『經濟 貿易 및 科學技術協調委員會 創設協定』 締結(89. 4), 『科學技術交流擴大 議定書』 調印(89. 8), 『91-92年 農業科學技術協調計劃書』 調印(90. 11) 등
- 그러나 中國은 自國의 現代化 政策에 따른 資本不足과 技術水準 등 對北支援能力이 制限的이므로 北韓에 대해 經濟開放을 권유해 왔으며, 北·中 經濟關係를 相互的인 關係로의 轉換을 試圖해 왔음.
 - 지난 해 北韓 延亨默 總理의 中國 訪問(11. 12-28)時 江澤民 黨總書記는 “經濟를 發展시켜야만 社會主義의 優越性を 보여줄 수 있다”, “改革·開放을 잘 할수록 思想政治事業을 잘 하는데 유리하다”고 強調

2. 北·中 經濟關係의 懸案問題

- 『平祝』以後 北韓經濟 沈滯와 生産不振으로 中國에 대한 北韓의 輸出約束 不履行과 이로인한 北韓의 貿易赤字 增加, 外債累積 등이 北·中 經濟關係의 懸案問題로 擡頭되고 있음.
- '90年 北韓의 對中國 시멘트 輸出計劃은 80萬톤이었으나 실제는 40萬톤만 輸出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訪北 在美同胞)
- 北韓의 對中國 貿易赤字는 88年 1.1億弗에서 '89년에는 1.9億弗로 增加
- 따라서 中國은 北韓과의 雙方貿易에 國際價格의 適用과 硬貨 決濟를 要求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蘇聯事態』와 北·中 經濟關係 展望

- 금번 『蘇聯事態』는 '91年度 北韓의 貿易計劃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北韓은 原資材 輸入 및 輸出市場 確保와 生産 正常化를 위해 우선 中國에 대해 緊急支援을 要請하지 않을 수 없음.
北韓은 原油, 코크스, 原線 등 原資材 供給 增加 및 緊急·財政支援 要請 豫想
- 이에 대해 中國은 『社會主義體制 固守』라는 北·中 理念路線의 同質性を 考慮하여 北韓의 要請을 全面 拒絶할 수는 없는 立場이나 經濟的인 支援面에서 過去 蘇聯의 對北支援 役

割을 전적으로 대신할 처지는 못됨.

- 따라서 中國은 雙方 經濟關係의 懸案問題에 대한 北韓의 要求를 一部 受容함으로써 北韓의 經濟危機 克服을 一時的으로 支援하는 한편 北韓의 經濟開放을 積極 권유할 것으로 보임.
- 또한 北韓은 生必品 不足難이 加重될 경우 中國과의 邊境 貿易을 擴大함으로써 北·中 民間交流가 보다 活性化될 可能性이 있음.

先鋒 經濟·貿易地區 開發計劃

금번 中國 장춘에서 開催된 「東北亞 經濟技術發展 會議」(8. 29-31)에서 北韓은 당초 日程에 包含되지 않았던 「선봉 經濟·貿易地區 開發計劃」을 發表(8. 30)하여 注目되고 있음.

1. 發表 要旨(細部內容은 別添 資料參照)

- 東北亞地域 經濟發展에 가장 중요한 것은 海上輸送路의 確保 問題이며 이와관련, 咸鏡北道 청진, 나진, 선봉항은 특별한 意義를 가짐.
- 이들 港口는 中·蘇 國境에 隣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半徑 50km 內에 있으며, 北部地域의 既存 鐵道, 道路網 整備 등을 통해 큰 投資없이도 청진항과 나진항을 年間 2千萬~3千萬톤의 貨物取扱이 可能的 港口로 開發할 수 있음.
 - 現在 청진항은 年間 800萬~1千萬톤, 나진항은 300萬톤, 선봉항은 200萬~300萬톤(原油)의 貨物取扱 能力 保有
- 東北亞地域 經濟交流와 協力을 促進하기 위해 「선봉 經濟 貿易地區」를 開發하게 될 것이며 이 地域 重工業工場에 設備 및 技術을 導入, 合營, 合作 方法으로 加工工場 등의 建設을 推進하고 있음.

2. 分析·評價

- 北韓은 지난 7月 UNDP가 主管한 『東北亞地域 經濟協力會議』(蒙古, 『울란바토르』)에서 이미 새별, 선봉, 나진을 연결하는 140km² 地域을 『經濟·貿易地區』로 開放하려는 意思를 밝힌 바 있어 새로운 事實은 아니지만
- 이번에 밝힌 『선봉 經濟貿易地區』 開發計劃은 보다 積極적이고 具體적인 計劃으로서 中國의 훈춘 및 두만강河口 開發計劃이나 蘇聯의 『나훗카』 經濟特區 開發計劃보다 現實성이 있다는 것이 特徵임.
- 또한 이번 會議에서는 北·中·蘇 3國이 UNDP 및 西方資本 技術을 相互 競爭적으로 誘致하려는 意圖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 注目됨.
 - － 北韓은 同 計劃發表時 『훈춘』 및 『나훗카』 開發計劃의 非 經濟性を 指摘
- 東北亞地域 發展을 위한 經濟技術 協力問題와 관련하여 北韓이 보인 態度 變化는 向後 南北經濟交流·協力の 發展에 매우 鼓舞적인 徵候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 한편으로는 작금의 『蘇聯事態』가 北韓의 對外開放을 促進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3. 建 議

- 東北亞 經濟技術發展會議(장춘)와 관련하여 北韓이 보인 態度

變化와, 北·中·蘇 3國의 競爭的인 西方協力 誘致 努力을 南北關係 發展의 轉機로 積極 活用할 것을 建議함.

○ 우리의 對應方案은

- 첫째, 同 問題와 관련, 앞으로 開催될 國際會議에서 北韓 立場을 支持하는 意思를 조심스럽게 나타내면서 北韓에 내해서는 北韓이 共同對處 方案을 摸索하기 위한 秘密接觸을 提義함.

※ 公開 接觸時 韓·中, 韓·蘇關係 發展에 無益

- 둘째, 美·日 등 友邦國家들이 「선봉 經濟貿易地區」 開發計劃 보다 「훈춘」이나 「나훗카」 開發에 더 큰 關心을 보일 경우, 北韓의 實質的인 南北關係 改善措置를 條件으로 우리의 獨自的인 參與도 考慮함.

添 附

北韓의 『선봉經濟·貿易地區』 開發計劃 內容

〈國內 言論報道 內容 要約〉

- 東北亞地域 經濟發展에 가장 重要한 것은 海上輸送路의 確保이며, 咸鏡北道의 淸津, 南津, 선봉港은 東北亞 經濟發展에 特別한 意義를 가짐.
- 淸津港은 2個區域 8個埠頭, 防波堤 길이 1.8km로 現在 年間 250萬~300萬톤의 鐵鑛石 處理施設 및 100萬톤의 糧穀保管 倉庫를 갖고 있으며, 年間 800萬~1,000萬톤의

貨物 通關能力 保有

- 나진港은 3個 돌출 埠頭와 10個 岩壁, 2個의 護岸으로 形成되어 있으며, 防波堤 길이는 2.5km, 1萬톤급이상 船 舶 15隻 同時 接岸이 可能하여 年間 300여만톤 貨物取 扱 可能
- 이들 港口는 中·蘇 國境에 隣接하여 모두 50km 半徑內에 있으며, 既存 鐵道 및 道路網과 連結시키면 큰 投資없이 淸진港과 나진港을 2,000萬~3,000萬톤의 貨物取扱이 可能한 港口로 開發할 수 있음.
- 淸진의 東港과 西港에 5萬~10萬톤급 貨物船을 돌출식 埠頭와 接岸埠頭施設을 推進中
- 나진港의 自然 防波堤를 이용, 4, 5號 埠頭建設을 推進 하고
- 선봉港 埠頭施設의 擴張 및 高速道路 建設 등 計劃
- 東北亞地域 經濟交流와 協力을 推進하기 위해 『선봉 經濟· 貿易地區』를 開發하게 되었으며, 外部의 設備·技術導入에 의한 加工工場을 合營, 合作 方法으로 推進할 計劃임.

〈蘇聯事態〉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 經濟 分析 —

가. 最近 北韓經濟現況

經濟 動向

- 最近 北韓經濟는 對內外 經濟與件의 惡化로 극심한 沈滯局面에 빠져 있으며, 주민들의 衣·食·住 生活水準도 70年代 보다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음.
- 推進中인 第3次7個年計劃의 年平均 成長目標는 7.9%로 되어 있으나 '87~'90年の 年平均 成長率은 1.2%에 불과하며, 특히 '90年度에는 負의 成長(-3.7%)을 記錄하였음.

〈第3次7個年計劃期間 成長推移〉

區 分	'87	'88	'89	'90	年平均
成長率(%)	3.3	3.0	2.4	-3.7	1.21

- 따라서 '90年度 北韓經濟 規模는 GNP 231億弗, 1人當 GNP 1,064弗, 貿易總額 46.4億弗의 水準에 머물고 있음.

※ '90年度 韓國 GNP 2,379億弗, 1人當 GNP 5,569弗, 貿易總額 1,348.6億弗

- 北韓經濟 沈滯의 本質的 要因은
 - 社會主義 經濟體制의 一般的 現象인 勤勞者들의 生産意慾 低下, 資源配分の 非效率性, 技術開發速度的 停滯
 - 重工業優先政策의 지속으로 인한 産業構造 不均衡 深化, 自力更生 路線에 따른 資本·技術導入의 不振 等임.
- '90年度 北韓經濟 沈滯의 直接的인 要因은 에너지 및 原資材 不足으로 인한 鑛·工業生産 不振, 穀物生産量의 減少 等임.
 - 에너지 部門은 北韓 에너지 供給의 70% 이상을 擔當하고 있는 石炭生産量이 投資不足, 施設落後, 採掘條件 惡化 등의 要因으로 3,300萬톤(施設能力 4,330萬톤)에 不過
 - 原油 輸入量도 輸出不振 및 外貨不足 등으로 252萬톤 (精油能力 350萬톤)에 불과
 - 穀物生産量은 氣候不純으로 인해 前年度 보다 12%減少된 481.2萬톤으로 凶作을 記錄하였음.
- 한편, '89年 『平祝』開催로 財政狀態가 惡化되고 慢性的인 貿易赤字로 인한 外債의 累積, 蘇聯, 中國 및 東歐諸國의 開放·改革 過程에서 나타난 經濟沈滯와 이들 國家의 實利 追求 傾向이 北韓의 對外經濟協力 與件을 극도로 惡化시켰으므로 經濟沈滯를 加重시켰음.

當面課題

- 北韓이 現 體制를 固守한다는 立場을 前提로 한 경우 當面한 經濟難을 脫皮할 수 있는 길은 國際協力을 強化하여 不足한 資本과 技術導入을 促進하고 輸出入 市場의 擴大를 통해 貿易을 增大시키는 것임.
- 그러나 中·蘇의 改革·開放 및 東歐諸國의 民主化 改革以後 北韓은 이들 國家와의 貿易 및 經濟協力 基盤이 崩壞되기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 敵對關係에 있던 西方 先進國들과의 政治的 關係改善 및 經濟協力強化가 切實한 課題로 擡頭되 있음.
- 原資材 不足과 國內 生産의 不振에도 불구하고 體制固守와 勤勞者들의 不滿解消 및 生産意慾 鼓吹를 위해서는 住民들 의 衣·食·住 生活水準向上이 不可避하며, 특히 食糧 및 住民生必需品 供給 增大는 가장 시급히 解決해야 할 政策課 題로 되어 있음.

나. 『蘇聯事態』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北·蘇 經濟關係

- 北韓은 政權樹立以後 始終一貫 自力更生 路線을 標榜, 原 料·燃料의 70%를 自給한다는 目標下에 金屬·機械 등 重工

業 部門과 鑛業開發에 注力해 왔음.

- 그러나 지금까지의 經濟建設過程에서 北韓은 대부분의 設備, 技術 및 原資材를 蘇聯으로부터 供給받아 왔으므로 北韓經濟의 對蘇依存度는 매우 높은 實情임.
- 89년 現在 北韓 電力生産의 60% 이상, 炭鑛 및 精油 50% 이상, 鋼鐵 30% 이상, 알루미늄 100%, 鐵鑛石 40%, 化學肥料 14%, 纖維 20%가 蘇聯 支援으로 建設한 施設에서 生産. (89. 9. 2 모스크바 放送)
- 89년까지 總 3千件的 各種 設計圖와 技術文件提供, 6千名 이상의 蘇聯 技術者 派遣, 2千名 이상의 北韓 技術者 및 勞動者 技術研修實施.
- 특히 85年 12月 강성산(당시 總理)의 蘇聯 訪問時 締結한 長期經濟協定에서는 '86~'90期間中 北韓이 建設할 總 17個 프로젝트를 蘇聯이 支援하기로 하였음.
- 그 結果 '90年 現在 北韓은 貿易總額의 51%, 原油導入 17%, 코크스 導入 50% 이상을 蘇聯에 依存하고 있으며, 外債總額의 50%가 對蘇債務로 分析되고 있음.

〈北韓 經濟의 對蘇依存 現況〉

(90年 現在)

區 分	總額(量)	對 蘇	依 存 度
貿 易	46.4億弗	23.5億弗	51%
(輸出)	20.2億弗	10.5億弗	52%
(輸入)	26.2億弗	13.0億弗	50%
原油導入	252萬噸	44萬噸	17%
外 債	78.6億弗	39億弗	50%

北·蘇 經濟關係의 惡化問題

○ 작금의 「蘇聯事態」發生 이전에도 改革·開放에 대한 相互立場 差異, 蘇聯 經濟沈滯 등으로 인해 雙方이 締結한 協定을 履行하지 않음으로써 北·蘇 經濟協力關係는 惡化 路에 있었음.

— '86~'90年 期間에 蘇聯이 支援하여 建設하기로 하였던 17個 프로젝트中 金책製鐵 2段階擴張工事 등 86年 이전에 着工, 繼續事業으로 推進된 一部 事業은 完了되었으나, 期間中 새로 着工된 事業은 蘇聯의 支援不振으로 實績 微微

※ 蘇聯支援 計劃事業中 3個 對象이 完工되고 8個가 進行중 이나 現在 東平壤火力發電所 建設 외에는 蘇聯의 支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음.

- 특히 蘇聯이 지난해부터 雙方 貿易에서 國際價格基準에 의한 硬貨決濟를 要求함에 따라, 90年 11月에는 『北·蘇 貿易 決算體系 變更에 관한 協定』을 체결, 90년부터 國際價格基準에 의한 硬貨決濟가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價格基準 및 決濟方式의 變更, 北韓의 對蘇 債務 辨濟 不履行, 蘇聯의 對北 原油供給量 減縮 등은 北·蘇 經濟關係를 惡化시키는 要因으로 되어왔음.
- ※ 今年 4月末에 調印된 『北·蘇 貿易·經濟協定』에서는 北韓이 今年안에 對蘇債務중 5億루블 (約 8億弗 推定)을 人民消費製品, 電子製品 및 輕工業製品으로 償還하도록 되어 있음.

『蘇聯事態』가 北韓經濟에 미칠 影響

- 北韓經濟의 對蘇依存度 面에서 볼 때 작금의 『蘇聯事態』는 北韓經濟에 심각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임.
- 특히 『蘇聯事態』의 進展推移는 聯邦政府와 共和國政府間的 經濟關係가 再定立될 때까지 상당한 期間이 걸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蘇聯의 生産沈滯가 不可避해짐으로써 91年度 北·蘇 交易量은 激減될 것임.
- 따라서 코크스·纖維 등 對蘇依存도가 높은 原資材 供給 事情이 극히 어려워져 關聯産業의 生産活動을 크게 萎縮시

킬 可能性이 있음.

- 蘇聯은 自國의 經濟事情이 惡化됨에 따라 北韓에 대해 既存 債務의 償還(現物)을 강력히 要求할 것이 豫想되며, 이 경우 北韓의 對西方 輸出減少가 不可避하게 되어 外貨事情도 더욱 惡化될 것임.
-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蘇聯支援으로 建設된 設備의 部品이나 主要 機械製品 生産에 必要한 部品 導入의 차질은 北韓이 推進하고 있는 建設事業이나 既存 設備의 補修에 影響을 미치게 되어 産業施設의 稼動率을 低下시킬 것임.

다. 北韓의 對應方向

- 北韓은 우선 中國에 대해 긴급 財政支援을 要請함과 동시에 原油·코크스 등 主要 原資材 供給을 增加시켜 主로 外交的 努力을 強化하는 한편
 - 推進中인 對日修交 交渉을 積極적으로 展開하면서 특히 修交 以前이라도 日本의 經濟協力을 받아내기 위한 公式, 非公式 努力을 傾注할 것임.
 - 또한 蘇聯에 대해서는 聯邦政府와의 關係보다는 個別 共和國들과 經濟關係를 強化하는데 注力한 것임.
- ※ 『蘇聯事態』以前인 今年 上半期 중에도 北韓은 백러시아 共和國 등 一部 共和國들과 經濟協定을 締結하였음.
- 對內的으로는 戰時와 유사한 經濟動員 雰圍氣를 造成, 住民에 대한 統制強化와 增産·節約鬭爭을 積極 展開한 것임.

經濟開放 및 南北交流接力は 『蘇聯事態』가 安定을 回復하고
이에 대한 北韓의 立場이 整理될 때까지는 消極적인 姿
勢를 보일 것이나 그 後에는 보다 積極的으로 政策을 轉
換할 것임.

金日成, 中國 訪問

1. 概 要

- 期 間 '91.10. 4~10.13 (滯中動向 別添)
- 隨 行 員 李鍾玉(副主席), 韓成龍(黨祕書), 金容淳(黨國際部長), 姜錫柱(外交部 副部長) 등
- 主要 接觸人物 : 江澤民(黨 總書記), 楊尚昆(國家主席), 李鵬(總理) 등
- 주요 訪問地 北京, 濟南(工業都市), 南京(電子工業都市) 泰安, 曲阜, 揚州(古都) 등

2. 雙方 立場

區分	內 容	備考
	〈金日成〉	
	○ 雙方的 現 友好關係에 滿足	10. 4
雙方 關係	○ 親戚집을 訪問한 것 같음.	歡迎宴會
	〈江澤民〉	
	○ 世界 情勢가 어떻게 변하던 中國은 兩國의 友好關係 發展에 계속 努力	

〈金日成〉

10. 4

○ 朝鮮의 國內 情勢는 安定 團結되어 있음.

歡迎宴會

江澤民

○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安定이 東北亞 地域

및 아시아 全體의 情勢 發展에 影響을

韓半島 미치기 때문에 中國은 韓半島의 情勢發展

情勢 '에 매우 關心을 가지고 있음.

○ 최근 수년간 韓半島의 情勢가 점차 緊張

緩和 方向으로 가고 있으며 南北韓 關係

가 改善되고 있는 바 이는 南北韓 人民

全體 및 아시아 各國 人民의 興亡에 符

합함.

統一 〈金日成〉

○ 10.22~25間 平壤에서 南北高位級會談 開

對話 催豫定

○ 1民族1國家, 2制度2政府 基礎 위의 聯邦

制 方式만이 어느 一方이 他方을 삼키지

않는 統一方案

〈江澤民〉

○ 韓半島 統一은 南北韓 쌍방의 對話와 協

商을 통해 解決, 第4次 南北總理會談의 成

果 期待

○ 聯邦制 方式의 統一方案 支持

<p>濟 革</p>	<p>〈金日成〉</p> <p>○ 中國式 社會主義 建設을 祝賀</p> <p>〈江澤民〉</p> <p>○ 企業을 잘 꾸리려면 觀念을 改變하고 原價를 計算하고 效益을 따지며 빚을 返還할 수 있는 能力도 考慮해야 함.</p> <p>〈秦基偉 國防部長〉</p> <p>○ 金日成은 成功的인 中國의 經濟變革 事例를 목격한 셈</p>	<p>10.11</p> <p>揚州</p> <p>의정化學 纖維工業 聯合公社 訪問時</p> <p>10.14</p> <p>新華社 通信</p>
<p>濟 情</p>	<p>〈金日成〉</p> <p>○ 當面 建設의 重點은 電力工業을 強化하는 것임.</p> <p>〈李 鵬〉</p> <p>○ 해마다 1,700萬名의 人口가 늘어나 人民들의 衣·食·住 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매우 무거운 任務임. 올해는 심한 水災를 입어 250億kg (2,500萬 t)의 糧穀 損失이 있었음.</p>	<p>10.5</p> <p>會談時</p>
<p>發</p>	<p>〈錢其琛 外交部長〉</p> <p>○ 南北韓의 核開發 反對</p> <p>○ 北韓의 核査察과 駐韓美軍 核徹收는 別개 事項</p>	<p>10.4</p> <p>오스트리아 訪問中 빈에서 記者會見</p>

3. 分析·評價

○ 이번 訪問의 特徵은

- 10여일의 長期滯留, 中國 黨·政 首腦들과의 連鎖接觸, 中國 側의 대대적인 歡迎 등 外形上的 盛大함에도 불구하고
- 儀禮的인 쌍방간의 親善強化 다짐 및 中國의 北韓 統一路線 支持 以外에는 懸案課題에 대한 討議內容, 合意事項 등이 전혀 發表되지 않은 點 등임.

○ 歡迎宴會 및 產業視察 過程 등에서 表明된 兩側의 主要 言及들을 土臺로 쌍방의 立場을 分析하면

- 金日成이 中國의 “特色있는 社會主義 建設”을 讚揚하면서 傳統的인 紐帶關係 浮刻에 注力한데 비해

※ 訪中 期間中 北韓의 報道媒體들도 中國의 分野別 “發展相”을 集中 企劃報道하면서 中國의 “改革·開放”을 讚揚

※ 10.14 北京放送 論評도 “朝·中은 脣齒關係”임을 強調

- 江澤民, 李鵬 등은 “平和와 發展이 現實의 主流”, “人民이 進歩와 平和를 要求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歷史의 흐름”이라고 國際情勢를 評價하면서, “韓半島의 安定과 南北 對話의 成果”를 強調, 隱然中 北韓의 對外·對南政策의 變化를 促求하였음.

○ 특히 經濟分野에 있어

- 金日成이 北韓의 “豐年”을 誇示하면서 “電力工業 發展”의 必要性을 強調한데 비해
- 中國側은 西方과의 合作工場이 많은 濟南市, 南京市 등 「經濟開發區」를 巡訪케하고, 經濟觀念의 “改變”을 強調함으

로써 北韓의 經濟開放을 勸誘하는 한편

- 당면한 衣·食·住問題의 어려움을 說明, 對北韓 經濟支援이 여의치 않음을 示唆하였음.

○ 北의 核査察 問題와 관련해서는

- 雙方間 會談 또는 晚餐時 公式 言及은 없었으나
- 이 期間中 오스트리아를 訪問하고 있는 錢其琛 外交部長이 “北韓의 核開發 反對 및 核査察 受容促求” 立場을 분명히 밝혔음.

○ 이같은 內容 등을 綜合해 볼 때

- 쌍방은 “社會主義體制 維持에 共同步調”를 다짐하면서
- 對美·日關係, 核査察, 南北對話, 金正日 權力承繼 등 當面 課題들을 深度있게 論議하였을 것이나
- 中國側이 “平和5原則”을, 北韓은 中國의 “4大基本原則”을 각각 強調함으로써 事案別 意見 調整이 어려웠을 것으로 推測됨.

※ “平和5原則”：領土主權의 相互尊重, 相互不可侵, 內政不干涉, 平等互惠, 平和的 공존

※ “4大 基本原則”：社會主義 路線에의 忠實, 人民民主獨裁, 共產黨 指導,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 思想 堅持

○ 요컨대 이번 金日成의 訪中을 통해

- 쌍방은 “特殊한 親善關係”를 對內外에 誇示하고
- 中國이 北韓에게 새로운 國際情勢에 副應할 것과 中國式 經濟發展의 推進을 강력히 勸誘하고 北韓이 이를 肯定的으로 受容한 側面이 보이나

※ 金日成은 平壤 歸還後 中國側에 보낸(10. 15) 感謝電文에서 “中國이 現代化된 社會主義建設路線에 따라 새로운 發展과 繁榮을 이룩한 모습에 感銘과 鼓舞를 받았다”고 言及

— 金의 訪中 結果가 東北亞 情勢, 南北關係 및 韓·中關係 進展 등에는 별다른 影響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分析됨.

○ 한편, 金日成은 平壤歸還 다음날인 10.16 黨政治局會議를 召集, 訪中結果를 討議하였는 바 그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음.

— 雙方은 傳統的인 親善을 더욱 鞏固히 하며, 社會主義 偉業을 옹호·固守·發展시켜 나아가기 위한 雙方의 共同鬭爭을 強化하기로 하였음.

— 中國은 北韓의 社會主義 建設에서 보다 큰 成果가 있기를 祝願하였음.

— 北韓은 中國이 “4大 基本原則”下에 改革과 開放을 實施, 特色있는 社會主義를 建設한데 대해 높이 評價하였음.

— 中國은 北韓의 聯邦制 方式 統一方案을 支持하였고, 北韓은 中國의 對臺灣 政策에 支持를 表明하였음.

— 雙方은 對外關係에서 各自의 自主的 立場과 方針들에 相互 理解와 支持를 表明하였음.

— 쌍방은 國際關係에서 霸權主義를 反對하고 平等과 內政不干涉의 原則을 尊重하며, 韓半島를 비롯한 世界 여러地域을 非核平和地帶로 만드는 問題의 重要性을 強調하였음.

— 雙方은 피로써 맺어진 親善關係를 代를 이어 더욱 꽃 피어나갈 것에 대한 決意와 意志를 表明하였음.

○ 同 政治局會議의 討議內容은

- 이번 金日成의 訪中이 커다란 成果를 가져온 것처럼 自誇하고 있으나
 - 其實 雙方간의 親善關係를 再確認하고 社會主義體制 維持에 共同步調를 취한다는 點 以外에는 懸案問題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이 거의 없어 雙方間에 實質的인 合意事項이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특히 對外關係에서 “自主的 立場”과 “內政不干涉 原則”이 強調된 것은 韓·中 修交問題 등과 관련 中國側 意思가 反映된 것으로 보임.
 - 非核地帶問題와 관련해서는 “世界 여러地域을 非核平和地帶로 만드는 問題의 重要性을 強調하였다”고 言及하였는 바 이는 北韓의 核査察問題에 대한 合意가 없었음을 示唆하는 것임.
 - 끝으로 代를 이어 親善關係를 發展시켜 나아가기로 하였다는 內容은 雙方의 “傳統的 友好關係 持續”이라는 一般的인 意味와 함께 “金正日 後繼問題”까지도 包含된 것으로 解析됨.
- 同 討議內容은 全體的 흐름으로 보아 向後 北韓의 對內政策은 급속한 變化보다는 現 體制維持를 위한 固執式 社會主義 固守에 重點을 둘 것으로 豫想됨.

<金日成의 滯中 動向>

日 字	動 向
10. 4	○ 北京 到着(단동經由 列車便) ○ 江澤民과 會談(國賓館) ○ 歡迎宴會(江澤民, 楊尙昆)
10. 5	○ 李鵬 總理, 金日成 宿所 訪問 ○ 綜合巧藝公演 觀覽(人民大會堂)
10. 6	○ 楊尙昆과 會談(國賓館) ○ 아시아올림픽村 訪問(北京市內) ○ 北京 出發(吳學謙 副總理 등 案内 同行)
10. 7	○ 山東省 濟南市 到着 - 第2工作機械工場 - 大明湖 公園 - 自動車 總工場 등 訪問
10. 8	○ 山東省 泰安市 曲阜市 訪問 - 泰安市內 泰山, 岱廟 등
10. 9	○ 山東省 曲阜市 歷史遺跡 訪問 - 孔子墓, 孔林 등
10.10	○ 江蘇省 南京 到着 ○ 매원 신천紀念館 訪問 ○ 江澤民과 南京에서 再會(동교 招待所)
10.11	○ 江蘇省 楊州 到着(江澤民 同行) - 의정化學纖維工業聯合公社 등 訪問
10.11	○ 南京 出發
10.15	○ 平壤 到着

第5次 日·北韓 修交會談

1. 動向概要

- 北韓은 이번 第5次 會談에서 賠償問題에 대하여는 從前과는 달리 戰前 36年 期間에 대한 補償만을 強調하였으며, 核査察 問題는 여전히 日本과의 協商對象이 아니라 美國과 論議되어야 할 問題라는 立場을 보이는 한편, 『朝·日善隣友好條約』 締結을 提議하였으나 日本側에 의해 拒否되었음.

<會談概要>

區 分	內 容
日時·場所	1991. 11. 18-20, 北京
代表團	北韓:田仁徹 (外交部 副部長) 등 11명 日本:中平 立 (前 大使) 등 11명
議 題	日·北韓 國交正常化에 관한 1) 基本問題, 2) 經濟問題, 3) 國際問題, 4) 其他問題
合意事項	第6次會談 開催時期:'92. 1 下旬

2. 分析·評價

○ 이번 會談에서는 현재 雙方間에 가장 核心的인 事項이 되고 있는 議題② 經濟問題(賠償), 議題③ 國際問題(核査察)에 대해 北韓側이 部分的으로 다소 緩和된 立場을 보였는 바

— 『賠償問題』는

- 日本側이 從前과 같이 戰前 36年分에 대해서만 請求權形態로 解決해야 한다는 立場을 固守한데 반해
- 北韓側은 第4次 會談까지와는 달리 “36年 期間中の 日·北韓 交戰狀態”, “戰後 45年間的 被害” 問題 등을 일체 提起하지 않은 가운데 第2次世界大戰 終結 以後의 “國際的 慣例”, “道德·倫理” 등을 強調하면서 戰前 36年間的 人的·物的 被害에 대한 補償만을 要求하였음.

— 『核査察 問題』는

- 日本側이 여전히 修交의 前提條件으로 강력히 核査察 受容을 促求하였으나
- 北韓側도 從前과 같이 이는 美國과 解決해야 할 問題라고 強調하면서 核安全協定 署名은 南韓內 美軍 核武器와 美國의 核威脅이 除去되면 解決될 수 있으며, 核査察은 南北韓에 대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하였음.

※ 北韓은 日本이 지난 9月 IAEA理事會에서 “對北韓 核安全協定 早期署名 및 관련·義務履行促求決議案” 採擇에 앞장선 것은 부당한 處事였다고 非難하였음.

- 議題④ 其他問題에 있어 北韓은 日本側이 第2次 東京會談(3.11—12)에서 提起한 20名의 在北日本人妻 安否確認問題와 관련, 12名에 대한 調查結果를 日本側에 通報하고 이들의 故鄉訪問 實現을 위해 努力한다는 態度를 보였음.
- 한편 北韓은
 - 「朝·日 善隣友好條約」의 締結을 提議하였으나 日本側은 “懸案을 保留한 狀態에서 正常化에 응할 수 없다”는 理由로 이를 拒否하였으며
 - ※ 北韓은 第3次會談(5.20—22)에서도 “先修交 後協商”을 提 案한 바 있음.
 - 「李恩惠問題」에 대해서는 “KAL機 事件”이 南韓의 自作劇이 며 日本이 會談때마다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日·北韓 修交會談에 難關을 造成하려는 南韓의 謀略騷動에 合勢하는 부당한 處事라고 主張하였음.
- 요컨대 北韓이 이번 會談에서 「賠償問題」에 대해 대폭 後退한 立場을 보이고 돌연 友好條約問題를 提起한 것 등은 급박한 經濟難 打開을 위해 會談의 早期妥結을 實現하려는 意圖로 分 析됨.
 - ※ 北韓은 金日成 80回生日('92. 4. 15) 이전에 對日修交會 談을 終結코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로 볼 때 日·北韓 雙方은 今年 1月부터 進行되어 온 5차 례의 會談에서
 - 議題① 「基本問題」는 第4次會談時 北韓側이 자기들의 管轄地

域이 休戰線 以北임을 事實上 認定하였고

- 議題② 『經濟問題』도 이번에 36年分에 대한 賠償問題로 壓縮 되었으며
- 議題③ 『國際問題』는 현재 韓·美 兩國이 韓半島 非核化를 推進하고 있어 解決의 길이 열려 있고
- 議題④ 『其他問題』 解決도 별다른 障礙要因이 되지 않으므로 第6次會談부터는 核査察 및 賠償問題에 대한 協商이 本格的으로 이뤄질 것으로 展望됨.

○ 한편 北韓의 田仁徹은 會談 終了後 가진 記者會見에서 南北對話와 관련, 다음과 같이 北韓側의 立場을 밝혔음.

- 南北對話에서 우리側이 統一을 一貫되게 主張하고 있는 반면에, 南側은 現存 分裂狀態를 固着시키려 하고 있음.
- 우리는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 個 制度 두 個 政府에 基礎한 聯邦制 方式으로 나라의 統一을 이룩할 것을 主張하고 있음.
- 統一을 위하여 現時期 중요한 問題는 南北 사이에 不可侵宣 言을 採擇하는 것임.
- 현재 進行되고 있는 南北高位級會談에서 進展이 이룩되면 最高位級會談 問題도 日程에 오르게 될 것임.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

1. 動向概要

- 12. 10—13間 서울에서 開催된 第5次 南北高位級會談에서 南北 雙方總理는 分斷이래 最初의 當局間 合意인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에 署名함으로써 “南北韓平和共存 制度化”의 歷史적인 기틀을 마련하였음.
- 한편 雙方은 『3個項共同發表文』을 통해 ① 各其 ㅍㄷㄷ 時日안 에 『合意書』 發效節次를 거치고, ② 核問題協議를 위해 今年 12月에 板門店 代表接觸을 가지며, ③ 第6次會談을 '92. 2. 18—21間 平壤에서 갖기로 하였음.

<合意書 要旨>

- 和解: 相對方 體制尊重,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轉換, 板門店連結事務所 設置, 南北政治分科委 構成 등
- 不可侵: 相對方에 武力 不使用, 南北軍事共同委 構成, 대규 모 部隊移動·軍事演習 通報, 軍 當局者間 直通電話 設置, 南北軍事分科委 構成 등
- 交流·協力: 經濟的 交流·協力, 新聞·라디오·텔레비전 등 交流, 離散家族의 書信去來·相逢, 南北經濟交流·協力分科委 構成 등

※ 合意書 全文 別添

2. 分析·評價

○ 이번 『合意書』는

— 72年度の 『7.4 共同聲明』에 비해 合意書의 形式, 內容, 代表自格 등 모든 면에서 格式을 갖춘 최초의 南北政府當局間 合意書로서 統一指向的인 共存共榮의 基本章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 南北關係 側面에서는

• 非正常的인 關係를 清算하고 平和共存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南北韓基本關係를 定立한 것이고

※ 相對方 體制尊重, 內部問題 不干涉, 誹謗·中傷 中止, 破壞·顛覆行爲 禁止條項 등은 平和共存에 관한 原則合意인 것임.

• 分斷 46년만에 처음으로 責任있는 雙方 當局間에 關係改善에 관한 合意를 創出한 것이며

• 軍事的 側面에서는 現 停戰狀態를 南北間의 鞏固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한 土臺를 마련함으로써 對決과 緊張緩和에 크게 寄與할 수 있게 된 것임.

※ 相互 不可侵 및 停戰狀態를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한 共存努力 傾注에 合意한 것은 戰爭의 危險性을 그만큼 減少시킨 效果를 期待할 수 있게 되었음.

• 離散家族問題 解決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아울러 南北經濟交流·協力の 물꼬를 틀 수 있는 契機를 造成하였음.

• 또한 南北사이에 여러 分野에서 交流·協力の 길이 트이고

通行·通信施設이 連結될 수 있게 됨으로써 民族的 紐帶感
形成과 同質性 回復에 寄與할 수 있게 되었음.

一 우리側의 立場에서는

- 당초 우리側이 會談에 임할 때부터 堅持해온 3大 原則인
南北當事者 解決原則, 實踐性 保障의 原則, 南北關係 改
善에 必須不可缺한 內容의 反映原則 등이 모두 貫徹되었다
고 하겠음.

① 南北當事者 解決原則 → 停戰狀態의 南北間 平和狀態로
의 轉換

※ 北韓側은 그동안 停戰協定을 北韓과 美國間의 平和協
定으로 對替해야 한다는 “3者 會談”論理로 南北 當
事者 解決原則을 拒否해 왔음.

② 實踐性 保障의 原則 → 不可侵 履行保障을 위한 軍事
的 信賴構築 措置, 合意書 發效後 3個月안에 3個 實
踐機構 設置(南北連絡事務所, 南北軍事共同委員會, 南北經
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3個
分科委員會 設置(南北政治分科委員會, 南北軍事分科委員會,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 北韓側은 合意書 內容과 관련, 南北關係 改善에 대
한 具體的 實踐意志가 缺如된 단순히 宣言的인 것과
實踐的인 것을 함께 反映하자는 立場을 堅持하여 이
를 貫徹시킨 것임.

③ 南北關係 改善에 必須不可缺한 內容 反映 → 和解,

不可侵, 交流·協力の 同時推進을 保障함으로써 南北關係
改善의 基本틀을 마련

※ 北韓側은 그동안 不可侵宣言의 于先採擇 立場을 固守
하여 왔음.

- 北韓側이 最初에 提示한 內容中 不合理하고 問題가 있었
던 條項은 協議課程을 통해 撤回토록 誘導하였음.

※ 北韓側은 交流·協力和 관련, 우리側의 國家保安法 철폐
와 密人北者 釋放 등의 名分을 確保하기 위해 『法律的·制度的
障礙除去』를 主張했으나 우리側의 要求에 의
해 스스로 撤回하였음.

특히 이번 合意書 採擇은 北韓의 核査察 拒否와 核
武器 開發을 沮止할 수 있는 輿件을 造成하였음.

- ※ 우리側은 核問題를 合意書 妥結의 前提條件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韓半島의 非核化등에 관한 共同宣言(案)』을
提示, 北韓의 核武器 開發拋棄를 강력히 促求하는 동
시에 12月中 代表接觸을 통해 韓半島 核問題를 協議해
나가기로 合意하였음.

- 또한 不可侵의 境界線 問題와 관련, 『軍事停戰協定에 規
定된 軍事分界線과 지금까지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
로 한다』고 合意함으로써 休戰協定에 明文規定 不在로
紛爭의 素地로 남아있던 海上境界線에 관한 未備點을 補
完하였음.

- 뿐만 아니라 南北連絡事務所 設置問題는 雙方 當局이 分

斷 以後 처음으로 當局을 代表하는 連絡機構를 板門店에 두기로 合意했다는 點에서 앞으로 보다 원활히 連結·協議 機能이 가통케 되었음.

※ 다만 本 合意와 南北韓이 第3國과 締結한 條約·協定과의 關係를 명백히 規定해 두는 것이 좋으리라는 立場에서 그동안 우리側이 「雙方이 이미 各其 締結하여 發效中인 兩者 또는 多者間의 條約이나 協定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內容을 合意書에 包含시키려고 했으나 이의 削除를 要求하는 北韓側 主張을 受容, 明記하지 않았음.

○ 이번 「合意書」의 履行을 위한 當面措置는

- 雙方이 各其 發效에 필요한 節次를 거쳐 내년 2월에 열리게 될 第6次 會談에서 合意書 文本을 交換하는 것이며
-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南北政治分科委員會, 南北軍事分科委員會,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가 設置되고 合意書 發效後 3個月안에 南北連絡事務所, 南北軍事共同委員會, 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가 構成·運營될 것임.

○ 한편 北韓의 報道媒體들은 이번 會談과 관련

- 會談 첫날에는 우리側 “基調發言” 內容에 대해 “對決과 戰爭, 分裂을 追求하는 立場”이라고 非難하였으나

※ 12. 11 平放 論評, “다시금 드러난 對照的인 두 立場”

- 「合意書」가 採擇된 直後부터는 “會談이 成果的으로 끝났다”고 言及하면서 「合意書」 內容을 反復 報道하는 가운데
- 金日成이 北側代表團을 만난 자리에서 會談의 成果에 대해

“커다란 滿足을 表示하였다”는 內容과 우리 大統領이 延總理
에게 내년도 T/S 中止에 대해 “肯定的 呼應”을 表示하였다는
點 등을 浮刻 報道하였음.(12. 14 中放)

3. 主要法制定

北韓의 〈民法〉

1. 制定 意義 및 目的

○ 새로 制定된 北韓民法은

- 이미 施行해 오던 民事關係 法規 등을 綜合·整理한 것으로서 別다른 內容上的 變化없이 基本構造를 다소 改編한데 그치고 있으나
- 北韓政權이 樹立('48. 9. 9)된 지 43年만에 처음으로 民事關係規程을 法典化한 것이라는데 그 意義가 있음.

○ 北韓이 그동안 미루어 오던 民法制定을 서두르게 된 것은

- 최근 中·蘇 등 社會主義國家의 開放雰圍氣와 나름대로의 社會主義 經濟發展段階에의 副應 및 資本主義國家와의 對外貿易의 必要性 擡頭 등 國內外 環境이 變化함에 따라 財產 所有關係를 명확히 規定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認識아래
- 既存 經濟體制에 대한 固守 立場을 法으로 명백히 宣言함으로써 體制 安定을 圖謀함과 아울러
- 國家經濟計劃課題의 보다 效率的인 遂行을 위한 中央集權的 統制機能을 強化함으로써 經濟建設의 不振을 打開해 나가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임.

制定經緯

○ 北韓은

- '50年代에 두 차례('50년, '58년)에 걸친 民法草案의 作成 등 法典化를 위한 持續的인 努力을 기울이는 가운데,
- '70年代 後半에는 金日成의 演說('77.12.15, 最高人民會議 第6期 第1次會議)을 통해 '社會主義 法務生活의 強化'를 위한 法制定을 강조하면서 각종 民事關係 法令의 成文化를 적극 推進해 왔으나 綜合 民法典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 그간의 民事事件 處理는 民法草案을 비롯한 『民事規程』('86. 1.30 中央人民委 政令)등의 事案別 關係規程과 로동당 指針 등을 準用하여 왔음.

○ 이러한 狀況에서 北韓은

- '90. 5 第9期 最高人民會議 發足 이후 法案審査委(委員長: 桂應泰)에서 미루어 오던 民法案에 대한 審議를 再開하였으며,
- '91. 4.11~13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2次會議 期間中 이를 案件으로 採擇·承認함으로써 最初의 民法典(總4篇 271條)을 마련하게 되었음.

2. 主要 特徵

가. 一般的 特性

○ 北韓民法은

- 國家와 社會利益의 優先的 保障을 통한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鞏固化를 그 使命으로 함으로써 私有財產權 保障에 基礎한 우리 民法과는 그 內容 및 構造上의 差異點을 보이고 있으나
- 基本構造 및 一般的 債權·債務關係 規程 등에서는 傳統 民法 體系와 內容이 相當 部分 維持되고 있으며
- 主體思想을 法理論의 基礎로 함으로써 社會主義 法體系로 부터 점차 逸脫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

나. 構造的 特性

- 北韓 民法의 基本構造는 우리 民法과 같은 獨逸式 篇別法 (Pandekten System)을 그대로 維持하고 있음.
- 北韓 民法은 婚姻 등의 家族關係를 契約關係로 보지 않는 社會主義 國家의 一般的 性向에 따라 家族法을 民法에서 分離하고 있음.

다. 內容上 特性

- 一般制度(第1篇) 規程은

-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鞏固化’를 民法의 基本原則으로 提示하여 既存 經濟體制의 強化 立場을 明文化하고 있음.
- 所有權 制度(第2篇) 規程은
 - 現行 ‘社會主義 憲法(第18~22條)에 規定된 所有關係 條項을 具體化’시키고 있으며, 生産手段의 個人所有를 완전히 排除하면서 個人所有의 範圍를 消費 目的의 生必需品에 만 局限시키고 있음.
 - 所有權은 ‘抽象的이 아닌 具體的 形態’로 存在한다는 것으로 보아 知的 所有權을 除外시킨 것으로 보임.
- 債權·債務制度 (第3篇) 規程은
 - 契約을 債權·債務關係의 중요한 發生基礎로 認定하면서 餘他 社會主義國家의 民法보다 國家計劃의 強度를 더욱 높이고 있음.
- 民事責任 및 時效制度 (第4篇) 規程에서는
 - 時效期間을 提訴期間으로 理解하면서 從來 民法 草案들의 規定에서 보다 이를 大幅 短縮시키고 있음. (最長時效 3年 ⇒ 1年, 最短時效 6月 ⇒ 3月)

4. 內容 要旨

가. 一般制度(第1篇)

- 民法은 機關·企業所·團體 및 公民들이 서로 對等한 地位에

서 맺는 財産關係를 規制對象으로 함.

- 民法은 7가지 基本原則을 提示하고 있는 바, 1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鞏固化, ② 計劃課題의 어김없는 遂行, 3 『大安의 事業體系』 要求의 具現, ④ 國家施策의 勤勞者 受惠範圍 擴大, ⑤ 勤勞者들의 財産關係 參與 保障, ⑥ 集團主義 發揚 提高, ⑦ 國家와 社會利益의 優先的 保障과 機關·企業所·團體·公民의 個別的 利益 保障 등임.
- 經費豫算制나 獨立採算制로 運營되는 모든 機關·企業所·團體와 個別的 公民들은 民事上 權利·義務關係(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로 될 수 있는 資格 즉 民事權利能力을 所有함.
- 公民은 出生과 함께 權利能力을 가지지만 民法上 成人인 17歲가 된 때부터 權利行使를 할 수 있고, 17歲에 이르지 못한 未成人은 父母나 後見人을 통해 權利를 行使하게 됨.
- 民事法律行爲는 國家의 法과 社會主義的 生活規範에 맞아야 法的 效力을 가지며 保護를 받음.

나. 所有權制度(第2篇)

- 所有權問題는 財産關係의 基礎를 이루며, 民法은 社會主義 憲法에 規定되어 있는 所有關係 規範을 具體化하고 있음.
- 所有權은 抽象的이 아닌 具體的 形態로 存在하며, 法이나 契約 또는 相續이나 贈與에 基礎하여 發生함.
- 國家所有權은 모든 種類의 財産을 그 對象으로 하며, 生産手段 등 重要財産들은 오직 國家所有權의 對象으로만 되

고 個人은 물론 協同團體도 이를 所有할 수 없음.

- 協同團體 所有는 協同經理內 勤勞者들의 集團的 所有로서 權利를 實現할 경우에는 民主主義原則을 철저히 지켜야 함.

※ 社會主義國家의 ‘民主主義’ 原則은 프롤레타리아 階級の 獨裁를 意味하는 것으로 主權在民에 基礎한 우리의 ‘民主主義’ 概念과는 다름.

- 個人所有는 勤勞者들의 個人的인 消費 目的을 위한 所有로서 社會主義 所有와의 關係속에서 派生된 性質을 가지고 있음.

— 個人所有는 勞動에 의한 社會主義 分配, 國家와 社會의 追加的 惠澤, 터발 經理를 비롯한 個人 副業經理에서 나오는 生産物, 公民이 購入한 財産, 公民이 相續받았거나 贈與받은 財産으로 이루어 짐.

— 勤勞者들은 家庭用品·文化用品을 비롯한 그밖의 生活用品과 乘用車같은 機材를 所有 또는 利用할 수 있음.

다. 債權·債務制度 (第3篇)

- 債權·債務關係는 人民經濟計劃 文件을 비롯한 行政文件이나 契約, 그밖의 法律的 行爲와 事件에 基礎하여 設定됨.
- 契約은 人民經濟 計劃課題인가 아닌가에 따라 計劃的 契約과 一般契約으로 나누어짐.
- 計劃的 契約은 人民經濟 計劃課題를 받는 機關·企業所·團體

만이 當事者로 되고, 合意한 事項들은 法에 미리 定해져 있으며, 計劃課題가 追加·調節되는 경우 契約도 變更됨.

- 민법은 資材供給契約, 商品供給契約, 農業生産物收買契約, 基本建設施工契約, 貨物輸送契約의 다섯 가지 計劃的 契約에 대해 規定하고 있음.

라. 民事責任 및 時效制度 (第4篇)

- 民法上 權利侵害는 法定期間(民事時效)안에 裁判이나 仲裁을 提起하여야만 強制節次로 부터 保護를 받음.
- 機關·企業所·團體와 公民사이, 또는 公民들 相互間的 民事 時效期間은 1年이고, 機關·企業所·團體들 相互間的 民事 時效期間은 一般的으로 6個月이며, 計劃的 契約의 違反과 관련된 損害報償 請求와 制裁禁止處分請求, 運輸 및 遞信業務와 관련된 請求의 경우는 3個月임.

【表 1】

□ 南北韓 民法의 比較 □

北 韓	南韓 (現行)
〈制 定〉	〈制 定〉
○ 1991년	○ 1958년(以後 5次 改正)
〈規制	對象〉
○ 機關·企業所·團體 및 公民들이 서로 對等한 地位에서 맺는 財産關係	○ 私人 相互間의 財産 및 家族關係
〈基本	原則〉
○ 社會主義 經濟制度의 鞏固化	○ 私有財産權 保障의 原則
○ 計劃課題의 철저한 遂行	○ 個人意思 自治의 原則
○ 國家·社會 利益의 優先的 保障과 機關·企業所·團體·公民의 個別的 利益 保障 등 7個 原則	○ 信義 誠實의 原則
	○ 權利濫用 禁止의 原則
〈篇別	構成〉
○ 家族法 分離·制定	○ 家族法 包含
〈細部	內容〉
○ 成人年齡 : 17歲	○ 成人年齡 : 20歲(제4조)
○ 生産手段의 私的所有 不許, 個人所有를 消費目的의 生必需品에 局限	○ 生産手段의 私的所有 許容
○ 國家計劃 관련 여부에 따라 計劃的契約과 一般契約으로 區分	○ 時效期間을 權利의 取得 또는 消滅期間으로 理解, 長期時效(1年~20年)
○ 時效期間을 提訴期間으로 理解, 短期時效 (3월~1년)	

【表 2】

□ 北韓 民法의 基本構造 □

區 分		內 容
第1篇 『一般制度』	第1章	○ 民法의 基本
	第2章	○ 民事法律關係의 當事者
	第3章	○ 民事法律行爲
第2篇 『所有權制度』	第1章	○ 一般 規程
	第2章	○ 國家 所有權
	第3章	○ 協同團體 所有權
	第4章	○ 個人 所有權
第3篇 『債權·債務 制度』	第1章	○ 一般 規程
	第2章	○ 計劃에 의존하는 契約
	第3章	○ 計劃에 기초하지 않은 一般 契約
	第4章	○ 不當利得行爲
第4篇 『民事責任 및 民事時效制度』	第1章	○ 民事 責任
	第2章	○ 民事 時效

北韓의 〈家族法〉

— 우리 民法과의 比較 —

1. 家族法の 制定 意義 및 目的

○ 北韓의 家族法은

- 家族間의 〈人格的 및 財産的 關係〉(제7조)를 규정하는 것으로
- 지난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2次 會議('91. 4.11~13)에서 民法과 더불어 承認·採擇된 것이며(조선중앙방송 '91. 4.13)

※ 가족법 全文에 의하면 '90.10.24 最高人民會議에서 採擇하여 '90.12. 1부터 施行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北韓 政權 樹立('48. 9. 9)이후 43年만에 制定된 最初의 綜合 家族法典임.

※ 이처럼 家族法 制定이 늦추어진 것은 社會主義國家 건설 과정에서 答습하게된 蘇聯法 理論과 그동안 꾸준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와의 間隙이 너무 커 이를 調和시키기가 어려웠다는데 起因한 것으로 판단됨.

○ 北韓이 이번에 家族法을 制定·公布하게 된것은

- 이제는 社會發展段階에 따라 더이상 法體系 整備를 늦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 社會主義國가의 붕괴 등 國際情勢의 變革과 당면한 經濟難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社會主義法의 體制維持的·思想教養

的·組織動員的 機能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①사회주의법은 국가사회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 발전시키는 위력한 수단입니다...②사회주의법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데서 커다란 작용을 합니다...③사회주의법은 경제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조직동원적 작용을 합니다.(《사회주의 법무 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 김정일, p. 4~6)

○ 한편 家族法을 비롯한 北韓의 家族關係 法令은

- 〈社會主義 家族制度의 鞏固化〉라는 목적아래 女性의 社會的 參與와 子女教育의 社會化에 의한 〈男女 平等〉 및 〈未成年者의 保育·教養〉을 國家의 철저한 配慮下에 실현시킬 것을 표방하고 있으나
- 결국은 女性 人力을 국가경제 건설에로 動員하여 物質的 要塞를 점령하고 어린이들에 대한 思想教育을 실시하여 思想的 要塞를 점령함으로써 프롤레타리아 獨裁를 實現하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할 것임.

▶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건결한 혁명가요,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가족법 27조 후단)

▶ 공화국 가족법은 우리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여 혁명의 후계자들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자를 키우는데 복무한다. (『법학사전』,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평양, 1971, p.3)

2.北韓의 家族制度 變遷 過程

○ 解放後 北韓은

— 맑스-엔겔스의 입장에 따라 〈家父長制 및 家族間的 血緣的 紐帶〉를 사회주의 국가 건설의 最大 障礙要素로 파악하고,

※ 맑스-엔겔스는 생명 재생산과 생존수단의 생산이라는 性的 分業이 性差別을 야기시켰다고 보면서, 男女平等의 實現을 위해서는 經濟的 契約關係인 家庭을 解消하고 女性的 社會的 參與를 保障하여야 한다고 주장

— 政權 樹立後 첫 단계 작업으로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에 대한 大變革을 시도하였음.

○ 이와같이 체제를 달리하는 과정에서의 北韓의 家族制度 變革으로 말미암아

— 北韓의 家庭은 〈社會主義革命理論의 實習場〉으로, 家族關係는 〈思想的 同志〉 관계로 전락하고 말았음.

▶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가정은 당과 수령,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서로 돕고 이끌며 사는 하나의 혁명적 집단으로 된다.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혁명화하고 공고히

하여야 한다. (『백과전서(1)』, 과학·백과전서 출판사:평양, 1992, p.216)

▶ 우리나라에서의 결혼은 혁명과 건설에 더 잘 복무하기 위하여 혁명동지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풀어나가려는 혁명적 리념에서 맺어진다. (앞책 『법학사전』, p.17)

▶ 부부는 가정생활에서 서로 돕고 이끄는 동지적 관계에 확고히 기초한다. (앞책 『백과전서(1)』, p.216)

○ 한편 북한의 傳統的 家族制度의 解體 作業은

- 憲法 制定보다 앞서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및 『어린이 보육교양법』,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등 家族關係 法規整備로부터 시작되었으며
-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의 시행은 우리의 현행 家族制度의 根幹을 이루고 있는 戶主制를 사실상 廢止한 것으로, 이로 인해 南北韓 家族制度 사이에는 큰 差異點이 露呈되었음.

【北韓의 主要 家族關係 法規】

- ▶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46. 7.30 임시인민위 결정 제54호)
- ▶ 同 법령 시행세칙 (’46. 9.14 임시인민위 결정 제78호)
- ▶ 공민의 신분등록에 관한 규정 (’55. 3. 5 내각 결정 제 28호)

- ▶ 협의이혼 절차를 폐지하고 재판이혼에만 의하게 하는 규정 ('56. 3. 8 내각 결정 제24호)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72.12.27)
- ▶ 어린이 보육교양법 ('76. 4.29)
- ▶ 民事規程 ('86. 1.30 중앙인민위 정령)
- ▶ 가족법전 ('91. 4.13)

3. 家族法 概觀

○ 북한 家族法은

- 蘇聯法 理論과 家族制度, 勞動黨 政策 등을 指導的 原理로 하며 이중 黨政策은 家族法의 上位規範으로 작용하면서 家族法의 내용을 수시로 改廢할 수 있는 權限까지도 갖고 있음.

- ▶ 법은 정치의 한개의 표현형식...당의 령도를 떠나 법에만 복종하겠다고 하는것은...법을 외곡하는 것. (『김일성 저작집』 12권, p.221)
- ▶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적 령도기관으로서의 당이 집권당으로 된 것은...당정책에 대한 법의 복종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주체의 법리론』, 사회과학출판사:평양, 1987, p.220)

○ 북한 家族法의 全般的인 特徵은

- 〈家庭의 革命化 선언〉 및 〈國家 干與 범위의 폭넓은 인정〉 등 蘇聯式 社會主義 法體系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 우리의 傳統的 習俗을 반영하는 것이 不可避하다는 認識 아래 이를 상당부분 受容하는 등 蘇聯法 體系에서 逸脫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 낡은 생활양식은 사람들의 사상의식 수준과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없애려 하여도 안되며, 강제적 방법으로 없애려 하여도 안된다. 우리의 생활속에 남아 있는 낡은 습성을 사람들의 사상의식이 발전하는데 따라 하나씩 절차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김일성 연설, 최달곤, 〈북한 가족법 40년과 그동향〉, 『북한법률행정논총』 제8집,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0. p. 102)

- 立法分野에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具體化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주체사상은 주체의 법리론의 유일한 사상리론적 방법론적 기초이다. (앞책 『주체의 법리론』. p.14)

- 대체로 실체적 규정보다는 宣言的·裝飾的 規程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政策的 要素를 法規에 受容하는 등

法の 不備性을 露呈하고 있음.

※ 이와같은 법의 不備性은 사회주의 법체계의 일반적 특성으로서 法執行上의 恣意性을 확보하고 黨의 政策을 實生活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

○ 南北韓 家族法은

— 〈男女平等〉 및 〈未成年者의 보호〉라는 家族法의 基礎 保護 法益과 民族의 傳統意識을 반영하고 있는 諸規程에서 共通點을 보이고 있으나

※ 兩法은 다른나라의 경우보다 비교적 〈폭넓은 禁婚範圍〉를 설정하고 있으며, 〈姓不變의 原則〉 및 〈父姓追從의 原則〉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扶養·相續 규정에서 〈敬老思想〉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 등 男系血統中心의 傳統的 大家族制度의 習俗을 共히 유지하고 있음.

— 社會主義 法體系에 따라 〈家庭의 革命化〉 선언 및 〈國家의 폭넓은 干與〉를 인정하는 규정 등 體制의 相異에서 오는 差異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임.

※ 북한은 제1장 〈家族法의 基本〉과 제3장 〈家庭〉 등에서 〈가정의 혁명화〉를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婚姻適齡〉·〈離婚에 있어서의 事實上의 許可主義〉·〈親權·入養·後見〉 등의 문제에 대해 國家的 規制를 강화하고 있음.

○ 결국 南北韓 家族法은

— 〈남녀평등〉 및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共通된 保護法益을 추구하고 있으며

- 우리의 경우에는 家父長制的 要素를 점차 拂拭시키면서 西歐化를 指向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蘇聯式 社會主義 法體系로부터 逸脫되면서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를 상당 부분 受容하는 立法傾向을 보임으로써
 - 向後 兩法의 內容은 점차 接近될 可能性을 보이고 있다 할 것임.
- 그러나, 南北韓間의 實際 家族生活에 있어서는
- 北韓이 〈가정의 革命化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獨裁 실현〉이라는 目標을 버리지 않는 한 그 異質化의 幅은 더욱 增大되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이와같은 社會의 基礎 構成單位로서의 南北韓間 家庭의 異質化는 民族共同體 形成過程에서 우선적으로 克服되어야 할 課題로 된다 할 것임.

4. 家族法 基本 構造 및 特徵

- 北韓의 家族法은
- 社會주의국가의 一般적 立法傾向에 따라 民法에서 分離되어져 따로 獨立된 基本 部門法을 이루면서 總 6章 54條에 걸쳐 가족關係를 규정하고 있는 바
- ※ 우리의 가족關係 규정은 民法典의 제4편 親族(제767~843조)과 제5편 相續(제844조~1118조)에서 總 352個 條文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이와같이 사회주의국가들이 家族法을 分離·制定하고 있는 것은 재산관계와는 다른 家族關係의 特徵的 性格을 감안한 것외에도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革命性을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제 1 장	가족법의 기본(1~7조)	제 4 장	후견(40~45조)
제 2 장	결혼(8~14조)	제 5 장	상속(46~53조)
제 3 장	가정(15~39조)	제 6 장	벌칙(54조)

○ 북한은 家族法의 規制範圍를

- 그동안 家族間의 純粹 人格的 問題로 제한하면서 相續問題를 民法에서 다루어 왔으나, 이번 家族法에서는 財産的 關係에까지 그 規制範圍를 擴大하면서(제7조) 第5章에 相續問題를 규정하고 있음.

※ 북한은 民法 제1초안('50년) 제4편과 제2초안('58년) 제6편에서 相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70년대 이후에는 獨立된 “編”이 아닌 個人所有權의 한 내용으로 다루었음.

(『민법 1』, 심의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3)

- ▶ 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친척들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정한다. (가족법 제7조)
- ▶ 공화국 가족법은 결혼 및 혈연관계 그리고 다른 가족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부문이다. (※ 재산관계 非包含, 앞책 『법학사전』, 1971)

5. 家族法의 主要 內容 및 特徵

가. 家族法의 基本(第1章 : 1~7條)

○ 가족법 第1章은

— 대체로 對內外 宣傳效果를 노린 宣言的·裝飾的 規程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後見制度의 설정취지에 우리 憲法의 基本權 條項과 일치하는 〈人間的 尊嚴과 權利 保障〉이라는 표현(제4조 전단)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음.

— 현행 社會主義 憲法(1972년 改正)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內容을 다소 變形시켜 〈國家保護原則〉下에 다섯가지 保護法益을 제시하고 있음.

① 결혼에 대한 보호 (제2조)

② 가정의 공고화(제3조)

③ 행위능력없는 자의 權益 보호(제4조)

④ 개인 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제5조)

⑤ 母子의 이익 보호(제6조)

○ 이와같은 〈國家保護原則〉下의 保護法益들은

— 外形的으로 우리 民法의 규정과 類似한 것처럼 보이나 體制의 特性上 實際로는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는 바

— 〈國家保護原則〉은 가족관계에 대한 國家 干與 範圍의 擴大로 나타나고

— 結婚·夫婦關係(本보고서 p3 上段)에서 뿐만 아니라 男女 交際에 있어서 조차 〈革命性〉을 요구하는 등 結婚의 自

由를 비롯한 保護法益들은 〈프롤레타리아 獨裁 實現〉이라는 궁극적인 目的에 의해 制限되고 있음.

▶ 새형의 인간들의 연애는 반드시 혁명위업의 숭고한 목적에 복종되어야 하며, 혁명의 승리를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집』 제14권 p449)

나. 結婚(第2章 : 8~14條)

○ 가족법 第2章은

- 當事者 合意, 重婚禁止(제8조), 婚姻適齡(제9조), 近親婚禁止(제10조) 結婚登錄(제11~12조)등의 婚姻 成立要件과 婚姻 無效(제13~14조)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約婚 및 事實婚關係를 인정치 않고 있으나 다른 나라보다 폭넓은 禁婚範圍를 규정하는 등 우리의 傳統的 習俗을 상당 부분 受容하고 있음.

※ 우리 민법과는 달리 約婚에 대한 規程 또는 言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 約婚制度 自體가 북한에서 사라진 것으로 판단됨. (『북한법제개요』 법제처, 1991, p344)

○ 婚姻適齡(제9조)

- 婚姻適齡을 〈男子 18歲, 女子 17歲〉(제9조 前段)로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 우리 민법은 〈男子 18歲, 女子 16歲〉(제807조)로 규정

하고, 20세 未滿의 未成年者의 경우에는 父母의 同意를 혼인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음.

— 晩婚을 勸獎하는 政策的 要素를 규정에 反映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임.

※ 북한은 이미 男子 30歲, 女子 28歲 以上으로 結婚 年齡을 제한한 바있음.(’76. 7 政務院 결정)

○ 近親婚禁止 (제10조)

— 禁婚範圍를 〈8寸까지의 血族, 4寸까지의 姻戚〉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 民法(’90.1 改正)의 〈親族〉 範圍(제777조)와 一致하고 있으며

※ 우리 민법은 금혼범위를 〈同姓同本인 血族, 男系血族의 配偶者, 父의 血族 및 8寸 이내의 姻戚이거나 姻戚이었던 者〉(제809조)에까지 미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父系血統中心의 傳統的 習俗을 더욱 尊重하고 있음.

— 다른 나라의 禁婚範圍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음.

○ 婚姻登錄(제11~12조)

— 婚姻成立의 形式的 要件으로 〈身分 등록기관에 登錄〉(제11조 前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를통해 북한은 登錄時 결혼이 黨政策에 副應하는 지에 대한 實質的인 審査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우리민법의 경우 申告婚主義(제812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申告時 形式的인 審査(제813조)만하게

되어 있음.

- 또한 〈結婚登錄〉을 하지 않고 夫婦生活을 할 수 없다〉(제11조 後段)고 규정하고 있어 事實婚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婚姻無效(제13~14조)

- 婚姻의 實質的 要件인 合意·重婚禁止·婚姻適齡·近親婚禁止에 위배되는 結婚은 모두 無效(제13조 前段)라고 하면서 結婚取消의 개념을 인정치 않고 있음.

※ 우리 민법은 合意 및 近親婚禁止에 위배된 경우에만 無效(제815조)로 하고 기타 사항의 위반은 婚姻取消로 규정(제816조)하고 있음.

다. 家庭(第3章 : 15~38條)

○ 가족법 第3章은

- 婚姻의 效力, 親子關係, 扶養 등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婚姻의 效力 또는 親子關係 규정 등은 우리의 傳統的 家族制度를 상당 부분 受容하고 있는 반면

※ 男系血統中心의 〈姓不變의 原則〉, 〈父姓追從의 原則〉등을 固守하고 있음.

- 入養 또는 扶養關係 規程에서는 社會主義的 特性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 북한은 入養對象을 未成年者에만 局限시키고 있는 반

면, 우리 민법은 家를 잇는다는 傳統意識을 존중하여 成年者의 入養도 허락하고 있음.

○ 婚姻의 效力(제15~19조)

— 婚姻後(남편과 안해는 自己의 姓과 이름을 그대로 가진다)(제17조 前段)고 하여 우리 民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姓不變의 原則을 固守하면서

— 夫婦 扶養의 경우에는 〈勞働能力을 잃은 配偶者〉에 대한 扶養義務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사회주의법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離婚後에도 勞働能力 없는 配偶者는 扶養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婚姻中 取得한 財産에 대해서는 共同所有(『남녀평등에 대한 법령 시행세칙』 제7조)로 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의 경우 婚姻中 各자의 名義로 취득한 財産은 各자의 個別財産으로 규정(제830조)하고 있음.

○ 離婚(제20~24조)

— 裁判離婚만을 認定(제20조)하면서 協議離婚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 우리 민법은 協議離婚을 인정하고 있으나 家庭法院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 경솔한 離婚을 防止하고 있다(제836조)는 점에서 兩法은 큰 차이가 없음. 북한은 종래 離婚의 自由를 保障한다는 차원에서 협의이혼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離婚率이 급격히 增加함에 따라 '56

년에 이를 廢止하였음.

- 離婚時 子女養育問題는 原則적으로 當事者들의 合意에 의해 결정되고 紛爭이 있는 경우에만 裁判所가 介入하게 규정하면서 世살 未滿의 子女에 대한 養育權은 母權을 優先적으로 認定하고(제22조)

※ 북한이 世살 미만 子女의 養育權에 대해 따로 규정을 두면서 母權을 優先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비해 多少 未成年者에 대한 母性保護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임. (앞책 『북한법제개요』, p355)

- 養育費를 〈子女數에 따라 10~30%〉로 法定化(제23조)하면서 〈양육비를 支拂하던 당사자가 勞動能力을 잃었거나 子女를 키우던 당사자가 再婚하여 그 자녀가 繼父 또는 繼母의 扶養을 받을 경우〉에는 養育費를 免除할 수 있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양육비 문제를 〈當事者 協議 또는 家庭法院의 調整事項〉으로 하고 있는 바(제837조), 이와같은 南北韓 養育費 규정의 差異는 體制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勞動能力이 있는 한 財産變動이 없는 북한 체제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에는 父母의 財産狀況 變動을 고려하는 데서 기인한 것임.

○ 親子關係(제25~29조)

- 親權을 〈父母의 權利〉로서 보다는 주로 子女의 革命性

教養을 위한 〈父母의 義務〉로 과약(제27조)하면서

- 子女의 姓은 〈아버지의 姓을 따른다〉(제26조)고 하여 父系血族을 重視하는 〈父姓追從의 原則〉을 설정하고

※ 우리 民法의 경우(제781조)와 同一하나 북한의 경우 父姓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다소 넓게 인정하고 있음.

- 嫡母와 庶子와의 關係(제25조), 繼親과 繼子와의 關係(제29조) 및 養親과 養子와의 關係(제33조)를 法定親子關係와 同一視하면서 親父母와의 關係는 완전히 斷絶된다고 하고 있으며

※ 우리 民법('91.1개정)의 경우 아직도 嫡母庶子關係의 親子關係 成立(제855조)에는 상당한 法的 節次가 요구되고, 繼親子關係는 단순한 姻戚관계로 되며 親父母와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 되어 있음.

- 入養問題에 있어서도 入養對象을 未成年者에만 局限시키고 있음.

※ 우리 民법은 家를 잇는다는 傳統意識을 尊重하여 成年者의 경우에도 養子が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扶養(제35~38조)

- 扶養當事者의 範圍를 〈祖父母와 孫子女間〉, 〈兄弟姊妹間〉, 그리고 〈家庭成員〉으로 규정하여 우리 傳來의 大家族制度를 反映하고 있는 바

※ 우리 民법은 生計를 달리하는 兄弟姊妹間에는 扶養義務

를 인정치 않고 있는데 반해 北韓 家族法은 이를 인정하고 있어 扶養家族의 範圍를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음.

- 이는 親族 내지 家族 扶養의 範圍를 넓혀 가급적 國家 扶養 範圍를 縮小시킴으로써 國家 負擔을 줄이려는 措置로 판단됨.

라. 後見(第4章:40~45條)

○ 가족법 第4章은

- 後見對象, 後見人의 地位 및 義務, 後見人의 選定·監督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民法의 규정과 큰 差異가 없음.

○ 後見對象 및 後見人의 地位(제40~41조)

- 後見對象을 〈미성년자〉와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로 규정(제40조)하고 있는바, 이는 限定 治產者를 제외한 개념이며
- 後見人이 될 수 있는 親族의 範圍(제41조)를 우리 民法보다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特徵的이라 할 것임.

마. 相續(第5章: 46~53條)

- 相續制度에 관한 규정으로 法定相續(제46조) 및 遺言相續(제50조)을 認定하는 우리의 相續制度和 法定上 큰 차이

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 다만 법정상속의 경우에 있어 〈相續順位〉와 〈相續分〉의 규정 등에서 우리는 配偶者의 地位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父母의 地位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점과 繼親子關係 및 養親子關係의 相續에서 다소의 差異를 보이고 있을 뿐임.

— 個人所有를 〈消費目的의 生活必需品〉으로 制限(『민주조선』, '91.4.26)하고 있는 北韓 實情때문에 實際 適用範圍에 있어서는 우리 민법과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

※ 북한은 相續을 여전히 封建的 遺物로서 打倒의 對象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과도기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인정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민주조선』, '91. 5.26)

○ 法定相續(제46~49조)

— 法定相續人의 相續順位에 있어 제1순위를 被相續人의 (배우자·자녀·부모)로, 제2순위를 〈형제자매·조부모〉로, 제3순위를 〈가까운 친척〉으로 규정하면서.

※ 우리 민법은 제1순위를 被相續人의 〈자녀·손자녀·배우자〉로 제2순위를 〈부모·조부모〉로 제3순위를 〈형제자매〉로 제4순위를 〈4촌 이내의 傍系血族〉으로 규정(제1000조, 제1003조)하고 있음.

— 같은 順位에 있는 共同相續人의 相續分을 同一하게 규정(제47조)하고 있으며

※ 우리 민법('90년 개정)도 被相續人의 配偶者에게 5割을 加算하는 外에는 아들·딸을 不問하고 同一한 몫으로 규정(제1009조)하고 있음.

— 代襲相續, 즉 相續人이 被相續人보다 먼저 死亡한 경우에 그 子女만이 死亡者의 相續順位에 의한 相續分을 차지한다고(제49조)하고

※ 우리 민법은 그 配偶者도 子女와 함께 共同相續人으로 參加할 수 있도록 규정(제1001조, 제1003조)하고 있음.

— 특히, 法定親子關係에 있는 繼親子關係나 養親子關係는 親父母와의 關係가, 斷絶됨으로써 親父母 또는 親子女의 相續으로 排除된다는 점이 特徵的이라 할 것임.

※ 우리 민법의 경우 繼子は 親父母에게서만 相續을 받을 수 있고, 養子は 養親과 親父母로부터 共히 相續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兩法은 큰 差異를 보이고 있음.

○ 相續人의 缺格事由(제48조)

— 法定相續人이라 할지라도 〈死亡者를 生前에 몹시 虐待하였거나 意識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자, 相續條件을 故意的으로 만든 자에게는 相續權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 우리 민법의 경우 보다 相續人이 될 수 있는 資格을 더욱 엄격히 規制하고 있음

※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을 〈故意殺害 또는 殺害하려 한

것), 〈故意傷害致死〉, 〈遺言에 대한 不正行爲〉 등을 缺格事由로 제시(제1004조)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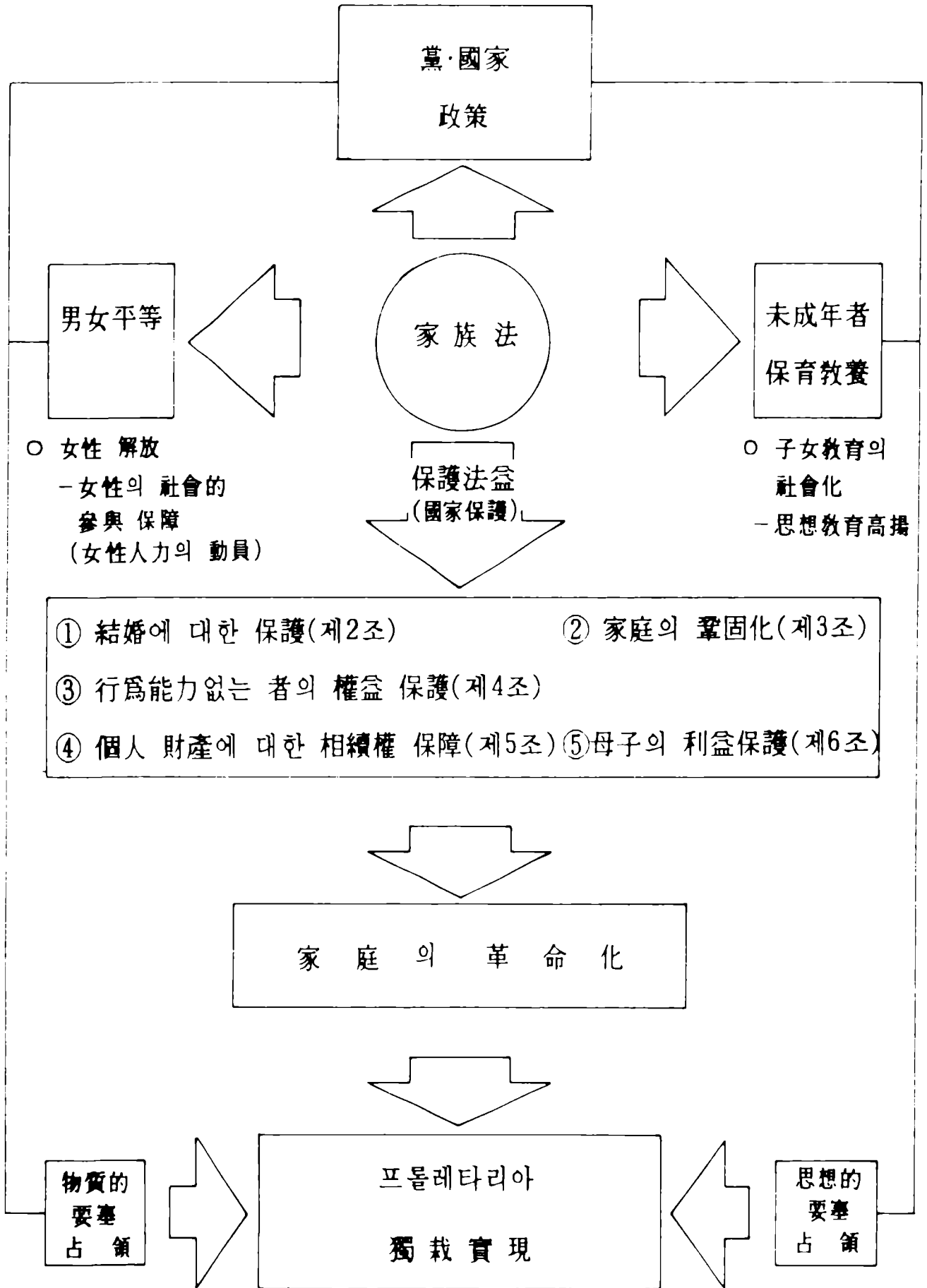
○ 遺言相續(제50~53조)

－ 遺言相續의 경우 〈遺言이 遺言者의 扶養을 받던 公民의 利益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無效〉(제50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遺言이 法定相續에 의한 相續分을 排除하거나 消滅할 수 없도록 하는 遺留分制度를 채택한 것으로서 〈勞働能力이 없는 相續人〉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됨.

※ 우리 민법은 遺留分을 〈直系尊屬과 配偶者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각각 1/2〉, 〈直系尊屬과 兄弟姊妹는 법정상속분의 각각 1/3〉로 규정(제1112조)하고 있음.

[丑1] 家族法の使命



① 結婚에 대한 保護(제2조) ② 家庭의 鞏固化(제3조)

③ 行爲能力없는 者の 權益 保護(제4조)

④ 個人 財産에 대한 相續權 保障(제5조) ⑤ 母子의 利益保護(제6조)

家庭의 革命化

物質的
要塞
占領

프롤레타리아
獨裁實現

思想的
要塞
占領

[丑2] 南北韓 家族法 比較

區分	北 韓	南 韓
構 造	○ 基本 部門法(總6章 54條)	○ 民法典에 包含(2個編 352條)
結 婚	○ 男18歲, 女17歲(晚婚勸獎)	○ 男 18歲, 女 16歲
	○ 8寸이내 血族, 4寸이내 姻戚	○ 同姓同本 血族, 8寸이내 姻
	○ 姓不變의 原則	○ 姓不變의 原則
離 婚	○ 裁判離婚만 認定	○ 當事者 協議 또는 家庭法院 調整事項
	○ 10~30% 範圍로 法定化	
親 子 關 係	○ 父母의 義務	○ 父母의 權利
	○ 父姓追從의 원칙	○ 父姓追從의 原則
	○ 嫡母庶子, 繼親子, 養親子 關係를 法定親子關係로 規定	○ 嫡母庶子는 一定節次에 따라 法定親子關係 可能, 繼親子 關係는 단순한 姻戚關係
相 續	○ 未成年者에 局限	○ 成年者까지 可能
	○ ①配偶者, 子女, 父母 ②兄弟姊妹, 祖父母 ③가까운 親戚	○ ①子女, 孫子女, 配偶者 ②父母, 祖父母 ③兄弟姊妹 ④4寸이내 傍系血族
	○ 死亡者의 子女에 局限	○ 死亡者의 配偶者도 包含
繼 親 子, 養 親 子 間 的 相 續	○ 親父母또는 親子女의 相續 에서 排除	○ 繼子는 親父母에게서만, 養子는 養親과 親父母 양쪽의 로부터 相續 可能
	○ 遺留分制度 認定	○ 遺留分制度 認定

12

13

II. 北韓情勢 關聯 主要資料

1. 金日成·金正日 演說 및 談話

김일성, 1991년도 신년사

('91. 1. 1)

친애하는 동지들!

동포형제자매들!

나는 희망찬 새해 1991년을 맞으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인민들과 남녘의 형제들 그리고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빨려불가담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1990년은 우리 인민이 격변하는 력사의 흐름속에서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한 긍지높은 승리의 한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무대에서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복잡한 사태들이 련이어 벌어졌으며 이것은 나라가 분렬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우리 인민앞에 새로운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추호의 동요도 없이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적공세로써 반혁명적공세를 맞받아나갔으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전체 근로자들을 새로운 대진군운동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하여 투쟁함으로써 온갖 장애와 도전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위훈을 떨쳤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로동계급과 인민군군인들의 창조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사회주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과 공장, 기업소들의 개건확장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가까운 기간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성의 전투에 떨쳐나선 수도건설자들은 통일거리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지난 한해동안에 3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일떠세우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농촌수리화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떨쳐나선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지원자들은 짧은 기간에 2천리의 물길을 새로 건설하여 대동강과 레성강, 압록강과 대령강을 하나의 대관개망으로 연결시키고 서부지구 곡창지대의 모든 논밭들에 관개수가 흘러넘치게 하는 천지개벽을 이룩하였습니다. 2천리 물길이 건설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 자랑할만한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되었으며 이것은 우리 당이 내놓은 사회주의농촌테제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과 혁명에 충실한 우리의 인테리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투쟁하여 과학과 교육, 문학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발전과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습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하나로 굳게 뭉쳐 겹쌍인 난관을 이겨내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는 힘있는 고무로 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위기》에 대해

여 요란스럽게 떠들고있는 때에 미제와 직접 맞서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끄떡하지 않고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것은 세계인민들 속에서 경탄을 자아내고있으며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불패성과 승리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과 인민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결합되어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있으며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오직 인민대중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 투쟁하고 있으며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사체의 힘으로 건설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이며 자주, 자립, 자위의 특정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하는 가장 활력있는 사회입니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위대한 당,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한 인민, 주체사상이 구현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공고성의 기초가 있으며 그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낼수 있는 위력의 원천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당과 함께 혁명의 한 길을 곳곳이 걸어왔으며 1990년대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걸승한 우리

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민, 근로인테리들, 인민군군인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현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잘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니고있는 영예로운 임무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의 만세소리가 계속 높이 울릴 때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소동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될것이며 주체사상의 견인력이 더욱 강화되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은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주되는 과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고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사회주의적요구에 맞게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높이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며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기본고리입니다. 올해에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확고히 앞세우고 금속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이 부문들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사리원카

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강철종합공장 건설, 발전소건설을 비롯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의 중요목표를 실현
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중요
설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은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
를 발휘하여 당앞에 결의한 건설목표를 어김없이 실현함으로써 당
인들의 높은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우리가
의를 건설하는 목적도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
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생활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오늘 우
인이 누리고 있는 가장 값높고 보람있는 정치생활과 건설하고 풍부
생활에 상응하게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생활을 높이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농업과 경공업을 빨리 발
는것입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부침땅의
결정적으로 높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목표를
실현하며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선을 비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
는 화학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
때에 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에 화학섬유와 여러가지 원료를 원만
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에 도시와 농촌들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평
서 통일 거리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은 우리 당이 내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을 관철하고 당적지도와 행정경제적, 기술적 지도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생산자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집단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의 우월성과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기본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기본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옹계 실현하는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여 당일군들과 행정경제일군들, 기술자들과 생산자들이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여 제기되는 경제과업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관리에서 특히 행정경제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계획규률, 노동행정규률, 생산규률을 강화하며 기술발전을 앞세우고 경제적효과성과 제품의 질을 높이는 원칙에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과업은 방대하지만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투쟁한다면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온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을 중심으로 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반석같이 다지며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

여》라는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는 농지적단결의 기풍이 온 사회에 차 넘치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지도일군들은 높은 혁명성, 당성, 모용계급성, 인민성을 발휘하여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며 전진하는 내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까.

우리 인민은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와 싸워이긴 영웅적인민이며 사력생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를 훌륭히 건설하여온 혁명적 인민입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할때 대한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주체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떨쳐야 하겠습니까.

지난해는 온 민족이 1990년대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장엄한 신군길에 떨쳐나서 거족적인 투쟁으로 조국통일운동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역사적인 8·15범민족대회가 열리고 평양과 서울, 해외에서 정계, 사회계 인사들과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동포들이 서로 만나 대화와 통일축제를 벌린것은 온 겨레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민족의 드높은 통일외지를 세계에 과시한 커다란 경사였습니다. 대결과 분열의 얼음상을 녹이며 뜨겁게 분출된 이러한 민족적단합의 기운은 민족내부에 불신과 반목을 조성하여온 반공대결정책이 파산되고 민족내단결의 숭고한 리념이 승리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결성된것은 북과 남, 해외의 통일 애국력량이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성과이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

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었습니다.

새해를 맞는 오늘 우리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날을 더욱 확신성있게 내다보면서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분열을 반세기이상 끌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가까운 몇해 안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하루빨리 해결하여야 할 문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며 조국통일의 평화적전제를 마련하는것입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리념이며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합니다. 전쟁의 위협이 항시적으로 무겁게 드리우고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이 터진다면 조국의 통일은 고사하고 민족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것입니다. 평화는 나라의 통일과 민족의 안녕을 위하여 북과 남이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평화문제에 언제나 선차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해에는 북남고위급 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대결상태를 실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

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있으며
도리어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가고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
남고위급회담과정도 보여주는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은 말로는 《평화》요,
《랭전종식》이요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평화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
도 취하려 하지 않으면서 이른바 《교류우선론》에만 매달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적인 래왕이나 교류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인정
하지만 보다 긴절한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뒤로 미루려는데 내해
서는 타협할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에 고향방문이나 경제교류를 실현하자
고 하여도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침》에 대한
위구심부터 풀어야 합니다. 전쟁이 현실적위협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것은 사실상 평
화도 바라지 않고 정상적인 래왕과 교류자체도 하지 않겠다는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채택문제와 관련하여 남조
선당국자들이 취한 입장은 그들에게 평화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
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됩니
다.

불가침선언은 남조선당국자들사신도 이미 오래전부터 주장한 문제인데
오늘에 와서 그것을 반대할 그 어떤 이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습니다. 우
리는 남조선당국이 《신뢰조성우선》이라는 새로운 전제조건을 들고나와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한사코 반대하고있는데 대하여 도저히 이해할수 없
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하는 이른바 《신뢰조성우선》이라는것은 불

가침선언채택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가침선언은 결코 신뢰조성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가장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남조선당국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기도전에 그것을 휴지장이라고 하고 우리를 믿을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들이 우리와 합의할것이란 아무것도 없을것이며 도대체 회담을 한다는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도 없을것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거부하는것은 불가침을 외워온 그들의 말이 거짓이고 《남침위협》이라는 것도 한갓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놓을뿐입니다.

남조선당국은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려고 할것이 아니라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주저없이 응해나서야 하며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도 중지하여야 할것입니다.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미국도 우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서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것입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것입니다.

조국통일방도가 확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통일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실천적으로는 북과 남이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보조를 같이할수 없

으며 통일을 위한 대화의 첫 실마리도 풀수 없습니다. 조국통일이 먼 앞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과제로 나서고있는 오늘 북과 남은 하루빨리 조국통일방도에 대하여 합의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조국통일을 갈망하는 온 겨레에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있는 우리 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그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국가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와 두 정부가 함께 있을수 있다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람들은 《이질화》되어있는 북과 남을 통일하기 위하여서는 《동질성》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하고있으나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민족적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동질적인 것입니다. 북과 남사이에 서로 다른것이 있다면 지난 40여년동안 존재하여온 두 제도와 관련된 이질성인데 그것은 수천년에 걸쳐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적동질성에 비한다면 크게 문제로 될것이 없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결코 우리민족이 서로 갈라져 살아야 할 조건으로 될수 없으며 북과 남이 통일하는데서 극복하지 못할 장애로 될수 없습니다. 력사적으로 변변히 이어온 민족적공통성을 기초로 한다면 두 제도는 얼마든지 하나의 민족, 하나의 통일국가안에서 공존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

성을 보지 않고 《동질성》 회복이라는 구실밑에 제도가 단일화되기전에는 두개 국가로 갈라져있을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을 주장하는것은 나라의 분열을 끝없이 지속시키자는것이며 결국 통일을 하지 않자는것입니다.

북과 남의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천천히 순탄하게 풀어나가도록 후대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통일국가를 세우는 일은 이제 남과 북이 머루지 말아야 합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개 제도, 두개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있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하나의 제도에 의한 통일은 비현실적인것이며 언제 실현되겠는지 예측할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우기 제도를 단일화하려는 것은 그 실현방도가 어떠하든지 상대방을 먹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만큼 어느 측에도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접수될 수 없는 것을 강요하려 한다면 불피코 불신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충돌과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 재난까지 빚어내게 될 것입니다.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동족과의 회담에는 성실성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기의 것을 상대방에 강요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간섭과 개입을 간청하는 것은 그들의 사대근성과 분열주의적 립장의 표현이며 이미 파산된 《승공통일》 책동의 재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승공통일》이란 어느때 가도 실현될수 없는 망상입니다. 전쟁의 방법이건 평화적 방법이건 상대방을 먹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통

일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역사에 의하여 실증되었습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 립장은 확고부동하며 수체사상을 구현하여 건설한 우리의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조국통일방도의 대원칙입니다. 나라의 분열을 끝장내고 북과 남이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대원칙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통일방도로서 이미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방안은 공화국북반부 인민들은 물론, 남조선과 해외의 광범한 동포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이 민족적 합의의 기초로 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민족공동의 통일방안으로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련방제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분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는 분제도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원한 국호를 가지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인정하지만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는 조건에서라면 그 전이라도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면 북과 남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함이 없이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적 숙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통일민족의 슬기롭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세계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에 관심이 있다면 실현될 수 없는 《승공통일》을 꿈꾸거나 《적화통일》의 유령으로 인민들을 우롱할것이 아니라 《승공》과 《적화》도 북침과 《남침》도 다 용납하지 않는 우리의 련방제통일방안을 받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국통일방도에 대한 전민족적 합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으로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국통일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합니다.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당국이나 특정한 계층의 힘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전민족적 위업입니다.

《두개 조선》을 반대하고 진실로 조국통일을 원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은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서로 뜻과 힘을 합쳐야 하며 민족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재야를 가리지 말고 다수와 소수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며 정견의 차이와 과거의 허물도 묻지 말고 상대방에 대한 의심과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각 당, 각 파의 정치세력과 각계 각층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공동전선에서 주장

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서로 연대, 연합하여야 하며 평화와 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북과 남의 정치인들이 서로 접촉하고 대화할 하며 신뢰를 두터이하는 것입니다. 당국자들 사이에도 대화가 진행되고 각계층의 민간인들도 서로 만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오늘 민족의 운명과 나라의 전도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남을 쌓고 앉아있는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쌍무적이든 다무적이든 대화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남조선의 여당인사들과도 만나고 야당과 재야인사들과도 만날 것이며 그 누구에게나 통일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을 것입니다.

당국사이의 회담이 결코 북남대화의 유일한 창구로 될 수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고위급회담도 진척시키려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들 사이의 대화마저 가로막는것과 같은 협애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버리고 북을 적대시하는 《법》들을 철폐하여야 하며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우리와 만나 통일문제를 논의하였다고 하여 체포투옥한 각계 인사들을 지체없이 석방하고 모든 남조선인민들에게 북과 자유롭게 접촉하고 대화할 수 있는 관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배국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온갖 분렬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올해를 완화와 평화의 해, 화해와 단합의 해로,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역사적인 해로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국제정세의 변화과정은 우리 남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반제사

주적대외정책의 정당성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랭전의 종식과 평화시대의 도래에 대하여 떠들고 있지만 국제정세는 의연히 긴장하고 복잡하며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진보와 반동 사이의 첨예한 대립과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전세계적 범위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는 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민들의 자주위업은 엄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매달리고 있는 이른바 《평화적 이행》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길로 되돌려 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 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발전도상나라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조》와 《협조》를 조건으로 내걸고 저들의 지배를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정치체제와 경제체도를 고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오만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주권국가들에 대한 강도적인 무력침공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으며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더 큰 침략의 길로 나가면서 파국적인 전쟁위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적, 략탈적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오늘 평화를 위협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난관과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장본인이 다름아닌 제국주의라는 것을 현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 속지 말고 기만적인 《원조》에 기대를 걸지 말아야 하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을 계속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며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리불가담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친선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지배와 예속의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며 집단적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 걸쳐 남남협조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아세아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재능있는 아세아인민들이 자주성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서로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아세아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이룩할수 있으며 세계평화위업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아세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일시적인 좌절과 우여곡절이 있을수 있으나 인류가 자주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은 어길수 없는 법칙입니다. 전진도상에 부딪친 난관에 굴복하여 원칙을 버리고 역사의 계보에서 벗어나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며 진리와 원칙을 고수하고 역사의 흐름을 따라 나아가는 인민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것과 낡은것, 진보와 반동 사이의 복잡한 투쟁과 혼란된 정세 속에서 21세기로 넘어가고 있는 현시대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정확한 령도밑에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다 주체사상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며 조국의 자주
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김 일 성,

일본 <마이니찌신문> 과 서면 대담

('91. 4. 19)

나는 《마이니찌신문》 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편이상 개괄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먼저 조일국교정상화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다같이 아세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 두 나라는 린방인것 만큼 웅당 가까운 나라로 되어야 하겠으나 지금까지는 가깝고도 먼 나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과거를 정상화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일차 해결되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일본집정자들은 과거를 반성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인민들의 의사와는 어긋나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주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당한 정치는 오래 감수 없으며 역사는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일본에서 조일관계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광범한 인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인들이 그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사업에 건단성있게 나섬으로써 두 나라 사

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의 대조선정책에서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를 평가하고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사이의 국교정상화문제를 《교차승인》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이른바 《교차승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무시하고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문제를 렬강들끼리 흥정하여 결정하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두개조선》을 합법화하여 조선이라는 말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일국교정상화는 오늘의 시대적요구에 맞게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두 나라사이에 친선관계의 새 역사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조선로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이 협의하여 발표한 공동선언에는 조일관계를 개선하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된 지향과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일관계개선의 전망은 두 나라 정부가 어떤 립장에 서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두 나라 정부는 마땅히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며 조일관계문제가 그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이나 영향에 의하여 좌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그 어떤 기존공식에 매여달리지 않고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올바른 로선을 일관성있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주체의 요구에 맞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자신을 개조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을 밝혀주는 과학적사회주의학설입니다.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것은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는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전과정에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핵심력량의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동원하여 주체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가 실현된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자립적민족경제는 자주적인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함으로써 튼튼한 중공업에 토대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이 다같이 발전해 나가는 종합적이며 자립적인 경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한 자립적민족경제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물질문화생활을 담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식의주문제에서 걱정을 모르며 고르롭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실업자가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된 일사리에서 사기의 소질과 능력에 따라 창조적인 노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

민은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의 혜택으로 누구나 다 마음껏 배우며 건강과 장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비록 유족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적 물질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요구에 맞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데 대하여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하여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굳게 결합된 위력한 주체가 있고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를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가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해 나갈 수 있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의 사상문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계속 강화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분제인 동시에 국제관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 경위와 우리 나라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따져본다면 그것은 중요하게 외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일본이 조선을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분렬이요, 통일이요 하는 문제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려강들이 조선문제를 동서간의 대립관계에 기초하여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나라가 분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분렬된 다음 거의 반세기가 되도록 통일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통일을 방해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족적숙원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요구일뿐아니라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우리의 일관한 입장을 자주, 평화복원,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고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련방제방식으로 통일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의 위성국으로 되지 않고 중립적이며 뽀러불가담적인 나라로 발전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것 만큼 우리 나라의 통일은 그 누구의 이해관계에 저촉되거나 그 누구에게 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통일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가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이 하루빨리 실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변화된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덮어놓고 적대시하는 낡은 관념에서 벗어나 시대착오적

인 대조선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도 밝은 전망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관계에서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유엔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 응당한 기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의 원칙적 입장은 련방제통일이 실현된 다음 단일한 국호를 가지고 유엔에 들어 가자는 것이며 만일 그 이전에 들어가려 한다면 북과 남이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것입니다. 조국통일이 실현되지 못한 조건에서 단독으로 유엔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을 반대하고 분렬을 고정화하자는 것이며 유엔에 단독으로 들어간다면 력사앞에 분렬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 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략탈의 대상으로 되여온 아세아는 오늘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세아는 응당 아세아사람들의 아세아로 되여야 하며 새 아세아를 건설하는데서 아세아인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아세아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제국주의자들의 전횡과 간섭을 더는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자주적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 긴밀히 협조해나가야 합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아세아지역에서 침략적 군사기지를 철폐하고 외국군대를 철거시켜야 하며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

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미국군대가 주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핵무기가 전개되어 있으며 이것은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가장 위험한 핵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를 위협하면서 그 누구에 대한 핵사찰에 대하여 떠드는 것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 행위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반도와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마이니쨌신봉》이 앞으로 조일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을 희망하며 당신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바랍니다.

김일성, 제85차 IPU총회 개막연설

('91. 4. 29)

존경하는 국제의회동맹 리사회 위원장선생!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오늘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가 열리게 된 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으로 됩니다.

나는 회의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국회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의 모든 손님들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총회는 세계 여러 나라 국회들사이에 호상리해를 두터이하고 협조를 발전시키며 우리 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나는 국제의회동맹 제85차총회가 대표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상정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대표여러분!

매개 나라에서 국회는 국가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하여야 할 사명과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정치의 기본리념으로 되어야 할뿐만아니라 나라들사이의 평등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한 세계정치의 공동의 리념으로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대외정책은 대내정책의 연장이며 따라서 매개 나라의 민주화와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서로 밀접히 련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세계정치를 민주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현시대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 평화와 협조의 숭고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립된 국제의회동맹은 지난 기간 세계평화를 수호하며 나라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시대가 발전하고 역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세계정치무대에서 국제의회동맹의 임무와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류는 역사발전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천년동안 지속되어온 지배와 예속의 낡은 시대가 끝장나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새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현시기 인류공동의 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향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한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공정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은 국제사회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자주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그 어떤 특권과 전횡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호상 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나라들 사이의 친선과 협조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평화는 인류공동의 념원이며 인민들은 평화가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자

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현시기 평화를 위협하는 근원은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남을 지배하려는 그릇된 사상과 정책에 있습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고 힘의 정책을 반대하여야 하며 침략과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군축을 실현하고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를 철폐하는것은 현시기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가장 긴절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과학기술의 귀중한 성과와 사회적재부를 인류의 복리와 발전을 위하여 리용하지 않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침략과 전쟁 수단을 만들어내는데 리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을 금지하고 지금 있는 핵무기를 축감하며 나아가서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여야 합니다.

핵무기의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있는 우리 인민은 핵무기철폐를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절실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군축을 실현하고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평화옹호운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은 시대의 성숙된 요구입니다. 오늘에 와서 지배와 예속, 침략과 전쟁은 그 누구에게도 리득을 가져다줄수 없으며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같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며 다같이 평화롭게 사는 길만이 인류가 나아갈 옳은 길입니다. 력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을수 있으나 자주, 평화 력량은 날을 따라 장성강화될 것이며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

니다.

새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위업에서 승리의 담보는 세계인민들의 단결과 협조에 있습니다. 자주적인 국회들의 국제적협회의 중심인 국제의회동맹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국제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주목을 돌리며 인민들사이의 단결과 협조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이 국제관계분야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은 국제의회동맹이 내세우고있는 리념과 일치합니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 국제의회동맹과의 연계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류공동의 위업에 충실할 것입니다.

대표여러분!

오늘 우리 인민은 인간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참다운 인민의 사회를 건설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치철학은 모든 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할 것을 요구하는 주체사상입니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일심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인민들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적 성격은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완전히 평등한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면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며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에서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이미 분렬의 상벽을 넘어 하나로 융합되었으며 조선은 하나이라는 민족적신념은 꺾을수 없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양양된 통일기운에 맞게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것이며 통일의 길에 가로놓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정치에서 정의와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는 오늘의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 인민들이 겪고있는 불행과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 없으며 민족들의 운명과 관련되는 국제적 문제가 옹게 해결되도록 협력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문제에 책임이 있는 유관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 모든 나라 국회와 정치인들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이 문제의 정당한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나서기를 기대합니다.

대표여러분들은 우리 인민의 귀중한 손님들입니다. 우리 인민은 여러분들을 이르는 곳마다에서 따듯이 맞이하고 열렬히 환영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즐겁고 유익한 나날을 보낼것과 앞으로 당신들의 정의로운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 일,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담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 -

('91. 5. 5)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
는 인민대중의 세기적인 념원입니다. 인민대중은 자기의 념원을
위하여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을 벌려왔으며 온갖 시
겨내고 사회주의사회를 일떠세웠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류역사에
모든 착취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 사회로서 계급적원수들과
한 투쟁을 벌리며 전인미답의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 만큼 전진
일시적인 우여곡절도 겪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사회주의
라 나아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발전의 법칙

의 자주적념원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사회주의의 필
의 위력의 원천은 그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지와 신뢰에 있습니다.
에 대한 우리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합니다. 우리 인민
주의제도가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깊이 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해온 수십년의 역사에
도 정치적 불안정과 동요가 있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제국주의사
동들이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우
회주의는 그들의 비렬한 공격과 비방 앞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
의 길을 따라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에 대하여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비결은 인민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데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기때문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자기의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사회에서 끝없는 행복과 참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고수하고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인민대중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입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 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혔으며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확립하였습니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람의 존엄과 가치는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사회주의로 되고있습니다.

주체사상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는 사람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입니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내세웁니다. 사회적운동은 그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발전합니다. 인민대중을 떠나서는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사회적 운동 그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며 사회력사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사회적운동에서 주체로 되는 것은 인민대중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것이 창조되며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인민대중은 사회적운동의 주체로, 력사의 창조자로 되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사회에서는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위도식하는 착취계급이 주인행세를 합니다. 이러한 주인의 지위가 전도된 사회를 끝장내고 인민대중을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세우는 사회가 사회주의사회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사회력사발전에서 차지하는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에 맞게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의 지향과 요구를 가장 철저히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의 요구를 반영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노동계급을 혁명의 주체의 핵심부대로 내세웁니다. 노동계급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람의 본성적 요구를 가장 높이 체현하고 있는 계급입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는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것이며 로동계급의 역사적 사명은 자신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관계로 로동계급이 비록 많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은 자주성과 혁명성이 가장 강한 선진계급으로서 혁명의 핵심력량을 이루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부터 로동계급을 혁명의 령도계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의 계급적요구를 민족적요구와 함께 혁명의 모든 로선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으시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이르는 모든 혁명이 로동계급의 령도밑에 성과적으로 수행되어왔습니다. 오늘 우리 로동계급은 끊임없이 장성강화되고 그 역할이 더욱 높아져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의 전반적 면모는 점차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되어 로동계급화된 사회, 무계급사회로 완성되어가고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로동계급의 본성적요구를 구현한 사회라는것은, 결코 로동계급만을 위한 사회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닙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 진보에 리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며 로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요구에도 맞는 사회입니다. 주체사상은 로동계급뿐 아니라 농민과 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규정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할것을 요구합니다.

농민은 로동계급과 함께 혁명의 주체의 기본구성부분을 이루며 혁명의 동력으로 됩니다. 지난날 농민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우리 나라에서 농민의 이익을 옹계 실현하는것은 혁명에서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로동계급의 요구뿐 아니라 농민의 념원에도 맞게 해결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개혁도 땅의 주인이 되려는 농민의 세기적 념원에 맞게 실시하고 전후 사회주의혁명도 농민의 념원을 반영하여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독창적인 길을 따라 사원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수행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농민의 념원을 종국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습니다.

농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농민을 적극 도와주어 그들의 념원과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밝힌 길을 따라 농민에 대한 로동계급의 지도, 농업에 대한 공업의 방조,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는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가 발전하는데 따라 그들의 역할은 더욱더 높아집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문제를 옹계 해결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첫시기부터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중요한 혁명력량으로

내세우시고 그들을 혁명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습니다. 우리 당은 지난날의 인테리들이 식민지나라 인테리로서 반제자주정신과 민주주의적혁명성을 가지고있었기때문에 그들을 대담하게 믿고 교양개조하여 로동계급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었으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 인테리를 대대적으로 육성하여 인테리대군을 마련하였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인테리들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이바지하고있습니다.

착취계급은 사회적운동의 주체가 아니라 력사의 반동이며 혁명의 대상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착취계급을 혁명의 대상으로 본다는것은 결코 혁명과 반혁명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를 사회계급적토대만을 가지고 규정한다는것을 의미하지않습니다. 사회계급적처지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그것은 사상의식을 통하여 미치게됩니다. 사회계급적토대가 나쁜 사람도 행동을 가지고 평가하여야 하며 사회적진보와 혁명에 이바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계급적토대를 따지지 않고 그들 혁명의 주체의 한 성원으로 보고 믿어야 한다는것이 각이한계급과 계층의 사람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입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게 믿고 혁명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서 기본계급뿐아니라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하여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는 모든 세력을 혁명력량으로 묶어세웠으며 사회주의혁명에서도 부농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자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협동경리에 망라시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적근로자로 개조된 사람들은 지난날 어떤 계급과 계층에 속하였건 관계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일시적인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며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옳게 구현하여 극소수 적대세력의 반혁명적 책동을 제때에 저지과탄시킨것과 함께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가장 공고하고 폭넓은 사회제급적 기반위에 올려세운데 있습니다.

사회적집단을 이루고 사는 사람의 리익에는 집단의 리익과 함께 개인의 리익이 있습니다.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의 결합방식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이 대립되고 집단의 리익우에 개인의 리익을 올려놓는 개인주의가 지배합니다. 개인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적불평등과 《부익부, 빈익빈》을 낳고 사람들사이의 대립관계를 가져옵니다. 개인주의는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성적 요구에 배치됩니다. 사람은 사회적 집단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수 있는 사회적존재인 것으로 하여 집단주의를 본성적 요구로 합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인민대중이며 사람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를 본성적요구로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집단주의의 기본요구는 집단의 리익을 우위에 놓고 집단의 리익과 개인의 리익을 일치시키며 집단의 리익속에서 개인의 리익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에 배치되는 것은 개인의 리익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개인주의입니다. 사람중심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집단의 이익이 철저히 옹호되는 기초우에서 매 개인의 이익도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사회적 혜택과 배려가 돌려지고 있으며 온 사회에 단결과 협력의 관계가 활짝 꽃피어나고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사회적집단은 나라와 민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사회적집단의 이익, 인민대중의 이익도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실현되어 나갑니다. 인민대중은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없습니다.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요구로 내세웁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철저히 옹호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이익을 실현하는데서 사활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것을 언제나 첫째가는 요구로 내세우고 투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주, 자립, 자위의 존엄있고 힘있는 사회주의 나라를 일떠세울수 있었으며 오늘 더욱더 악랄해지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혁명의 한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잇닿아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들 사

이의 지배와 예속, 불평등을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은 나라와 민족들 사이의 국제적 친선과 협조를 필수적요구로 합니다. 큰 나라와 작은 나라, 큰 민족과 작은 민족 할것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자주성과 평등,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국제적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줍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련합된 세력으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유린하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국제적인 반제련대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과 인민들은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공동으로 투쟁해나가야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책동을 파탄시키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인 교류를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미제와 직접 대치하여 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면서도 자주성을 지향하여 투쟁하는 제3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불심량면의 지지와 성원을 아낌없이주고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사회주의는 자주시대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요구와 각계각층 군중의 요구, 민족의 자주적권리와 세계인민들의 자주적지향을 다같이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위업이며 사회주의와 인민대중의 리익은 결코 분리시킬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자면 사회주의위업에 충실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위업을 고수하자면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는 모든 사회현상의 진리성을 가르는 기준이며 혁명실천의 지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인민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그에 맞게 처리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의 근본리익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당면리익을 밀접히 결합시켜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건설하자면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할수 있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인민대중의 요구와 리익을 중요하게 내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옳은 립장을 견지하지 못하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실생활에 바로 구현할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주체적립장, 다시말하여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자주적 지위를 지키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것입니다. 자주적립장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적권리를 행사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인민대중이 자주적권리를 행사하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결심과 판단에 따라 자기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주적권리는 그 누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신의 투쟁으로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옹호하자면 자기 문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이 책임지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이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립장이며 그 기본요구는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믿고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창조적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운동은 창조적운동이며 그것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과정입니다.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의 담당자는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의하여 력사가 전진하고 혁명이 추동됩니다.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면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을 높이는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은 언제나 구체적인 주색관적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창조의 담당자인 인민대중의 사상감정과 준비정도도 나라마다 다르며 창조적활동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도 나라마다 다르며 창조적활동이 벌어지는 사회경제적 및 물질적 조건도 나라에 따라 각이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는 언제나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은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그 어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도 성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 혁명이 처한 사회력사적조건은 모든 문제를 독자적인 신념에 따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 것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혁명을 시작하였으며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더우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건설의 생소한 길을 기성리론을 가지고서는 개척도 해나갈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우리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적립장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리론을 독창적으로 내놓고 체계화하시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창시하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그것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이 전면적으로 체계화된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입니다.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이 앞길을 밝혀주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자그마한 편향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밀고 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의 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으며 이것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는 것을 사활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혁명과 건설을 자체의 힘으로 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

이 제국주의강적과 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낡은 사회와 선행시대로부터
락후와 빈궁, 파괴된 경제밖에 물려받은 것이 없는 빈터우에서 자체의 힘
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은 간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아 혁명과 건설을 할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
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자체의 힘으로
온갖 시련을 이겨내며 사회주의길을 빛나게 개척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왔기때문에
그 어떤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민족의 존엄과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지키
고 드팀없이 사회주의위업을 수행해올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성된 복잡한
정세는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더욱 확고히 견지할것을 요구합니
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혁
명적원칙을 지키는 나라들에 공격의 예봉을 돌리고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견지하는것이 나라와 민
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당의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변함없이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창조
적힘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2

우리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인민대중중심의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커다란 우월성과 생
활력을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온갖 연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은 정치생활, 경제생활, 사상문화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게 실현되고있습니다.

정치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분야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하자면 정권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인민이 자기의 의사에 맞게 정권을 세우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의사에 맞게 세운 우리의 인민정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인민이 정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 동등한 정치적권리를 가지고 모든 주권행사와 국가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고 있으며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는 인민들에게 참다운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진정한 민주주의사회입니다. 원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계급투쟁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계급적성격을 띠게 되며 독재와 결부되어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인민대중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그것을 침해하는 계급적원수들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실현고있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세력의 범죄적책동에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반대하여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계급적원수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옹당한 것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남에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부르췌아민주주의는 소수 착취계급에게는 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근로인민대중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는 반인민적인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부르췌아민주주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췌아의회제와 부르췌아다당제를 그 무슨 《민주주의》로 표방하고 있지만 부르췌아의회제와 부르췌아다당제의 배후에서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실제적인 조종자는 대독점자본가들입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형식적인 의회제나 다당제마저 저들의 반동적인 통치를 유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하루아침에 집어던지고 로골적인 파쇼통치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인민적 성격과 부르췌아민주주의의 반인민적성격은 인권문제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 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인권옹호

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를 혈뜬고 있지만 진짜 인권유린자는 제국주의 자들과 반동들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무고한 인민들과 인사들에게 정치테로를 가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권마저 유린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인권에 대하여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미제의 사촉밑에 남조선에서 감행되는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는 제국주의자들이 부르짖는 《인권옹호》라는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사회주의 법무생활은 강압적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부르쵸아법무생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민주주의적인 법무생활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이며 사회의 높은 조직성은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정연한 사회질서속에서 사람들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가 보장됩니다. 법이 반동적지배계급의 반인민적통치 수단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와는 달리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자각성에 기초하여 집행됩니다. 우리 인민은 가장 인민적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중앙집권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중앙집권제가 없이 사람들이 제가꿈 서로 다른 요구를 제기한다면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요구를 옹계 실현해 나갈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를 하나로 집대성하고 집대성된 의사를 인민대중의 의지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정치입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밑에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사회가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끌면서 사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 집니다. 국가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피 주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우월성의 하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생활은 개개인의 일로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며 부르주아국가는 사람들이 굶어죽건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고 보살피 주는 국가의 기능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통하여 실현됩니다.

사회주의국가가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한 권력기능이 아닙니다. 물론 사회주의정권도 자기의 특성에 맞는 권력기능을 수행하지만 인민이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정권이 권력을 만능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권력만능은 인민에 대한 정치적 지배를 실현하는 착취계급의 정권에 고유한것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정권은 단순한 권력기관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이익의 보호자로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입니다.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회주의 국가의 사명과 임무로부터 제기되는 중앙집권적 지도기능을 약화시킨다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줄수 없을뿐아니라 사회주의사회에 무정부상태가 조성되어 사회주의가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인민의 원수들이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를 반대하는 목적은 바로 사회주의를 말살하자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사회주의적 준법기풍과 민주주의적인 생활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며 혁명적군중로선을 옹계 구현하여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권을 통하여 정치생활에 참가할뿐아니라 정당, 단체를 통하여서도 정치생활을 합니다. 인민대중이 참다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의 주인이 될뿐아니라 정당, 단체의 정치생활에도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정당, 단체에서의 정치생활의 의의와 역할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더욱 높아집니다. 그것은 사회주의사회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는 사회라는 사정과 관련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여야 수령과의 혈연적 뉴대속에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 망라되어 정치조직생활을 하는것을 값높은 생활로 여기고 거기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고있습니다.

우리의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 안에서의 조직생활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입니다. 정치조직생활에서는 높고 낮은 사람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고 동등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을 통하여 제기되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가 당과 국가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들의 창의창발성에 의하여 당과 국가의 정책이 철저히 관철됩니다.

당조직과 근로단체조직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고 단련하는 학교입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정치조직생활을 통하여 수령의 혁명사상을 정치적 양식으로 섭취하고 조직과 동지들의 방조밑에 자신을 단련해 나갑니다. 우리 나라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고귀한 사회정치적생명을 빛내여 나가는 것은 혁명적인 정치조직 생활을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의 정치조직생활을 마치 자유에 대한 《구속》인 것처럼 헐뜯으면서 반대하는 것은 바로 정치조직생활에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사상적 위력의 중요한 원천이 있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로동계급의 당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정치조직에서 올바른 정치조직생활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여 나갈수 없을뿐아니라 그릇된 길에 굴러 떨어져 사회정치적 생명을 더럽힐 수 있으며 지어 반혁명분자들의 꾀임에 넘어가 반동들의 리용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혁명적인 정치조직 생활을 하여야 당과 국가의 정책실현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으며 값높은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연한 정치조직생활체계를 공고발전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각적인 정치조직생활기풍을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사회정치적생명을 더욱 빛내여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생활은 사회생활에서 기초를 이루는 분야입니다. 사람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은 자유롭고 풍요한 경제생활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인것만큼 경제생활에서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의 경제제도, 특히 소유제도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낡은 착취사회에서도 사회적부의 창조자는 인민대중이지만 그들이 그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생산수단을 소수 착취계급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지향하는 인민대중의 념원은 무엇보다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려는 인민대중의 념원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소유가 유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민대중은 경제생활의 참다운 주인이 되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적소유를 포기하고 사적소유를 되살릴것을 강요하고 있지만 사적소유제도의 반동성은 이미 력사에 의하여 확증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부르짖는 사적소유제도의 《우월성》이란 더 많은 재부를 긁어모으기 위한 무제한한 약육강식의 경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적소유에 기초한 약육강식의 경쟁은 불피코 착취와 압박을 낳고 근로자들을 자본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오직 사회적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인민대중이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적 소유만이 자기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보장하여 준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것을 끝없이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 강화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유를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전인민적 소유의 지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는 방법으로 단일한 전인민적 소유를 확립하는 역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인민대중이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경제는 그 관리도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안의 사업체계를 창조하심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가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형태를 마련하시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혁명적 군중로선을 구현한 가장 과학적인 공산주의적 경제관리형태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군중로선은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에 의하여 훌륭히 보장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는 경제관리에서 개인의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대중의 집체적지혜를 남김없이 동원하게 하며 정치적 방법으로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으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게 합니다. 우리 당이 내세우는 경제사업에 대한 당위원회의 지도는 어디까지나 정책적 지도, 정치적지도이며 그것은 행정대행, 행정식방법을 배제합니다. 당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일군들은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하고 행정기술 일군들은 경제기술사업을 합니다.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가 보장됨으로써 모든 경제사업이 당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진행되고 경제관리에서 군중의 의사가 옳게 반영되게 되었으며 경제과업수행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가 높이 발휘되게 되었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 의하여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계속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에 의거하여 사회주의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고 우리 인민에게 더욱 유족하고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경제생활에서 창조적 노동생활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보

동을 통하여 자기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문화적부를 창조하며 그 과정에 자기자신을 더욱 힘있는 존재로 키웁니다. 로동에 대한 권리는 사회의 주인으로서 사람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의 하나이며 로동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진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로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능력과 소질에 따라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실업자라는 말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잉여가치생산자로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자본가들은 실업을 로동강도를 높이고 로동력을 더 헐값으로 착취하기 위한 공간으로 리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많은 실업자, 반실업자들이 거리를 헤매고 있을뿐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창조적로동생활이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보람있는 생활로 되게 하자면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보다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하여 주어야 합니다. 사회의 생산력이 발전하면 보다 훌륭한 로동조건을 보장하여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어떻게 리용되는가 하는 것은 사회제도의 성격에 많이 의존됩니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

리 나라에서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들을 힘든 노동에서마저 해방하는 역사적과업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로동제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로동을 완전히 없애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로동생활을 더욱 보람차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생활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인민대중의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은 로동제급의 당과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해서만 보장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누구나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온갖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며 고르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국가로부터 무상이나 다름없는 험값으로 식량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먹고 입고 쓰고사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과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을 받고있을뿐아니라 온갖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어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당과 국가가 따듯이 돌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과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하는 《복지정책》은 사회주의사회의 인민적시책

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사회의 계급적모순을 가리우고 근로인민대중의 반항을 무마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사 《복지정책》이 실시된다 하여도 그것은 명목에 지나지 않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노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가 실시되고 가격과 같은 경제적공간이 리용되지만 이 경우에도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에서 생활비와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생활비 차이를 적게 두고 그 차이를 더욱더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품의 값도 대중소비품값은 낮게 정하며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필수품값은 더 낮게 정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먹고 입고 쓰고살 걱정을 모르고 고르롭게 잘살며 서로 돕고 이끌면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물질생활면모입니다. 우리는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보살펴주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을 계속 실시할뿐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 진척되는데 따라 그것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경제생활에 대한 물질적담보는 나라의 생산력발전에 의하여 마련됩니다. 사회주의제도는 생산력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줍니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계획경제이며 연속경제가 아니라 자립경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시장경제나 외국독점자본가들의 배만 불러주는 연속경제는 인민대중의 리익에 근본적으로 배치될뿐 아니라 발전속도에서도 계획적으로, 자립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를 따를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

의 《물질적번영》이 그 무슨 자본주의경제제도의 《우월성》에 의하여 이룩된 것처럼 떠벌이고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속일수 없는 꾀변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일찍부터 자본주의발전의 길에 들어섰으나 사회주의나라들은 지난날 경제발전수준이 뒤떨어진 나라들이거나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제3세계 나라들에 대한 식민주의적 약탈을 통하여 《물질적번영》을 이룩하였지만 사회주의나라들은 그렇게 할수 없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일부 뒤떨어진 나라들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것을 사회주의나라들과 대결시키기 위하여 인위적인 《물질적번영》을 조작할수 있으나 그러한 예측경제는 아무리 발전하여도 근로인민대중에는 진정한 복리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오직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자립적인 토대우에서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진정한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계획적으로 발전하는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야 정치적독립을 보장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굳건히 쌓으며 인민들의 물질적복리를 향상시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수 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경제협력》과 《원조》를 미끼로 다른 나라에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를 강요하고 경제적침투를 감행하기 위하여 교활하게 재능하고 있는 조건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높음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경제적봉쇄나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의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들의 물질적 복리를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교류와 협조를 백방으로 발전시켜나가지만 제국주의의 경제적침투책동은 철저히 배격하여야 합니다.

사상문화생활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분야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사상문화생활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창조능력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정서적 요구를 실현하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를 갖추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문화생활의 중요한 특징은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되어있는 사회인것만큼 인민들의 건전하고 풍부한 사상문화생활 조건도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도 당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당과 국가가 인민들의 사상문화생활조건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는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가장 우월한 제도이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사상생활은 정치생활과 함께 사람들의 사회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람의 품격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정되며 사상의식은 사람의 모든 활동에서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진보와 반동,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대결의 기초에는 언제나 사상분야에서의 대결이 놓이게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사상생활이며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은 로동계급의 완성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기

초한 사상생활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사상생활은 계급적 성격을 띠니다. 사상의식은 사람들의 계급적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합니다. 역사상 어느 한 계급도 사회에 대한 자기 사상의 지배를 요구하지 않은 계급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제국주의자들과 독점자본가들은 사회에 쬐어짜진 부르조아반동사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된 계급과 계층으로 분열되어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사회를 완전히 지배할수 없으며 따라서 각이한 사상과 사조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자본주의사회의 이러한 현상을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은 사상의 《자유》라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자본의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진정한 사상의 자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독점자본가들은 금권을 가지고 출판물, 라디오, 텔레비존을 비롯한 선전수단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저들의 반동사상을 강요하며 저들에게 위협하다고 인정되는 사상에 대하여서는 공공연한 탄압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대변자들이 떠들어대는 사상의 《자유》인것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남조선인민들속에 주체사상이 보급되는 것을 총칼로 탄압하면서도 오히려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가 없다고 떠벌이고 있습니다. 원래 사상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없앨수 없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 주체사상신봉자대렬은 더욱 확대되어가고있습니다. 사상을 탄압하는 것은 우월한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반인민적사상을 강요하는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 인민은 사람중심의 우월한 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의 사회적인 요구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그 본성으로부터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한 지배

를 요구합니다. 낡은 사상을 낡는 사회경제적기초가 청산되고 계급적대립이 없어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하나의 사상이 지배하는 것이 합법칙적입니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 아직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감행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유일적 지배가 쉽게 이루어질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에는 공백이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이 아니면 부르쥬아사상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쥬아자유화바람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침략에 앞서 사상적침투를 감행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사회주의나라에 부르쥬아자유화바람을 불어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 요구이며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입니다. 사상혁명을 통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온갖 낡은 사상의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워야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

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당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혁명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누리는 참다운 사상생활모습이며 혁명적인 사상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넘치고 있는 여기에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가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이미 세워놓은 사상교양 체계와 내용 및 방법을 고수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심화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인민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준데서 그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적문화생활제도는 문화적요구를 충족시켜주는 우월한 제도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 근로자들은 창조적능력과 자질을 소유한 힘있는 존재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학습하는 배움의 나라, 교육의 나라인 우리 나라에서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되어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고등교육이 발전되어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훌륭한 민족간부로, 사회주의건설자로 육성되고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정연하게 서있어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창조적재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당과 온 사회에 정연한 학습체계가 서고 학습조건이 마련되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정치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인민들에게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이고 인민적인 문화가 개화발전되어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의 나라, 예술의 나라로 이름떨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속에서 자주적인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공산주의도덕기풍이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들은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혁명적량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화목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은 가장 값높고 보람찬 문화생활입니다. 우리는 문화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의 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고 우리 인민의 건전하고 고상한 문화생활을 더욱 활짝 꽃피워나가야 합니다.

3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사회를 떠밀어나가는 주체는 인민대중이지만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야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조직화된 사회인것만큼 결코 자연발생적으로는 자기의 길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적인 전략전술에 의하여 지도되고 근로인민대중의 정치적각과 조직성이 높아질 때 자기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으며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어나갈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에게 옳은 지도사상과 과학

적인 전략전술을 제시하며 그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사업은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과 당에 의하여 수행됩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과학적인 이론과 전략전술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어나가는 령도의 중심입니다. 수령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닌 혁명의 위대한 령도자입니다.

지난날 민족적수난속에서 앞길을 찾지 못하고 갖은 풍파를 다 겪어온 우리 인민은 탁월한 령도자의 출현을 애타게 갈망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 념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심으로 하여 비로소 빛나게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은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 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사회주의의 새 력사를 승리적으로 개척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에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의 우월한 사회주의가 건설된 것은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과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상이론과 정책은 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집대성한 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을 선생이라고 가르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서재에서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주체의 신리를 발견하시고 인민대중의 지향을 반영하여 주체의 원리를 성식화하시였으며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경험을 총화하여 주체사

상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의사와 요구를 헤아리시고 그것을 반영하여 새로운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농법도 몸소 수많은 농촌을 현지도하시면서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경험을 집대성하여 내놓으신 것입니다. 대중령도에 관한 공산주의적 지도사상, 지도방법인 유명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도 수령님께서 청산리농민들속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시면서 그들의 념원과 의사를 집대성하여 내놓으신 것입니다. 수령님께서 걸으신 수억만리의 현지도의 길은 바로 인민대중의 념원과 의사를 반영하여 로선과 정책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에로 인민대중을 불러일으켜 우리 혁명을 끊임없는 양양에로 이끌어오신 불멸의 로정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며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방법,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의 념원을 빛나게 실현시켜주시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을 어버이로 끝없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것입니다.

수령의 령도는 로동계급의 당을 통하여 실현됩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근로인민대중의 선진분자들로 조직된 전위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의 참모부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수 없습니다. 권력기능을 수행하는 정권기관과 사회의 일정한 계층을 망라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인 근로단체들은 그 성격으로부터 로동계급의 당을 대신할수 없을뿐아니라 그 령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도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령량으로 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적차이를 비롯한 여러가지 차이가 남아있는 과도적사회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함께 다른 정당들이 존재할수는 있지만 일정한 정치세력과 계층만을 대표하는 당은 결코 로동계급의 당의 지위와 역할을 대신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요구를 구현한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령도권을 로동계급의 당이 아닌 다른 정당의 수중에 넘기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다른 정당들은 로동계급의 당과 집권경쟁을 하는 정치조직이 아니라 온 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 조건에서 친선적으로 협조하는 정치조직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령도계급인 로동계급은 물론, 농민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실현되여 나가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를 무시하고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 지위와 역할을 약화시키거나 거세한다면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향도적중심을 잃은 비조직군중으로 전락되고 사분오열되게 되며 그대신 반혁명분자들이 민심을 오투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빚어낼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를 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사회주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입니다.

우리 인민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인 조선로동당만을 자기의 유일한 향도적 령량으로 여기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으며 당의 령

도를 충실하게 받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공고성은 사회주의사회의 향도적 역량인 로동계급의 당의 혁명적성격과 그 령도적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완성하는 것을 투쟁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는 여기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근본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을 망라하는 대중적 당으로 건설되었으며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인민대중에게 끝없이 충실한 우리 당은 정책을 세워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의사와 요구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것을 반영하여 세웁니다. 우리 당의 모든 정책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자신의 것으로 전환되고 실생활에 철저히 구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을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 당의 모든 활동을 철두철미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할 자기의 사명을 옹기 수 행하자면 당자체가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비록 당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내세웠다 하더라도 당자체가 튼튼히 꾸려져있지 못하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 당의 위력의 원천은 전당이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단

결되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당건설의 기본로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전당에 수령의 사상체제, 령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가장 공고한 통일단결을 이룩할수 있었으며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갈수 있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불패성의 담보로 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당 발전의 한 법칙적 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이 대를 이어 장기적으로 진행되며 공산주의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 세대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도 대를 이어 계승발전되어야 합니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결국 당의 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혁명적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발전하며 전진도상에는 새롭게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수없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그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완성에 이르는 전행정에서 선행시기의 업적과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합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준엄한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에 혁명과 건설에서 영원히 귀감으로 삼아야 할 고귀한 전통이 이룩되며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원칙이 마련됩니다. 우리당은 령도의 계승문제를 옳게 해결하였을 뿐아니라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주체적인 혁명로선과 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감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드뚝없이 전진시켜나가고있습니다.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로동계급의 당의 생명이며 힘의 원천입니다. 치열한 계급투쟁속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을 뚫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이끌어나가는 로동계급의 당이 무정형적인 집단으로 되어서는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을 구현하고 당원들 속에서 유일적인 당생활규범에 기초한 혁명적인 당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수령의 유일적 령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불패의 전투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람과의 사업을 당사업의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가는 주체는 사람인것만큼 로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사람과의 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 다시 말하여 간부들과의 사업, 당원들과의 사업, 군중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간부사업체계, 당생활지도체계, 군중사업 체계를 정연하게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당과 혁명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혁명의 주체를 비상히 강화할 수 있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갈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계속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당을 유일사상 체계에 기초하여 통일단결되고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전투적 정치조직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정치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해 나가는 세련된 정치적참모부로,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논쟁적인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에게 충실히 행동하지 않으면 일군들이 올바른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당 정책이 정당하여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이 나쁘면 그것에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없으며 철저히 관철될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세워서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두터이할수 있으며 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사업 방법과 작풍을 세우는데서 다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직권을 악용하여 권세를 부리며 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입니다.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대중의 현연적인 령계를 강화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잡으면 일부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면서 권력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원래 세도와 관료주의는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것입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반동적 지배계급의 통치방법이며 이런 방법이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나는 것은 주로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남아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계급의 당에 있어서 고유한 사업 방법과 작풍은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입니다. 우리는 새 사회 건설의 첫날부터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세우는 문제를 당과 국가 활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적극 투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간부대원에

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혁명적 단련이 부족한 일군들의 비중이 높아가는 조건에서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세우는 문제를 계속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 하자면 모든 일군들이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가지고 인민 대중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적관점은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며 인민대중자신이 하는 사업입니다. 인민대중은 무궁무진한 지혜와 힘의 소유자입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사업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주관과 독단을 부리지 말고 언제나 군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의 혁명적 열의와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양시켜야 합니다.

일군들은 군중우에 선 특수한 존재가 아니라 인민대중속에서 나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심부름군입니다. 일군들은 인민의 복무자로서 언제나 자기의 이익보다 인민대중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군중의 요구와 아픔을 자신의 요구와 아픔으로 여기고 인민들의 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어야 하며 인민대중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높은 인간성과 인정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따뜻이 대하여야 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람들의 사회정치

적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회정치생활에서 걸린 문제를 세때에 풀어주며 사람들을 차별없이 대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인민대중과 조금도 간격을 두지 말고 그들과 허물없이 지내야 합니다. 일군들은 틀을 차리거나 행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소박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사리를 추구하거나 특전, 특혜를 바라지 말아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생활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국가의 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어렵고 힘든 일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보람있는 생활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면서 인민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인민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확립하자면 사업체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군중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군중의 목소리를 들을수 없고 군중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사업할수 없으며 군중을 조직동원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전당이 군중속에 들어가자!》라는 구호를 내놓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웠습니다.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군중속에 들어가 사업하는 것이 습성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 주관주의와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어가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갈뿐아니라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은

앞세우고 정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근로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우리 당은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앞세워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당정책을 해설해주고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없애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세우자면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은 낡은 사상잔재의 표현이며 그것은 뿌리깊은 것입니다. 일군들 속에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꾸준히 벌리지 않고서는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극복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일군들을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령도 리론과 방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도록 하는 한편 사업 방법과 작풍에서 나타나는 긍부정자료를 가지고 제때에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을 벌리도록 하였습니다. 꾸준한 사상교양과 사상투쟁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이 극복되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극복되어나감으로써 우리 당안에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확고히 서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철저히 극복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우리 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인민대중을 이끌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과 수령을 끝없이 신뢰하고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차게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고있습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 모습입니다.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위력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거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일본 <교도통신>과 서면 대담

('91. 6. 1)

나는 사장선생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교도통신사 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들을 만나 면목을 익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벗들이 우리 나라를 많이 방문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두 나라 벗들 사이의 왕래가 많아지면 그것은 조일관계를 개선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가네마루 싱선생이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온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네마루 싱선생이 건강하다니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지난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가네마루 싱선생과 상봉하여 조일관계를 개선할데 대한 문제를 협의하였으며 좋은 인상을 가지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나는 그와의 상봉을 지금도 기쁜 마음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가네마루 싱선생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물음 : 귀국의 정치, 경제 분야의 과업과 전망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을 실현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주성은 사회적 인간의 생명이며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정치의 근본목적은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

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정치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와 사회를 관리 운영하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며 모든 사회적 재부와 창조적 노동의 결과를 다같이 고르롭게 향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국주의와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권을 옹호하며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는 인민대중 자신의 정치이며 그것은 사람중심의 정치철학인 주체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인민대중이 그것을 자기의 생활적 요구로 받아들이고 창조적 열의와 헌신성을 발휘하여 적극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주적인 정치는 자립적인 경제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경제건설에서 자립의 원칙을 관철하여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존하지 않고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 우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여 놓았습니다. 우리 인민이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건설하여 놓은 자립적 민족경제는 우리 조국의 자주적 발전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사회주의생활을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제3차 7개년 계획이 완수되면 우리 나라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이 한층 강화되고 우리 인민의 물질문화 생활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의 원칙에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당과 정부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18년만에 우리 나라에 다시 와보니 평양이 많이 변하였다고 하는데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을 대대적으로 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 18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웅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대건설행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에서는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로 한창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5만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더 지으면 평양시민들이 보다 현대적인 살림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제3차 7개년계획 기간에 120만~150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데 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매해 살림집을 한 20만세대씩 건설하여야 합니다. 지금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살림집도 많이 짓고 공장도 대대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들고 일심단결하여 당의 령도를 받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 일조 두 나라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풀어야 할 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조선과 일본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는 본질상 두 나라사이

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선린관계를 발전시키는 문제입니다.

두 나라사이의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려면 무엇보다도 과거를 옳게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보다도 자기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리로운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리로운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하여야 합니다.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일본인민의 리익과 시대적 요구에 맞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조일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으며 그 결과 조선로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사회당의 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일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문제가 그 어떤 외부의 간섭이나 그릇된 정치적 동기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면 성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조일 두 나라 다같이 자주적 립장에 튼튼히 서서 문제를 성실하게 협의해나간다면 조일관계 정상화문제가 3당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아직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낯선 사람들끼리 마주앉아 회담을 하는 조건에서 분쟁문제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일관계를 정상화하는 문제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념원이며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만큼 회담에서는 이러한 념원과 목적에 부합되게 쌍방이 서로 좋

은 말부터 하여야 할 것입니다. 회담에서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기본문제와 관계없는 문제를 들고나온다면 회담을 지연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이제 회담쌍방이 면목이 깊어지면 서로 이해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쌍방이 노력하여 우선 국교정상화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하나씩 협의해 나간다면 모든 문제를 다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가네마루 싱선생과 다나베 마코도선생이 조일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돌아가면 가네마루 싱선생과 다나베 마코도선생에게 나의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조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된 다음 내가 일본을 방문할 의향이 있는가고 물었는데 물론 있습니다. 일본인민들과 만나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였지 일본인민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언제나 조선인민과 일본인민이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살고있는 일본여성들의 고향방문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일 국교정상화가 실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물음 : 북남대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근본립장과 원칙적인 방도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대화를 진행하는 목적은 조국을 통일하려는데 있는 것만큼 대화쌍방이 다같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공동으로 노력할

때에만 대화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다 보고 있는 바와 같이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진보적 인사들과 청년학생들, 광범한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으며 고의적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함으로써 북남대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민족앞에서 대화의 명분이 설 수 없으며 그러한 대화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북남사이의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남측에 요구한 것은 첫째로 방북인사들을 석방하며, 둘째로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기간만이라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셋째로 유엔에 단일의석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북과 남이 협의하여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측은 이 세가지 문제를 다 거절하였습니다. 남측은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를 한사코 반대하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합의서를 채택할데 대해서만 고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요구도 받아들여 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기본관계합의서를 하나의 문건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하였으나 남측은 그렇게 하는 것도 반대하였습니다. 속에 품은 칼을 내놓지 않고 화해와 협력에 관한 기본관계합의서나 채택하여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남사이의 회담을 파탄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회담을 계속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측에 달려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그만두고 남조선의 광범한 통일력량과 보조를 맞추어 대화에 임한다면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성과를 거두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 조선의 통일문제와 동서독일의 통일문제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동서독일이 통일을 실현한데 대하여 반대하지 않습니다.

미국대통령 부쉬는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진데 대해서는 환성을 올렸으나 조선의 북과 남을 갈라놓고 있는 콘크리트장벽에 대해서는 그런 장벽이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콘크리트장벽을 위장하여 숨겨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조선의 분열을 그대로 지속시키자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 콘크리트장벽이 있다는 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습니다. 지난해에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전략위원회의 발기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로 무어진 콘크리트장벽 국제조사단이 우리 나라에 와서 콘크리트장벽을 촬영하여 세계에 공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구라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미국의 압력이 두려워 이에 대하여 널리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사람들의 말이라면 겁이 나서 별 별 떠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아세아나라인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자주적으로 나아가면 아세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 올가을에 진행되는 유엔총회에서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우리는 평화와 정의를 수호할 사명을 지닌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으며 자주독립국가인 우리 나라가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응당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는 우리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우

리는 이에 대하여 심중히 고려하여 왔으며 조선의 유엔가입문제를 북과 남사이의 협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유리하게 해결할 것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원칙적인 입장과 정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은 시종일관 이와 상반되는 분렬주의적인 입장을 고집하여왔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북과 남이 단일의석으로 유엔에 들어가는 문제가 실현될 수 없게 된 조건에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조치로서 유엔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국제무대에 공동으로 나가며 온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국가로서 유엔의석을 차지할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물음 : 정부급의 조미 관계개선 전망과 평화협정 체결문제, 핵문제, 아세아의 평화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 : 조선과 미국 두 나라에서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부당한 대조선정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 정세의 변화과정을 놓고볼 때 이제는 미국이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지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로 나가려 한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조건이 없을 것이며 조미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이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전개해놓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면서 그 누구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은 리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이것은 미국이 아직도 힘의 입장에 서서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는 낡은 습성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

오늘에 와서 힘의 립장에 서서 자기 의사를 남에게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국제의회동맹 제85차 총회에서 연설한 바와 같이 세계에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가 없으며 우리는 핵무기를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1,000여개의 핵무기가 배비되어 있습니다. 핵사찰을 하려면 핵무기가 없는 우리에게 대해서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있는 남조선에 대해서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조선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세아지역을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일본사회당과 합의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세계언론계가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문제에 대해서만 떠들고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떠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들을 포함하여 언론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안에서도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가네마루 싱선생이 미국을 방문하여 조선과 미국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데서 다리의 역할을 하겠다고 한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나는 그가 조미관계에서 걸린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조일관계문제도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는 의도에서 우리에게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런 착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네마루 상선생은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과제입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굳게 단결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이 지역에서 다른 나라의 침략적 군사기지과 침략군대를 철거시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하여 투쟁함으로써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세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아세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교도통신사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많이 할 것을 희망하면서 앞으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일성, 조평통·범민련 북측간부들과 담화

—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

('91. 8. 1)

지난해에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올해에 또다시 8.15를 계기로 제2차 범민족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조국이 해방된 뜻깊은 날을 맞으며 범민족대회와 여러가지 민족공동의 통일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예정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여 조국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렬은 우리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하여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세력에 의하여 강요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조선문제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요구와 의사에 배치되게 렬강들의 리해관계에 따라 처리되고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 결과 우리 나라는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통일이 오늘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것도 외세의 간섭과 방해 책동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가 분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반세기동안 어느 하루도 우리 민족이 겪고있는 불행과 재난에 대하여 잊은 적이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조국통일의 과업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전체 조선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룹니다.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어떤 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혁명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며 장기간의 혁명투쟁과정에 신념화된 우리의 철학입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은 우리 민족의 주체적 역량입니다. 조선민족은 누구나 다 조국통일의 주인이며 따라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체로서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려면 하나로 굳게 뭉쳐야 합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 아닌 단결의 위력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로 통일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가 있습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여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며 사회생활단위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운명을 개척하여 왔습니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자주성은 사람의 생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생명입니다. 사람이 자주성을 잃으면 죽은 몸이나 다름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족도 자주성을 떠나서는 그 존재와 발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어야 개별적 사람들의 자주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나라와 민족이 남에게 예속되면 누구든지 망국노의 처지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속에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의 개인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하여 민족은 비록 각이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사람들이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게 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 민족의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것은 민족의 성원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상감정입니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민족주의 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주아 민족운동

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 부르주아지가 반동적 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민족주의는 진정으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입니다. 민족의 기생충이라고 볼 수 있는 놀고 먹는자들이 민족주의를 부르짖으며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것은 한갓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신로동을 하든 육체로동을 하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유의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야 참다운 민족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로 됩니다. 유구한 세월 한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찬란한 민족주의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은 애국심이 강하고 자주정신이 높은 민족입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였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아버님께서서는 일찌기 《지원》의 사상을 내놓고 우리들을 애국주의 사상, 민족자주사상으로 교양하시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생을 바칠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섰습니다. 나의 혁명활동은 민족해방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나는 민족의 주체, 혁명의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우리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였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한평생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하여 투쟁하여 왔습니다. 물론 나는 우리 인민의 자주성만이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자주성을 다같이 옹호하며 우리 나라에서뿐 아니라 전세계적 범위에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와 압박을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

모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 세계혁명에 충실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애국자만이 세계혁명에 충실한 참다운 국제주의자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이고 국제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본단위로 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어 나가는 현역사발전단계에서는 마땅히 민족의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민족공동의 리익과 번영을 위하여 온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대단결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할 뿐 아니라 조국이 통일된 다음에도 온 민족의 통일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끝없는 행복을 누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민족이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체적 민족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투쟁에서나 할 것 없이 언제나 인민들의 단합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여 왔습니다. 민족적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단결된 힘에 의거하여 투쟁한 여기에 지난 기간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투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항일유격대와 인민들이 혈연적으로 련결되고 모든 반일 애국력량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각계각층의 애국적 인민

들을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묶어세워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일본제국주의와 싸웠습니다. 1936년에 조직된 조국광복회는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광범한 애국적 인민들을 망라한 반일 민족통일전선 조직이었습니다. 조선광복회에는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 그리고 량심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일 애국력량이 모두 결속되었습니다. 광범한 반일 민족통일전선에 의거하여 항일혁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 민족적 단결의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서도 민족적 대단결을 이룩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해방한 다음 인민들앞에서 한 연설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체 인민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단합된 힘에 의거하여 민주주의 새 조국 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쳤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목적은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에서 전체 인민이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누리도록 하려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사회는 말그대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것은 전체 인민이 다 나라의 주인으로 되고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사회라는 뜻입니다.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지 않는 사회주의는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인민대중의 단합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도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공

동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며 전체 조선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다같이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에서 온 민족이 뜻을 합치고 하나로 단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또 그것은 능히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48년에 평양에서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련석회의가 열렸는
데 우리는 당시 민족앞에 절박하게 나섰던 당면한 구국대책과 나라의 통
일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회의에는 남조선에
서 리승만의 직계정당을 내놓고는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
가하였습니다. 《한국독립당》의 당수였던 김구도 회의에 참가하였습니다.
김구로 말하면 그는 해방전에 《상해림시정부》에 있으면서 공산주의자들
을 원썩처럼 여기던 사람이지만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를 같
은 민족으로서 한자리에 모여앉아 허심탄회하게 토의하자는 우리의 정당
한 제의에 공감을 가지고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결국 련공련합의 길에 나
섰습니다. 김구는 진정한 공산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몰랐
으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남북련석회의에서 연
설을 잘하였으며 남조선에 돌아가서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다가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암살되었습니다. 력사적인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는 누구나 단결할 수 있
다는 것을 뚜렷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한 민족적 단합의 전통과
경험을 살려 온 민족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투쟁한다면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로 단결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바라는 조국 통일입니다.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기본은 그 어떤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진정한 화합과 단합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마음을 하나로 합치고 그에 기초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한다면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기본문제가 해결되게 되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은 자연히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서 상당한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8.15범민족대회가 열린데 이어 범민족통일음악회도 열리고 북과 남의 통일축구경기와 예술축제도 진행되었으며 올해에는 북과 남이 유일팀을 무어가지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공동으로 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민족의 통일열망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민족적 화합과 단결의 기운이 고조된 결과에 이루어진 것이며 여기에서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은 다같이 기쁨을 느끼고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온 겨레의 마음이 점차 하나로 합쳐지면 결국 온 민족의 대단결이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조선의 문익환목사가 이제는 우리 민족이 통일되었다, 통일은 완료형이다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뜻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조국통일방안을 주장하는 것도 참다운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룩하는 길은 련방제방식밖에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실정에서 누가 누구를 먹는 방법으로 통

일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상과 제도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어느 일방이 타방에 사상과 제도를 강요하는 방법으로는 민족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족내부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새로운 민족적 재난을 빚어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는 강제적 방법으로가 아니라 민족공동의 리익에 기초하여 민족적 단결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점차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가장 절실한 민족공동의 리익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민족내부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있어도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실현할 수 있으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관계 없이 그리고 로동자, 농민, 지식인과 청년학생,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군인할 것 없이 모두다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단결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지난 기간 새 조국 건설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북과 남, 해외에 있는 각계각층의 모든 동포들이 단결하여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조국통일 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로동자와 농민, 인테리는 민족의 기본력량입니다. 로동자, 농민, 인테리들이 각각 자기의 특색을 살리면서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면 민족의 강력한 자주적 주체를 이룰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동자, 농민들은 인테리들과 힘을 합치고 인테리들은 로동자, 농민들과 운명을 하나로 결부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테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들을 편협하게 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을 창건할 때 노동자, 농민과 함께 인테리를 우리 당의 한 구성 부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마크에는 마치와 낫과 붓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을 구성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을 시작할 때 인테리들을 일제에게 복무하였다고 하여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애국심과 민족자주정신을 믿고 적극 포섭하였습니다. 우리는 전국각지에 흩어져있는 인테리들을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한사람 한사람 찾아내어 새 조국 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적극 내세워주었습니다. 우리의 인테리들은 우리 당을 신뢰하고 따랐으며 당과 운명을 같이하여 왔습니다. 그들은 새 민주조선 건설에 자기들의 힘과 재능을 다 바쳤을 뿐 아니라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도 참가하여 잘 싸웠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습니다.

오늘 남조선인테리들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잘 투쟁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은 열렬한 애국정신과 견결한 반미자주정신을 가지고 남조선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쳐가며 영웅적으로 싸우고있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우리 민족의 자랑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는 노동자, 농민, 인테리와 함께 각이한 생활성위를 가지고 각이한 조건에서 생활하고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사람들도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민족반역사를 내놓고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담하

제 포섭하는 원칙에서 민족적단결을 이룩해나가야 합니다.

종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게 되는 것은 대체로 현실생활에서의 고통과 불행을 숙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래세에 가서라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보자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를 믿는 사람을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생활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도록 만드는 반인민적인 정치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저들의 지배에 순종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악용하는 반동통치배들입니다. 진보적인 종교인들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살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남조선종교인들은 외래침략자들이 우리 민족을 인공적으로 분열시켜놓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총칼로 탄압하는데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종교인들이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여야 하며 그들과 단결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에서 민족의 아들딸들인 청년들이 《국군》에 들어가 미국사람들의 지휘밑에 미국의 신식민주의적 지배와 민족분열정책의 도구로 복무하고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국군》장병들이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똑바로 꿰뚫어보도록 깨우쳐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국군》장병들이 자기 민족과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도록 하며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부모형제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통일은 애국이고 분렬은 매국입니다.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바라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은 애국자이며 외세

와 한쪽이 되어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분열을 추구하는 사람은 매국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준에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다 단결하여 한대오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설사 한때는 조국통일을 반대하고 나라와 민족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그와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난날 민족앞에 몇몇치 못하게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과거와 결별하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사람입니다. 동무들이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덕신선생은 지난날 남조선에서 《국군》군단장도 하고 《외무부장관》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남조선의 군부와 정계의 요직에 있으면서 친미반공의 길을 걸어왔지만 점차 집권자들의 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처사에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민족을 위한 참된 길을 걷기 위하여 해외에 망명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해외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실현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애국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조국을 방문하는 과정에 어느 길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공화국이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서 조선민족의 높은 긍지와 존엄을 당당히 떨치고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되었으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묻지 않고 정견과 주의주장, 신앙에 관계없이 다 포섭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정당하고 일관성있는 정책과 민족대단결 로선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민족주의자로서 그리고 천도교인으로서 일생동안 동경하고 모색하던 지상천국을 조국에서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여생을 조국과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위업에 바칠 결

심을 품고 조국에 영주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이 지난날에는 비록 우리와 상반되는 길을 걸어왔으나 과거와 결별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새 출발을 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그의 희망을 적극 지지하여주고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그와 손잡고 함께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품에 안긴 후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조국의 튼성발전과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조국통일을 위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적으로 사임하였습니다. 최덕신선생은 고대하던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나 생의 말년에 조국통일운동 대오에 서서 거래와 함께 나아감으로써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애국렬사로서 영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외 동포들에게 민족의 화합과 대단결의 참뜻을 깨우쳐주었습니다.

민족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은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민족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이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분렬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형성된 제도상의 차이나 사상과 리념의 차이보다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 민족의 공통성이 더 크며 개별적 계급, 계층의 리해관계보다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가 비할 바 없이 더 중요합니다. 개별적 계급, 계층의 사상과 리념을 옹호하고 리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족공동의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계급과 계층은 민족의 한 부분인 것만큼 어떤 계급과 계층도 민족

공동의 이익을 떠나서는 자기의 이익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계급이 있을 수 있으며 민족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계급의 이익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이 유린당하고 있는 오늘 조선민족이라면 어느 한 계급과 계층도 자기의 이해관계를 전면에 내세워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협소한 이해관계와 편견에 사로잡혀 계급적이익을 민족적 이익 위에 올려세우거나 계급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 대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같은 민족끼리 정견과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탄압하며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적대시하는 것은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는 민족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점에 기초하여 단결하지 않고 차이점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서로 배척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 민족이 언제 가도 통일을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 동포들 사이에 접촉과 래왕을 많이 하고 대화를 적극 발전시켜야 합니다.

온 민족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마음을 합치고 힘을 합쳐나가자면 민족내부에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합니다. 나라가 분열되어 북과 남이 오래동안 격폐된 상태에 있었던 관계로 일부 사람들은 한피줄을 이은 자기 동포들을 적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또 일부 사람들은 민족의 단합을 바라면서도 신뢰가 부족한데로부터 같은 동포들과 손잡고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민족내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가

시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려면 자유로이 래왕하면서 서로 접촉하여야 하며 대화를 많이 하여야 합니다.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 폭넓은 대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온갖 정치적, 법률적, 장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사이의 자유래왕과 전면개방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조선당국이 민족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북과 남, 해외 동포들사이의 자유래왕과 접촉, 대화를 발전시키는데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이 큰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는 북을 방문하였거나 해외에서 북반부사람들과 마주앉아 통일론의를 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처형하고 있습니다. 70고령의 문익환목사와 나어린 림수경학생을 비롯한 방북인사들과 수많은 통일운동자들이 지금 이 법의 희생물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습니다. 이러한 악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과 남사이에 자유로운 래왕과 접촉이 실현될 수 없으며 대화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전민족적인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뜻을 합치고 힘을 합쳐 공동행동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이루어지고 공고화되게 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서로 지지 성원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선차적으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반통일세력의 민족분렬영구

화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 동포들은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세력을 고립약화시키고 그들의 분열주의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공농투쟁을 적극 벌려나가야 합니다. 남조선에 있는 수만명의 미국군대와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키고 핵전쟁위험을 조성하는 근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하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거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동포들의 조직적인 연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통일애국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동포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대오에 조직적으로 결속될 때 비로소 공고한 민족적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온 민족의 조직적인 단합을 실현하려면 북과 남,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다같이 자원적으로 망라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범민족대회 결의에 따라 출범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그러한 조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나라의 사수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 해외의 애국적인 단체와 조직들, 각계각층 인사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결성되었습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사수,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북과 남, 해외동포들의 공동의 의사를 대변하는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맡고있는 임무와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동포들속에서 대오를 끊임없이 앞당기기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아직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으나 우리는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확신성있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들은 1990년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룩할 각오를 가지고 통일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를 꺾을 수 없으며 그 어떤 힘도 조국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 가로놓인 장애와 난관을 제거하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고자 할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민족은 존엄있고 힘있는 민족으로 될 것이며 우리 나라는 7,000만 이상의 인구나 찬란한 민족문화와 위력한 경제를 가진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근면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우리 나라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삼천리금수강산입니다. 온 겨레가 하나로 단결되고 조국통일이 실현되면 우리 나라는 두려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게 될 것이며 그 누구도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조국이 통일된 다음 온 민족이 힘과 지혜를 합쳐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킨다면 우리 나라는 더욱 부강하고 문명한 나라로 될 것

;

이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아세아와 세계 인민들의 공동위업에 더 잘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조선민족으로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가장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입니다.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은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며 통일된 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나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의 전조선에서 조국과 민족이 맡겨준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고 믿습니다.

김정일, 전국 청년 및 사로청 일꾼들에게 서한

—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

('91. 8. 26)

오늘 우리는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청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27년 8월 28일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신 것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 운동과 청년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일찌기 《트.디》에서 뿌리내린 조선 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은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이 결성됨으로써 혁명적인 청년핵심들을 튼튼히 묶어세운 힘있는 전위조직을 가지고 더욱 줄기차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 발전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날을 청년절로 기념하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린 청년들의 불멸의 업적과 위훈을 길이 빛내이며 새 세대 청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길우에는 청년들의 영웅적 위훈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간고하고도 보람찬 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과정에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항일혁명투쟁시기 청년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애국적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선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일본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조국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광복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정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시원이 열리고 그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었습니다.

항일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청년들은 해방후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 원수들과 치열한 투쟁을 벌리면서 인민이 주인된 새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 청년들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지키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모든것이 파괴되어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 그 어려운 시기에도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데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남녀청년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구호를 높이 추켜들고 당의 구상을 꽃피워나가는 길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영웅적투쟁과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이 땅위에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대기넘비적창조물이 수많이 일떠섰으며 사회주의 조국은 끝없이 튼성번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도시와 농촌을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어난 세기적인 전변과 우리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는 청년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청년들이 이룩한 업적과 위훈을 잊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역사와 다

불어 길이 빛날것입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정에 청년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을 지니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에 한몸바치는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보람찬 투쟁에 자기의 모든 정력과 지혜를 바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구호밑에 사회와 집단, 조직과 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보람차게 일하고있으며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언제나 락관과 신심에 넘쳐 투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청년들은 영웅적인 새 세대이며 이러한 청년들을 가지고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나는 뜻깊은 첫 청년절을 맞이하면서 조선청년으로서의 높은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당의 령도따라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는 전국의 모든 남녀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청년들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이며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입니다.

청년들은 혈기왕성하고 용감하며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세대입니다. 청년들은 고상한 리상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자기의 훌륭한 특질로 하여 낡은 사회제도를 짓부시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기 위한 계급투쟁에

서나 자연을 개조하기 위한 로력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힘 있는 부대로 됩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그것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세대를 이어 완성되어 나갑니다. 혁명이 대를 이어 완성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혁명대오의 끊임없는 세대교체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새 세대청년들을 떠나서는 혁명의 전진과 그 종국적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역사적경험은 청년들이 혁명의 피줄기를 튼튼히 이어나갈 때에는 당과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이 견결히 옹호고수되고 끝까지 완성되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여곡절과 실패를 면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우리 혁명은 오늘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직한 새 세대 청년들이 있는 한 우리 혁명은 어떤 풍파와 시련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이 빛나게 계승 완성되어 나가는 시대, 로동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동당시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실현되고 혁명과 건설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사회주의나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끝없이 번영하는 로동당시대에 태어나 살며 투쟁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

며 행복입니다. 청년들은 영광스러운 로동당시대에 사는 높은 영예와 긍지를 안고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니고 있는 영예로운 임무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더욱 빛내여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인민대중이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이상사회이며 참다운 혁명가, 공산주의자들의 최고투쟁목표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위업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우리 혁명의 1세대 청년들인 항일혁명투사들에 의하여 개척되었으며 혁명의 2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었습니다.

혁명의 선행세대 청년들의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줄기차게 발전하여온 사회주의위업은 오늘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튼튼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의 1세대, 2세대 청년들이 조국을 광복하고 해방된 조국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위훈을 떨친 세대라면 혁명의 3세대, 4세대 청년들은 그것을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세대입니다. 오늘 우리의 새 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으로부터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튼튼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과업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자신을 열렬한 혁명가,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이것이 오늘 우리 청년들이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 청년들은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청년전위가 된다는 것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고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며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선봉대, 돌격대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우리 청년들이 지녀야 할 가장 숭고한 정치사상적 품모입니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혁명의 새 세대로 자라나는 청년들이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것은 응당한 본분이며 도리입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데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위대성과 은덕을 깊이 체득하여야 하며 항일혁명투사들과 우리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적극 따라배워야 합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모든 혁명투쟁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으로써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훌륭히 일떠세울수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참다운 청년전위로 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사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학습을 강화하여 그것을 더욱 깊이있게 체득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우리 식대로 풀어나가며 그 어떤 이색적인 사상요소와 생활풍조에도 물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혁명의 전략과 전술이며 혁명과 건설의 가장 올바른 지도적지침입니다. 청년들은 당과 로선과 정책을 깊이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지침으로 삼아 일하고 생활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여야 합니다.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마련된 빛나는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력사적 뿌리이며 그 대를 이어주는 피줄기입니다.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 세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자면 그 계승자인 청년들이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과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기학습, 혁명전적지답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연구체득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 것을 더없는 긍지로 간직하고 그것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끝까지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높은 계급의식과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은 혁명가의 기본품성의 하나입니다. 계급의식이 높지 못하고 로동계급적관점이 확고하지 못한 사람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싸울수 없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사회현상을 로동계급적관점과 사회주의적원칙에서 보고 판단하여야 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과 착취제도의 반동적본질을 똑똑히 알고 그것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비극을 강요하고
으며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는 미제침략자들을 반
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회주의애국주의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조국을 빛
이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주의조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당이 빛내어나가
영광스러운 조국이며 우리 인민의 삶의 요람입니다. 사회주의조국의
속에서 사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몸
쳐 싸우는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조국에 바친 값높은
은 조국과 더불어 영생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귀중함을 깊이
득하고 조국을 열렬히 사랑하며 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쳐 싸워야 합니다.

조선민족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위대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며 그것
더욱 빛내어나가려는 높은 자각과 의지입니다. 민족의 위대성은 수령
위대성, 당의 위대성에 있으며 지도사상과 사회제도의 우월성에 있습
다.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위대한 지도사상
가지고 우월한 사회제도에서 사는 인민만이 자기 운명을 사수적으로,
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위대한 인민으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으며 영생불멸의
체사상을 가지고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긍지높은 인민입
다. 우리 청년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위업을 빛나
개척해나가는 조선민족으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언제 어
서나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주체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

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노래를 불러도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나라 사회주의에 대한 노래,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우리의 노래를 부르며 생활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 감정과 기호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집단주의는 사회적존재인 사람의 본성적요구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집단 속에서만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으며 사회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면서 보람있는 삶을 누릴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조직과 집단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집단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개인주의, 부르조아자유주의의 자그마한 현상과도 제때에 투쟁을 벌려 극복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하는 것과 함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에 청춘을 다 바쳐야 합니다. 청춘시절은 사람의 한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절입니다. 사람은 청춘시절에 원대한 포부와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고상한 리상과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섭니다. 청춘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데 따라 한생을 값있고 보람있게 살수도 있고 헛되게 살수도 있습니다. 청춘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후회없이 한생을 빛나게 살자면 청춘시절에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이며 우리 인민들에게 보

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력부대이며 사회주의대건설장은 청년들의 몫입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공장과 농촌이 들끓고 건설장이 들끓으며 청년들이 생산과 건설에서 앞장서야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과 혁신이 일어납니다. 서해갑문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광복거리, 북부천길 등을 비롯한 수많은 대기념비적 창조물이 일떠서 로동당시대를 빛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이 당의 호소를 심장으로 받들고 한걸음이 떨쳐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훌륭히 하였기때문입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과 건설의 주공전선을 맡아나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영예이며 자랑입니다. 청년들은 당의 요구라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하더라도 솔선 맡아나서야 하며 물과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집단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청년들속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아름다운 소행입니다. 청년들은 관광과 광산, 건설장과 벌목장, 농촌과 어촌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적극 진출하여 생산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세워야 합니다.

당이 구상하는 중요대상건설을 직접맡아 해제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마땅한 본분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우리 당은 지금 웅대한 세3차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수행하여 1990년대에 사회주의완전승리의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전략적목표를 내세우고 철도운수부문을 앞세우며 전력공업, 채취공업, 금속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기 위한 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으며 여기에서 청년들이 큰몫을 맡아할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일떠세우는 거창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 새로운 위훈을 세움으로써 조선청년의 영웅적기상을 다시금 널리 과시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하자면 청년돌격대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청년돌격대운동은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며 실천을 통하여 그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기 위한 충성의 운동입니다. 청년들은 청년돌격대운동에 널리 참가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며 자신을 혁명적으로 단련하여야 합니다.

청년돌격대운동에서 기본은 속도전청년돌격대활동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구상을 맨 앞장에 서서 실현해나가는 정규화된 전투적인 로력부대이며 보람찬 실천투쟁속에서 청년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우는 훌륭한 혁명학교입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지난 기간 우리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로정을 걸어왔으며 오늘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대오로 자라났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속도전청년돌격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활동을 끊임없이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속도전청년돌격대는 우리 당의 사회주의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대상을 더 많이, 더 잘, 더 빨리 건설하여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집단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집단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돌격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그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면서 새로운 청년돌격대를 많이 부어 중요대상건설장을 비롯한 생산과 건설의 어렵고 중요한 전투장에 파견하여 청년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쳐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작업반운동은 생산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적역할을 하기 위한 집단적로력투쟁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조직되어있는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청년기업소를 더 잘 꾸리고 생산정상화와 《90년대속도》 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단위에 청년작업반, 청년직장, 청년기업소를 더 조직하여야 합니다.

농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운동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농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은 농촌에서 집단주의적 원칙을 훌륭히 구현한 공산주의적 생산 및 생활 단위입니다. 농촌청년분조, 청년작업반 운동을 적극 벌리는 것은 청년들이 농촌에 뿌리내려 사회주의농촌진지를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이 닿아있는 농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을 본보기단위로 잘 꾸리며 해당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새로운 농촌 청년분조, 청년작업반을 널리 조직하여 청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과 주체농법관철에서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사회주의경쟁운동과 《사로청호》 운동, 사회주의 건설지원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아가야 합니다.

좋은일하기운동은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생활환경을 알뜰히 꾸리

기 위하여 청년들이 스스로 벌리는 공산주의적운동이며 사회와 집단, 조국과 인민을 위한 애국적운동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일터를 문화위생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널리 벌려야 합니다. 우리 인민이 간고분투하여 모든것이 파괴된 폐허우에 도시와 농촌, 공장과 마을을 훌륭하게 건설하여놓았지만 공산주의적인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하자면 아직 많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도시와 마을, 거리와 일터를 알뜰히 꾸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적인 로동조건과 생활환경을 더 훌륭하게 마련하여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특화미화사업과 식수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려 조국의 모든 도시와 마을, 산과 들이 백화만발하고 푸른 숲으로 뒤덮이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도로를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 모든 도로를 더 잘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것은 청년들의 의무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며 국가의 법입니다.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것은 혈기왕성한 청년들에게 있어서 수치로 됩니다. 청년들은 조건이 아무리 불리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로동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이며 가장 영예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

동을 통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며 사상의지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게 됩니다. 청년들은 노동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사회와 집단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자각적으로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분초를 아껴 일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알뜰하고 끈지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쓸모있게 잘 만들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든 부문의 앞장에 서서 일을 주인답게 성실히 할 때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은 더욱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될 것입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는 높은 과학기술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해방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여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할수 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은 창조적열정이 불타고 진취성이 강한 청년들이 떨쳐나서야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행군은 기술혁명을 다그쳐 우리 나라를 최단기간안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앞선 나라들의 수준에 끌어올리기 위한 청년들의 대중적행군입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과학기술발전의 추세에 민감하고 새로운 현대식 과학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노력하며 자기 맡은 부문의 과학기술에 정통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청년과학자들과 학생청년들은 과학기술로써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을 떠메고나가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학습을 정력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속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키고 낡은 기술을 새 기술로 바꾸는 사업은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과 지혜가 발휘되어야 힘있게 추진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혁신적안목과 담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의 기술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누구나 다 가치있는 창의고안과 새 기술발명을 하여야 합니다. 로동청년들과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 사이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에서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청년기능공들과 청년 과학자,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혁신청년돌격대운동, 자동화청년돌격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서 절실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적극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좋은것을 받아들이는것은 주체를 세우는것과 모순되지 않을뿐아니라 주체를 더 잘 세워나가게 합니다. 청년들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는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를 잘 알아야 하며 세계과학기술발전의 최신성과를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온을 내게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보수주의, 경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를 반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조국보위의 기본력량이며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는 것

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청년들은 적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도록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적들이 침략을 감행하면 용약 떨쳐나 사회주의조국을 복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고 단련시키는 공산주의학교입니다. 청년들은 청춘시절에 군사복무를 통하여 조직성과 규율성을 키우고 강인한 의지와 공산주의적품성을 원만히 갖추게 됩니다.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단순한 공민의 의무로만이 아니라 청춘의 더없는 긍지와 영예로 여기고 인민군대에 적극 단원하여야 하며 군사복무를 성실히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통하여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사를 성실히 배우고 로동과 국방에 믿음직하게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적극 참가하여 정치군사적으로 더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은 혁명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 사는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할 기풍입니다. 청년들은 나라의 얼굴이며 사회의 모습과 기풍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며 일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업과 생활을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하여야 온 사회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이 차넘칠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언제나 혁명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며 나라의 법규범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청년들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지니고 레질있게 행동하며 우리 인민의 감정과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고 건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은 제국주의자들의 감정과 혁명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고 건전

하게 하여야 합니다. 건전하고 혁명적인 기풍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부르췌아적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사상문화적 침투로부터 시작되며 그것은 청년들에게 제일 먼저 미치게 됩니다.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우리 나라를 내부로부터 분열와해시키기 위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썩어빠진 부르췌아적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하게 벌려 그 자그마한 요소도 우리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숙원이며 새 세대 청년들 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청년들은 조국통일의 기수입니다. 용감하고 씩씩한 청년들이 일떠서야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근 반세기 동안이나 민족분렬의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한피줄을 이어받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서로 갈라져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렬된 조국에서 태어나 민족의 불행과 고통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분렬된 조국을 다음세대에 넘겨주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들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

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1990년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 청년들이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은 언제나 단결을 귀중히 여기고 단결된 힘으로 조국의 광복을 이룩하고 나라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단결된 힘으로 튼튼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임피세웁니다. 우리 인민이 것처럼 갈망하는 조국통일위업도 민족대단결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으며 반드시 민족대단결의 힘에 의하여 실현될 것입니다. 조선 청년들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 싸워야 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이 자주 접촉하고 래왕하며 공동 축제와 투쟁을 많이 벌리는것은 청년들의 단결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이 자주 오가면서 만나고 모여앉아 조국통일문제를 논의하고 여러가지 공동행사를 많이 조직하면 서로의 이해를 깊이하고 신뢰를 두터이하게 되며 하나의 통일외지로 굳게 뭉쳐나갈수 있습니다. 이번에 8.15를 맞으며 진행된 청년학생통일대축전은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이 단합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은 앞으로도 더 자주 접촉하고 래왕하며 여러가지 통일축제를 많이 벌려야 합니다.

단결은 서로 고무하고 지지하며 도와나설 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습니다.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공동전선에서 서로 고무하고 지지하며 적극 도와나서야 합니다. 지금 《전대협》의 100만 학도를 비롯한 남조선청년학생들은 감옥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미 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웅적투쟁은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으며 온 남녘땅을 통일열기로 끓어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선청년들은 조국통일을 위하여 굴함없이 용감하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고무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들을 비롯한 해외동포청년들은 주체조국을 가진 조선민족의 영예를 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나가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운동은 조선청년운동의 한 부분이며 해외교포청년운동의 본보기입니다. 재일본조선청년들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운동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싸워나가는 재일조선인운동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재일본조선청년들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존엄을 지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튼성번영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조선청년운동은 세계청년운동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습니다. 시대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청년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통정자 대렬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자면 세계청년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은 반제련대성, 평화와 친선의 구호를 높이 들고 세계 여러 나라 진보적청년들과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은 민족적 독립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하겠습니다.

사로청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통일적으로 망라하고있는 대중적 청년조직입니다. 사로청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청년들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울수 있습니다.

사로청간부는 사로청의 핵심력량이며 사로청사업의 직접적담당자입니다. 사로청대렬의 질적공고성과 사로청사업의 성과여부는 사로청간부들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혁명적실천속에서 단련되었으며 패기와 정열이 있고 풍부한 지식과 실무적자질을 갖춘 전망성있는 청년들로 사로청일군대렬을 꾸려야 합니다. 현직사로청일군들에 대한 재교육사업과 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사로청사업실천을 통하여 그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핵심청년들을 옹계 장악하고 그들을 체계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며 사로청일군양성기관의 사업을 개선하여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사로청일군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각급 사로청위원회는 해당 단위 사로청사업을 직접 책임지고 조직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입니다. 사로청위원회를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사로청조직을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는 산조직으로 만들고 청년사업에 대한 당의 방침을 옹계 관철해나갈수 있습니다. 사로청위원회는 당에 충실하고 조직적수완과 군중의 신망이 높은 사로청일군들과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청년핵심들, 청소년교양관계부문 일군들을 적절히 배합하

며 지역 및 부문별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에서 잘 꾸리고 위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로청위원회는 사로청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그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각급 사로청위원회 부서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사로청위원회 부서들은 혁명적직능에 따라 모든 사업을 정규화하고 담당분야의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부서들사이의 배합 및 협동 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로청위원회의 기본부서인 조직부와 선전부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기초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는것은 사로청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안에 상급동맹의 결정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며 일군들의 사업에서 사소한 무규률적인 현상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로청 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든 사업과 활동에서 동맹규약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사로청원들이 조직의 결정을 어김없이 집행하고 동맹생활규범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급단체는 사로청의 말단기층조직이며 동맹생활의 거점입니다. 사로청 초급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전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투력을 높일수 있으며 사로청원들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울수 있습니다. 사로청초급단체들은 사로청원들의 동맹생활을 사로청규약의 요구대로 옳게 조직지도하여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사상적으로 단련시키며 혁명과업수행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합니다.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쟁취운동은 초급단체를 당의 위업을 높이받들어나가는 청년전위집단으로 꾸리며 청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

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기 위한 충성의 대중운동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전위모범초급단체쟁취운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그 내력을 끊임없이 늘어나감으로써 모든 초급단체를 충성의 청년전위집단으로만들어야 합니다.

사로청안에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은 사로청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안에 당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당의 령도는 사로청의 제일생명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입니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사로청이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할수 없으며 당의 청년조직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없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당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는것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동맹안에 당의 로선과 방침을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며 전동맹이 당중앙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사로청에 대한 당의 령도는 각급 당조직을 통하여 실현되며 각급 사로청조직들은 해당 단위 당조직들의 지도밑에 활동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당조직에서 주는 과업을 옹기 집행하여야 하며 사기의 사업정형을 당조직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아래조직들의 실태와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에 대한 장악사업을 삼하기 위하여서는 일꾼들이 아래에 내려가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꾼들은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아래조직들에 내려가 당의 방침 집행과 사로청원들의

농맹생활 지도정형을 장악하고 적극 도와주며 우에 올라와 총화하고 재부장, 재작전한 다음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사로청원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적극 따라배워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청년들과의 사업을 격식과 틀에 맞추어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와 감정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하며 무슨 일을 하나 하여도 통이 크게 작전하며 전투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마력을 내어 일하며 사업에서 의존심을 버리고 자립적으로, 창발적으로 일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언제나 패기와 정열에 넘치고 다정다감하며 청춘의 회열과 량만에 넘쳐 락천적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일군들은 모든 면에서 이신작척하며 틀을 차리지 말고 겸손하고 소탈하며 경제도덕생활을 청렴하고 건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자면 사로청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행정경제기관들에서는 사로청사업을 적극 밀어주고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 사로청사업이 활력있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년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워주고 평가해주어 그들이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년단은 사로청의 교대자입니다. 소년단사업을 강화하여 소년단원들을 잘 키워야 사로청대렬을 강화해나갈수 있으며 그들을 우리 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로 키워낼수 있습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소년단사업에 대한 지도를 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소년단원들의 준비정도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사상교양체계와 조직생활체계를 바로 세우고 실속있게 지도하며 학습제일주의구호를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우등, 최우등생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로청조직들은 소년단원들속에서 나라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사회주의건설을 돕기 위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과 사회정치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며 일하는 보람찬 세대입니다. 우리 혁명은 끝나지 않았으며 대를 이어 계속됩니다.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야 합니다. 이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바로 혁명의 계승자이며 투쟁의 기수인 우리 청년들의 어깨우에 지워져있습니다.

모든 청년들과 사로청일군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함으로써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이와나미 서점 사장과의 서면 대담

(’91. 11. 11 中放)

나는 당신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은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두 나라 인민들 속에서 조·일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에 없이 높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나라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나는 구면 친구인 당신과 6년만에 다시 만나 담화를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하여 대답하려고 합니다.

물음. 오늘 인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누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2차 대전후의 국제질서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20세기의 종말과 근대사회의 전환이 겹친 격동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주석 각하께서는 제2차 대전 후 오늘까지 일관하게 위대한 수령으로서 민족을 영도하시면서 국제정치의 전환을 보아오신 세계에 유래가 없는 탁월한 정치가이십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이 격동의 시대를 어떻게 보시며 그 전망을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대답. 오늘 세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계속되어 온 두 초대국을 중심으로 한 동서간의 대립관계가 허물어지고 다각적인 국제관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았던 돌발적인 사태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러한 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인류가 자주적인 새 세계를 향해 나
 가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생겨난 역사의 소용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시대를 옳게 평가하기 위하여서는 역사의 발전 과정
 을 전반적인 연관속에서 보아야 하며 형상만을 볼것이 아니라 본
 질을 보아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부사람들은 동서간 냉전체제
 의 붕괴와 일부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을 놓고 마치도 새
 것과 낡은 것과의 투쟁에서 낡은 것이 승리하고 역사적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문제를 그렇게 보
 는 것은 잘못입니다. 역사가 전진하는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나 역사발전의 방향이 달라 질 수는 없습니다. 지배와
 예속이 없고 침략과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려는 것은 자주적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기초한
 인류의 이상이며 이러한 새 세계를 지향해 나가는 것은 역사 발
 전의 기본방향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본성이 변할 수 없는 것처
 럼 인류의 이상도 변할 수 없으며 역사발전의 방향도 결코 받아
 드릴 수 없습니다. 현 시대가 전환의 시대 격동의 시대라고 한
 때 그것은 바로 자주적인 새 세계에로의 전환이며 그 전환을 가
 져오기 위한 격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류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할 뿐아니라 그러한 새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사회적 물질적 조건들을 스스로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인간의 자주성을 유린하는 지배와 예속이 낡은 질서

는 누구도 찬성하지 않으며 그것은 낡은 시대의 유물로서 어디서나 배격당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들의 창조적 로동의 결과는 인류가 너무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사회를 건설하고 거기에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자주적 지향과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오늘 커다란 장애와 도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초대국들 사이의 대결로 인한 지난날의 냉전구조가 허물어지고 있으나 제국주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재패의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군사적 우위에 의거하여 지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계의 유일한 지도자로 군림하려고 노골적으로 책동하고 있습니다.

—02— 폭력은 제국주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새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낡은 세력으로서의 제국주의의 반동성은 오늘 더욱 뚜렷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전진도상에 장애에 부딪친다고 하여 역사가 되돌아서 거꾸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세계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인민대중이며 역사발전을 떠밀어 나가는 주체도 인민대중입니다. 우리는 21세기를 앞두고 역사무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놓고 실망하거나 망설이고 있을것이 아니라 인류의 광명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심을 굳게 가지고 전진하여야 하며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역사의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역사는 결국 자주평화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며 인민들의 자주위업은 반드시 승

리할 것입니다.

물음:저는 조선민족의 통일위업이 오늘 그 실현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내다보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의 통일을 일관하게 지상과업으로 삼고 이 지상과업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활동을 하여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탄복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남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일정하게 실현되고 여기에 국제정치의 변화가 겹쳐 조선통일의 실현을 확신하며 그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것은 무엇때문입니까? 귀국의 일관한 자세에 크게 찬성하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선 사이의 교섭을 비약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대담한 양보와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조선통일의 원칙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그를 방해하고 있는 요인에 대하여 주석각하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대답:우리당과 공화국 정부는 언제나 조국 통일을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가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서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합리적인 제안들을 내놓았습니다. 남조선에서 민주역량이 장성하고 국제관계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조국통일방

안의 정당성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날로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북과 남, 해외를 막론하고 인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고 민족적인 화해와 단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범민족적인 조국통일의 주체가 튼튼히 마련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더 큰 전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인민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열주의자들의 그릇된 입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민들은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잃을것이란 분단의 비극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열주의자들은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저들의 지배적 지위를 잃을까봐 우려하면서 조국통일의 앞길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03—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는 문제가 아니라 외세에 의하여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전국적 범위에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민족 대단결을 이룩하여야 하며 민족안의 개별적 계급이나 계층들의 이익과 요구는 민족 전체의 이익과 요구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온 민족의 모든 활동이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대로 지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적 입장으로 부터 우리는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정당한 주장대로 조선의 북과 남이 유엔에 하나의 의석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따로따로 들어갔지만 조선은 어디까지나 하나이며 반드시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민족 자주적 입장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일관성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

물음. 주석각하께서는 조선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그리고 극동의 새로운 안전보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조·미 관계가 타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전부터 지적하여 오셨습니다. 최근 연간 조·미 사이에서 모색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 오늘 미국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섭을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미 관계를 타개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대답. 우리 공화국은 조·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조선의 분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 통일문제의 해결이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점령함으로써 조선의 분열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이 남조선을 해군사기지로 전변시킴으로써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커지고 조국통일의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의 정의의 원칙에서 볼때 지금의 조·미 관계는 불평등한 관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한 적이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언제나 자기의 일방적인 의사를 우리에게 강요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자기 의사를 강요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두 초대국이 대립되어 있을 때에는 미국이 반공을 위하여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내세울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에 와서는 이 구실마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의연히 남조선에 자기의 핵 군사기지를 두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하면서도 조선문제가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조선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그 누구도 납득시킬 수 없는 그릇된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세계의 큰 나라와 작은 나라, 발전된 민족과 덜 발전된 민족은 있어도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지배하는 민족과 지배 받는 민족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 정책을 고칠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인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 인민의 이익과 조선인민의 이익에도 맞고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염원에도 부합됩니다.

—04—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 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길로 나간다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며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조·미 외교관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두나라가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 된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조·미 외교관 접촉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비롯하여 조·미 두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문제를 풀기위한 대화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음:귀국에 대한 이른바 핵사찰 문제가 일·조 관계와 일·미 관계의 타개와도 관련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일·조 정상화 회담에서 이 문제를 중요의정으로 삼고 있으며 일부 언론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데 대하여 저는 크게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은 남북조선의 비핵화를 요구하며 일본 자신의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일·조 사이의 쌍무적 문제와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이 문제를 주장하는것은 명백히 잘못입니다.

각하께서는 이미 귀국의 비핵보유방침을 거듭 제시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구상을 천명하셨습니다. 주석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핵사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입니다. 우리 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려는 숭고한 염원으로 부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 반대하는것은 핵사찰 그 자체인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국제적 정의에 배치되게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서만 핵사찰을 강요하려고 하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 핵위협을 가하는것이 없을뿐 아니라 핵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조선에 현실적으로 천여개의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핵사찰을 공정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대해서만 할것이 아니라 남조선에 있는 핵기지에 대해서도 응당 하여야 합니다. 일부 나라들이 우리에게 핵사찰을 강요하려고 하는것은 우리나라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됩니다. 원래 핵사찰 문제는 우리가 국제원자력기구와 자주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그 어떤 국제적 압력에 의하여 처리될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들의 생명입니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나라가 다른나라들의 내정간섭적인 압력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05— 핵사찰 문제는 조·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에서 토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고 하는 일본이 항시적으로 핵위협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처지에 있는 우리나라를 동정하고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외부의 부당한 요구에 보조를 맞추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핵사찰을 반대하지 않는것 만큼,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압력이 제거되고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핵사찰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게 될것입니다.

물음:일·조 정상화는 3당공동선언이 발표된 결과, 바야흐로 그 문

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다년간 간절히 바란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의 자세는 자기의 역사적 오류를 청산하려는 성실성과 주체성이 없으므로 저는 한 일본사람으로서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석각하께서는 일·조 국교정상화 교섭에 지장은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 전망을 낙관하고 계신다고 하시었습니다. 주석께서는 이 교섭이 빨리 타결되자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각하께서 이 교섭이 빨리 타결되자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석가하께서 끝으로 희망과 침체가 뒤섞인 오늘의 현실에서 직접 일본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여주시요.

대답:조·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조·일 두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이익으로 보나, 세계정세발전의 추세로 보나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선노동당과 일본의 자유민주당, 일본 사회당이 발기하여 3당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우리 두나라 인민들과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환영과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조·일 관계정상화 문제의 본질과 이 문제 해결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하여서는 3당공동선언에도 밝혀져 있고 또한 우리가 이미 여러번 천명한 바 있습니다. 자주, 평화, 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은 역사적으로 깊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할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옳당

한 일입니다. 나는 우리 민족을 해방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와 오랫동안 싸웠지만 일본인민을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인민의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는 일본의 벗들은 지난날에도 있었고 오늘도 많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본벗들의 의로운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일 관계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일본이 지난날의 잘못된 과거를 성실하게 반성하는데 있습니다. 개인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나라들 사이의 관계에서나 할것없이 서로 사이 좋게 지내고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려면 마땅히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일본이 전패국으로서 전후에 비교적 빨리 재건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난날의 침략적인 군국주의 정책을 부정하고 새출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오늘 경제대국인 일본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다른나라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과거를 답습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진정한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를보고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아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일본이 조·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어떤 이념과 원칙에서 해결하는가를 주시하고 거기에서 많은것을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일본에는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외부의 간섭과 방해를 물리치고 자주적 입장에서 조·일 국교정상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리라고 의연히 낙관하고 있습니다. 조선과 일본은 아세아 나라로서 아세아 공동의 발전과 번영에 다같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림방이며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조·일
두나라 인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한다면 사유
롭고 평화로운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위한 아세아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조·일 두나라 인
민들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단결하고 협력해 나갈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일본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
는 바입니다.

2. 其他 主要 資料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우리당의 불멸의 업적

('91. 2. 7 中放)

우리당은 주체의 혈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위업을 끝까지 실현해 나가려는 수령에 의해서 마련된 혈통을 견고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의 위업은 혁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줄기로 일관하게 연결시켜주어야 중도 반란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 완성되게 됩니다.

혁명의 대를 이어주고 혁명위업을 일관하게 전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핏줄기, 바로 이것이 노동계급의 당의 혈통입니다. 당의 혈통은 그 창조자, 영도자인 수령에 의해서 마련됩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당건설 위업과 혁명위업을 개척하고 이끌어나가는 과정에 당과 혁명의 지도자들과 지도이론을 창시하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을 이룩하며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품을 마련합니다. 수령이 마련한 이 혁명적 재보가 다음야당 당의 혈통으로 되는 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비서이신 김정일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습니다.

우리당의 주체의 혈통은 위대한 김일성同志의 사상과 이론, 그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이며 수령님식 사업방법이다. 그것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유례없이 심각하고 다방면적인 투쟁속에서 이룩된 것으로 하여 끝없이 풍부하고 고귀한 것이며 우리당의 강화발전과 우리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활력을 가지는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우리당의 혈통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주체의 사상과 이론입니다.

우리시대와 우리혁명의 요구를 반영해 나온 주체의 사상과 이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길,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이론입니다.

주체의 혈통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수령님식 사업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과 투쟁경험,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유례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속에서 이룩된 것으로 해서 끝없이 고귀한 혁명적 재보로 되며 우리혁명의 등위적 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됩니다.

이처럼 지도사상으로부터 대중을 조직동원하는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 당 건설과 혁명위업 수행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모든 내용들이 전면적으로 담겨져 있기때문에 주체의 혈통은 가장 위대한 혈통으로 되며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실현해 나가는 전역사적 기간에 걸쳐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의 혈통을 계승하는 것을 숭고한 사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 나가는데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주셨습니다. 주체의 혈통을 계승해 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순결하게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것을 당의 강화발전과 혁명

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재부만을 계승하며 그것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도록 정력적으로 투쟁해 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재부만을 당의 혈통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 당은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김일성농지 혁명사상 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실속있게 운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마다에 혁명전적지와 사적지, 혁명박물관과 사적관들을 만년대계의 기념비로 꾸리어 수령님의 혁명업적이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전해 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었습니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 일대에 꾸려진 대로천 혁명박물관과 그리고 주체의 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역사를 만대에 길이 전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전체인민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깊이 연구 체득해 나가고있는 현실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해 나가는 우리당의 영도의 혁명성을 힘있게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또한 자기의 모든 활동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이론,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과 경험, 사업방법작풍에 기초해서 진행함으로써 자기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의 혈통은 온갖 이색적이며, 반혁명적인 요소들과의 투쟁속에서 그 순결성이 보장됩니다.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온 우리 당의 업적을 바로 이러한 투쟁과 잇닿아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농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 재부와는 인연이 없는 것을 들고 나와 혈통의 순결성을 흐리게 하려는 반당이색분자들과의 견결하고도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이신 한편 그들이 뿌려

농은 사상여독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전당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당은 당안에 숨어있던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들과 반당 추종주의 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분쇄함으로써 혈통의 오가잡탕을 뒤섞어 놓으려던 온갖 이색적 사상조류들을 극복 청산했으며 주체의 혈통의 순결성을 철저히 보장했습니다.

주체의 혈통을 보장해 나가는데서 우리 당이 이룩한 업적은 또 한 새로운 투쟁경험과 혁명업적들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 재부들을 더욱 발전 풍부화한 것입니다.

혁명이 멀리 전진하고 세대가 바뀌어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혁명적 재부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당활동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적 입장에서 출발해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에서 새로운 업적과 경험을 쌓아 올림으로써 혈통에 담겨진 고귀한 재부를 만년초석으로 다지고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 당의 정력적이고도 창조적인 투쟁에 의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보물고는 새로운 사상이론적 재부들로 가일층 발전 풍부화되었으며 그것은 우리식의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 사상과 이론에 기초해서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당건설의 근본문제로 제기하고 전당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며 정연한 당사업 체계와 당사업 방법을 확립하는데서 귀중한 경험과 업적을 이룩함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혁명적 재부들은 더욱 발전 풍부화되

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서 현몽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됨으로써 우리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역사적 진군을 끝까지 향도할수 있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당으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해서 창건된 우리당은 자기의 현몽을 계승해 나가는 투쟁속에서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며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위대한 향도자로 강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주체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는 우리당의 위용은 우선 일찍이 트·스가 추켜든 투쟁의 가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가는데서 과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당이 제시하고 구현해 나가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강령은 일찍이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조국땅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지구상에 제국주의를 타도할데 대한 트·스의 강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것을 혁명실천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하던 시기에 들었던 혁명의 가치를 끝까지 들고나가는 여기에 우리 당의 투철한 혁명성이 있고 빛나는 계승성이 있습니다. 우리당의 주체적 성격은 주체의 현몽을 계승 발전시키는 과정에 이룩된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성에 의해서 더욱 튼튼히 고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당 건설의 역사적 시원을 열어놓는 첫 당조직을 모태로 해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튼튼히 마련된 당창건의 조직 사상적 기초 축성의 업적이 계승되고 더욱 공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체의 현몽이 계승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을 확고한 원칙으로 삼고 휘둘러

있으며, 남의 경험도 기계적으로 본따지 않고 우리의 실정과 요구에 맞게 받아들이면서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당은 내를 이어 계승되는 단결의 중심을 가장 빛나게 해결했으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영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실현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계승하는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고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전진시켜 나가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를 받는 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며, 끝없는 영예입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의 혈통이 있고 그 계승성을 확고히 보장해 나가는 우리 당이 있는한 우리 혁명위업은 언제나 필승불패할 것입니다.

인민군 사령관, 전투동원태세 하달

('91. 2. 27)

미국과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1》 합동 군사연습을 끝내 벌여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과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이며 조선반도정세를 다시금 위험천만한 소용돌이속에 밀어넣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이다.

이 무모한 핵전쟁연습으로 하여 온 거래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커다란 기대를 안겨주던 북남고위급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들은 엄중한 위기에 빠지고 온 민족에게 밝은 전도와 시광을 펼쳐준 우리의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안들과 인내심있는 노력들은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완화의 새 싹은 사라지고 화약고에 불이 날김수 있는 극히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지난해말부터 범죄적인 《팀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는 기도를 모랄적으로 드러내놓으면서 전쟁모의를 거듭하였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따라 남조선괴뢰들은 이미 지난해말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수많은 괴뢰군병력과 경찰, 《예비군》 무력을 비롯한 수백만명의 가양각색의 폭압력량을 동원하여 동

일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을 벌리면서 전시에 대비한 군사과쏘체제를 강화하였다.

미국은 새해벽두부터 해외에서 수많은 각종 최신형작전장비들과 핵적재 전투폭격기들, 대량살륙무기들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괴뢰들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합동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렸으며 북반부를 반대하는 각종 군사적 도발과 정탐 행위를 체계적으로 감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합의채택하며 침략적인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든가 최소한 2~3년동안만이라도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타협적인 성의있는 제안까지 외면하고 또다시 핵전쟁연습을 감행하는것으로써 우리에게 도전하여나섰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괴뢰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되며 1월말부터 기동전개를 시작하여 4월말까지 계속되게 된다.

이 기간에 련합상륙작전, 공중기동타격작전, 도하작전, 특공대작전 등 주요작전들이 진행되게 된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 내용과 성격에서 철두철미 침략적이며 그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공격목표로 하고 불의에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전쟁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1976년부터 매해 벌려온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무력침략준비를 이미 완성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모험적인 《팀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끝내 강행하는것으로 하여 오늘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실제적으로 핵참화

의 검은구름이 휘몰아치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새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비상사태가 조성되고있다.

만전쟁이 발발하여 그것이 류혈적인 참화로 번져지고있는 오늘 《탑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 그 자체가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남보는 없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광신적인 전쟁소동은 조선반도에서 해전쟁을 일으켜 평화와 평화통일의 길을 영영 가로막고 함으로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것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더우기 우리가 이미 주동적으로 취한 10만명의 병력축소로 인하여 생긴 무력불균형의 공간을 불순한 목적에 리용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하여 결코 간과할수 없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서 새 전쟁 위험이 현실적으로 조성되고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률해공군,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과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전체 대원들에게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

평화적경제건설에 동원된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상병들이 임의의 시각에 긴급출동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에 대처하기 위한 용당한 자위적조치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인내성있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깃을 똑똑히 명심하고 침략적인 《탑 스피리트 91》 합동군사연습을 낭상 간

어치워야 한다.

우리 인민은 평화를 사랑하며 대결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반도의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나약성으로 오산하고 끝끝내 침략전쟁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의 혁명적무장력과 전체 조선인민은 신성한 사회주의조국과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일떠서 싸울것이다.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전체 부대들, 로농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원들과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어떤 도발책동도 제때에 짓부셔버릴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므로써 조국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91. 3. 20 中放)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를 비롯한 여러 역사적 문헌들에서 우리당을 주체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밝혀주셨다.

역사적 문헌들에 천명된 주체의 당 건설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제의 하나는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사상이론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그 성격에서 다른 정당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노동계급의 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자주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는 정치조직이며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의 대표자, 그 첨예한 관찰자이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면모를 규정짓는 근본특징이며 여기에 그 혁명적 성격이 있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우선 노동계급의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모든 사물현상이 속성이 변화되면 존재를 끝마치게 되는 것과 같이 노동계급의 당도 자기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지 못하면 그 존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이다.

당은 하나의 사상에 의해서 조직되고 지도되는 정치조직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이 고수되지 못하면 노동계급의 당 안에 이색적인 사상이 침습

하게 되고 그것이 부활되어서 결국은 당의 사상적, 조직적인 와해와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

당의 혁명적 성격이 고수되지 못하면 또한 노동계급의 당은 계급적으로 순결할수 없다.

당은 계급의 조직된 선봉대이다. 만일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계급적 성격을 고수하지 못할때에는 당 안에 이색분자 위험분자들이 끼어들게 되고 결국은 당이 그들의 농락물로 될수 있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은 노동계급의 당의 존망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혁명이 전진하는 과정에 당의 임무와 전략전술 투쟁방법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있으나 당의 혁명적 성격에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만일 당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노동계급의 당은 원래의 면모를 잃게되고 자기의 존재마저 유지할수 없게 된다.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또한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의 혁명적 성격을 철저히 고수해야 당이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핵심부대로서의 지위를 차지할수 있으며 혁명대오의 중심에 확고히 서서 광범한 인민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으로 힘있게 이끌어 나갈수 있다. 이 모든것은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이 당의 존재와 강화발전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책동과 관련해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힘의 정책을 견지하면서 어리석게도 사회주

의를 와해시키기 위한 이른바 평화적이행 전략에 매달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는데서 특히 사회주의 사회의 향도적 역할은 노동계급의 당을 변질시키는데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우리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 나가야 향도적 역할로서의 그의 영도적 역할을 높여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다. 우리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확고히 수호하고 순결하게 세승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혁명적 기치를 일관성 있게 틀어쥐고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추진해서 우리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는데서 또한 중요한 것은 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는 당의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당의 혁명적 성격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계급적기초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당은 대중적 정당이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사상사업을 소홀히 하면 사회심원들 속에서 부르조야사상이 퍼져 당의 사회계급적 지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노동계급과 농민근로인테리속에서 정치사업·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므로써 우리당의 사회계급적 기초를 끊임없이 강화해야 할 것이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당의 당 건설이론을 깊이 연구

학습하고 구현해 나가므로써 우리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 외교부, <UN>가입 의사 표명

('91. 5. 27)

조선의 유엔가입문제는 분열된 나라와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통일을 실현하려는 우리 인민의 사활적인 이익과 직접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와 민족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을 목적으로 하고있는 유엔헌장을 시종일관 존중하여왔으며 유엔에 들어갈것을 희망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은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로서 유엔성원국이 될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분열되어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실정에서 우리는 유엔가입문제를 온 민족의 념원에 부합되게 조국통일의 견지에서 고찰하여왔으며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통일위업실현에 리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경주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이러한 립장으로부터 유엔가입문제와 관련하여 련방제가 실현된 다음 통일된 하나의 조선으로 유엔에 들어갈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으며 통일이 실현되기전에 북과 남이 유엔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두개의 의석으로 제각기 들어갈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석을 가지고 공동으로 들어갈데 대한 합리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유엔대책문제를 북과 남이 먼저 협의하고 합의된 결과를 유엔에 내도록 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회담에 이 문제를 주요한 안건으로 제기하

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조선의 유엔가입문제를 북과 남이 협의하여 통일 지향적으로 해결할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분렬주의적인 유엔가입안만을 고집하면서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단일의식에 의한 유엔가입제안을 반대하였을뿐 아니라 앞으로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더우기 최근 남조선당국자들은 저들의 《유엔단독가입》을 완전히 정책화하고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기회로 이를 일방적으로 실현할 목적밑에 이와 관련한 《정부비망록》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정식 제출하는데 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북남고위급회담이 남조선측에 의하여 중단상태에 빠지고 현 남조선정세로 하여 언제 그것이 재개될지 알수 없는 형편에서 유엔대책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 위하여 유엔주재 북남상임옵씨버대표들사이의 접촉을 가지였다.

이 접촉에서도 남조선측은 《유엔단독가입》정책은 불변이라는것을 거듭 주장하면서 그 어떤 타협의 여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의 《유엔단독가입》시도가 요지부동이라는것을 명백히 확인하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전조선민족의 통일념원에 역행하여 끝끝내 《유엔단독가입》을 강행하려고 함으로써 유엔무대를 통하여 하나의 조선을 둘로 갈라놓는 천추에 용서 못할 대죄를 저지르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역사와 민족 앞에서 그리고 후대들

앞에서 영원히 면할수 없게 되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기어이 유엔에 단독으로 가입하겠다고 하는 조건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둔다면 유엔무대에서 전조선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될수 있고 그로부터 엄청난 후과가 초래될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조성된 이러한 일시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서 현단계에서 유엔에 가입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현장을 시종일관 지지해온 럽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당한 절차에 따라 유엔사무총장에게 정식으로 유엔가입신청서를 제출할것이다.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로 한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의 분렬주의적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불가피하게 취하게 되는 조치이다.

조선의 북과 남이 유엔에 각각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비정상적인 사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길에서 또하나의 커다란 난국으로 된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재야세력들이 우리 나라의 유엔가입문제를 나라의 통일전도문제와 련관시켜보면서 남조선의 《유엔단독가입》시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온것은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통일을 성취하려는데 있었다.

남조선당국자들에 의하여 통일도상에 새롭게 조성된 난국은 온 민족의 단합된 힘과 막을수 없는 통일열망에 의하여 반드시 극복될것이다.

조선의 북과 남이 유엔에 따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오늘의 사태는 절대로 고착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엔에서 북과 남이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하나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유엔무대에서 조선의 통일문제와 국제문제들이 우리 민족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안전의 요구에 맞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다.

노동당 중앙위,

<전국작업반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축하문

(91. 9. 16.)

온 나라 전체 노동계급과 인민들이 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일면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전국작업반장대회가 열리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마련된 이번 전국작업반장대회는 생산과 건설의 기층단위인 작업반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더욱 높이며 1990년대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우리 노동계급의 무한한 충실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위력, 불굴의 혁명적기상을 과시하는 충성의 대회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혁명과 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온갖 난관과 시련을 이기내면서 승리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있는 전국작업반장대회 참가자들과 온 나라의 작업반장들, 노동계급과 근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낸다.

작업반은 우리 사회의 물질적재부를 직접 창조하는 생산과 건설의 기층단위이며 노동계급의 정치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고 생산수

의적도덕품성을 키우는 집단생활의 거점이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작업반을 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대중적영웅주의와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여왔으며 조국땅우에 인민들이 일하기 좋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락원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업반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모든것이 파괴된 채터미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천리마의 대진군을 계속하여 사회주의공업화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였으며 강의한 혁명정신과 왕성한 투지로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전변시키는 투쟁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높이 떨치였다.

온 나라 작업반원들은 1980년대의 혁명적진군길에서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하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서해갑문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을 수많은 일떠세웠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생산적양양을 일으켜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 한층 강화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건설이 빨리 추진되고 천리마작업반운동과 3대 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이 심화발전되는 과정에 작업반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 역할이 비할바없이 강화되었으며 우리의 작업반원들은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가는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핵심부대로 굳건히 자라났다.

위대한 주체사상을 혁명적신념으로 삼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어떤 시련도 뚫고 주체혁명의 한길을 따라 용감히 전진하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빛내이고 튼튼히 받들어나가는 작업반의 대부대를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크나큰 영예이며 사랑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당과 수령에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왔으며 조국과 혁명의 작업반장들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의 모력적위훈을 높이 평가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전체 인민들은 높은 혁명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20세기의 마지막년대를 우리인민의 혁명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년대로 장식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있다.

모든 작업반장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제3차 7개년계획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대진군을 다그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이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작업반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사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의 선행부문과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채

취공업과 전력공업, 철도운수 부분의 작업반장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분에서 일하는 크나큰 긍지와 무거운 책임감을 간직하고 《90년대속도》 창조투쟁의 앞장에서 기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나가고있는 검덕과 무산의 광부들을 따라 안주와 복창을 비롯한 모든 탄광, 광산들과 발전소들에서 새로운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야 하며 중송투쟁의 불길을 높여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분의 작업반들과 근로자들은 1956년의 그 어려운 시기 당과 수령의 부름을 심장으로 받들고 천리마운동의 발단을 열어놓음으로써 우리 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한 강선의 로동계급의 그 투지와 기백으로 철강재생산에서 일대 혁명적양양을 일으켜야 한다.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이며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과업이다.

경공업과 지방공업 부분의 작업반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받들고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천과 신발, 식료가공품을 비롯한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분의 작업반들과 근로자들은 설비들을 더욱 현대화, 대형화하고 만부하로 돌려 농업생산에 필요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제때에 보장하며 경공업공장들에 화학섬유와 여러가지 원료를 충분히 대주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도시와 농촌에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여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것을 바라고있다.

건설부문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의 지원밑에 통일거리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5만세대의 살림집건설을 기어이 기한전에 끝내며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 곳마다에 우리 인민들의 기호에 맞는 살림집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살림집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우리 당의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한다.

기본건설부문의 작업반들과 근로자들은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 건설과 10월9일삼천 종합공장건설, 화학공장들을 대형화, 현대화하는 공사와 발전소건설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강화하고 제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대상건설들을 빨리 다그쳐 끝내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작업반들앞에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작업반들에서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 모든 작업반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충성의 집단으로, 인간개조사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힘있게 벌려 모두가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하는 집단주의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하며 전진하는 공산주의적집단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한다.

작업반들에서는 기술혁명을 중심과업의 하나로 틀어쥐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어렵고 힘든 일을 없애고 흥겹게 일하면서 생산을 끊임없이 늘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작업반들에서 낡고 뒤떨어진 기계설비들을 현대화하고 생산공정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 로봇화, 전자계산화 등을 나

고치며 생산방법과 경영활동을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서 올려세워야 한다.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은 새 기술을 배우고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여 여러가지 발명과 창의고안, 합리화안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작업반들에서는 문화혁명수행에 큰 힘을 넣어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요구에 맞게 모든 성원들을 과학기술지식수준이 높고 풍부한 문화적소양과 튼튼한 체력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한다. 이와 함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일터와 기대들을 알뜰하고 깨끗하게 거두며 공장안은 궁전과 같이, 공장밖은 공원과 같이 만들어야 한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우리 식의 주체적인 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를 작업반관리운영에 철저히 구현하여 작업반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당조직의 지도밑에 집체적으로 협의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작업반들에서는 생산활동과 관리운영을 제정된 규범과 규정세칙에 따라 철저히 정규화하며 특히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내놓은 작업반의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를 강화하고 더욱 심화시켜나감으로써 기업관리운영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대안의 사업체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활발히 벌려나감으로써 대중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높이 발휘시키고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기층생산단위인 작업반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전국의 작업반들은 《90년대 총진군운동에서 작업반의 전투력을 힘있게 과시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창조와 건설의 실천투쟁속에서 작업반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그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작업반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서 생산보충을 하면서 작업반의 생산과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조직집행하는 초급지휘일군들인 작업반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작업반장들은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을 깊이 사각하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여 작업반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집단으로 꾸리며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획을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반장들은 작업반원들의 사업과 생활을 어머니 심정으로 따듯이 돌보아주며 생산활동과 학습, 생활에서 언제나 대중의 모범이 되고 이신작척하면서 작업반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반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작업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과 공장, 기업소 일군들은 늘 작업반에 내려가 작업반원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며 걸린 문제를 세때에 물어주면서 작업반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작업반장들과 전체 작업반성원들을 오늘 나라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당의 영도를 충실으로 받들고 당과 수령

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일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옹호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는 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의 작업반장들과 작업반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노동당 중앙위, 김일성 중국 방문 관련 정치국 회의에 관한 보도

(191. 10. 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10월 16일에 진행되었다.

정치국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말에 진행되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장내민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상곤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0월 4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가장 친근한 형제이며 전우의 나라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방문기간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자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회담과 담화들을 진행하시였으며 베이징과 산둥성, 강소성의 여러 지역과 경제문화기관, 명승지, 역사문화유적들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 당과 국가 지도

의 투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치며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혁명적으로 생활하고 일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옹호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전국의 작업반장들과 작업반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며 주체혁명위업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감으로써 당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

노동당 중앙위, 김일성 중국 방문 관련 정치국 회의에 관한 보도

1971. 10. 1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10월 16일에 진행되었다.

정치국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회말에 진행되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진행하신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결과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장내민 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상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0월 4일부터 13일까지의 기간에 가장 친근한 형제이며 전우의 나라인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번 방문기간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자들과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북 회담과 남 회담을 진행하시였으며 베이징과 산둥성, 강소성의 여러 지역과 세계문화기관, 명승지, 역사문화유적들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중국 당과 국가 령

도사들과의 친분관계를 한층 두터이하시였으며 이르는곳마다에서 중국인
민들의 가장 뜨거운 환영과 중국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의 각별한 환대를
받으시였다.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이 매우 성과적
으로 진행되었으며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조중 두 나라 당과 국가령도자들이 서로 자주 래왕하면서
우정과 신뢰를 두터이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나가는것은 일찍부터 이
룩된 하나의 전통이라고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중국방
문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진행되었으며 조중친선을 더욱 공고히 하며 사
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또하나의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였다고 지적하
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강택민동지, 양상곤동지, 리봉동지를 비
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 지도간부들사이에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
서 진행된 진지하고 내용있는 회담들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중 두 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의 친선이 그 어떤 환경속에서도 변함없이 고수되고 날
을 따라 더욱 공고발전되는 불패의 친선이라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
였다고 지적하고 중국의 당과 국가 령도자들이 각별한 친근감과 동지적우
정, 높은 존경심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가장 열렬히 맞이하
고 성의껏 환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기간에 진행된 뜻깊은 상봉과 회담들에서 조중 두 나라 령도자들이 두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의 성과와 경험을 류보하고 호상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명한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이번 상봉과 회담들에서 중국 당과 국가령도자들은 우리 인민의 당의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에 맞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고 우리 인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중국 당과 국가 령도자들은 특히 우리 당이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이 실현되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번 방문과정에 강택민농지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인민이 4개의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과 개방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의 건인력과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시고 현대화된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두번째 단계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국 당과 인민이 더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과정에 두 나라 령도자들은 유

리 두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계속 발전시켜나가며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확고부동한 공동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이에 대하여 일치하게 환영하고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의 상봉과 회담들에서 중국 당과 국가 령도자들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원칙적인 립장과 합리적인 방안들을 적극 지지하였으며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분쇄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새로운 진전이 이룩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의 불가분의 령토인 대만을 중국에 귀속시켜 전국을 통일하기 위한 중국 당과 정부의 립장과 노력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시였다.

정치국회의는 조중 두 나라 령도자들사이에 표명된 호상 지지와 련대성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두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게 될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러한 지지와 련대성에 기초하여 앞으로 두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이 계속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리라는것을 확신에 넘쳐 지적하였다.

이번에 진행된 상봉과 회담들에서 두 나라 령도자들은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자주적 립장과 방침들에 대하여 호상 리해와

지지를 표명하였다.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국제관계에서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존중하며 조선반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을 비핵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중국 당과 국가 령도자들은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외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아세아와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우호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고 세계인민들의 자주, 평화 위업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 당과 정부가 실시하고있는 독립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대외정책에 대하여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시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이 날로 더욱 높아지고있는데 대하여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중국 당과 국가 령도자들은 이번 상봉과 담화의 전과정에 조중친선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두 나라 령도자들은 피로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조중친선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두 나라 인민들의 공통의 념원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위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를 이어 더욱 활짝 꽃피어나감에 대한 확고한 결의와 의지를 표명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이 조중친선의 력사에 새로운 빛나는 장을 열어놓은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였다.

정치국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이번 중국방문결과에 일치한

찬동을 표시하고 앞으로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며 조중친선을 전면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는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보다 큰 기여를 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핵안전협정>서명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91. 11. 25)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제거하고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로 이목을 끌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핵무기의 철수를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고 그의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 가입할 때 미국이 이 조약의 기탁국으로서 마땅히 조약에 의하여 지닌 법적의무를 이행하며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그만두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하는 데 호응해나설것을 기대하였다.

핵무기소유국인 미국은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핵무기로 계속 위협공갈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분위기를 고취함으로써 조약상 의무를 계통적으로 위반하여 왔다.

공화국이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 가입한후 핵담보협정체결분세의 해결이 지연되어온것은 전적으로 미국이 이와 같은 조약위반행위를 감행하면서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위협을 제거함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서 기인되고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전술핵무기축감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남조선에 미국 핵무기가 실전배비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철수할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가 우리의 핵담보협정체결의 길을 열어주는것으로 보고 그를 환영하였다.

그후 남조선당국자도 조산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선언』을 내놓았다.

우리는 비핵화라는 말자체를 반대하여오던 남조선당국자가 뒤늦게나마 우리가 이미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제안과 일부 공통된 내용을 담은 제안을 발표한것을 평가한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이미전에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였다면 우리의 핵담보협정체결문제가 오늘처럼 복잡한 문제로 제기되지도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핵담보협정체결자체를 반대한 일이 없으며 그의 조속한 체결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왔다.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한후 우리가 지닌 조약상 의무인 핵담보협정을 체결하겠으니 미국도 조약에 의하여 지닌 의무를 이행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거하고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제거해야 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엄연히 존재하는 핵무기를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일방적인 사찰만을 강요하여왔다.

지금에 와서는 모든것이 명백히 된바와 같이 미국이 처음부터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번에 발표한것과 같은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우리의 핵담보협정체결문제는 오래전에 해결 되었을것이며 아무 일도 없었을것이다.

앞으로도 우리의 핵담보협정체결문제가 순조롭게 빨리 해결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핵무기철폐에 관한 자기의 공약을 어떻게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남조선당국의 경우를 말하더라도 우리가 조선반도비핵지대화안을 제기하였을때 덮어놓고 반대할것이 아니라 그것을 옹당 받아들이는 데로 나왔어야 할것이였다.

북과 남은 동족으로서 다같이 핵무기개발을 하지 말며 핵사찰을 동시에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견지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핵무기 철수를 시작하면 우리는 핵담보협정에 서명한다.

둘째, 남조선에서의 미국핵무기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찰과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동시에 진행한다.

셋째, 동시핵사찰문제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제거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조미협상을 진행한다.

넷째, 북과 남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할데 대한 상봉된 의사를 표명한데 따라 그 실현을 위한 북남협상을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우리의 공명정대한 제안이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모든 나라 정부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91. 12. 13)

南과 北은 分斷된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念願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共同聲明에서 闡明된 祖國統一 3大 原則을 再確認하고,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여 民族的 和解를 이룩하고 武力에 의한 侵略에 衝突을 막고 緊張緩和와 平和를 保障하며, 多角的인 交流·協力を 實現하여 民族共同의 利益과 繁榮을 圖謀하며, 雙方사이의 關係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關係가 아닌 統一을 指向하는 過程에 暫定的으로 形成되는 特例關係라는 것을 認定하고, 平和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共同의 努力을 傾注한 것을 나침하면서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다.

第1章 南北和解

- 第1條 南과 北은 서로 相對方의 體制를 認定하고 尊重한다.
- 第2條 南과 北은 相對方의 內部問題에 干涉하지 아니한다.
- 第3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대한 誹謗·中傷을 하지 아니한다.
- 第4條 南과 北은 相對方을 破壞·顛覆하려는 一切 行爲를 하지 아니한다.
- 第5條 南과 北은 現 停戰狀態를 南北사이의 鞏固한 平和狀態로

轉換시키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하며 이러한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現 軍事停戰協定을 遵守한다.

第6條 南과 北은 國際舞臺에서 對決과 競爭을 中止하고 서로 努力하며 民族의 尊嚴과 利益을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다.

第7條 南과 北은 서로의 긴밀한 連結과 協議를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後 3個月안에 板門店에 南北連絡事務所를 設置·運營한다.

第8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本會談 테두리 안에서 南北政治分科委員會를 構成하여 南北和解에 관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를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2章 南北不可侵

第9條 南과 北은 相對方에 대하여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相對方을 武力으로 侵略하지 아니한다.

第10條 南과 北은 意見對立과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을 통하여 平和적으로 解決한다.

第11條 南과 北의 不可侵 境界線과 區域은 1953年 7月 27日字 軍事停戰에 관한 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지금까지 雙方이 管轄하여 온 區域으로 한다.

第12條 南과 北은 不可侵의 履行과 保障을 위하여 이 合意書 發效後 3個月안에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한다. 南北軍事共同委員會에서는 대규모 部隊移動과 軍事演習의 通報

및 統制問題,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問題, 軍人士交流 및 情報交換 問題, 大量 殺傷武器와 攻擊能力의 제거를 비롯한 段階的 軍縮實現問題, 檢證問題 등 軍事的 信賴造成과 軍縮을 實現하기 위한 問題를 協議·推進한다.

第13條 南과 北은 偶發的 武力衝突과 그 擴大를 防止하기 위하여 雙方 軍事當局者사이에 直通電話를 設置·運營한다.

第14條 南과 北은 이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本會談 테두리안에서 南北軍事分科委員會를 構成하여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履行과 遵守 및 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기 위한 具體的 對策을 協議한다.

第3章 南北交流·協力

第15條 南과 北은 民族經濟의 統一的이며 均衡的인 發展과 民族全體의 福利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資源의 共同開發,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交流·合作投資 등 經濟交流와 協力を 實施한다.

第16條 南과 北은 科學·技術, 教育, 文學·藝術, 保健, 體育, 環境과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報道 등 여러 分野에서 交流와 協力を 實施한다.

第17條 南과 北은 民族構成員들의 자유로운 往來와 接觸을 實現한다.

第18條 南과 北은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자유로운 書信去來, 往來

와相逢 및訪問을實施하고自由意思에 의한再結合을實現하며,其他人道的으로解決할問題에 대한對策을講究한다.

第19條 南과北은 끊어진鐵道와道路를連結하고海路,航路를開設한다.

第20條 南과北은郵便과電氣通信交流에必要的施設을設置·連結하며郵便·電氣通信交流의祕密을保障한다.

第21條 南과北은國際舞臺에서經濟와文化 등 여러分野에서 서로協力하며對外에共同으로進出한다.

第22條 南과北은經濟와文化 등各分野의交流와協力을實現하기 위한合意의履行을 위하여 이合意書發效後3個月안에南北經濟交流·協力共同委員會를 비롯한部門別共同委員會들을構成·運營한다.

第23條 南과北은 이合意書發效後1個月안에本會談테두리 안에서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構成하여南北交流·協力에 관한合意의履行과遵守를 위한具體的對策을協議한다.

第4章 修正 및 發效

第24條 이合意書는雙方의合意에 의하여修正補充할 수 있다.

第25條 이合意書는南과北이各其發效에 필요한節次를 거쳐

그 文本을 서로 交換한 날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1991年 12月 13日

南北高位級會談

南側代表團 首席代表

大 韓 民 國

國務總理 鄭 元 植

北南高位級會談

北側代表團 團長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政務院總理 延 亨 默

【우리側 合意書 草案】

南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案)

<前 文>

- 7.4 南北共同聲明의 祖國統一原則 再確認
-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緊張緩和
- 多角的인 交流·協力으로 民族共同 利益과 繁榮 圖謀
- 統一時까지 暫定的인 特殊關係 認定
- 平和統一 成취를 위한 共同努力 傾注

<南 北 和 解>

第1條 相對方 體制 尊重

第2條 相對方 內部問題 不干涉

第3條 相對方 誹謗·中傷 中止

第4條 相對方에 대한 破壞·顛覆活動 禁止

第5條 現 停戰狀態의 平和狀態로의 轉換을 위해 努力, 平和
狀態 定着時까지 現 軍事停戰協定 遵守

第6條 國際舞臺에서의 對決 中止, 民族利益과 自尊위해 共同

努力

第7條 本 合意書 發表後 2個月 以內에 板門店에 常設連絡事務處 設置, 앞으로 서울과 平壤에 設置하는 方案 講究

第8條 本 合意書 發效後 1個月 以內에 南北政治分科委員會 設置

<南北不可侵>

第9條 相對方에 대한 武力 使用·侵略 禁止

第10條 意見對立과 紛爭을 國際聯合憲章에 따라 平和的으로 解決

第11條 不可侵 境界線은 軍事停戰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으로 하며, 海上 不可侵區域은 軍事停戰協定 發表 以後의 各其 管轄區域

第12條 不可侵 履行 保障 및 軍備減縮 實現 爲해 主要 軍事訓練·部隊移動 事前通報, 訓練參觀團 交換,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 등 軍事的 信賴構築

第13條 武力侵略 抑制爲해 大量 殺傷武器·奇襲攻擊能力 除去, 雙方 軍事力 不均衡 是正 및 軍備縮小 推進

第14條 軍事的 信賴構築·軍備減縮 爲해 軍事情報 交換, 現場 檢證 實施, 常駐臨時體制 交換·運替

第15條 軍事當局者間에 直通電話 設置·運替

第16條 第12條부터 第15條까지 規定된 事項의 履行을 爲해

本 合意書 發效後 6個月 以內에 南北軍事委員會 構成·運營

第17條 本 合意書 發效後 1個月 以內에 南北軍事分科委員會
를 設置, 南北不可侵에 관한 對策과 軍事的 對決狀
態 解消 위한 諸般軍事問題 協議

<南北交流·協力>

第18條 新聞,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의 相互開放·交流,
教育, 文化·藝術, 宗教, 保健·環境, 體育, 科學·技術
등 여러 分野에서 交流·協力

第19條 離散家族·親戚들의 書信去來·相逢·訪問의 各各 實施
및 이들의 自由意思에 의한 再結合 推進, 其他 人
道的으로 解決할 問題의 對策 講究

第20條 자유로운 往來·接觸 保障

第21條 陸路·海路·空路의 開設 및 通過地點 指定, 京義線
鐵道와 汶山·開城間의 道路 連結

第22條 郵便·電氣通信 交流에 필요한 施設의 設置 連結, 郵
便·電氣通信 交流의 祕密保障

第23條 民族經濟의 均衡發展과 民族全體의 福利向上을 위해
民族內部交易으로서의 物資交易과 資源의 共同開發,
合作投資, 共同對外進出 등 經濟交流 協力 實施

第24條 第20條부터 第23條까지 規定된 事項의 履行을 위해

本 合意書 發效後 6個月 以內에 南北通行委員會, 南北通信委員會, 南北經濟交流·協力委員會를 構成·運營

第25條 本 合意書 發效後 1個月 以內에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를 設置,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對策協議

<修正 및 發效>

第26條 本 合意書는 雙方이 이미 各其 締結하여 發效中인 兩者 또는 多者間의 條約이나 協定에는 不影響

第27條 雙方 合意에 의해 修正 可能

第28條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 交換日부터 效力發生

【北側 合意書 草案】

北南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協力·交流에 관한 合意書(案)

<前 文>

- 7.4 共同聲明의 祖國統一 3大原則을 再確認
-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와 緊張緩和
- 多方面的인 協力·交流를 實現하여 民族共同의 利益과 繁榮을 圖謀하며
- 統一時까지 暫定的인 特殊關係라는 것을 認定

<北 南 和 解>

- 第1條 相對方 制度 認定
- 第2條 相對方 內部問題 不干涉
- 第3條 相對方 誹謗·中傷 中止
- 第4條 相對方 破壞·顛覆 禁止
- 第5條 國際舞臺에서 協力
- 第6條 本 合意書 發效後 6個月안에 板門店에 連絡事務所 設置·運營

第7條 本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南北 政治分科委員會를 構成, 北南和解에 관한 對策 協議

<北南不可侵>

第8條 相對方에 대한 武力 不使用, 不侵害

第9條 意見相異와 紛爭問題들을 對話와 協商으로 解決

第10條 不可侵境界線은 軍事停戰協定에 規定된 軍事分界線과 各其 管轄地域

第11條 軍備競爭 中止, 軍事的 信賴造成과 동시에 軍縮을 實現

第12條 雙方 軍事當局者 사이에 直通電話 設置·運營

第13條 不可侵에 관한 合意의 履行을 위해 本 合意書 發效 後 6個月안에 北南 軍事共同委員會를 構成·運營

第14條 停戰을 平和로 轉換시키는데 共同努力

第15條 이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北南 軍事分科委員會를 構成, 不可侵과 軍事的 對決狀態 解消위한 協議

<北南協力·交流>

第16條 資源의 共同開發, 合作投資, 民族內部交流로서의 物資 交流 등 經濟協力·交流 實現

第17條 科學, 技術, 教育, 文學藝術, 保健, 體育과 新聞, 라 디오, 텔레비죤 및 出版物을 비롯한 出版, 報道등 여러 分野에서 協力·交流 實現

第18條 各界 人士·同胞들의 자유로운 來往과 接觸實現

第19條 離散家族·親戚들의 來往과 相逢, 書信去來, 再結合을
實現하기 위해 對策 講究

第20條 鐵道와 道路를 連結하고 海路·航路를 開設

第21條 郵便·電氣通信交流에 필요한 施設을 設置, 連結하며
郵便·電氣通信交流의 秘密保障

第22條 國際舞臺에서 서로 協力하며 對外에 共同으로 進出

第23條 經濟·文化등 各 分野의 協力과 交流의 實現을 위해
本 合意書 發效後 6個月안에 北南 經濟協力共同委員會
를 비롯한 部門別 共同委員會 構成

第24條 이 合意書 發效後 1個月안에 北南 協力交流分科委員
會를 設置, 協力·交流의 對策을 協議

<修正 및 發效>

第25條 雙方の 合意에 의해 修正 補充 可能

第26條 發效節次를 거쳐 文本 交換日부터 效力 發生

3. 法制定關聯資料



北韓 <民法> 全文

(1990. 9.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호로 채택)

제1편 일반제도

제1장 민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 사이에 서로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한다.

제3조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국가는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계획서관리 운영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한다.

제4조 계획적인 재산거래관계는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형태인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구현하며 계약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5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6조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공민과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7조 공민이 참가하는 재산관계는 계약을 비롯한 행위와 사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가는 재산관계에 근로자들이 일상적으로 널리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편의와 조건을 보장한다.

제8조 집단주의는 사회주의사회생활의 기초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집단주의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제9조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민사상 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재판 또는 중재 절차로 해결한다.

제10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

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관계에 적용한다.

제2장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제 11 조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독립적인 경비예산이나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된다.

법적으로 등록된 합영회사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된다.

제 12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로부터 민사상 권리를 가지거나 의무를 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직접 실현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제 13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다음에는 그것을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다.

제 14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책임사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사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제 15 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 16 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지는 경우에 민사상 권리의무는 그에 맞게 갈라지며 합쳐지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무도 합쳐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폐지되거나 그 자신이 해산을 결정한 경우에 그가 가지고있던 채권채무는 해당 임무를 위임받은 청산인이 처리한다.

제 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폐지 또는 해산이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된 때에 없어진다.

제 18 조 국가는 국가소유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민사법률관계에서 직접 당사자로 된다. 이 경우에 국가는 해당하는 권한을 부여한 기관을 통하여 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며 의무를 이행한다.

제 19 조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생기며 사망과 함께 없어진다.

모든 공민은 민사권리능력을 평등하게 가진다.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할수 없다.

제 20 조 공민의 성인나이는 17살이다.

17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6살에 이른자는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으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

제 21 조 16살에 이르지 못한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나 6살이상의 미성인은 학용품이나 세소일용품 같은것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 22 조 마지막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중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수 있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후 1년, 소식이 없거나 마지막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3년, 생명에 위험을 준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앞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망자와 같이 인정할수 있다.

제 23 조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공민이 나타났거나 소식을 보내여 거처를 알려온 경우에 공중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제 3 장 민사법률행위

제 24 조 민사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의사를 표시하는 말로나 서면으로 할수 있다.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거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25 조 민사법률행위를 한자는 법에서 허용하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자기가 한 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할수 있다.

제 26 조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효력을 가진다.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이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27 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수

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사회
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에게는 해당 돈이
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 28 조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 강요로하여 본의아니게 한 민사법률행위, 16살에 이른
자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취소
는 2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취소된 민사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는것으로 본다.

제 29 조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들이 이미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 돌려준다. 그러나 상대방을 속였거나 강요
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하게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그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 30 조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일정한 조건의 발생과 결부시킬수
있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은 조건의 발생을 앞당기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 31 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법이 정한 경우나 자신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경우를 내놓고는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
다.

제 32 조 대리에는 법에 의하여 하는 법정대리와 위임에 의하여 하는
위임대리가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제 33 조 대리인은 대리의 도움을 받는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
위를 하며 그 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본인은 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한 제3사앞에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34 조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수 있으며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이나 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 35 조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와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자신이 책임진다.

제 36 조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잃은 경우에 없어진다.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대리의 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그 위임을 거절한 경우에도 없어진다.

제 2 편 소유권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 3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그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나누어진다.

제 38 조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의 발생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때, 계약에 기초하

는 경우에는 계약을 맺고 그 대상을 넘겨받은 때부터 이루어진다.

제 39 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자기의 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당 소유권을 가진자만이 할수 있다.

제 40 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41 조 소유권을 가진자는 자기 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 42 조 소유권은 여럿이 몫으로 나누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을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하는것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제 43 조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르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본다.

제 2 장 국가소유권

제 44 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 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 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45 조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중공업, 경공업, 수산업, 림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중요 공장, 기업소와 농기계작업소, 관개관리소 같은 농촌경리부분에 복무하는 기업소, 수매량정, 도시경영, 중요상업 및 출판인쇄기업소
3. 항만, 은행, 교통운수 및 체신, 방송 기관
4.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

제 46 조 국가소유권의 담당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사기의 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 47 조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국가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 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 48 조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국가소유권은 그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국가 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다른 국가 기관, 기업소에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는 경영상 관리권만 넘어간다.

제 49 조 국가에서 협동농장에 배속시킨 트랙토르, 모내는 기계, 수확기를 비롯한 현대적농기계, 국가부담으로 협동농장에 마련하여준 문화시

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국가는 자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협동농장에 넘겨준다.

협동농장은 국가가 지원하여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

제 50 조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그 리용권을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민에게 넘겨주며 그것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 51 조 국가 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52 조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을 가진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제 3 장 협동단체소유권

제 53 조 협동단체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협동단체소유는 협동단체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협동단체의 자체투자에 의하여 마련한 재산, 협동경리의 생산물, 협동단체가 산 재산, 국가에서 협동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54 조 협동단체는 토지와 부림짐승, 농기구, 고기배, 건물 등과 중소 공장, 기업소와 문화보건시설, 그밖에 경영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제 55 조 협동단체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인 협동단체이다.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그 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주의원칙에서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수 있다.

제 56 조 협동단체가 생산한 제품이 국가 기관, 기업소 또는 다른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 57 조 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협동단체나 국민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4 장 개인소유권

제 58 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국민이 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제 59 조 국민은 살림집과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가정용품, 문화용품, 그밖의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기재를 소유할수 있다.

제 60 조 개인소유권의 담당자는 개별적국민이다.

국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사유로이 차지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제 61 조 국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번 재산은 가정재산으로 되며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

고왔거나 결혼하기전부터 가지고있는 재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제 62 조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권한없는 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알면서 가진 공민에 대하여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경우에도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제 63 조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공민의 개인소유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된다. 공민은 유언에 의하여서도 자기의 소유재산을 가정성원이나 그밖의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수 있다.

제 3 편 채권채무제도

제 1 장 일반규정

제 64 조 이 법에서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제 65 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권리를 가지면서 그에 대응한 의무를 함께 가질수도 있고 권리나 의무의 하나만을 가질수도 있다.

제 66 조 채권채무관계는 인민경제계획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제 67 조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응당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여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당한 책임을 진다.

제 68 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어기어 생긴 손해가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어 손해가 커진 경우에 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그만큼 제한된다.

제 69 조 채권채무관계에서 값은 국가가 정하였거나 평가한 값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값으로 정하고 계산한다.

국가의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상대방에 돌려주어야 하며, 의식적으로 가격규정을 어기고 더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제 70 조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 각자는 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제 71 조 분할채권자들은 자기 몫의 이행만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들은 자기 몫의 채무만을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72 조 분할채권자들이 가지는 청구의 몫이나 분할채무자들이 지는 채무의 몫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그 몫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 73 조 연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연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무를 전부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 74 조 채무를 전부 이행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들에게서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몫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채무를 전부 이행받은 연대채권자는 다른 연대채권자들에게 해당한 몫을 나누어 줄 의무를 진다.

제 75 조 런대채권자는 자기의 청구권을 행사하는데서 다른 런대채권자들의 이익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한 런대채권자가 자기의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에 그것은 다른 런대채권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76 조 채권자가 한 런대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에 그가 부담하기로 되었던 몫만큼 다른 런대채무자들의 몫은 적어진다.

제 77 조 채권자나 채무자는 자기의 채권이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주려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제 78 조 제3자의 허물로 하여 생긴 채무를 채권자앞에 리행한 당사자는 제3자에게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79 조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제 80 조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리행을 지연시키거나 채무리행의 접수를 지연시킨 당사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81 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제 82 조 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유상으로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는 질이 가장 좋은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물건을 무상으로 넘겨주기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질을 가진

물건을 넘겨줄수 있다.

제 83 조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쓸수 없게 되면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할 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넘겨주기로 한 채권채무관계에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면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 84 조 징표가 같은 물건가운데서 채권채무의 대상이 개별적으로 정하여지면 그때로부터 그 대상물은 징표가 다른 특정된 물건으로 된다.

제 85 조 재산을 넘겨주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넘겨주는 재산과 함께 그에 종속된 재산도 넘겨주어야 한다.

제 86 조 채무는 법이나 계약이 정한곳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돈으로 풀어야 할 채무는 채권사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넘겨주어야 할 채무는 부동산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 또는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제 87 조 채무의 대상으로 된 물건을 심히 손상시킨 경우에 그 값의 전부를 보상한자는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제 88 조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들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것으로 정할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제 89 조 선택권을 가진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제2장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제 90 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을 실행하며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때에 맺어야 한다.

제 91 조 계약당사자들은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에 명백히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하여 계획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92 조 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진다.

계약을 맺는데서 의견상이는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제 93 조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추가되거나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추가,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제 94 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 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95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라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불 의무를 진다.

제 96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97 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자기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는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제 98 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수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을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작성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제 99 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리고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작성할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기계설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

제 2 장 계 획 에 기 초 하 는 계 약

제 90 조 계 획 에 기 초 하 는 계 약 은 인 민 경 제 계 획 을 실 행 하 며 경 제 관 리 에서 독 립 채 산 제 를 정 확 히 실 시 하 기 위 하 여 계 획 에 기 초 하 여 기 관, 기 업 소, 단 체 들 사 이 에 맺 는 다.

기 관, 기 업 소, 단 체 는 계 약 을 정 해 진 절 차 와 방 법 에 따 라 제 때 에 맺 어 야 한 다.

제 91 조 계 약 당 사 자 들 은 인 민 경 제 계 획 을 가 장 정 확 히 합 리 적 으 로 수 행 할 수 있 도 록 계 약 내 용 을 정 하 여 야 한 다.

기 관, 기 업 소, 단 체 는 계 획 에 명 백 히 부 족 점 이 있 다 고 인 정 되 는 경 우 에 그 에 대 하 여 계 획 기 관 에 제 때 에 알 려 야 한 다.

제 92 조 계 약 은 법 이 정 한 모 든 사 항 들 에 대 하 여 합 의 가 이 루 어 진 때 에 맺 어 진 다.

계 약 을 맺 는 데 서 의 견 상 이 는 중 재 절 차 로 해 결 한 다.

제 93 조 계 약 은 인 민 경 제 계 획 이 추 가 되 거 나 조 절 되 면 그 에 따 라 변 경 된 다.

계 약 의 변 경 은 계 획 의 추 가, 조 절 에 관 한 통 지 를 한 편 당 사 자 가 상 대 방 으 로 부 터 받 았 거 나 계 약 쌍 방 이 권 한 있 는 국 가 기 관 으 로 부 터 받 은 때 에 이 루 어 진 다.

제 94 조 기 관, 기 업 소, 단 체 들 이 국 가 의 자 재 공 급 계 획 에 기 초 하 여 자 재 를 주 고 받 는 행 위 는 자 재 공 급 계 약 에 따 라 한 다.

자 재 공 급 계 약 은 대 안 의 사 업 체 계 의 요 구 와 자 재 를 주 고 받 는 데 서 상 업 적 형 태 를 리 용 할 데 대 한 국 가 적 요 구 에 맞 게 맺 고 리 행 하 여 야 한 다.

95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세부계획에 따
기계, 설비, 원료, 자재를 주고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된다.

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붙 의무를 진

96 조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공급할 자재의 이름, 규격, 질,
기간, 수량, 값과 자재를 주고받는 방법, 자재의 포장조건, 거래은행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97 조 공급자는 자재를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주거나
창고에서 수요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수기관을 통한 수송조직에 대하여서는 공급자가 책임지며 여기에 드
수송비는 수요자가 부담한다.

98 조 공급된 자재의 검수는 수요자가 한다.

요자는 자재에 사고가 있으면 공급자를 립회시키고 그로부터 사고조
받을수 있다.

당한 리유없이 사고확인을 지연시키거나 거절한 당사자는 수요자가
한 사고조서에 근거하여 책임진다.

99 조 공급된 자재의 숨은 결함을 발견한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알
그로부터 사고조서를 받아야 한다. 긴급하거나 사고의 원인과 내용
에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독기관의 참가밑에 사고조서를
할수 있다.

은 결함에 대하여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안에, 기
비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끝날 때까지 공급자에게 책임을 붙을수 있

다.

제 100 조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량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

제 101 조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에 값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값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으면 수요자는 값을 물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값만 낮출수 있다.

제 102 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의하여 생산과 소비를 윗게 연결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03 조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인민소비품을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그것을 넘겨받고 해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 104 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주고받는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공장, 기업소의 제품판매를 담당한 상사, 협동농장도 계약당사자로 될수 있다.

제 105 조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들은 이 법 제96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106 조 공급자는 상품을 제때에 운수기관을 통하여 실어보내거나

수요자의 창고까지 날라다 주어야 한다. 이 경우에 상품과 함께 그 명세서
를 수요자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제 107조 공급된 상품의 검수는 수요자가 하며 그 과정에 나타난 결
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질서에 따
라 한다.

제 108조 공급된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한 사고처리는 이 법 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질서에 따라 한다.

사용보증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품의 숨은 결함에 대하여서는 상품
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3개월 안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 109조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량곡과 원료를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10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기관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기관은 그것을 넘겨받고 해
당한 값을 물 의무를 진다.

제 111조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수매품의 수매기간, 수
량, 값, 질, 규격과 보관, 수송 방법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
다.

제 112조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
수매계획에서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 113조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기관이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에

고 값은 수매기관이 부담한다.

제 114 조 계약당사자들은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기관은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115 조 수매기관은 정확히 농산물의 질을 검사하며 량을 계량계측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다.

제 116 조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량곡과 부피가 큰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제 117 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본건설을 위탁하는 행위는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18 조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제 119 조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들은 건설 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 날자와 당사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맺는다.

제 120 조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

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건설주의 위탁에 의하여 시공주가 할수 있다.

제 121조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 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122조 건설주는 건설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은 제때에 확인해주어야 한다.

제 123조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 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었을 때에 한다.

제 124조 시공주는 건설물을 건설주에게 넘겨준 때로부터 1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고쳐줄 의무를 진다. 이 경우에 거기에 드는 비용은 허물있는자가 부담한다.

제 125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물수송계획을 정량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26조 화물수송계약에 의하여 짐보내는 자는 짐을 운수기관에 넘겨주고 운임을 물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음사에 넘겨줄 의무를 진다.

제 127조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들은 짐의 이름, 나뉠 수량, 보내는 곳과 닿는곳,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과 보내고받을자의 이름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128 조 짐보내는자는 계약된 짐을 정해진 규격대로 운수기관에 제 때에 넘겨주어야 하며 운수기관은 그 짐의 성격에 맞는 운수수단을 배정하여야 한다.

제 129 조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것이 없으면 짐임자가 하여야 한다.

짐을 신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제 130 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 131 조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실어날라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짐임자는 더 든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늦게 도착한 짐에 대한 연착보상금을 받을수 있다.

제 132 조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제때에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한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내야 한다. 이 의무를 어 기면 보관료나 해당한 요금을 물어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 관이 적용하는 비률에 따라 계산한다.

제 133 조 짐받는자는 짐을 검사하고 사고가 있으면 운수기관으로부터 사고조서를 받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사고조사작성을 거절한 운수기관은 그 사고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134 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지지 않은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규정한 화물수송계약질서에 따라 한다.

제 3 장 계 획 에 기 초 하 지 않 는 계 약

제 135 조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공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맺는다.

제 136 조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제의를 접수한때로부터 해당 제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할수 없다.

제 137 조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 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 138 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 대상, 리행기간, 값 같은 본질적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공민들에게 불로소득을 가져다주는 계약내용은 설정할수 없다.

제 139 조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는다.

제 140 조 기관, 기업소, 단체 호상간의 계약은 서면으로 맺어야 한

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간,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 것이 없으면 말로 맺을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제 141조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제 142조 두 당사자들이 다같이 의무를 지는 계약은 서로 동시에 리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당사자가 자기의 의무를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보류할수 있다.

제 143조 한편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계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상대방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수 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 144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제때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있는자는 결함을 고쳐주거나 대상을 다른것으로 바꾸어주거나 그 값을 낮추어주어야 한다.

제 145조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숨은 결함을 상대방에 알려 책임을 물을수 있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정해진 기간안에 물어야 한다.

제 146조 계약대상을 차지하고있는자는 그것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정으로 계

약대상물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47조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뚫을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뚫은자와 함께 제3자에게도 발생한다.

제 148조 소매상업기업소, 수매기관과 공민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에 물건을 팔고사는 행위는 팔고사기계약에 따라 한다.

팔고사기계약은 인민들의 소비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뚫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49조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파는자는 물건을 사는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사는자는 물건을 넘겨받고 값을 물 의무를 진다.

물건을 파는것은 그에 대한 처분권이 있는자만이 할수 있다. 처분권이 없는자가 물건을 판다는것을 알면서 뚫은 팔고사기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 150조 공장, 기업소가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에 대한 팔고사기계약에서 파는자로는 소매상업기업소가 된다.

소매상업기업소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상품주문서를 만들고 상품을 제때에 확보하여 팔아주어야 한다.

제 151조 보증기간이 정해진 상품을 산사는 보증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상품을 판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 있다.

제 152조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화유금속과 국가봉제품을 내놓고 농축산물과 농토산물, 원료와 자재, 일반용품을 사들이는 당시자로는 수매기관이 된다.

수매기관은 기본수매품종들의 등급기준과 값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

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제 153 조 수매기관은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수매시키는자는 해당 물건을 다른 수매기관에 팔수 있으며 생긴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 154 조 수매품을 수매장소까지 나르는 일은 수매시키는자가 하며 수매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나르는 일은 수매기관이 한다.

수매품의 나르는 일을 앞항과 다르게 계약한 경우에 운반을 담당하는 해당 운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수 있다.

제 155 조 공민이 생산한 농부업생산물은 농민시장에서만 생산자와 소비자사이에 합의된 값으로 팔고살수 있다.

산 물건을 더 비싸게 되거리하는것은 금지한다.

제 156 조 공민이 물건을 만들거나 수리, 가공하거나 그밖의 일을 맡기는 행위는 작업봉사계약에 따라 한다.

작업봉사계약은 근로자들에 대한 편의봉사를 잘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57 조 작업봉사계약에 의하여 작업하는 자는 주문받은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작업맡긴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하는 봉사료를 물 의무를 진다.

제 158 조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말로 합의하고 일감을 주고받은 때에 맺어진다.

제 159 조 작업맡기는자는 일감을 넘겨줄 때에 요구조건을 알려주면서 기술자료를 함께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그만큼 연장하거나 작업순차를 뒤로 미룰수 있다.

제 160 조 작업하는자는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한다.

작업맡기는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정한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그것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상대방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 161 조 작업하는자는 작업맡기는자가 낸 작업대상물을 소중히 다루고 자재, 부속품을 소비기준과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써야 한다. 쓰고 남은 자재와 부속품은 작업결과와 함께 작업맡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162 조 작업하는자는 마음대로 작업대상의 구조를 변경시키거나 작업맡긴자가 낸 작업대상물에서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 쓰지 말아야 한다.

제 163 조 작업하는자는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맡긴자는 정해진 기간까지 작업하는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할것이 명백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제 164 조 작업하는자는 작업결과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하는자는 보증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그 기간안에 나타난 결함에 대하여 남의 허물이 아닌 이상 자기가 책임한다.

제 165 조 작업맡긴자는 작업결과를 제때에 넘겨받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작업하는자는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 166 조 공민이 물건을 맡기고건사하는 행위는 보관계약에 따라 한다. 보관계약은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67 조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그것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물 의무를 진다.

공민들 호상간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 받을수 없다.

제 168 조 보관계약은 당사자들사이에 말로 합의하고 물건을 보관하는자에게 넘겨주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 내준 때에 맺어진다.

보관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맺을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맺을수도 있다.

제 169 조 물건을 보관시키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는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을 보관하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물건을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제 170 조 보관하는자는 계약대로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물건은 성실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다.

제 171 조 려관, 극장, 회관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손님이 따로 검사한 물건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 172 조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제때에 찾아가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기간이 지나도록 보관시킨자가 보관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더 높게 정해진 보관료를 받을수 있다.

제 173 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자에게 원상대로 돌려주어야 한다.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

야 한다.

제 174 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보관시킨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물건을 받고 표식물을 내준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내놓은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면 보관의무는 없어진다.

제 175 조 공민은 법적의무없이도 다른 공민이나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보관관리할수 있다. 이 경우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해당 사실을 재산임자에게 알리고 자기 재산처럼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그것을 보관관리하는데 들인 비용을 재산임자에게서 보상받을수 있다.

제 176 조 법적의무없이 남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자는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받은 값만큼 재산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177 조 공민이 도서, 생활용품이나 문화오락기구, 체육기자재 같은 것을 빌리는 행위는 빌리기계약에 따라 한다.

빌리기계약은 인민들의 다양한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78 조 빌리기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빌려주는자는 빌리는자가 그것을 일정한 기간 리용하도록 넘겨줄 의무를 지며 빌리는자가 사용료를 물고 해당 물건을 리용한 다음 빌려준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진다.

제 179 조 공민이 도서, 특허물, 복음 및 목화물 같은 자료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빌리는 계약은 무상 또는 유상으로 맺는다.

공민들 호상간의 빌리기계약에서는 사용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제 180 조 빌려주는자는 물건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하며 결함이 있는 물건을 빌려주는 경우에 그 사실을 빌리는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빌린자에게 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제 181 조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쓰며 그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빌리는자가 빌린 물건의 구조를 변경시키려고 할 경우에 빌려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82 조 빌린 물건의 대수리는 빌려주는자가 하며 중수리는 계약에서 정한자가 하고 소수리는 빌리는자가 한다.

중수리나 소수리를 맡은자가 수리를 제때에 하지 않아 빌린 물건이 심히 손상된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제 183 조 빌리기계약에서 빌리는자는 빌린 물건을 빌려준자의 동의 밑에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수 있다. 이 경우에 빌리는자는 계약의무의 리행에 대하여 빌려준자앞에 책임진다.

제 184 조 보증금을 설정하고 뺏은 빌리기계약에서 빌려준자는 빌려준 물건을 반환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제 185 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판매, 구매나 그밖의 재산거래를 다른 기관이나 공민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위탁계약에 따라 한다.

위탁계약은 적은 로력과 자금으로 온갖 경제적예비와 잠재력을 동원리 용할수 있게 뺏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86 조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는자는 위탁하는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하는자의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탁하는자는 그 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위탁계약은 서면으로 뺏어야 한다.

제 187 조 위탁하는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이나 물건을 먼저 상대방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 188 조 위탁받은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탁받은자가 계약조건외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탁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89 조 위탁계약과 관계없이 위탁받은자에게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한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제 190 조 위탁받은자는 위탁한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다 위탁한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 191 조 위탁한자는 위탁받은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제때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그가 들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 192 조 이 법에서 규정한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재산거래 관계에도 해당하게 적용된다.

제 193 조 공민이 기차, 자동차, 배, 비행기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하는 여행은 려객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려객수송계약은 인민들의 여행상 안전과 편리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194 조 려객수송계약에 의하여 손님은 운수기관에 해당 값을 지불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내워갈 의무를 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운수기관이 표에 의하여 해당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

준 때에 뺏어진다.

제 195 조 운수기관은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손님들에게 의료봉사, 도중식사를 비롯하여 여행에 필요한 조건과 시설들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96 조 운수기관은 손님을 여행목적지까지 태워나르지 못하게 된 경우에 손님에게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 197 조 운수기관은 손님이 표값을 정한 기간안에 물리려고 하거나 그를 태워 갈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표값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님에게 돌려주거나 표의 사용기간을 늘여주어야 한다.

제 198 조 여행하는 손님은 학령전 어린이를 표없이 데리고 갈수 있으며 정해진 범위안의 짐을 가지고 해당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제 199 조 손님은 여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여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 운수기관은 해당 손님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 200 조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저축하는 행위는 저금계약에 따라 한다.

저금계약은 놓고있는 돈을 경제건설에 효과있게 리용하며 인민들의 생활향상을 도모할수 있게 뺏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201 조 저금계약에 의하여 저금하는 공민이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면 저금기관은 그것을 저금하였다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내줄 의무를 진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 공민에게 저금증서를 내준 때에 뺏어진다.

제 202 조 저금계약에서 저금하는 공민은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다음 대로 정할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한 공민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거나 다른 저금기관에 옮겨주어야 한다.

제 203 조 저금기관은 공민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저금하는 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4 조 저금기관은 저금의 비밀을 지켜야 하며 저금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제 205 조 공민이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다.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높고있는 돈을 동원리용할수 있게 뱃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206 조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물 의무를 지며 보험기관은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해당공민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은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에 뱃어 진다.

제 207 조 보험에 든 공민이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 208 조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내준

보험기관은 그에 대한 보상을 제3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찰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 209조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맺은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정해진 기간까지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효력이 없어지며 보험료를 물면 그때로부터 보험효력이 다시 생긴다.

제 210조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든 공민이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으면 해당한 보험금을 내주어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다되고 보험에 든 공민이 보험료를 다 물면 만기보험금을 내준다.

제 211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물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 212조 재산보험에 든 공민은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곧 보험기관에 알리고 손실을 덜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수 있다.

제 213조 공민이 재산거래와 그밖의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행위를 남에게 위임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근거가 없는 이상 위임계약에 따라 한다.

제 214조 위임 계약에 의하여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위임하

는자의 이름과 부담으로 수행할 의무를 지며 위임하는자는 위임받는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무상으로 맺는다.

제 215 조 양자관계나 유언과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위임할수 없다.

제 216 조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위임받은 행위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 217 조 위임받은자는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자신의 허물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의 허물에도 속하지 않고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위임한자가 책임진다.

제 218 조 위임받은자는 위임한자의 요구에 따라 위임받은 행위의 수행정형을 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 219 조 위임한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임받은자가 한 행위의 결과를 제때에 접수하고 그가 들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위임한자는 자기의 허물로 위임받은자가 위임받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220 조 위임계약의 당사자들은 위임계약을 어느때든지 취소할수 있다.

계약을 취소한 당사자는 그것으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221 조 공민들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고꾸는 행위는 꾸기계약에 따라 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뺏는다. 리자 또는 리자형태의 물건을 주고받는 계약은 뺏을수 없다.

제 222 조 꾸기계약에 의하여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꾸는 공민에게 넘겨주면 꾀 공민은 꾸어준 공민에게 액수가 같은 돈이나 종류와 량이 같은 물건을 갚을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꾸어주는 공민이 돈이나 물건을 상대방에 넘겨준 때에 뺏어진다.

제 223 조 기간을 정하고 꾸기계약을 뺏은 경우에 꾸어준 공민은 기간이 되어야 꾸어준 돈이나 물건을 갚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꾀 공민은 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것을 갚을수 있다.

제 224 조 꾀 돈이나 물건은 정한 기간안에 갚아야 한다. 같은 물건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갚을수 있다.

제 225 조 은행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돈을 꾸어주는 행위는 은행대부계약에 따라 한다.

은행대부계약은 재정규률을 강화하며 화폐자금을 아껴쓰고 그 회전을 촉진시킬수 있게 뺏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226 조 은행대부계약에 의하여 은행기관은 대부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폐자금을 넘겨줄 의무를 지며 대부받는자는 그 자금을 리용하고 원금과 리자를 은행기관에 물 의무를 진다.

은행대부계약은 은행기관이 대부받는자의 신청을 승인하고 대부금을 넘겨준 때에 뺏어진다.

제 227 조 은행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원천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뺏는다.

대부를 받으려는자는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금반환능력을 은행기관에 담보하여야 한다.

제 228 조 대부받은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량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은행기관은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 229 조 대부받은자는 원금과 리자를 정해진 기간안에 은행기관에 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에는 기간이 지난날부터 더 높은 른의 리자를 물어야 한다.

제 230 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자금으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나누는 행위는 합동작업계약에 따라 한다.

합동작업계약은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건설물의 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 231 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공동작업에 참가할 의무를 지며 작업참가정도에 따라 작업결과물의 리용권을 나누어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맺고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제 232 조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기간, 질서와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을 나누는 원칙,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제 233 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한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합동작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234 조 합동작업대표는 작업이 끝나면 계약당사자들에게 작업실적

에 따라 작업결과물을 나누어 리용할데 대하여 해당 국가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4 장 부당리득행위

제 235 조 법적근거없이 남의 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 236 조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 때로부터 그 리득에서 생긴 재산을 손해를 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 237 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 238 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그것을 보관 관리하고 돌려주는데 들인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제 239 조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4 편 민사책임과 민사시효 제도

제 1 장 민사책임

제 240 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제 241 조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진다. 계약 또는 법을 어긴자가 사기에게 허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허물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제 242 조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민사책임은 정상에 따라 병합하여 적용할수 있다.

제 243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민사책임을 지운다.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나있는 동안에 침해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를 통제할 의무를 진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제 244 조 16살에 이른 부분적행위능력자가 남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자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제 245 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당한 민사책임을 진다.

제 246 조 남의 건물을 비롯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차지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재산을 현물로 돌려줄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제 247 조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

제 248 조 사람의 건강과 생명에 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249 조 관리하고있는 짐승이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짐승의 입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을 경우에 보상책임은 덜어지거나 면제된다.

제 250 조 국토와 자원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국가의 법을 어기여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251 조 여럿이 공동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자들은 런 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 252 조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을 어긴자는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물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을 어긴자는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제 253 조 계약당사자들이 다같이 맺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자가 해당하게 민사책임을 진다.

제 254 조 계약의 변경 또는 취소는 손해보상을 요구한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255 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협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56 조 공민이 정당방위를 위하여 또는 자연재해나 비법침해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이나 인체에 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57 조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경우에 그것으로하여 구원된 재산의 임자는 해를 입은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 258 조 민사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 2 장 민사시효

제 259 조 민사상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세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재판, 중재 절차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 260 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261 조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민사시효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제품의 대금청구와 보증금반환청구,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견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와 위약금, 연체료의 지불청구 및 운수, 체신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3개월.

2. 앞호 이외의 청구에 대하여서는 6개월

3.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한 수입품의 사고와 관련한 보상청구, 국제
 련락운수 및 국제통신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해당 협정에
 의한 기간

제 262 조 예산제 국가 기관, 기업소의 채권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
기간이 되기전이라도 그 채권이 발생한 예산연도가 지나면 시효기간이 지
난것으로 본다.

제 363 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법이 정한 절차에 따
라 제때에 해당 국가기관에 바쳐야 한다.

제 264 조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 의무를 자발적으
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
구할수 없다.

제 265 조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자연재해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을 경우에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되
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3개월 연장된다.

 이 법 제261조 제1호의 청구권에는 민사시효의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
다.

제 266 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민사시효기간의 계산은
중단된다.

1. 채권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였을 경우

2. 은행기관을 통한 지불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확인하였을
 경우

3.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 또는 공민들 호상간의 채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였을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면 그때로부터 시효기간은 새롭게 계산된다.

제 267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청구권을 가진자가 민사시효기간 안에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데 대하여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효기간을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 268조 재판기관이나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이익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 269조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은 때부터 시작된다.

1.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2.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에 대하여서는 그 기간이 된 때
3.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공급한 제품의 규격, 완비성 및 건본의 위반과 파손, 부패변질, 수량부족, 그밖의 계약조건위반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보상청구는 그에 대한 사고조서를 작성하였거나 작성하기로 된 때
4. 그밖의 청구권은 청구권을 실현할수 있게 된 때

제 270조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당일을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제 271조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날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날로 한다.

北韓 <民法> 解說 全文

第 1 篇 一般制度(「민주조선」'91. 4. 19 일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 토대를 발전시켜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공화국민법을 철저히 준수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민법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의 법은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것이며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법은 4개편 271조로 되어있다.

민법의 제1편 일반제도는 3개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민법 제1편 제1장에는 민법의 규제대상과 사명, 민법의 원칙, 민법의 효력 등의 규범들을 밝히고 있다.

공화국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재산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일방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상황과정에 재산관계를 맺게 된다. 민법은 우리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가운데서 당사자들이 서로 같은 지위에서 맺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민법이 규제하는 재산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소유권관계와 채권채무관계이다. 우리의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를 통하여 우선 우리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나라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의 하나로 삼고 있다. 또한 우리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민법이 우리나라 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는데 적극 기여하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민법이라는 것을 말한다.

공화국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원칙이 설정되어 있다.

첫째로 재산관계에서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히 하도록 하며, 둘째로 재산거래 관계의 설정의 실현에서 계획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며, 셋째로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대안의 사업체제의 요구를 구현하도록 하며 넷째로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의 인민적인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며, 다섯째로 근로자들에게 재산관계에 널리 참가할 수 있도록 온갖 권리와 조건을 보장하도록 하며, 여섯째로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도록 하며, 일곱째로 재산관계의 설정과 실현에서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면서 개별적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의 이익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는 원칙들이다.

공화국민법이 설정하고 있는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민법이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와 혁명의 주체적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다같이 원만히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민법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제 2장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민사상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규범들이 설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비예산제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 공민들이 민사상 권리의무관계(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민사상 권리를 가질수 있는 민사권리능력을 소유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우에 이러한 권리능력은 그의 본신 임무와 과업에 맞는 범위안의 것이어야 하며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가 가지는 민사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하며 대표자나 대리인이 한 행위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 행위로 된다.

공민은 누구나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자격 즉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공민이 가지는 민사권리능력은 평등하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누구도 그것을 제한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민법에서는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공민의 성인나이를 17살로 규정하고 있다. 공민은 출생과 함께 민사상 권리를 가지지만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자신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7살이 된때부터이다. 1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은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자기의 민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한다.

공민의 민사행위능력을 일정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만 주는 제도는 경제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청소년들의 이익을 보호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

제 3장에는 민사상 권리의무의 설정이나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의 형식, 유효조건, 무효와 취소 및 그 법적효과, 대리에 관한 규범들이 설정되어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레하면 공민들 호상간에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재판소의 인증(이것을 공증이라고 한다)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맞게 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보호를 받는다.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행위, 허위적으로 하는 행위,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리고 본의아니게 한 행위는 이해관계자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행위는 무효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무효로 된 법률행위의 법적효과로서 호상 반환을 예견하고 있다.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무효로 된 경우에 당사자들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상대방에 돌려주어야 한다.

민법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은 민사법률행위를 대리인을 통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리인은 반드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이어야 한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하여 그 행위의 법적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대리인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할 수도 있고 (이것을 범성대리라고 한다) 위임에 의하여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위임대리라고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기 일꾼에게 대리를 위임하는 행위는 반드시 서면에 의거하여 하며 대리를 위임하는 서면(위임장 또는 선임장)에는 대리권의 범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대리는 선임에 기초한 행위인것만큼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결과나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며 대리인 자신이 책임진다.

第 2 篇 所有權制度 (「민주조선」 '91. 4. 26 일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법은 전체 인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것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화국민법 제2편은 소유권제도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소유권이란 재산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하거나 이용, 처분할 수 있는 상태 혹은 가능성을 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소유관계는 다른 모든 재산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하기에 소유권에 관한 제도는 민법에서 기본제도의 하나이다.

민법의 소유권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되어 있는 소유관계 규범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유권편은 일반규정, 국가소유권, 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에 관한 4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규정에는 소유권의 형태, 발생기초, 내용, 보호, 공동에 관한 규범들이 설정되어 있다.

소유권은 그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한다. 소유권의 형태는 소유의 형태에 상응하며 따라서 우리나라에는 국가소유형태, 협동단체소유형태, 개인소유형태가 존재한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또는 그밖의 사실들 레하면 상속이나 증여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이 가운데서도 소유권의 발생기초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약이다. 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소유권은 점유와 리용, 처분에 대한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소유권의 담당자는 자기 소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차지할 수 있으며 리용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소유권자는 물론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 생활규범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민법은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소유물 반환청구권과 소유권 실현방해배제청구권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소유권자는 자기의 재산을 다른자가 비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기소유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자에 대하여 그 행위를 그만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통 한사람에게 속하나 여러사람들에게 일정한 몫으로 나뉘어 속할 수 있다. 소유권이 둘 또는 그이상 사람들에게 몫으로 나뉘어 속하는 경우에 그것을 공동소유권이라고 한다. 공동소유권은

주로 공민들사이에서 발생한다.

공동소유에 대한 점유, 리용, 처분은 공동소유권자들의 합의에 따라 한다. 공동소유권자들은 자기의 몫을 갈라가지고 공동소유관계에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

제2장으로부터 제4장까지에는 국가, 협동단체, 개인 소유권의 발생기초와 대상, 그의 담당자, 내용과 실현방법 등에 관한 규범들이 설정되어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들의 소유이며 이것으로 하여 국가소유권에 대한 민법의 규제에서는 다른 형태의 소유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련의 특성이 있게 된다.

국가소유권은 우선 발생기초에서 특유한 것이 있다. 국유화나 국고회수는 국가소유권에서만 발생기초로 되며 다른 형태의 소유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국가소유권은 다음으로 대상에서 특수성이 있다. 어떤 종류의 재산이건 가리지 않고 다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명맥을 이루는 중요재산들은 오직 국가소유권의 대상으로만 되고 개인은 물론 협동단체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

다음으로 국가소유의 소유권자들은 전체 인민들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이밖에 다른자는 없다. 개별적 국가기관이나 기업소들은 비록 국가소유재산의 일정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있지만 그 소유권자로 되지는 못한다. (개별적 국가기관이나 기업소는 경영상 관리권자로 된다)

국가소유권은 다음으로 점유, 리용, 처분의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협동단체나 개인 소유권과 차이가 없으나 그 내용의 범위에서는 그

것들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국가소유권은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

국가소유권은 또한 그 실현방법에 있어서 특성을 가진다. 협동단체나 개인 소유권에서는 그 소유권자인 개별적 협동단체나 공민이 소유권을 직접 실현하나 국가소유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에 자기의 기관, 기업소들을 통하여 소유권을 실현한다. 국가자신이 자기의 소유권을 직접 실현하는 경우는 드물다. 개별적 국가기관, 기업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를 경영상 관리권이라고 한다.

민법은 국가소유권제도에서 협동농장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우리당과 국가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시책의 원만한 실현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독특한 규범들, 국가소유의 생산적 고정재산들에 대한 협동농장의 리용권에 관한 규범을 특별히 설정함으로써 사람중심의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영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이다. 이러한 성격으로 하여 협동단체소유에 대한 민법의 규제는 국가소유에 대한 규제와 구별되는 일련의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는 대상은 협동단체소유권의 대상으로 될 수 없으며 협동단체는 그밖의 대상들만을 소유할 수 있다. 개별적협동단체들은 자기 소유재산의 소유권자이며 따라서 그 재산을 직접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 리용,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의 실현에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이 점에서 개인소유는 그 어떤 사적경리를 위한 소유, 사적소유와 구별된다. 개인소유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 터발성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 공민이 구입한 재산, 공민이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은 재산등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소유의 기본원칙을 이루는 것은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 혜택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의 개인소유가 사회주의 소유와의 관계속에서 그로부터 파생된 소유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빨리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체계적으로 늘어가는데 따라 근로자들의 개인생활도 더욱더 늘어나고 있다.

개인소유권의 대상에는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필요한 광범한 재산들이 속한다. 우리근로자들은 여러가지 현대적인 가정용품, 문화용품들과 그밖의 생활용품들, 승용차같은 기재를 소유할 수 있으며 그것들을 자기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자유로이 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소유가 민법적으로도 튼튼히 보호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상속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있다.

보는바와 같이 공화국민법의 소유권제도는 사회주의적 소유와 근로자들의 개인소유를 다같이 튼튼히 보호할 수 있게 지정되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소유관계의 가일층의 발전, 협동단체 소유의 전인민적소유에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게 설정되고 있다.

第3篇 債權・債務制度

가. 債權・債務의 一般規程(「민주조선」'91. 5. 8일자)

공화국민법 제3편 제1장에는 채권채무의 일반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채무제도의 일반규정에는 채권채무의 개념, 여러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 채무의 이행질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 등에 관한 규범들이 설정되어 있다.

채권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란 일정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채권채무라고 하면 돈을 주고 받는 것을 생각하는데 민법에서 채권채무라고 할 때 그것은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쓰인다. 돈을 주고 받는 외에 어떤 물건을 넘겨주든가, 일정한 봉사를 제공하든가, 일정한 량의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넘겨주는 등의 재산상 행위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채권채무에 속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는 언제나 서로 대응하며 채무를 떠난 채권이나 반대로 채권을 떠난 채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권채무관계를 간단히 채무관계 또는 채권관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재산상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채권자라고 하며 그러한 행위를 수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채무자라고 한다. 채권자나 채무자는 보통 한사람씩이나 어느 한편이 여럿이거나 량편이다 여럿인 경우들도 있다.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여럿인 채권채무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라고 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각자가 채권이나 채무를 몫

으로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연대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다수 당사자의 채권채무관계는 일반적으로 분할 채권이나 채무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연대채권이나 채무는 법이나 계약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그 대상이 나눌 수 없을 때 설정한다.

공화국민법은 채무자들이 정해진 채무리행질서를 정확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자기가 직접 리행하여야 하며 다만 그가 직접 리행하지 않아도 될 채무는 제3자에게 위임하여 리행하게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를 정해진 기간에 리행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한꺼번에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또한 채무를 법이나 계약이 정한 곳에서 리행하여야 하며 법이나 계약이 리행장소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돈을 물어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주소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된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소재지나 주소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채권채무관계는 저절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경제계획문건을 비롯한 국가의 행정문건이나 계약, 그밖의 법률적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설정된다.

채권채무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계약이란 일정한 법적효과를 일으키기 위한 쌍방 당사자들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징표는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라는데 있으며 이 점에서 계약은 또한 당사자의 단독적 의사표시로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그리고 공민들 호상간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법적 제도의 하나이다.

계약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채권채무관계의 발생기초로서 필수적 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업이 있을뿐만 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소유관계를 보더라도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사적소유가 없어지고 과도기 초에 있었던 여러가지 경제형태가 점차 하나의 사회주의적 경제형태로 되지만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가 있고 소비품에 대한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는 분업이 있을 뿐아니라 날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소유관계는 국가소유, 협동단체소유, 개인소유로 분화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기업소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면서 역시 경영상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한다.

바로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들 사이에 이러저러한 경제거래가 있게되며 그 법적형식으로서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방 당사자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대상, 기간, 값 같은 조건들에 대하여 합의를 본다. 국가의 승인밑에서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나 회유금속, 그밖의 국가통제품은 계약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계약은 유상으로 맺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맺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유상으로 맺어야 하며 공민들 호상간

의 어떤 계약들은 무상으로 맺어야 한다.

공민들 호상간의 계약은 말로 맺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맺을 수도 있으나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맺은 계약이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참가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맺어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그 당사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이건 공민이건 관계없이 서면으로 맺고 해당 국가기관의 인증(이것을 공증이라고도 한다.)을 받아야 한다.

공화국민법은 여러가지 종류의 계약들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 계약들은 그 내용이나 그 밖의 이러저러한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소유권이나 경영상 관리권을 넘겨주는 계약, 일정한 봉사를 제공하는 계약, 작업결과를 넘겨주는 계약등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초에 인민경제계획과제가 놓여있는가 놓여있지 않는가에 따라 계획적 계약과 일반계약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은 또한 한편 당사자가 수행하는 재산상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값을 물거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보상을 하는가 보상하지 않는가에 따라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으로 나누어지며 양편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가 아니면 합의외에 계약의 대상물을 넘겨주어야 성립되는가에 따라 비현물계약과 현물계약등으로 나누어진다. 자재공급계약과 팔고사기계약은 재산의 소유권이나 경영상 관리권을 넘겨주는 유상의 비현물계약이며 빌리기계약은 물건의 리용권을 넘겨주는 계약, 보관계약은 봉사를 제공하는 계약이다. 그리고 보관계약이나 꾸기계약은 그 대상을 넘겨준 때 성립되는 현물계약이며 그것들이 공민들 호상간에 맺어질 때에는 무상계약으로 된다.

나. 債權債務의 契約制度 (「민주조선」 '91. 5. 10 일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기업소들에서 원자재와 반제품 생산을 앞세우고 협동생산을 정확히 조직하여 협동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단위들에서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민법 제3편 제2장과 제3장에는 계약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계약제도에는 계획에 기초하는 계약 (계획적 계약) 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일반계약) 이 있다.

계획적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며 그 밖의 계약들은 일반계약에 속한다. 계획적계약이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는 계약이라고 할 때 그 계획은 계약을 맺는 량편 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시달되는 계획, 쌍방 의무성을 띠는 계획을 염두에 둔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호상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라하더라도 제각기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서 맺는 계약은 계획적계약이 아니고 일반계약이다. 례하면 어떤 기관이 녹음기의 수리를 수리소에 맡겼을 때 맺어지는 계약은 수리소측으로 볼 때에는 자기에게 부과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계획이 수리를 맡긴 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계약으로 되지 않고 일반계약으로 된다.

계획적 계약은 일반계약에 비하여 일련의 특성을 가진다. 계획적 계약의 당사자로서는 인민경제계획과제를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될 수 있으며 그들사이에서 계약의 체결은 의무적이다. 계획과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정해진 기간안에 정해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맺

어야 한다. 계획적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으며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길다. 그리고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의 형태가 여러가지이다.

계획적계약은 법이 정한 모든사항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 맺어지며 계약을 맺는데서 생기는 의견상이는 중재선차로 해결한다. 계약이 체결된후 인민경제계획과제가 추가되거나 조절될 때에는 그에 따라 계약도 변경된다.

공화국민법은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의 다섯가지 계획적 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재공급계약은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계획적 계약으로서 자재공급 세부계획에 기초하여 원료와 자재, 기계와 설비를 주고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 사이에 맺는 계약이며 상품공급계약은 상품세분배정계획에 기초하여 공장, 기업소와 도매상업기업소, 소매상업기업소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농업생산물 수매계약은 국가 수매계획에 기초하여 국영농장, 협농농장과 수매기관 사이에 맺는 계약이며 기본건설 시공계약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건설기업소와 건설물을 관리운영할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그리고 화물수송계약은 국가의 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운수기관 사이에 맺는 계약이다.

일반계약은 많은 경우에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사이에 체결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에 체결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계약은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한 혜택이 근로자들에게 잘 미치도록 하는데서 매우 큰 역할을 논다. 인민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나 여러가지 형태의 봉사

사업은 많은 경우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근로자들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실현된다.

공화국민법은 팔고사기계약, 작업봉사계약, 보관계약, 빌리기계약, 위탁계약, 여객수송계약, 저금계약, 보험계약, 위임계약, 꾸기계약, 은행대부계약, 합동작업계약의 열두가지 일반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가운데서 일상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은 팔고사기계약이다. 우리 근로자들은 유족하고 문화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일용품과 문화용품, 식료품들을 높은 값으로 상점에서 사는데 이 경우에 상점과 근로자들 사이의 거래는 법적으로 볼 때 팔고사기계약에 의하여 진행되며 담보된다.

민법 제3편의 제4장에서는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사유의 하나인 부당리득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부당리득행위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남의 손실밑에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례하면 자기와 성명이 같은 다른 사람에게 보내온 물건을 자기에게 보내온 것인줄 잘못 알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행위가 이에 속한다.

부당리득은 흔히 피해자의 행위결과로 일어나며 일부 경우에 제3자의 잘못이나 부당리득자의 행위결과로 일어나기도 한다.

부당리득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실을 본자에게 리득을 돌려주어야 하며 리득을 현물로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 값을 물어야 한다.

第4篇 民事債權 및 時效制度 (「민수조선」 '91. 5. 10일사)

이밖에 민법 제4편에서는 민사책임과 민사시효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남의 민법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사기의 민법상 의무를 어겼을 경우에 민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허물이 있는 경우에 지며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자(레하면 미성인 또는 정신병자)가 남의 민법상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감독자가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민사책임의 형태에는 재산의 반환, 원상복구, 손해보상과 위약금 연체료 같은 제재금의 지불 등이 있다.

민법상 권리는 법이 정한 기간안에 재판이나 중재를 제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강제절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제도를 민사시효라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한 공민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들 호상간의 민사시효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며 계획적계약의 위반과 관련된 손해보상청구와 제재금지불청구, 운수 및 채신업무와 관련된 청구의 경우에 3개월이다.

민사시효제도는 특히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재정규율을 강화하며 일꾼들의 책임성을 높이는데 큰 작용을 한다.

北韓 <家族法> 全文

(1990. 10.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호로 채택)

제1장 가족법의 기본

- 제 1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 제 2 조 결혼은 가정 형성의 기초이다.
국가는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 제 3 조 가정은 사회의 기층 생활단위이다.
국가는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 제 4 조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국가는 후견제도를 통하여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 제 5 조 상속은 개인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계속이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제 6 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제 7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한다.

제 2 장 결 혼

제 8 조 공민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만 할 수 있다.

제 9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결혼은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할 수 있다.

국가는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보람있게 일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

제 10 조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다.

제 11 조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 않고 부부생활을 할 수 없다.

제 12 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조선 공민들의 결혼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 그 나라의 해당기관에 할 수 있다.

제 13 조 이 법 제 8~10 조에 위반되는 결혼은 무효이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가 한다.

제 14 조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그러나 자녀 양육문제는 이 법 제 22 조, 제 23 조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장 가 정

제 15 조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 담보이다.

공민은 가정을 화목하고 명량하게 꾸려야 한다.

제 16 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7 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 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제 19 조 남편과 안해는 노동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제 20 조 남편과 안해의 관계는 리혼하면 없어진다.

리혼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제 21 조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

제 22 조 남편과 안해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할 당사자는 자녀의 리익의 견지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정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한다.

제 23 조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그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자녀 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제 24 조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로동능력을 잃었거나 사녀를 맡아 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은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데 대하여 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다.

제 25 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이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은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생활 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와 같다.

제 26 조 자녀는 아버지의 성을 따른다. 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부모를 모르는 자녀의 성은 주민행정기관이 정한다.

제 27 조 자녀교양은 부모의 중요한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교양을 잘하여 그들을 건결한 혁명가요,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제 28 조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신체의 발육을 책임지고 그에 대하여 항상적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로동능력을 잃은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 29 조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계부 또는 계모와 계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계자녀와 친아버지 또는 친어머니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 30 조 공민은 다른 사람의 미성인 사녀를 립양할 수 있다.
선거권을 박탈당한자, 양사녀의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이

있는 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호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립양할 수 없다.

제 31 조 립양하려는 공민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립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양자녀로 될 자가 6살 이상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립양은 양부모로 될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주민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제 33 조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의 관계와 같다.

양부모와 양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립양 이전 부모와의 관계는 없어진다.

제 34 조 파양은 양자녀와 양부모 또는 양부모와 양자녀의 친부모나 후견인이 합의하고 해당 주민행정기관의 승인밑에 신분등록기관에 등록하면 이루어진다.

파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35 조 조부모는 부모없는 손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양육하고 교양하여야 한다.

성인나이에 이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의 건강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어야 한다.

제 36 조 형제자매는 친혈육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끌어 주어야 한다.

돌볼 자가 없는 형제자매는 부양능력이 있는 형제자매가 부양

할 의무를 진다.

제 37 조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부양한다.

부양능력이 있는 가정성원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부양한다.

제 38 조 이 법 제 37 조에 지적된 부양자가 없는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준다.

제 39 조 리혼 또는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나가는 경우 개별 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어 가진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4장 후견

제 40 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 못한 자를 위하여 후견인을 정한다.

제 41 조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후견인으로 될 수 있는 자가 여럿인 경우 후견의무수행에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후견인으로 된다.

제 42 조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이

법 제 41 조에 지적된 후견인이 없거나 후견인 선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정한다.

제 43 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의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제 44 조 후견인은 후견받는 자를 보육 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제 45 조 후견임무수행 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제5장 상속

제 46 조 공민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상속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 상속된다.

앞항에 지적된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친척순위로 상속된다.

제 47 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상속인들 가운데서 일부가 상속을 거부한 경우 그에게 차례지는 몫은 나머지 상속자들에게 상속된다.

제 48 조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는 자,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 제 49 조 상속받기로 된 자가 상속시키는 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자녀는 사망자의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 제 50 조 공민은 자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유언의 무효인정은 이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소가 해결한다.
- 제 51 조 상속받은 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안에서 사망자가 진 빚에 대하여 책임진다.
- 제 52 조 상속은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 6개월안에 상속받을 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상속받을 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 제 53 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은 재판소가 해결한다.

제 6 장 벌 칙

- 제 54 조 이 법을 어긴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제재를 가한다.
- 법적제재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 또는 판정으로 한다.

1. 가족법의 기본과 결혼 (『민주조선』 '91. 5. 23일자)

공화국 가족법은 사회주의적 결혼관계와 가족, 친척들 사이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하며 사회주의적 결혼, 가족제도를 공고 발전시켜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게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한다.

가족법은 6개 장 54 조로 되어 있다.

제1장 가족법의 기본에서는 가족법의 규제대상과 사명,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

가족법의 기본원칙에는 결혼에 대한 보호, 가정의 공고화, 행위능력이 없는 공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보호,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 보장,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은 가정형성의 기초이며 출발점이다. 결혼을 떠나서 가정자체를 생각할 수 없으며 가정의 공고화를 기대할 수 없다. 공화국 가족법은 일단 맺은 결혼을 법적으로 보호할 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가정은 사회의 기층생활단위이다. 온 사회가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되자면 가정부터 공고화되어야 한다. 국가는 사회생활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화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본성적 요구이다.

후견제도는 나이가 어리거나 정신병 등 기타의 신체상 결함으로 민사상 행위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제도이다. 국가는 후견 제도를 실시하여 미성인과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성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상속은 사망한 국민의 개인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과도적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국가는 개인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해 준다.

공화국 가족법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시책이라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국가는 어린이의 양육교양에 대한 권리와 의무, 리혼시 자녀양육자 선정등 가족법상 문제해결에서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이러한 규제는 어머니의 체질상 연약한 생리적 특성, 사회와 가정의 2중적인 부담, 아들딸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야 할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공화국 가족법의 제2장에서는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결혼나이, 근친결혼의 범위, 결혼형식, 결혼무효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할 본인들의 동의없는 비자유적이며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결혼할 권리는 사람이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나가는데서 인권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이다.

자유결혼의 권리는 결혼 나이에 이른 모든 남녀가 그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구속도 없이 결혼 시기와 배우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만 할 수 있다. 이것은 미혼상태의 한 남자와 한 여자사이에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결혼관계를 해소시키기 전에는 거듭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나이는 결혼할 때에 도달해 있어야 하는 국가적 기준나이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규정한 나이에 이르면 꼭 결혼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나이가 아니며 공민들이 실지로 결혼할 당시의 나이를 가리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지에 있어서 법적인 결혼나이와 결혼할 당시의 나이는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가족법에서는 남자 18살, 여자 17살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규제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들의 정치문화적 수준, 육체적 발육 정도로 보아 이 나이에 이르면 결혼해도 된다는 국가적인 최소한도의 요구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결혼나이를 밝히면서 청년들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일을 한 다음 결혼하는 사회적 기풍을 장려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인 청년들에 대한 조국과 민족의 크나큰 믿음이며 기대이다.

근친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적 풍습과 민족적 감정, 우리 사회의 건전한 도덕적 풍모로부터 제기되는 문제이다. 근친결혼의 범위는 나라마다 각이하며 한나라에서도 역사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공화국 가족법에서는 8촌까지의 혈족, 4촌까지의 인척사이에는 결혼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결혼은 신분등록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법적으로 인정되며 국가의 보호

를 받는다. 결혼등록을 하지않는 남녀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으며 결혼등록을 한 때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사는 공민들의 결혼 등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에 하며 령사대표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해당 기관에 할 수 있다.

무효로 인정된 결혼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한다.

강제결혼, 2중결혼, 결혼나이 위반, 근친결혼은 무효이며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의 판결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결혼의 무효인정은 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그 결혼관계를 맺었던 남녀사이에는 부부로서의 어떠한 권리와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가 있는 경우 세살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맡아 키우는 원칙에서 자녀양육자를 정하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그가 노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를 물어야 한다. 이것은 무효한 결혼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현존적 관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정과 관련된다.

양육비는 자녀수에 따라 월수입의 10-30% 범위안에서 재판소가 정한다.

양육비를 지불하던 당사자가 노동능력을 잃었거나 자녀를 맡아키우던 당사자가 재혼하여 그 자녀가 계부 또는 계모의 부양을 받을 경우 리해관계자는 양육비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공화국 가족법의 결혼에 대한 제도는 가정형성의 기초인 결혼을 건전하게 맺도록 함으로써 가정을 공고히 하며 온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2. 가정, 후견 및 상속제도 (『민주조선』 '91. 5. 25일자)

공화국 가족법 제3장에서는 가정에서 기본을 이루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관계를 비롯한 육체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적 및 재산적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가정생활과정에 맺어지는 부부사이, 부모와 자식사이, 형제자매사이의 육친적인 사랑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그것이 참다운 동지적 사랑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정을 공고히 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남편과 안해는 가정에서 기본을 이룬다.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와 자매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등 모든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직접적으로 련관되어 있으며 부부관계로부터 파생된다.

부부관계는 결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부부는 결혼 후에도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부부관계는 재판소의 리혼 판결에 의해서만 없앨 수 있다.

리혼제기의 사유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하였거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자녀양육자는 자녀의 양육과 교양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맡아 키우는 원칙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당사자는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로동할 나이

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요구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가정성원들의 관계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출애에 의해 발생한다.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생활 과정에 출생한 자녀와 그 부모와의 관계와 같으며 그 자녀는 사회적으로 똑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규제는 사람의 인격을 가장 존중하며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지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세도의 우월성과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생기발랄하게 키워야 할 우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미성인 자녀를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것은 부모의 중요한 도덕적 의무일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앞에 서는 공민의 법적의무이다. 부모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돌보아 줄 의무를 진다.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할 뿐 아니라 노동능력을 잃었을 때에는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야 할 법적의무를 진다.

계부모와 계자녀의 관계는 친부모와 친자녀사이의 관계와 똑같다.

계부모에게는 계자녀를 보육교양할 의무, 그를 위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며 계자녀에게는 노동능력을 잃은 계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지운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어디까지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인만이 양자녀로 될 수 있으며 선거권자, 그밖에 양자녀를 보육 교양할 능력이 없는 자는 양부모로 될 수 없다. 양부모로 될 사람은 양자녀로 될 자의 친부모 또는 후견인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동의를 받아

야 할 뿐만 아니라 양자녀로 될 어린이가 6살인 경우에는 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공화국 가족법에서는 양자녀로 되는 데서 아들과 딸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친자녀가 있는 사람도 양자를 받아 들일 수 있다.

양부모 자녀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들 사이에는 친부모와 친자녀 사이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이루어진다.

가족법에서는 조부모의 손자녀, 형제자매 사이의 양육의무, 부양의무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부양해 줄 사람이 없는 미성인과 노동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가 돌보아 준다.

가정생활 과정에는 리혼이나 그밖의 사유로 가정성원이 갈라져 나가는 경우에 재산을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에 가정의 재산을 가정재산과 개별 재산으로 나누어 개별재산은 각자가 가지며 가정재산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나누는 원칙에서 처리하게 된다.

가정재산에는 가정성원들이 공동으로 이루어 놓은 재산, 가정생활 기간에 개별적 성원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저금한 돈이 포함된다.

가정재산을 나누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소가 나누어야 할 재산의 성격과 용도, 당사자들의 경제생활 형편과 수입 등을 고려하여 녀성들과 자녀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나눌 재산의 대상과 량을 정하여 줄 수 있다.

가족법 제4 장에서는 후견의 목적과 후견인, 후견인의 의무, 후견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후견은 미성인과 정신병 등 기타의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 성인을 위하여 설정한다. 미성인의 경우에도 16살에 이르면 자기가

받은 로동보수의 범위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며 16살에 이르지 못하면 후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미성인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부모가 되며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나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 신체상 결함으로 행위능력이 없는자에 대한 후견인으로는 배우자 또는 부모나 자녀, 조부모나 손자녀, 형제사매 중에서 후견의무 수행에 가장 적당한 사람이 후견인으로 된다.

후견인은 후견 받는자를 보육 교양하며 그의 생활과 건강을 돌보아 주고 재산을 관리하며 그의 대리인으로 된다.

후견의무 수행 정형을 감독하는 사업은 주민행정기관이 한다.

가족법 제5장에서는, 법정상속의 순위와 몫, 거부조건, 유언상속, 상속기관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상속은 공민이 사망하였을 때 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람이 이어 받은 가족법적 제도이다.

법정상속은 상속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전형적인 형태로서 미리 법에서 정해 준 순위에 따라 재산의 분배순위가 결정되는 상속이다. 법정상속의 첫째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이며 둘째 순위는 손자녀와 조부모, 형제사매이며 셋째 순위는 가까운 친척들이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에게 차례지는 몫은 같다. 법이 정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사망자를 생전에 몫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그를 돌보지 않은 경우,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지 않는다.

법정상속과 함께 유언상속이 있다. 공민은 사기의 재산을 유언으로 상속시킬 수 있다. 그러나 유언이 유언자의 부양을 받던 공민의 이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상속은 6개월안에 하여야 한다. 가족법 제6장에서는 가족법을 어긴 공민에게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 제재를 가할데 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화국 가족법은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인간중심의 철학사상을 관통하고 있으며 사회생활 영역에서는 물론 가정생활 영역에서까지 모든 공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담보하고 있다.

北韓 情勢 分析 資料集

1991年 12월 25일 인쇄

1991年 12월 30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인쇄처 양동문화사
